

ISSN 1975-390X

獨島研究

제37호

2024. 12. 3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차 례

일반논문

조선 후기 武官 張漢相의 생애와 활동 ■ 고민정	7
장한상의 임술(1682) 통신사행 참여 연구 ■ 송휘영	35
나카이 요자부로의 오가사와라島 도항 시도의 의미 ■ 이소리	67
국내 율향(鬱香)의 분포 조사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율릉도 인식 ■ 최재목	95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 검토 ■ 도시환	123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비판론 재검토 ■ 최지현	16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한국 현대사적 의미 - 영토 조항을 중심으로 - ■ 박지영	185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상 ‘독도 문제’의 전개 과정 분석 - 1963~1965년 독도 관련 국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 홍성근	213
하이브리드 전쟁과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보심리전 사례를 중심으로 - ■ 하대성	251

2022 개정교육과정 지리 과목의 독도 내용 기술 분석 - 한국지리탐구를 중심으로 -

■ 이두현285

The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 returns to Dokdo

■ Eun Mi Lee·Imgeun Song·Minji Che·SeonJoo Park 311

『독도연구』 제37호 편집위원회 320

논문투고규정 321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325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328

일반논문



조선 후기 武官 張漢相의 생애와 활동

고 민 정*

〈목 차〉

1. 서론
2. 장한상의 가계
3. 장한상의 생애
4. 장한상의 활동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를 직접 수토한 삼척첨사 장한상의 가계를 비롯하여 생애와 활동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장한상의 선대는 조선 건국 후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의성으로 들어와 은거하였다. 그 후 자손들은 충효를 중시하는 가풍에 영향을 받으며 타고난 완력을 바탕으로 무관직에 진출하여 활약하였다. 장한상은 20대 초반 무과에 급제하여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주요 관직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희천군수로서 사신 접대, 통신사 군관으로서 일본에서의 활동, 무신으로서 경연 참여, 삼척첨사로서 울릉도 수토, 경상좌병사로서 봉수대 이설, 어영별장으로서 북한산성 수축 감독, 전라병사로서 백성 진휼, 경기수사 및 옥천군수로서 백성을 구휼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장한상의 생애와 업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그의 울릉도 수토 활동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장한상, 순천장씨, 무관, 울릉도 수토, 진휼

*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 koh71@kangwon.ac.kr

1. 서론

장한상張漢相(1656~1724)은 비안현에서 출생한 무관이다. 본관은 순천, 자는 필경弼卿, 호는 운암雲巖이고 증조부는 승정원좌승지로 추증된 장덕명張德明, 조부는 호조참판으로 추증된 장익張翊, 부친은 수군절도사를 역임한 장시규張是奎(1627~1708)이고 외조부는 학생 이이영李爾模이다. 그는 무과에 급제한 후 주로 숙종과 경종대에 중앙직과 지방직을 두루 거치면서 활약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삼척첨사로 임명되어 울릉도를 직접 수토한 것을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꼽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장한상은 조선시대 울릉도의 수토 양상과 수토제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 속에 포함되어 논의되었다. 첫째, 울릉도 수토제의 성립과 확립, 그리고 운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사실이 언급되었다.¹⁾ 둘째,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학설을 입증하기 위해 장한상의 저작인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을 논거로 이용하였다.²⁾ 셋째,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행적을 토대로 울릉도의 상황을 파악한 뒤 수토제의 변천 과정을 논의하였다.³⁾ 넷째,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사실을 토대로 일본 측이 제기한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⁴⁾

다섯째, 장한상의 저작인 「울릉도사적」이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뒤 문헌학적 관점에서 이본을 고찰하였다.⁵⁾ 여

1) 송병기, 「조선후기의 울릉도 경영」, 『진단학보』 86, 진단학회, 1998.

2) 유미림, 「"우산도=독도" 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3) 유미림,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4) 손승철, 「울릉도 수토와 삼척영장 장한상」, 『이사부와 동해』 5, 한국이사부학회, 2013.

5) 이원택, 「『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첫째, 장한상이 울릉도 수토를 통해 독도를 수호하는 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이므로 이를 의성군의 역사문화콘텐츠로 정립할 필요성을 논하였다.⁶⁾ 일곱째, 장한상의 후손에 의해 전래한 가장문헌에서 「울릉도사적」의 이본이 확인됨에 따라 그 해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⁷⁾ 여덟째, 울릉도의 수토 사로서 업적을 남긴 장한상의 관력과 행적이 검토되었다.⁸⁾

이처럼 장한상에 관한 연구는 그의 울릉도 수토 활동을 토대로 조선에서의 수토제 성립과 운용과정이 논의되었으며 장한상 후손들에 의해 전래한 고문헌의 서지적 특징, 의성의 지역 인물인 장한상을 역사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이유, 장한상의 주요 관직 이력 등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장한상의 행적을 조명하였기 때문에 장한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소 평면적으로 논의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수토라는 그의 대표적 업적과 더불어 장한상의 선조와 가계, 생애와 관력, 활동과 업적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장한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아직 검토되지 못했던 장한상 관련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II 장에서는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 등을 이용하여 장한상을 중심으로 계보를 정리하고 순천장씨가가 비안현으로 입향하는 과정과 장한

6) 송휘영, 「의성 비안고을과 장한상의 행적」, 『독도연구』 2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7) 유미림,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 『동북아역사논총』 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이원택, 「순천장씨 鶴棲曹孫家の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 소개, 그리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再論」, 『영토해양연구』 1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9; 이원택, 『의성 경덕사 장시규·장한상 자료 喬桐水使公輓祭錄·喬桐水使公輓辭·節度公兩世實錄·節度公兩世碑銘』, 동북아역사재단, 2022.

8) 배재홍, 「수토사 장한상의 官歴과 주요 행적」, 『이사부와 동해』 16, 이사부학회, 2020.

상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선조들의 행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승정원일기』, 『숙종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 자료뿐 아니라, 고신과 유서 등 의성 순천장씨의 고문헌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장한상이 무과 급제한 후 역임한 관직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IV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했던 지방지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종합하여 장한상이 경외 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긴 업적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장한상의 가계

장한상이 속한 순천장씨는 시조 장천로張天老에서 비롯되었다. 장천로는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중서시랑에 올랐으며 순천군에 봉해지면서 본관이 순천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순천장씨 가운데 고려 말에 활동한 장보지張補之와 그의 아들 장사검張思儉이 장한상의 직접적인 선계가 된다. 장보지는 1359년(공민왕 8)에 있었던 홍건적의 1차 침입을 격퇴한 공로로 2등 공신에 녹훈되었고⁹⁾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한양으로 천도를 건의한 뒤 판서·운판사로서 궁궐터를 직접 확인하는 행적을 남기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며 순천 건달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일생을 마쳤다.¹¹⁾ 장보지의 아들 장사검도 고려 말 사재감소감에 올랐으나¹²⁾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피하여 소주韶州 원흥동元興洞에 은거하였다.¹³⁾ 그 후 일평생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켰으

9) 『고려사』 「세가」 권40 공민왕 12년(1363) 11월.

10) 『고려사』 「열전」 권47 우왕 8년(1382) 2월.

11) 『昇平文獻錄』 「敬題遺事後」 我朝革命棄官歸，太祖徵之。先生曰，忠臣不事二君，遂被髮，入建達山終焉。

12) 『昇平文獻錄』 「二隱公事蹟」 長子少監公，諱思儉，號二隱，官朝散大夫，司宰少監。

13) 『昇平文獻錄』 「二隱公事蹟」 末葉避居韶州之元興洞。

며 문소聞韶 남쪽 10리의 팔지산八智山에 그의 묘가 조성되었다.¹⁴⁾ 또한 장사검의 아들 장헌張憲도 역시 선대의 뜻을 계속 지키면서 스스로 농부를 자처하였고¹⁵⁾ 태종대에 승지와 이조판서로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¹⁶⁾

이처럼 장보지→장사검→장헌으로 이어지는 3대는 왕조교체기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은거를 자처하였다. 그런데 장보지는 순천의 건달산을 은거지로 택하였으나 장사검은 소주의 원흥동을 은거지로 택하였다. 원흥동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호구총수』의 기록을 토대로 의성현 남부면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¹⁷⁾ 그의 묘가 위치하였다는 문소도 역시 의성현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따라서 장사검이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의성으로 입향하였고 이로써 순천장씨가 의성에 근거지를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성현 일대에 세거하며 활약한 순천장씨 중에는 무과에 급제한 장일신張日新이 있다. 그는 장헌의 손자로 의성현 원흥리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완력이 남보다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그리고 무관이 된 뒤로는 진주목사, 부산첨사, 경주판관, 남도포만호 등을 역임하였다.²⁰⁾ 또한 그의 손자 장문서張文瑞(1507~1577)는 효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장문서는 어릴 때부터 행동거지가 남달랐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상복을 잠시도 벗지 않았으며 시묘살이를 하루도 빼놓지 않았고 제사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치재致齋하였다.²¹⁾

14) 『昇平文獻錄』 「二隱公事蹟」 絶不粒食，痛浹旬餘，竟致餓死。墓在聞韶南十里，八智山子坐。

15) 『昇平文獻錄』 「三隱公事蹟」 繼守先志，日事農圃，又號曰農夫。

16) 『昇平文獻錄』 「三隱公事蹟」 太宗朝，以承旨徵之不就，又以吏曹判書，徵之亦不受。

17) 『戶口總數』 義城 …… 南部面道下里，道北里，道南里，元興洞里。

18) 『世宗實錄地理志』 「義城縣」

19) 『昇平文獻錄』 「判官公墓碑文」 生公于元興里第，…… 膂力絶倫。

20) 『성종실록』 231권, 성종 20년(1489) 8월 3일 무자; 『연산군일기』 45권, 연산 8년(1502) 7월 22일 임진.

21) 『昇平文獻錄』 「文巖公行蹟」 自幼時，舉止異凡兒，及長事親至孝，昏定晨省，一遵小學

그리고 이러한 효행이 널리 알려지게 됨에 따라 효자로 정려되고 복호가 내려졌으며 인의와 남부참봉에 임명되었다.²²⁾ 명종이 승하한 후에는 복쪽을 바라보며 부모상과 같이 통곡하였고 3년 동안 매일 삭망에 분향과 사배를 거행하였을 뿐 아니라, 인순왕후가 승하하였을 때도 애휼·복상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²³⁾ 이에 류성룡이 그의 행적을 전해 듣고 천거하여 보안도찰방에 오르기도 하였다.²⁴⁾

더욱이 장문서의 5대손이며 장한상의 부친이기도 한 장시규張是奎도 효행으로 유명하였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장시규는 찰방 장문서의 5대손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섬기는데 지극한 정성이 있었고 완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순치 무자년 무과에 급제하여 나주영장이 되었을 때 부친상을 당하였다. 그가 아직 천연두를 앓기 전이었는데 사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피할 것을 권했으나 애휼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 시종일관 여막을 지켰는데 마침내 천연두를 면하였다. 사람들은 이 일을 효성이 하늘과 감응하였기 때문이라 여겼다. 현감 류면柳冕이 이를 듣고 신기하게 여겨 사유를 갖추어 전보하였다. 관직이 자헌대부 황해도병사 경기통제사에 이르렀다.²⁵⁾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장시규는 첫째, 어릴 때부터 효성이 깊었고 천연두가 유행할 때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휼하며 여막을 지키

之儀。…… 逮丁親憂，水齋不入口，衰麻不祛身，哭墓逐日不廢，奉祭前期致齋。

22)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1559) 4월 1일 임인; 『일성록』 순조 8년(1808) 4월 11일.

23) 『昇平文獻錄』 「墓誌」 明宗大王晏駕，…… 北望慟哭，如喪考妣，每月朔望，焚香四拜，以終三年。萬曆三年乙亥 …… 仁順王后昇遐 …… 哀毀服喪，亦如之。

24) 『昇平文獻錄』 「墓誌」 余以公行實聞，上大奇之，拜保安道察訪。

25) 『比安縣邑誌』 「人物」 張是奎，察訪文瑞之五代孫也。自小事親至誠，膂力過人，順治戊子武科，爲羅州營將時，遭父喪。身未經疫，忌患四織。鄉人勸其出避，而哀毀愈篤，終始守廬，竟免痘患。人以爲孝感所致。縣監柳冕，聞而異之，俱由轉報。官至資憲大夫，黃海道兵使，京畿統制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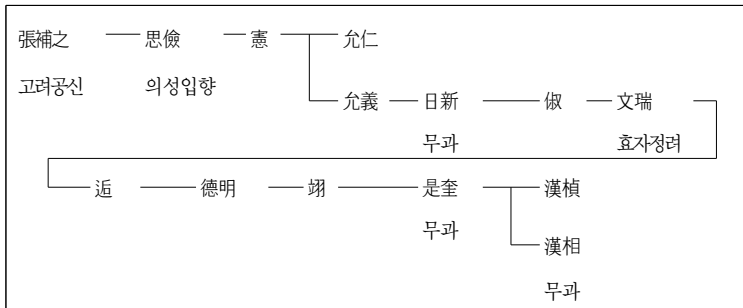
는 등 부친상을 극진히 치러 효자로서 칭송되었다. 둘째, 장시규는 다른 사람보다 완력이 뛰어난 신체를 타고났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1648년(인조 26) 무과에 급제한 후 효종대에는 선전관, 의영주부, 강화도사를 역임하였고, 현종대에는 훈련부정, 호군, 우부천총, 북우후, 춘천부사, 경상좌수사, 전라우수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숙종대에도 태안군수, 충주영장, 소강첨사, 황해병사, 회령부사, 부호군, 충음준군, 양주목사, 경기수사를 역임하였다. 이처럼 장시규는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무관으로서 종2품 하계에 해당하는 자헌대부에 올랐다. 그가 사망한 뒤에는 정해진 관례에 따라 국가에서 예관을 파견하고 치제하였다.²⁶⁾ 또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부사 권상하權尙夏, 형조판서 최석항崔錫恒, 좌빈객 조상우趙相愚, 순찰사 이언강李彦綱, 호조판서 윤세기尹世紀, 대제학 강헌姜覲 등이 만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요컨대 순천장씨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에 고려에 대한 충절을 고수하기 위해 은거를 선택하였고 그중에서도 장사검이 의성으로 입향하였다. 순천장씨는 조선 태종까지도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켰으며 그 후의 자손부터 다시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문서의 경우에는 가풍을 이어 부모를 극진하게 섬기고 왕실에 충성을 다하여 효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장시규도 역시 이러한 가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무과에 급제한 뒤 내외직을 거치면서 변방을 수호하는 관직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장시규의 아들 장한상도 역시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부모를 위해 효도해야 한다는 가풍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부친의 영향을 받아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 관료로서의 삶을 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장한상을 중심으로 의성 순천장씨 문암공파의 계보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26) 『승정원일기』 563책 경종 4년(1724) 2월 28일 임신.

[표 1] 순천장씨 문암공과 장한상 중심의 계보(『승평문헌록』 참조)



3. 장한상의 생애

장한상은 1676년(숙종 2) 21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뒤 1724년(경종 4) 사위 이삼李森의 집에서 사망할 때까지 일생의 대부분을 관료로 살았다. 그는 유전의 영향으로 우월한 신체를 물려받아 “골격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특별하였다” 고 하며²⁷⁾ 충효를 중시하는 가풍의 영향으로 “부친 장시규가 서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아들 장한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함을 호소하여 마침내 신원되었다” 고²⁸⁾ 하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런데 장한상은 비안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과 초시初試는 서울에서 치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무과를 시행하기 전부터 병조가 이미 동래 및 비안 등지에서 완력을 갖추고 있거나 재주가 쓸만한 이들을 불러 모아 재주를 시험하고 등용할 목적으로 서울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조의 부름을 받고 상경한 이들을 다시 거주하던 지방으로 보내 무과 초시를 보도록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정해진 일정을 맞추기가 촉박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27) 『昇平文獻錄』 「墓碣銘」 骨相英特, 異凡兒, 及長膂力絶人, 從事弓馬.

28) 『比安縣邑誌』 「人物」 張漢相是奎之子. 父囚京獄, 呼泣訴冤, 竟得伸理.

조처하였으므로²⁹⁾ 장한상도 서울에서 무과를 치르게 된 것이다.

다만 장한상이 무과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를 보면 시험을 치를 당시에 그가 이미 무공랑務功郎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³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공랑은 정7품에 속하는 문관의 품계인데, 장한상이 이러한 품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부친 장시규에게 주어진 자급을 대가代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한상의 형 장한정張漢楨도 부친 장시규가 도총도사일 때 특별히 받은 자급을 대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1672년(현종 13)에 이미 장남 장한정은 대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인 통덕랑에 올랐으므로³¹⁾ 그 후에 부친 장시규에게 주어진 자급은 차남 장한상이 대가하여 무공랑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장한상이 무과에 급제하고 처음 입사한 관직은 선전관이였다.³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전관은 국왕 가까이에서 시위하기 때문에 서반 승지라고도 하며 청요직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무과에 급제한 이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용맹한 인재를 선발하여 무예와 병법을 연마시켰다. 즉, 선전관으로의 임명은 무관 가운데에서도 높은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입사로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었다. 더욱이 선전관에 임명될 때는 가문의 배경과 선조의 행적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장한상의 경우 그의 부친 장시규와 선조 장일신이 이미 선전관으로 출사한 경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도 역시 출세가 보장된 선전관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장한상은 무관으로서의 직업에 적합한 무예와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관료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전관으로 제수되었을 때 이미 무예와 병법이 당대에 제일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뿐 아니라³³⁾ 서충대에서 기예를 시험할 때 숙종이 그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

29) 『승정원일기』 250책 숙종 2년(1676) 1월 22일 을사.

30) 「1676년 張漢相 紅牌」.

31) 「1672년 張漢楨 教牒」.

32) 「1678년 張漢相 教旨」.

33) 『昇平文獻錄』 「墓碣銘」 丙辰, 登武科, 初授宣傳官, 武藝韜鈴, 爲當世第一.

겨 크게 포상하였기 때문이다.³⁴⁾ 또한 1681년(숙종 7) 알성시 후 준당대에 서 시행된 별시사에 참여해서 아마 1필을 상으로 받았던 사실도 확인된다.³⁵⁾

이처럼 20대 초반 선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장한상은 질병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 평생토록 관료로서의 삶을 살았다.³⁶⁾ 중앙에서는 도총도사, 중추경력, 훈련첨정, 훈련부정, 훈련정, 내금장, 호군, 부호군, 겸내승, 내금위장, 어영별장, 부사직, 부총관, 부사맹 등의 관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지방에서는 이주첨사, 경상좌병우후, 회천군수, 자산군수, 태안군수, 충주영장, 전라병사, 삼척첨사, 칠곡부사, 황해병사, 경상좌병사, 북병사, 경기수사 겸교동부사, 영변부사, 옥천군수, 회영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며 팔도에서 활약하였다.

다음 [표 2]는 『숙종실록』과 『경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관찬 사료를 토대로 장한상의 관력을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다.

[표 2] 장한상의 관직 이력

연도	나이	내용
1676년(숙종 2)	21세	3월 무과 병과 급제
1678년(숙종 4)	23세	4월 宣傳官 제수
1680년(숙종 6)	25세	11월 都摠都事로 사은
1681년(숙종 7)	26세	1월 中樞經歷 제수, 3월 訓練僉正 제수, 6월 伊洲僉使 제수, 7월 訓練副正 제수, 9월 御營把摠 제직, 12월 慶尙左兵虞候 제수, 通信使軍官 차출
1682년(숙종 8)	27세	4월 訓練副正 제수
1683년(숙종 9)	28세	7월 熙川郡守 제수
1685년(숙종 11)	30세	9월 慈山郡守 제수
1686년(숙종 12)	31세	11월 訓練正 제수, 12월 內禁將 제수

34) 『昇平文獻錄』 「少節度公實錄」 嘗試藝于瑞蔥臺，肅廟見而奇之，大加褒賞.

35) 『승정원일기』 285책 숙종 7년(1681) 9월 11일 경신.

36) 『승정원일기』 399책 숙종 27년(1701) 9월 9일 계사; 『승정원일기』 428책 숙종 32년(1706) 2월 22일 신해.

1687년(숙종 13)	32세	1월 護軍으로 사은, 2월 副護軍 제수, 12월 兼內乘 제수
1688년(숙종 14)	33세	11월 泰安郡守 제수
1689년(숙종 15)	34세	1월 忠州營將 제수
1692년(숙종 18)	37세	3월 全羅兵使 제수
1694년(숙종 20)	39세	6월 慶尙左道兵使 제직, 7월 三陟僉使 제수
1698년(숙종 24)	43세	6월 柒谷府使 제수
1700년(숙종 26)	45세	7월 黃海兵使 제수
1701년(숙종 27)	46세	9월 內禁衛將 제직
1706년(숙종 32)	51세	2월 慶尙左兵使 제수
1711년(숙종 37)	56세	2월 副護軍 제수, 4월 御營別將 제직, 6월 北兵使 제수, 7월 副司直 제수
1712년(숙종 38)	57세	12월 副護軍에 제수
1713년(숙종 39)	58세	4월 副總官 제수, 11월 全羅兵使 제수
1715년(숙종 41)	60세	6월 護軍 제수, 12월 副總官 제수
1716년(숙종 42)	61세	1월 京畿水使 제수, 兼喬桐府使 제수, 12월 副護軍 부직
1718년(숙종 44)	63세	2월 副總官 제수, 3월 寧邊府使 제수
1719년(숙종 45)	64세	12월 副護軍 제수, 副司猛 제수, 副總管 제수
1720년(숙종 46)	65세	2월 副護軍 제수
1721년(경종 1)	66세	4월 沃川郡守 제수, 9월 副護軍 제수, 11월 黃海兵使 제수
1722년(경종 2)	67세	7월 淸寧府使 제수
1723년(경종 3)	68세	4월 北兵使 제수, 9월 副護軍 제수, 11월 黃海兵使 제수
1724년(경종 4)	69세	1월 副護軍 제수, 副總管 제수, 2월 行副護軍 제직 중 사망

장한상이 중앙직으로 종사할 때는 주로 국왕을 시위하는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국왕과의 접촉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장한상이 지방직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숙종과 직접 면대하였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는 장한상이 주로 변방 지역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숙종이 그를 인견하며 해당 지방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장한상이 말하기를 “신은 회천군수 장한상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였다. 장한상이 말하기를 “선전관에서 도총도사경력·훈련부정을 거쳐 지금 이 직임에 제수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상이 수령의 칠사에 대해 묻고 장한상이 대답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관서 지방은 연이어 흉년을 당하였고 또 사신의 행렬이 많은 도이다. 모름지기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아의 일에 마음을 다하며 절대 뇌물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³⁷⁾

상이 회정당으로 나아갔다. 북병사 장한상을 인견할 때 우부승지 윤세수, 가주서 박장윤, 편수관 홍경선, 기사관 김재로가 입시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나오라.”하였으므로 장한상이 나와서 엎드렸다. 상이 말하기를 “곤수의 임무는 어느 지역인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서북 지방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조가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다. 도입한 후에는 모름지기 마음에 두고 경계하며 만약 변통할 일이 있으면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한상이 말하기를 “신이 이미 임금의 명령을 받았으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장계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장계로 보고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진달할 일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장한상이 말하기를 “아직 부임하지 않아서 진달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조가가 매번 서북 지방을 근심하니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한상이 말하기를 “신이 은혜를 받은 것이 망극하니 어찌 감히 직무에 태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윤세수가 말하기를 “병사가 하직할 때는 으레 별유를 크게 읽는 일이 있음을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래.”라고 하였다. 상이 화살·납약·후추를 하사하였다. 장한상이 이것을 받아 들고 퇴장하였다.³⁸⁾

위의 인용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은 1683년(숙종 9) 28세의 장한상이 평안도 회천 지역의 수령을 나아가기 전 숙종을 인견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숙종이 장한상의 이력을 묻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이때부터 그를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숙종은 장한상을 직접

37) 『승정원일기』 299책 숙종 9년(1683) 7월 6일 을해.

38) 『승정원일기』 462책 숙종 37년(1711) 9월 5일 신묘.

마주하고 그의 이력에 대해 질문하였고, 장한상은 선전관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아가 도총도사, 경력, 훈련부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숙종은 연이어 수령으로 나아갈 장한상에게 수령의 기본 책무에 대해 질문하였고, 장한상은 그 내용에 대해 대답하였다. 그리고 숙종은 장한상이 부임하는 관서 지방이 최근 몇 년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재의 사정을 전하였고 또한 다른 지방에 비해 사신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이라 폐단이 많다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장한상에게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뇌물을 근절할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 내용은 1711년(숙종 37) 56세의 장한상이 함경도에 설치된 북병영에 병마절도사로 부임하면서 숙종을 인견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면대는 숙종이 우부승지 윤세수에게 북병사 장한상을 인견하겠다는 전교를 내렸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다. 숙종은 장한상에게 변경의 수장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어느 지역인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서북 지방은 다른 곳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함경도에 도착하여 부임한 후에는 조정에서 이 지역을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변통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장계로 보고한 뒤에 거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장한상은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았으나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혹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장계를 올리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숙종은 진달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고 장한상은 아직 부임 전이라 특별히 진달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숙종은 다시 서북 지방이 변방이라 각별히 경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고 장한상도 역시 임금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망극하니 감히 직무를 태만하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숙종과 장한상의 대화가 끝난 후에는 병사가 하직할 때 임금이 내린 별유를 크게 소리 내어 읽는 의례를 시행하였다. 끝으로 숙종은 화살, 납약, 후추를 그에게 하사하였고 장한상은 이를 받고서

퇴장하였다.

그런데 당시 장한상에 대해서는 지방직에 임명하더라도 행정사법권을 지휘하는 일반적인 수령의 임무보다는 변방 등지에서 군사권을 총괄하는 장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1682년(숙종 8) 비변사에서는 숙종에게 주군州郡의 수령을 맡길 적합한 자, 장령將領을 맡길 적합한 자, 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맡길 만한 자로 구분하여 추천한 단자를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장한상은 나홍좌羅弘佐 등 14명과 함께 장령에 알맞은 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1690년(숙종 16) 숙종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 그리고 주군의 수령을 맡길 적합한 자를 각각 추천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비변사에서는 절도사를 맡길 자와 수령을 맡길 자를 각기 구분하여 추천하였는데 장한상은 절도사에 적합한 자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되었다.³⁹⁾ 즉, 이러한 평가는 장한상이 무신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실제로도 장한상은 전라병사, 황해병사, 북병사에 두 번씩 임명되었다.

이처럼 무관으로서 40여 년간 관직에 종사하였던 장한상은 1724년(경종 4) 질병으로 휴가를 받아 잠시 요양하던 중에 사망하였다.⁴⁰⁾ 국가에서는 종2품 병사의 직임을 여러 차례 역임한 그를 예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비안으로 반장返葬할 때 담지군을 파견하였고 예관을 보내 치제하였다.⁴¹⁾ 장한상은 통덕랑 신무申耆의 딸 아주신씨와 혼인하여 아들 장세건張世鵞과 사위 권척權忭을 두었다. 그리고 선무랑 심력沈櫟의 딸 청송심씨와 혼인하여 사위 홍중희洪重熙를 두었고 이필형李必炯의 딸 영천이씨와 혼인하여 사위 판서 이삼을 두었으며 완산이씨, 봉화금씨와도 차례로 혼인하였다.⁴²⁾ 그러나 4번에 걸친 혼인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장세건 뿐이었는데 또

39) 『비변사등록』 숙종 16년(1690) 10월 28일.

40) 『승정원일기』 563책 경종 4년(1724) 2월 6일 경술.

41) 『승정원일기』 563책 경종 4년(1724) 2월 28일 임신.

42) 『昇平文獻錄』 「墓碣銘」 公配鵝洲申氏, 通德郎娶女, 有男女. 男世鵞, 女適權忭. 次配青松沈氏, 宣務郎櫟女, 有一女適洪重熙. 次配永川李氏, 必炯女, 有一女, 適判書李森.

그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족제族弟 장봉명張鳳鳴의 아들 장위기張緯箕를 입후하여 가계를 이었다.⁴³⁾

요컨대 장한상은 20대 초반 무과에 급제한 뒤부터 69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일생의 대부분을 무관 관료로서 보냈다. 선조로부터 유전된 건장한 신체는 무예를 익히기 적합하였으며 이미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부친 장시규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무관으로의 삶을 걷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과에 급제한 뒤로는 선조 장일신과 부친 장시규와 같이 무반 관료의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선전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중앙에서는 중추경력, 훈련정, 내금위장, 어영별장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지방에서는 경상좌병사, 전라병사, 삼척첨사, 경기수사 등 군사권을 통솔하는 절도사를 주로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장한상의 활동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한상은 내외 관직에 종사하며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런데 『비안현읍지』를 보면 그가 관료로서 행해온 여러 활동 중에서도 통신사로 차출되어 일본에 갔을 때 당시 일본인들의 평가와 더불어 왕래가 없었던 울릉도를 직접 수토하였다는 것을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14개 군현을 통치한 경력을 중요하게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한상은 장시규의 아들이다. 강희 병진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이 도총경력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사행으로 만리의 바닷길을 흔들림 없이 다녀왔다. 울릉도는 여러 대의 조정에서 통하지 않는 땅인데 바람

次配完山李氏, 俊英女, 次配 奉化琴氏.

43) 『昇平文獻錄』 「墓碣銘」 世壽早夭無嗣, 以族弟鳳鳴子緯箕, 爲后.

이 몰아치는 대양에 1백 여인을 이끌고 무사히 다녀왔다. 부친이 서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원통함을 호소하여 마침내 신원되었으니 지극한 정성에 감복한 것이라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전후에 군현을 다스리고 변방을 다스린 것이 모두 14곳이다.⁴⁴⁾

위의 내용은 『비안현읍지』 「인물」조에서 실린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한상의 활동과 업적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첫째, 희천군수로서 사신 접대, 둘째, 통신사 군관으로서 일본에서의 활동, 셋째, 무신으로서 경연 참여, 넷째, 삼척첨사로서 울릉도 수토, 다섯째, 경상좌병사로서 봉수대 이설, 여섯째, 어영별장으로서 북한산성 수축 감독, 일곱째, 전라병사로서 재해로 인해 피해받은 백성 진휼, 여덟째, 경기수사 및 옥천군수로서 기근을 고통받은 백성을 구휼할 계책 진달 등의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장한상이 희천군수로 부임했을 당시 사신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아 사신들로부터 찬사를 얻었다. 평안도 희천 지방은 군사적 요충지이며 국가 간의 경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신들의 왕래가 잦았다. 이에 따라 1683년(숙종 9) 장한상이 희천군수로 부임할 때 숙종이 특별히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임을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장한상이 희천군수로서 사신들을 접대할 때 그전과 다른 특별한 계책을 시행함으로써 폐단을 막았다. 그리고 사신들이 이러한 장한상의 면모를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감탄하여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대국이 감히 알보지 못할 것이라 평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 사신들이 왕래할 때면 항상 장한상의 안부와 직임을 물어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⁴⁵⁾

44) 『比安縣邑誌』 「人物」 張漢相是奎之子. 康熙丙辰登武科, 官至都總經歷, 當日本使臣之行, 萬里海外無撓往返. 鬱陵島屢朝不通之地, 而漂風大洋, 所率百餘人, 無事往返. 父囚京獄, 呼泣訴冤, 竟得伸理, 至誠所激, 人皆歎服. 前後治郡制閫, 凡十四處.

45) 『紀年便故』 「張漢相」 爲熙川, 接勅行, 彼人畏歎曰, 有如此數輩, 大國不敢侮. 厥後使行往來, 必問其安否爵秩.

둘째, 장한상은 일본에 통신사가 파견되었을 때 군관으로 차출되었다. 1680년(숙종 6) 도쿠가와 막부의 4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가 사망한 뒤 동생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5대 장군이 되었다. 이에 새로운 장군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통신사 파견이 결정됨으로써 정사正使 호조참의 윤지완尹趾完, 부사副使 사복시정 이언강李彦綱, 종사관從事官 전홍문관교리 박경후朴慶後를 필두로 총 473명이 1682년(숙종 8) 5월 8일에 출발하여 8월 21일에 에도에 도착하여 국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9월 12일에 에도를 떠나 최종 11월 16일에 숙종에게 복명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신사 군관은 통신사 일행을 호위하며 일본의 정세를 살피는 임무를 맡았는데 간혹 대마도의 도주 또는 막부의 장군 앞에서 무예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군관은 주현에서 관직을 지낸 자 중에서 선발하였고, 선발된 군관은 사신 옆에서 머물게 하는 등 각별히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더욱이 군관으로 파견된 장한상은 일본에 도착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그의 사나운 기세와 영웅 같은 풍채가 왜인들을 두렵게 했다는 일화도 함께 전해진다.⁴⁷⁾

셋째, 장한상은 무신으로서 여러 차례 경연에 참여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경연은 국왕과 신하가 경사를 강론하며 정치의 운영 원리와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따라 경연에는 기본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홍문관의 관료, 그리고 경연관으로 임명되었던 정승, 판서, 승지, 사관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경연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특진관, 무신 등도 폭넓게 참여시켜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였다. 특히 숙종은 경연에 무신을 정기적으로 참여시켜 당시 방어체계의 재구축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변방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46) 유채연,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三使 선발과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191쪽.

47) 『紀年便故』 「張漢相」 壬戌, 以訓諫副正佐幕通信使, 往日本震懾倭人.

숙종대에는 총 1,472회 개최된 주장 가운데 836회(56.6%)에 856명(중복 수 제외하면 244명)의 무신이 참여하였고 그 속에는 장한상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⁸⁾

장한상은 1687년(숙종 13) 3월에 동지사 이민서李敏弼, 특진관 이규령李奎齡 등이 함께하는 주장에 당상관 무신으로서 처음 참여하였다.⁴⁹⁾ 이때는 시강관 김만길金萬吉이 『주역』을 진강한 다음, 도총부에서 관리하는 입직한 군사들의 「초기草記」에 병조 당상과 활쏘기 연습한 자들의 명단을 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4월과 9월에도 주장에 참여하여 『주역』을 진강하였다.⁵⁰⁾ 1688년(숙종 14) 4월에도 영부사 김수홍金壽興, 동지사 신완申琬 등과 함께 주장에 참여하였고⁵¹⁾ 1691년(숙종 17) 3월에도 동지사 권유權愈, 특진관 황징黃徵 등과 함께 주장에 참여하여 『대학연의』를 강론하였다.⁵²⁾

넷째, 장한상은 삼척첨사가 되어 울릉도를 수토하였다. 1693년(숙종 19) 발생한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 쟁계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1694년(숙종 20) 남구만은 숙종에게 울릉도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여철申汝哲과 남구만南九萬, 윤지선尹趾善 등에 의해 나이가 젊고 임기응변이 있는 장한상이 적임자로 추천되었다. 이에 따라 장한상은 삼척포진으로 부임한 뒤 150명의 인원을 데리고 울릉도에 도착하여 수토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리고 장한상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울릉도 수토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⁵³⁾

48) 이인복, 「숙종대 武臣의 경연 참여와 역할」, 『청계사학』 27, 청계사학회, 2024, 298쪽.

49) 『승정원일기』 321책 숙종 13년(1687) 3월 26일 갑진.

50) 『승정원일기』 321책 숙종 13년(1687) 4월 27일 갑술;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1687) 9월 24일 기해.

51) 『승정원일기』 328책 숙종 14년(1688) 4월 10일 임자.

52) 『승정원일기』 344책 숙종 17년(1691) 3월 21일 정미.

53) 『승정원일기』 360책, 숙종 20년(1694) 7월 13일 정해; 『승정원일기』 360책 숙종 20년(1694) 7월 17일 계미.

다섯째, 장한상은 경상좌병사로서 당시 풍기군의 주요 현안이었던 봉수대 이설에 도움을 주었다. 풍기 망전산望前山에 설치된 봉수대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지금의 위치로 바뀌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마을의 유풍이 침체되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등 마을에 큰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풍기군민들이 풍기향교를 중심으로 봉수대를 이설하자는 향론을 모아 군수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당시 풍기군수 홍경렴洪景濂은 이 같은 청원을 듣고 경상도관찰사 최석항에게 이설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최석항도 역시 병영에 보고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다음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정사신丁思愼, 그다음에 다시 부임한 손만웅孫萬雄 대에도 봉수대 이설을 시도하였으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부임한 풍기군수 이정李禎이 경상좌병사에게 봉수대의 이설 문제를 청원하였고 그 당시 경상좌병사였던 장한상은 1707년(숙종 33)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군정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병조에게 전보해주었고 이로써 해당 사안이 병조에서 논의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결국 풍기 군민이 원하던 대로 봉수대가 이설되었으므로 이를 장한상의 치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⁵⁴⁾

여섯째, 장한상은 어영별장으로서 북한산성의 수축을 감독하였다. 1710년(숙종 36) 요동과 심양 등에서 출현한 해구海寇로 인해 도성 수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당시 정권을 장악한 노론계의 주장에 의해 북한산성의 축조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국방력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숙종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비로소 산성의 축조가 시작되었다. 즉, 1711년(숙종 37) 2월부터 구체적 계획을 세워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축조가 이루어졌다.⁵⁵⁾

54) 『鄕校雜錄』 烽燧移設之願, 厥惟久矣. 願乃得力於兵相, 兵相卽張公漢相也.

55) 이현수,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 『청계사학』 8, 청계사학회, 1992, 178-180쪽.

장한상은 북한산성의 성역 과정에서 도청都廳이 되어 처음부터 이 공사를 감동하였다. 그런데 축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6월 도목정사에서 어영별장 장한상을 북병사로 이배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북한산성의 축조를 담당했던 장한상이 북병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후임을 물색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체성體城이 완공되었고 여장女牆도 10일 안에 완공될 것이므로 거의 끝나가는 공사를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숙종에게 공사가 마무리된 후 장한상이 이배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하였고 숙종의 재가를 받았다.⁵⁶⁾ 이에 따라 장한상은 북병사가 되고도 계속 북한산성의 성역을 감동하였다. 즉, 장한상은 1711년(숙종 37) 4월 2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 일에 종사한 후 9월 5일에 북병사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북한산성의 성역이 모두 끝나고 이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때 장한상도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⁵⁷⁾

일곱째, 장한상은 전라병사로서 재해로 인해 피해받은 백성을 진휼하였다. 숙종대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매년 진휼이 이루어졌다. 1713년(숙종 39)에도 전국적으로 흉년이 든 가운데 전라우도 연해 지역의 피해가 가장 막심하였기 때문에 홍석보를 감진어사로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진휼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⁵⁸⁾ 그런데 묘당에서는 장한상이 이미 한 차례 전라병사로 부임하여 지역의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전라병사로는 적임자라고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장한상은 1713년(숙종 39) 다시 전라병사로 부임하였다.⁵⁹⁾ 그리고 전라도의 재해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조정에서 진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였고 흉년으로 발생한 도적을 소탕하는 등 치안 유지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더욱이 이러한 장한상의 활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56) 『비변사등록』 62책, 숙종 37년(1711) 6월 29일.

57) 『비변사등록』 63책, 숙종 37년(1711) 11월 6일.

58) 원재연, 「조선후기 荒政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19쪽.

59) 「1713년 張漢相 諭書」

민심이 안정됨에 따라 백성들에 의해 장한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생사당 生祠堂과 동비銅碑가 건립되었다.⁶¹⁾

여덟째, 장한상은 경기수사 및 옥천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백성들이 겪은 기근의 실상을 자세히 보고하고 구휼 활동을 전개하였다. 1718년(숙종 44) 장한상이 경기수사로 부임하였을 때 당시 경기도의 기근 상황은 조정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의 기근이 그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 백성들이 모두 끼니를 이을 수 없음을 보고하고 강도미江都米 중에서 1천 섬을 특별히 용도 전환한 다음 굶주린 백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⁶²⁾ 또한 1721년(경종 1) 옥천군수로 부임하였을 때는 청주로부터 얻은 미태米太를 식리殖利하여 얻은 이익과 자신의 월급을 출연하여 염장鹽醬을 마련한 뒤 죽을 쑤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마을 전체가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조정에 보고되었다.⁶³⁾

요컨대 장한상은 내외 관직에 종사하며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중에서도 통신사 군관으로서 일본을 다녀온 것, 울릉도를 직접 수토한 것, 그리고 주요 각처의 외관직을 역임한 것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장한상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정리한 결과를 보면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업적을 남긴 것이 확인된다. 장한상은 1683년(숙종 9) 희천군수로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탁월히 수행하였고 1687년(숙종 13)·1688년(숙종 14), 1691년(숙종 17) 등 당상관 무신으로서 경연에 참여하였다. 1707년(숙종 33) 경상좌병사로서 당시 풍기군 백성들의 염원이었던 봉수대 이설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1711년(숙종 37) 어영별장으로서 북한산성의 축조를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1713년(숙

60) 『비변사등록』 숙종 39년(1713) 12월 21일.

61) 『昇平文獻錄』 「墓碣銘」 癸巳湖南大飢，盜賊竊發。廟堂入啓，以公會莅本閭，素得民心，再除爲兵馬使。公搜捕如神，盜賊悉平，賑濟盡心，軍民蘇息。爲之建生祠，立銅碑，以頌德。

62)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1718) 1월 20일 기사.

63) 『승정원일기』 534책 경종 1년(1721) 10월 10일 정묘.

중 39) 전라병사로서, 1718년(숙종 44) 경기수사로서, 1721년(경종 1) 옥천군수로서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 흉년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자세히 보고하여 구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른 군현에서 빌려온 곡식으로 재원을 만들고 자신의 월급을 출연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는 등 직접적인 구휼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한상은 약 40년간 관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전까지 알려진 특정 업적만 조명하기보다 장한상의 일생, 그리고 그의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총체적 입장에서 분석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장한상과 의성 순천장씨에 대한 기존 자료를 일목요연한 재정리해야 하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장한상은 비안현에서 출생한 무관으로 숙종대에 주로 활동한 무반직 관료이다. 장한상이 속해 있는 순천장씨는 시조 장천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말에 활동한 장보지, 장사검, 장헌이 그의 직접적인 선계가 된다. 장보지는 고려 말 흥건적의 침입을 격퇴한 공로로 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한양으로의 천도를 준비하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순천의 건달산으로 은거하였다. 장사검도 고려에서 벼슬하여 사재감소감까지 올랐으나 그 역시 조선 건국 후 의성현 원흥동으로 은거하였다. 이에 따라 그가 의성 순천장씨의 입향조가 된다. 그리고 장헌도 역시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스스로 농부라고 자처하며 임금에 불려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후 어릴 때부터 남다른 완력을 자랑했던 장헌의 손자 장일신이 무과에 급제한 뒤 진주목사, 부산첨사, 경주판관, 남도포만호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그의 손자 장문서는 지극한 효행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효자 정려가 세워지고 류성룡의 추천으로 보안도찰방에 오르기도 하였다. 장문서의 5대손이며 장한상의 부친 장시규도 역시 효행으로 유명하였고 무과에 급제하여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따라서 장한상은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충절,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효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직을 역임한 부친 장시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무관직 관료로서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한상의 일생에 대해서는 20대 초반 무과에 급제한 뒤부터의 기록만 확인되므로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러나 골격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특별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무관이 되기에 적합한 신체를 타고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신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일화를 토대로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과에 급제한 후에는 출세가 보장된 선전관으로서 관직을 시작하였으며 중앙에서는 도총도사, 중추경력, 훈련첨정, 훈련부정, 훈련정, 내금장, 호군, 부호군, 겸내승, 내금위장, 어영별장, 부사직, 부총관, 부사맹 등의 관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지방에서는 이주첨사, 경상좌병우후, 희천군수, 자산군수, 태안군수, 충주영장, 전라병사, 삼척첨사, 칠곡부사, 황해병사, 경상좌병사, 북병사, 경기수사 겸교동부사, 영변부사, 옥천군수, 회령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며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지방직에 임명되어 사은할 때 숙종과 면대하였다. 1683년(숙종 9) 장한상이 희천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숙종은 장한상에 대한 관직 이력을 묻고 관서 지방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 뒤 사신의 접대, 뇌물의 근절 등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1711년(숙종 37) 장한상이 북병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숙종은 변경의 수장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에 관해 설명한 뒤 변통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장계로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장한상에 대해서는 지방의 행정 및 사법권을 지휘하는 수령보다 군사권을 총괄하는 장수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비변사에서 1682년(숙종 8) 숙종에게 수령이나 장령에 적합한 후보를 추천할 때 장한상은 장령으로 추천되었으며, 1690년(숙종 16) 절도사나 수령에 적합한 후보를 추천할 때도 절도사로 추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장한상은 전라병사, 황해병사, 북병사에 두 번씩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장한상은 약 40년간 무관직 관료로 종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과 업적은 대략 8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 희천군수가 되어 변방에서 사신에 관한 접대 업무를 수행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줄였다. 둘째, 통신사 군관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의 수호를 담당하였다. 셋째, 당상관 무신으로서 여러 차례 경연에 참여하여 숙종 및 문관 관료들과 함께 경서를 읽고 정치 현안을 토론하였다. 넷째, 삼척첨사로 임명되어 직접 울릉도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하였다. 다섯째, 경상좌병사로 임명되어 당시 풍기 군민의 현안이었던 봉수대 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여섯째, 어영별장이 되어 북한산성의 축조 과정을 감독하였다. 일곱째, 전라병사로서 임명되어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은 백성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여 실효있는 구휼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여덟째, 경기수사 및 옥천군수로 임명되었을 때는 기근으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직접 구제 활동을 벌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한상의 업적에 대해서는 통신사 군관으로서의 활동, 울릉도를 수토한 활동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이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장한상에 관한 문헌 자료의 광범위한 조사수집,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특정 업적만 조명하기 보다는 장한상의 일생,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총체적 입장에서 그의 활동과 업적에 관한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의성 순천장씨의 고문헌〉, 『經國大典』, 『慶尙道邑誌』, 『高麗史』, 『關東誌』, 『紀年便故』, 『明宗實錄』, 『備邊司謄錄』, 『比安縣邑誌』, 『成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肅宗實錄』, 『承政院日記』, 『昇平文獻錄』, 『燕山君日記』, 『沃川邑誌』, 『通信使謄錄』, 『鄕校雜錄』, 『顯宗改修實錄』, 『戶口總數』, 『湖西邑誌』

배재홍, 「수토사 장한상의 官歷과 주요 행적」, 『이사부와 동해』 16, 이사부학회, 2020.

손승철, 「울릉도 수토와 삼척영장 장한상」, 『이사부와 동해』 5, 한국이사부학회, 2013.

송병기, 「조선후기의 울릉도 경영」, 『진단학보』 86, 진단학회, 1998.

송휘영, 「의성 비안고을과 장한상의 행적」, 『독도연구』 2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순천장씨, 『승평(순천장씨)문헌록』, 순천장씨보소, 1992.

유미림, 「“우산도=독도” 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_____,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_____,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 『동북아역사논총』 64, 동북아역사재단, 2019.

유재연,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三使 선발과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의성군지편찬위원회, 『의성군지』, 의성군, 1998.

의성문화원, 『의성지집록』, 의성군, 1994.

이원택, 「『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_____, 「순천장씨 鶴棲曹孫家の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 소개, 그리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再論」, 『영토해양연구』 1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9.

_____, 『의성 경덕사 장시규·장한상 자료 喬桐水使公輓祭錄·喬桐水使公輓辭·節度公兩世實錄·節度公兩世碑銘』, 동북아역사재단, 2022.

- 이인복, 「숙종대 武臣의 경연 참여와 역할」, 『청계사학』 27, 청계사학회, 2024.
- 이종호, 「화산삼걸의 성립과 의의」,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 이현수,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 『청계사학』 8, 청계사학회, 1992.

<Abstract>

Military Officer Jang, Hangsang's Life and Activit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o, Min-Jung

This study generally considered lineage, life, and activities of Jang, Hangsang, Special Army Officer of Samcheo who directly defended territory of Ulleungdo Island. Jang, Hangsang's ancestors returned to Euseong and went into retirement to keep fidelity to Goryeo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After that, the descendants entered military posts based on natural physical strength being influenced by values that considers filial piety as important. Jang, Hangsang passed a military examination and engaged himself in major official ranks for about 40 years. And he left achievements of envoy entertainment as a Heuicheon district head, activities in Japan as military officer of an official Korean ambassador, participation in royal lectures as a military official, defense of Ulleungdo Island as a Samcheo special army officer, movement of beacons as a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 in Gyeongsang, supervision of building Bukhansanseong Fortress as a general of Royal Division, relief of subjects as a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 in Jeolla, and relief of subjects as a provincial naval commander in Gyeonggi and Okcheon district head. Therefore, it overallly views Jang, Hangsang's life and achievements and should find meaning in his activities to defend Ulleungdo Island.

Keywords: Jang, Hangsang, Suncheon Jang Families, military officer, to defend Ulleungdo Island, relief

이 논문은 2024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장한상의 임술(1682) 통신사행 참여 연구*

송 휘 영**

〈목 차〉

1. 머리말
2. 조선통신사의 임술 사행의 개요와 그 의의
3. 임술 통신사행과 군관 장한상의 역할
4. 임술 통신사행과 삼척첨사 임명의 관련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운암(雲巖) 장한상(張漢相)은 경상도 비안현 외서면 비산리에서 무관인 장시규(張是奎)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21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무관으로서 중앙관직 및 지방관 등 전국의 요직을 두루 지냈다. 지금까지 그의 업적은 『울릉도사적』의 발굴로 인해 1694년 최초의 수도사로서 울릉도를 수도한 점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장한상이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임술사행 참여를 한 사실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덕사에 남겨진 초상화에서처럼 장한상은 무인으로서 기예와 용맹스러움이 출장하였고, 그러한 그의 소성(素性)과 무예(武藝)로 인하여 그를 임술사행(壬戌使行)의 일원으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2S1 A5C2A03 09035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 C2A03090355) 또한, 초고는 「장한상의 생애와 업적 재조명」(2024.10.29.)에서 발표한 것을 가필한 것임.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hysong@ynu.ac.kr

차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종3품의 품계인 군관으로 제2기선에 승선하여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지금까지 발굴된 사행기록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행적은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조선통신사 사행에서 일본인들과 대담할 때에 “일본인들을 벌벌 떨게 하였다”고 할 만큼 담력이 뛰어났고, 이러한 그의 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귀국 후 관직 승진에 연결되었다. 이러한 통신사행의 일원으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서 1694년 삼척첨사(영장)로 임명되었고 수도관으로 울릉도 수도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승평문헌록』에서, 일본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인들이 그의 지략과 용맹에 감복하여 “장한상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대국도 감히 모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희천군수 시절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전언”라는 식의 소문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장한상의 임술사행 참여 관련 문헌은 『天和信使奉行每日記(덴나신사봉행매일기)』, 『東槎錄(동사록)』, 『東槎日錄(동사일록)』, 『紀年便攷(기년편고)』 등 현재로서는 아주 제한적이다. 임술사행에서 보다 구체적인 행적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며, 임술사행 관련 기록이 향후 더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승평문헌록』 등 순천장씨 문중사료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장한상, 임술사행, 조선통신사, 군관, 수도관, 동사일록

1. 머리말

운암(雲巖) 장한상(張漢相)은 경상도 비안현 외서면 비산리(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1리 비산마을)에서 무관인 장시규(張是奎)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1676년 21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무관으로서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선전관(종5품) 발탁을 시작으로 훈련첨정, 훈련부정도총부 부총관, 부호군 등 중앙관직(무관), 경기수사, 삼척첨사, 전라병사, 경상좌수사 등의 지방관직(무관), 영변부사, 회령부사, 칠곡군수, 옥천군수 등의 지방관 등 전국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금까지 그의 업적은 『울릉도사적』의 발굴로 인해 1694년 최초의 수도관으로서 울릉도를 수도한 점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다.¹⁾

그러나 그의 관직경력이 말해주듯이 장한상의 업적은 ①관료로서의 업

적, ②울릉도 수토관으로서의 업적, ③조선통신사 임술사행(7차)의 일원(軍官)으로 참여, ④백두산 정계조사 및 북한산성 축조에 관여하여 기여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친 장시규와 함께 평안도 수군절제사를 제외한 전국의 무관 수장직을 두루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보면, 첫째, 전라병사로 부임해서는 전라도지역에 창궐한 도적을 척결하고 백성을 진휼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고, 경기수사, 옥천군수 등 지방관으로 재직 시에는 지역의 규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둘째, 울릉도쟁계가 발생하자 최초의 울릉도 수토관으로 파견되어 조선의 지계를 명확히 하였고, 설읍·설진의 여부를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것이 울릉도 수토기록인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다. 울릉도쟁계와 울릉도사적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고 독도 영유권 관련 연구에 초점이 다루어졌다. 셋째,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조선통신사 임술사행(壬戌使行)에 군관(軍官)²⁾으로 차정되어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통신사 일행은 호조참의 윤지원(尹趾完)을 정사로 하여 6척의 배로 473명이라는 대규모 사행단이였다. 이러한 통신사 경험은 후일 삼척첨사(영장)로 울릉도 수토를 하는 책임자로 선발하게 한 배경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넷째, 무관으로서 조선의 강역방비에 힘썼던 공적이다. 1710년 요동지역에 이양선이 출몰한다는 소식으로 북한산성 축조 주장이 대두되었고,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된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1711년 북한산성 축조를 시작하였다. 이때 장한상은 북한산성 축조에 도청(都廳)의 직함으로 참여하였다. 그리

1) 수토제도와 장한상에 관한 연구로는, ①한국문화원연합회 경북도지회(2008), 『독도지킴이 수토제도에 대한 재조명』 제1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학술대회 자료집, 경상북도, ②의성문화원(2018), 『우리 땅 독도지킴이 장한상』, 의성문화원, ③독도학회(2024), 『장한상의 생애와 업적 재조명』 2024년 의성조문국박물관 학술대회 자료집 등이 있다. ①, ②는 수토제도와 수토관 장한상의 업적을 중심으로, ③은 장한상의 가계 및 관력, 조선통신사 군관으로서의 참여, 북한산성 축조 및 백두산 정계조사에의 공헌, 조선의 수토제도와 일본의 순검사제도의 비교 등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2) 통신사 일원으로 발탁되기 직전 장한상은 훈련부정(訓練副正)으로 종3품의 품계였음.

고 1712년 청과의 백두산 지계(地界) 획정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장한상은 북병사로 임명되어 백두산 정계조사에 참여하였다.

본고에서는 주로 장한상의 임술사행 참여를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남아있는 임술사행 관련 기록에서 그에 관한 직접적 기술이나 행적은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한상이 활쓰기와 말타기 등 무예와 용맹스러움이 뛰어났으며, 특히 담력이 남달랐던 이유로 조선통신사 임술사행의 군관(軍官)으로 발탁된 듯하다. 또한 임술통신사행의 일원으로서의 경험이 왜인들이 자주 출몰하는 울릉도 수토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³⁾

2. 조선통신사의 임술 사행의 개요와 그 의의

2.1. 조선후기 조선통신사행의 개요

조선후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단인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⁴⁾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⁵⁾.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은 1607년의 시점에서 일본의 정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⁶⁾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임진왜란의 상흔과 일본에

3) 지금까지 임술사행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임술사행에서 군관 및 장한상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는 전혀 없다.

4) 제1차~제3차까지는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제4차~제12차까지는 ‘통신사(通信使)’라고 불렸다. 이 12차에 걸친 사절단을 보통 편의적으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정식명칭은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12간지를 앞에 붙여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 1764)’, 일본에서는 연호를 붙여 ‘교호신사(享保信使)’라는 식으로 불렀음.

5)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전기에도 6차례나 있었는데, 세종대에 4차례, 선조대에 2차례가 있었음.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고, 정권을 잡은 이에야스가 자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임진왜란과는 상관이 없다며 국교 재개를 수차례 요구해왔던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정을 정탐하고 이들과 우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며, 일본으로서는 도쿠가와 정권의 정통성을 일본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즉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통신사행이 200여 년 간 이어졌던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이 침략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였고, 이런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이 언제쯤 터질지는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정세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탐할 필요가 있었고, 전쟁을 걸어오지 않도록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통신사의 파견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⁷⁾

〈표1〉조선 후기 통신사행의 내용

회차	연도	정사	부사	종사관	제술관	인원	목적 및 특징
제1차	1607년 (선조 40년)	여우길	경섬	정호관	-	467	국교 회복
제2차	1617년 (광해군 9년)	오윤겸	경섬	정호관	-	428	오사카 전투 직후 회답사 파견
제3차	1624년 (인조 2년)	정립	강홍중	이계영	-	300	도쿠가와 이에미쓰(3) 취임

6) 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집권(1603)으로부터 시작되어, 제15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 제위 1867-68)까지 266년간이나 이어졌다. 임술사행은 명목상 제5대 쇼군 쓰나요시(綱吉, 제위 1680-1709)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7) 통신사행의 목적을 문화교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외교사절단이었고 문화교류는 부차적인 수단이었다.

제4차	1636년 (인조 14년)	임광	김세렴	황호	권칙	475	병자호란 중에 파견
제5차	1643년 (인조 21년)	윤순지	조경	신유	박안기	462	도쿠가와 이에쓰나 탄생
제6차	1655년 (효종 6년)	조형	유창	남용익	이명빈	488	도쿠가와 이에쓰나(4) 취임
제7차	1682년 (숙종 8년)	윤지완	이언강	박경후	성완	473	도쿠가와 쓰나요시(5) 취임
제8차	1711년 (숙종 37년)	조태억	임수간	이방언	이현	500	도쿠가와 이에노부(6) 취임
제9차	1719년 (숙종 45년)	홍치중	황선	이명언	신유한	479	도쿠가와 요시무네(7) 취임
제10차	1748년 (영조 24년)	홍계희	남태기	조명채	박경행	475	도쿠가와 이에시게(9) 취임
제11차	1763년 (영조 39년)	조엄	이인배	김상익	남옥	472	도쿠가와 이에하루(10) 취임
제12차	1811년 (순조 11년)	김이교	이면구	-	이현상	336	도쿠가와 이에나리(11) 취임
평균	17.0(204)					446.3	

통신사는 대개 한양에서 동래까지는 육로로 부산항에서부터 교토의 요도우라(淀浦)까지는 배편으로 이동하였고, 그 거리는 왕복 4,000 ~5,000km의 대장정이었다. 통신사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행하는 시기의 기상조건, 바다의 일기에 따라 4개월~1년 정도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포로의 반환 등 전후처리, 태평성대가 유지됨을 축하한다든다 하는 명목으로 보내지다가, 제6

차 1655년(제6차 통신사행)부터 새로운 쇼군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조일국교가 수립된 다음 에도막부로서는 새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 국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막부의 요청⁸⁾에 의해 취임을 축하하는 형식적인 임무로 파견되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현안에 관련된 정치외교적입 협상을 하였다.

제3차 사행까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는 사절을 파견할 때는 정사(正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 이하 420여명이 사절단으로 참여했으며, 제4차 사행인 ‘통신사(通信使)’부터는 제술관(製述官)⁹⁾ 등 평균 450여명의 사절단으로 꾸려졌다(〈표1〉을 참조). 160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는 명·청 교체시기로 병자호란, 명나라 멸망 등을 거쳐 후반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대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일본 에도막부의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¹⁰⁾의 취임을 계기로 일본이 요청해온 제7차 통신사행부터는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중원에서는 청의 지배 체제가 안정적으로 확립되었다. 일본에서는 쓰나요시(綱吉) 집권시기부터 문치적(文治的) 지배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체재하는 내내 호화로운 접대를 받았는데, “□□에서 머물렀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상당히 사치스런 대우를 받았다.¹¹⁾ 당시 일본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들이

8) 일본으로서는 도쿠가와 막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력임을 선전하는 정치적인 효과와 더불어, 막부의 권력이 중국에도 알려지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교섭에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또한 일본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선전하여, 일본이 마치 조선을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내부단속과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하는 효과를 노렸다.

9) 외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동행하는 수행원의 하나로, 보통 문장에 뛰어난 사람으로 전례문(典禮文)을 전담하여 짓게 하였음. 또 일본의 문사들과 시문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정식 사행직으로 성립되었다. 그 명칭 변화를 보면, 1차 學官, 4차 吏文學官, 5-6차 讀祝官이라 하다가 7차 이후 製述官이라는 사행직으로 정착하였다. 장순순(1990), 「朝鮮後期 通信使行의 製述官에 대한 一考察」, 『全北史學』 제13집, 1990, pp.37-38.

10) 에도막부 제5대 쇼군(將君)으로 재위기간은 1680-1709년임.

지나갈 때마다 유행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파장이 대단한 것이었다. 통신사가 지나갈 때면 가두의 일본 사람들이 조선통신사의 서예작품을 하나 얻으려고 성황을 이루었고, 통신사의 기록을 보면 이 부탁을 들어주느라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통신사의 입장에서 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이 들 정도였다.¹²⁾ 당시 통신사의 배는 대선, 중선, 소선 각 2척씩 6척으로 일본을 건너갔다. 그 중 3척에는 정사[수석(首席)인 사신(使臣)], 부사[정사(正使)를 보좌하는 사신(使臣)], 종사관[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며, 견문록 작성과 사행원들을 규찰(糾察)하는 사신(使臣)]이 각각 수행원을 데리고 탑승하였고, 다른 3척에는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하였다. 정사, 부사, 종사관이 탑승한 배 3척은 기선(騎船),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한 3척은 복선(卜船)이라고 불렀다. 수행인원은 대략 450명 정도였다. 일본에서는 한번 맞이하는데 1,400여척의 배와 1만 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17세기에는 쇼군이 조선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100만 냥이나 되었는데 당시 에도 막부의 1년 수입이 76~77만 냥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통신사가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번(藩)에서는 접대를 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 번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¹³⁾

2.2. 임술년(1382) 조선통신사행의 규모

임술사행은 조선후기 통신사행 중 제7차에 해당하는 사행이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제4대 쇼군(將軍)인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¹⁴⁾의 사망으로 그의 동생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제5대 쇼군직을 계승하자, 조

11) 예를 들어, 『東槎日錄』 임술년 7월 11일, 7월 21일, 8월 2일.

12) 『東槎日錄』 임술년 8월 21일.

13) 이 문제가 현실화하는 것이 1711년 제8차 통신사행으로 통신사를 맞이하는 비용이 간략화 되기도 하였음.

14)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재위기간: 1651~1680)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자 양자인 쓰나요시(綱吉)가 1680년 제5대 쇼군(1680~1709)으로 즉위하였다.

선이 숙종 8년(1682) 새 관백의 습직을 축하하고자 파견한 사행이다. 정사¹⁵⁾에 호조참의(정3품) 윤지완(尹趾完), 부사에 사복시정(司僕寺正, 정3품 당하관) 이언강(李彦綱), 종사관에 홍문관 전교리 박경후(朴慶後)를 삼사로 한 473명이었다(<표2>참조). 사행기간은 1682년 5월 8일 한양을 출발하여, 6월 18일 부산에서 출발하였고, 에도에 도착한 것은 8월 21일이었다. 그리고 8월 27일에 국서봉정을 행하고, 9월 12일에는 에도를 떠나 부산을 거쳐 11월 16일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약 7개월간이었다.

임술사행의 인원은 정사·부사·종사관의 삼사(三使) 이외에 그 수행원으로서 삼사 각인 앞으로 사신의 통역과 사행의 제반 잡무를 맡은 당상 역관, 일본에서 그들의 이른바 서승(書僧)들과의 창화시(唱和詩)에 응하는 제술관, 삼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제군관(子弟軍官) 및 군관, 일반 통역을 맡은 상통사(上通事), 그리고 의원,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별파진(別破陣 화약(火藥)을 다루는 병사), 마상재(馬上才), 악공(樂工), 이마(理馬), 반당(伴尙), 선장(船將) 및 사령, 격군, 사공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정사단, 부사단, 종사관단의 3행(三行)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는 수군통제영과 경상좌수영에서 각기 배를 제공하였는데, 이 배를 기선(騎船: 인원(人員)이 타는 배)·복선(卜船: 짐 싣는 배)의 3척씩 합계 6척으로 선단을 편성하되, 제1선은 국서를 받든 정사와 그 수행인이 타고, 제2선은 부사단, 제3선은 종사관단이 타도록 하였다. 이번 임술 사행 인원을 정사단·부사단·종사관단으로 나누어 그 명단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임술 사행의 인원은 원액(原額)이 총 473인¹⁶⁾이라 되어 있다.

15) 정사(正使)에는 통상 예조참의(정3품)에 준하는 품계의 사람이 차정되었고, 일본에서는 총리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음.

16) 표에서 보듯, 원액(473)과 사행인원(468)에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사행인원을 실제 계산하면 468인으로 5인의 차이가 있다.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이 누락된 듯하다. 위의 사행 인원 이외에 사행의 호위임무를 지니고 일본에서 파견되어 온 호행차왜(護行差倭) 정관인 평진행(平眞幸)과 부관 평성창(平成昌), 재판왜(裁判倭) 평성차(平成次) 등이 동행하였다. 또한, 대규모 사행단의 이동과정에서 인원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동사록』과 『동사일록』을 보면 갈 때 조선

〈표2〉 임술(1682) 통신사사행(通信使行)의 인원

	제1선(第一船)	제2선(第二船)	제3선(第三船)
정사	호조 참의 윤지완(尹趾完)		
부사		사복시 정 이언강(李彦綱)	
종사관			전 교리 박경후(朴慶後)
자제	전 만호 백흥령(白興齡)·전	부사과 이유린(李有麟)·전	전 판관 정태석(鄭泰碩)
군관	관관 이엽(李曄)	첨정 홍세태(洪世泰)	
군관	절충 차의린(車義麟)·전 경 력 신이장(申履壯)·전 군수 원덕휘(元德徽)·전 초관 이 만상(李萬相)·수문장 강진 무(姜晉武)	전 부정 윤취오(尹就五)·전 부정 장한상(張漢相) ·선전 관 양익명(梁益命)·호군 김 효상(金孝尙)·호군 조정원 (趙廷元)	전 부사 윤취상(尹就尙)·전 첨정 김종기(金重器)
수역	가선 박재흥(朴再興)	절충 변승업(卞承業)	절충 홍우재(洪禹載)
상통사	직장 정문수(鄭文秀)	주부 안신휘(安愼徽)·전 판 관 김관(金琯)·전 봉사 박 중렬(朴重烈)	전 정 유이관(劉以寬)·전 정 오윤문(吳允文)·통훈(通 訓) 이석린(李碩麟)
제술관	진사 성완(成琬)		
양의	전 정 정두준(鄭斗俊)	(의원) 전 주부 이수번(李 秀蕃)	(의원) 전 판관 주백(周伯)
한학	전 정 김지남(金指南)	(서기) 부사과 임재(林梓)	(서기) 진사 이담령(李聃齡)
가정 (加定)	사맹 김도남(金圖南)		
사자관	참봉 이삼석(李三錫)	상호군 이화립(李華立)	(화원)전 교수 함제건(咸悌健)
별과진	이시형(李時馨)	한준일(韓俊一)	
마상재	오순백(吳順白)		형시정(邢時挺)
전악	윤만석(尹萬碩)	김몽술(金夢述)	
이마	박계한(朴戒漢)		
반당	김태익(金泰益)	강선립(姜善立)	홍여량(洪汝亮)
선장	황생(黃笙)	김용기(金龍起)	김중일(金重鎰)
복선장	김여경(金汝慶)	황진중(黃震重)	장지원(張之愿)
예단직 (禮單直)	여신립(呂信立)	(청직)조귀동(趙貴同) (반전직)여자신(余自信)	(청직)박성익(朴成益) (반전직)장후량(張後良)
도훈도	김기남(金起南)	남석로(南碩老)	
소동	김취언(金就彦)·최정필(崔 鼎弼)·장성일(張成一)·이지	현천필(玄天弼)·장외봉(張 巍峯)·배봉장(裴鳳章)·장익	김자중(金自重)·최영숙(崔 泳淑)·장계량(張繼良)·김취

국내 여정에서 사망자가 1명, 돌아오는 여정에서 일본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하고 있음.

	화(李之華)	(張益)	적(金就積)
수역 소동	김성건(金成建)	최차웅(崔次雄)	한국안(韓國安)
술관 소동	김이경(金二鏡)		
사노	애금(愛金) 맞(끝)봉(恭奉)	영립(永立) 천업(天業)	수생(水生) 시건(時建)
원역노	17인	16인	12인
소통사	3인	4인	3인
사령	4인	4인	4인
취수	6인	6인	6인
포수	2인	2인	2인
기수	1인	1인	1인
도척 (刀尺)	3인	2인	2인
수역 사령	2인	2인	2인
상선 사공	4인	4인	4인
격군	60인	59인	50인
복선 사공	4인	4인	4인
격군	30인	30인	22인
합 계	168인	164인	136인 (합 468인)
호행 차왜 (護行差 倭)	정관 평진행(平眞幸), 부관 평성창(平成昌), 재판왜(裁判倭) 평성차(平成次), 도선 주(都船主) 등 5인(?)		
총인원	473인		

자료: 『동사록(東槎錄)』, 『동사일록(東槎日錄)』을 바탕으로 작성.

2.3. 임술년(1682) 조선통신사행의 여정과 의의

조선시대 일본으로의 사절단 파견은 그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본 막부 쇼군이 있는 에도(江戸)를 방문하는 대규모 사행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행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마도와 잇키(壹岐)까지만 다녀오는 근거리 사행, 큐슈(九州) 지방까

지만 다녀오는 중거리 사행, 그리고 에도까지 가는 장거리 사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사행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소요 기간도 크게 달랐다. 대마도까지 가는 근거리 사행의 경우, 왕복에 최소 20일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었다. 큐슈 지방을 방문하는 중거리 사행은 왕복 최소 8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걸렸다. 가장 먼 거리인 에도까지 가는 장거리 사행은 보통 왕복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시일이 걸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술사행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인다. 이 사행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을 뜻하는 수호(修好)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기에 일본의 정치 중심지인 에도까지 방문하는 장거리 사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술사행은 기존의 에도 방문 사행들과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을 출발하여 에도를 방문하고 다시 귀국하기까지 걸린 전체 기간이 7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이었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에도 방문 사행 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임무 수행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필요성, 혹은 사행단의 특별한 노력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⁸⁾

〈표3〉 사행 왕복의 개략적 일정

날짜	여정: 가는 길(入去時)	비고
1682년 5월 8일	사조(辭朝)	육로
5월 26일	부산 도착, 22일간 머무름.	
6월 18일	배를 타고 부산 출발, 도해(渡海)	해로
6월 24일	대마도 도착, 14일간 머무름	

17) 큐슈 지방을 다녀오는 사행은 주로 조선 전기에 있었음. 조선에서 1596년까지 19회에 걸쳐 사찰단을 파견하였는데, 처음에는 ‘報聘使’라고 했으나, 1428년부터 ‘通信使’라 했다. 조선전기에는 교토(京都)가 종점이었으나, 후기에는 1617년과 18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에도(江戸)까지 갔다. 손승철(2002), 「조선시대 통신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제16집, pp.42- 47.을 참조.

18) 이하의 내용은, 허선도(1974), 「동사록 해제」를 참고하였음.

7월 8일	대마도 출발	
7월 26일	오사카(大阪)에 도착, 왜선(倭船)으로 갈아탐. 5일간 머무름	수로
8월 3일	왜경(교토(京都))에 이르러 3일간 머무름.	육로
8월 21일	에도(江戸)에 도착, 20일간 머무름.	
날짜	여정: 오는 길(回程時)	
9월 12일	에도를 떠나 회정(回程)의 길에 오름.	육로
9월 26일	왜경(교토)에 도착, 3일간 머무름.	
10월 2일	오사카성(大阪城)에 도착, 4일간 머무름.	수로
10월 6일	우리나라 배로 갈아탐.	해로
10월 18일	대마도로 귀환, 9일간 머무름.	
10월 27일	대마도를 떠나 한국 길에 오름.	
10월 30일	부산에 환박(還泊).	육로
11월 16일	복명.	

임술 사행의 여정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출발하여 에도까지 가는 데는 약 3달 반이 소요되었으나, 귀로에는 2달 반 정도로 단축되어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는 길에는 각 참(站)에서 왜인의 접대를 받았지만, 돌아 오는 길에는 왜인들의 불평을 살 정도로 일정을 서둘러 참에 들르지 않고 직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박한 귀로 중에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한 번은 아야시마(藍島)에서 대마도¹⁹⁾로 오는 사이에 강풍을 만나 정사가 탄 배가 사행 일행과 떨어져 하루 종일 행방불명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어서 임술사행의 구체적인 노정을 살펴보자. 우선 갈 때[入去時] 노정은 다음과 같다.

19) 대마도(對馬島)는 일본 원음 ‘쓰시마’가 아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대마도’로 하였다.

1) 갈 때[入去時]의 노정

한성(漢城)→양재역(良才驛)→양지(陽智)→죽산(竹山)→무극(無極)→송선(崇善)→충원(忠原)²⁰⁾→안보역(安保驛)→조령(鳥嶺)→문경(聞慶)→용궁(龍宮)→예천(醴泉)→안동(安東)→의성(義城)→의흥(義興)→신녕(新寧)→영천(永川)→경주(慶州)→울산(蔚山)→동래(東萊)→부산(釜山).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9일간(5월 8일~26일) 1,045리(우리나라 이수)를 소요하였다. 부산에서는 배에 승선하여 출발하였다.

부산(釜山)→사스우라(佐須浦)→오오우라(太浦)→대마도(對馬島)후추(府中)→잇키(壹岐)→아야시마(藍島)→아카마세키(赤間關, 시모노세키(下關))→무카이지마(向島)→가미노세키(上關)→츠와(津和)→가마카리(鎌刈)→이나우라(稻浦)→무구치지마(六口島)→우시마도(牛窓)→무로즈(室津)→효고(兵庫)→오사카 하구(大坂河口, 왜선(倭船)으로 갈아 탄)→오사카성(大阪城)→요도우라(淀浦, 여기서부터 육로(陸路))→교토(京都=倭京)→모리야마(森山)→사와(佐和)→오가키(大垣)→나고야(名古屋)→오카자키(岡崎)→요시다(吉田)→하마마츠(濱松)→가케가와(懸川)→후지에(藤枝)→에시리(江尻)→미시마(三島)→오다하라(小田原)→후지사와(藤澤)→간토가와(神東川)→에도(江戸).

일본에서는 해로로 27일간 3,245리, 육로로 20일간 1,245리를 이동하여 에도에 도착한다. 전체 여정은 해로와 육로를 합쳐 총 66일, 5,535리에 달한다.

20) 충원(忠原)은 충주를 가리키는데 중원(中原)의 오기인 듯하다. 『東槎錄』 임술년 5월 11일, 『東槎日錄』에는 ‘충주(忠州)’로 되어 있다.(임술년 5월 11일)



〈그림1〉 입술 조선통신사행의 노정(朝鮮境內)



〈그림2〉 입술 조선통신사행의 노정(日本境內)

통신사 입술사행의 여정을 보면 입거시(일본으로 가는 길)에 한양을 출발하여 육로로 19일을 걸려 부산에 도착한다. 『동사록』 및 『동사일록』의 기록을 보면 의성현(義城縣)에서 이들 가량을 머물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임술년(1682) 5월 17일(갑자): 맑음. 새벽에 떠나서 **일직참(日直站)**에서 **아침밥을 먹고 의성에 도착하여 잤다.** 이날 70리를 갔다.²¹⁾
 임술년(1682) 5월 18일(을축): 맑음. **아침밥을 먹고 떠나서 청로참(靑路站)에서 점심을 먹고 이날도 의성에서 잤다.** 또 먼저 참을 정하였다. 이날 50리를 갔다.²²⁾
 임술년(1682) 5월 19일(병인): 맑음. 아침밥을 먹고 떠나서 신녕(新寧)에 도착하여 잤다. 이날 40리를 갔다.²³⁾

임술년(1682) 5월 17일: 일직(日直)에서 점심 먹었는데 일직에는 안동부의 창고가 있다. 영해(寧海)·예안(禮安)·안동 등의 고을에서 지대했다. 안동부에서 종행인을 제공했다. **의성현에 이르러서 유숙했는데 인동현과 본현에서 지대했다. 본현에서 종행인을 제공했다.** 경신년(1680, 숙종 6) 접위시(接慰時)의 영리(營吏)였던 인동(仁同) 유시웅(劉時雄)이 와서 문안하였다.²⁴⁾

임술년(1682) 5월 18일: **청로역(靑路驛)에서 점심 먹었는데** 영덕·지례(知禮)·군위 등의 고을에서 지대했다. 군위에서 종행인을 제공했다. 낮에 의흥(義興)에 이르러 유숙했다. **청송·비안(比安)·본현 등 고을에서 지대했는데, 비안에서 종행인을 제공했다.** 음식이 매우 정결했고 모든 일에 공손했다. 영덕의 사람편에 정 판서(鄭判書) 앞으로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필묵과 약물(藥物)을 드렸다. 정 판서는 즉 정익(鄭楫)으로, 귀양살이 하고 있었다.²⁵⁾

『동사일록』에서는 의성현과 청로역(靑路站)에서 이틀 유숙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로역에서는 점심을 먹고 의흥까지 가서 거기서 유숙하는 것으로 돼있다. 아마도 『동사일록』을 기록한 김지남이 의흥현을 의성현으로 착각한 듯하다. 의성현에서 유숙하는 동안은 인동현과 의성현에서 통신

21) 金指南, 『東槎日錄』 임술년 5월 17일.

22) 金指南, 『東槎日錄』 임술년 5월 18일.

23) 金指南, 『東槎日錄』 임술년 5월 19일.

24) 洪禹載, 『東槎錄』 임술년 5월 17일.

25) 洪禹載, 『東槎錄』 임술년 5월 18일.

사 일행을 접대(지대)하고 중행인을 제공하였다. 의성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여 도동의 청로참(靑路站)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점심의 접대는 영덕, 지례, 군위 등의 고을에서 맡았다. 그리고 의성에서 의흥까지 50리길을 더 걸어서 의흥에서 유숙하는데, 여기서는 청송, 비안(比安), 의흥 등의 현에서 지대(支待)하였고, 비안에서 중행인(從行人)을 제공하고 있다. 장한상의 고향은 비안현(比安縣)이다. 비안현의 현령 등은 이 고장 출신으로 중앙관직에 있으면서 통신사행의 일원으로 참여한 장한상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올 때[回程時]의 노정

에도에서 출발하여 대마도까지는 갈 때와 같은 길을 따랐으나, 귀로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아야시마(藍島)에 들르지 않고 직접 대마도로 향했다는 것이다(<그림2>).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정사선(正使船)이 일시적으로 행방불명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당시 해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산에 무사히 도착한 후, 사행단은 상경 길에 올랐다. 이때의 노정은 가는 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釜山)에서 출발하여 동래(東萊)→양산(梁山)→밀양(密陽)→유천(楡川)²⁶⁾→청도(淸道)→대구(大邱)→송림사(松林寺)→인동(仁同)→오리원(五里院)²⁷⁾→상주(尙州)→함창(咸昌)→문경(聞慶)으로, 문경 이후의 여정은 내려올 때와 동일한 경로를 따랐다(<그림1>).

이러한 상세한 노정은 당시 조선의 주요 도시와 지역을 잇는 교통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임술 사행의 전체 여정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그 규모와 범위가 실로 방대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거리를

26) 밀양시 상동면과 청도군 청도읍 사이에 있는 유천마을(청도읍 유흥리).

27) 오리원(五里院)은 현재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산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죽현(竹峴) 밑에 위치한 곳임. 죽현원(竹峴院)이라고도 했음.

살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우리나라의 옛 거리 단위인 이수로 1,045리에 달했다. 여기에 부산에서 에도까지의 거리 4,490리를 더하면, 편도만으로도 5,535리라는 엄청난 거리가 된다. 이 중 해로가 3,245리, 육로가 1,245리를 차지했다.

왕복 거리를 계산하면 무려 1만 1천여 리를 넘어서는데, 이는 현대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400km를 웃도는 거리다. 물론 당시의 이수 측정이 현대의 정밀한 측정 방식과 비교할 때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당시 조선의 기준으로 볼 때 실로 장대한 여정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당시의 교통 수단과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원거리 여행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대규모 외교 사절단의 파견은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방증하는 동시에, 당시 조선의 외교적 역량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임술사행에 대한 일본 측의 예우는 앞선 시기의 사행에 대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우선 사신을 맞이함에 있어 그들이 취하는 예우는 지극하여 통신사행이 서울을 떠나면 미리 부산에 사신의 호행을 위한 차왜(差倭)가 파견되어 부산 출발에서부터 대마도까지의 뱃길을 안내했으며, 또 사행의 잡무 주선을 위해 재판왜(裁判倭)가 별도로 차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부터 에도까지의 왕복에는 대마도주가 두 명의 장로(長老)²⁸⁾와 함께 사신을 수행하여 그 호행의 총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노정에 있는 연로의 각 참(站)에서는 각 번(藩)의 번주(藩主=太守, 다이묘[大名])가 지대관(支待官)이 되어 사신에 대한 식사제공 및 하정(下程)²⁹⁾을 드린다. 또 각 주태수의 책임 하에 사행이 가는 길은 흠을 깔아 땅을 평평히 하고 물을 뿌려

28) 이정암(以庭菴, 이테이안)의 주지(住持)와 에도(江戸)에서 파견된 승려들로 구성. 당시 이정암은 교토의 오산(五山) 사찰의 학식이 높은 승려를 윤번제(輪番制)로 파견하여 외교문서인 서계(書契) 작성의 업무를 보았음.

29) 특산물 등을 바치는 공물(供物)의 일종.

먼지가 나지 않게 하며 곳곳에 측간을 설치하고 수건을 걸어두었으며 등불을 길 옆에 두어 사행의 밤길을 밝히게 하는가 하면, 다이쇼가와(大正川)³⁰⁾ 같은 곳은 수백 명의 월천군(越川軍)을 좌우로 세워 상하로 흐르는 물길을 막게 하여 사행을 무사히 건너게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의를 다하였다. 에도에서의 사신 예우는 집정(執政) 의정(議政)에 해당)과 같게 하여 사신 대우의 격(格)을 높이 하였고, 집정(執政) 등의 가로(家老)들이 직접 사신 접대를 주선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 사신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하여 환대했다.

사신에 대한 접대를 살펴보면, 식사 제공에 있어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건공(乾供)으로, 이는 일본 측에서 식재료와 양식을 제공하면 사행이 직접 조리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사신들이 자국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선호되었다. 둘째는 숙공(熟供)으로, 일본 측에서 완성된 식단을 마련하여 사신을 접대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주로 왜인의 참(站)에 들어갈 때 제공되었으며, 대개 진무(振舞)라 불리는 성대한 연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진무는 특히 대마도와 에도에서 사행을 맞이할 때 성대하게 베풀어졌는데, 그 음식상의 화려함은 실로 눈부실 정도였다. 각종 해산물과 육류, 과일 등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올려졌으며, 일본의 전통 요리법으로 정성스레 조리된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사행은 대체로 이러한 호화로운 접대를 정중히 사양하곤 했다. 심지어 숙공조차 받지 않고 건공만을 받아 행로를 서둘렀는데, 이는 사신들이 공식적인 임무에 더욱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행의 태도에 일본 측은 종종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³¹⁾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접대를 거절당한 것이니, 이는 곧 체면을 구기는 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후한 대접을 아

30) 후지예(藤枝)와 가케가와(懸川) 사이에 있는 하천으로 물살이 무척 센 곳으로 알려져 있음.

31) 洪禹載, 『東槎錄』 임술년 9월 12일.

끼지 않았다. 각 참에서 바치는 하정(下程)은 그 수량이 너무나 많아 사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정에는 지역 특산물, 비단, 도자기, 말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사행의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조선 사행에 대한 일본의 대우와 접대는 지극히 호화로웠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막대했다. 사행을 위해 동원되는 인원만 해도 23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여기에는 안내원, 경호원, 요리사, 마부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짐을 운반하기 위한 태마(駄馬)도 4만여 필이나 동원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동원에 따른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한 번의 사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1백만 냥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일본의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접대비용과 인력 동원의 문제점을 인식한 일본은 결국 숙종 37년(1711)의 신묘 사행 때에 이르러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일본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라이 기미요시(新井君美)가 제안한 사행대우축소안(使行待遇縮小案)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사행에 대한 접대의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례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외교 관계의 본질은 유지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임술사행은 본연의 임무인 막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의 습직 축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서를 전달하고 일본의 답서를 받아 무사히 귀국함으로써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당상 역관들은 대마도주 및 그 가로(家老)들과 부산왜관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였다.³²⁾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듬해인 계해년(1683)에는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가 왜관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

32) 임술사행은 초량왜관 내 대마도인을 통제하기 위해 癸亥約條와 約條制札의 내용 결정 뿐 만 아니라, 조선으로 왕래하는 차왜(差倭)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壬戌約條’를 강정함으로써 양국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민정(2021),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 제73집, pp.3-42.을 참조.

3. 임술 통신사행과 군관 장한상의 역할

임술사행의 사행록으로는 당상역관 홍우재(洪禹載)의 『동사록(東槎錄)』과 압물통사(押物通事) 김지남(金指南)이 기록한 『동사일록(東槎日錄)』, 일본의 역관(通事)이 기록한 『덴나신사봉행매일기(天和信使奉行毎日記)』 등이 있다. 이 3가지 사행록에서 장한상의 행적이나 활동은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에서 그가 훈련부정과 일본 통신사행의 군관(軍官)으로 차정되고, 돌아와서 희천군수(熙川郡守)로 임명되고 있음은 나타나고 있다.

- ①병조판서 이유(李濡)는 “경상우병우후(慶尙右兵虞候)에 새롭게 제수한 장한상(張漢相)은 일본통신사 군관(軍官)으로 차출한 일 때문에 부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를 체차(遞差)하여 군직(軍職)에 붙일 것을 청합니다.”하니 상께서 윤허하셨다.³³⁾ (『承政院日記』 숙종 7년(1681) 12월 16일)
- ②장한상에게 훈련부정(訓練副正)의 관직을 제수한다.³⁴⁾ (『承政院日記』 숙종 8년(1682) 4월 1일)
- ③군관(軍官): 전부정(前副正) 윤취오(尹就五), 전부정(前副正) 장한상(張漢相), 첨지(僉知) 김중기(金重器). (『通信使謄錄』 「壬戌(1682)五月初四日」)
- ④장한상에게 희천군수(熙川郡守)의 관직을 제수한다.³⁵⁾ (『承政院日記』 숙종 9년(1683) 6월 24일)

경상우병우후(慶尙右兵虞候)에 제수되지만, 통신사의 군관으로 차정

33) 「李濡, 以兵曹言啓曰, 新除授慶尙右兵虞候張漢相, 以日本通信使軍官啓下, 似難赴任, 今姑遞付軍職, 其代, 後日政差出, 何如? 傳曰, 允。」

34) 「兵批, 俞得一付副司正, 金萬重付副護軍, 李后定付司直, 權震錫付副司正, 武兼宣傳官柳尙輅, 朴燾爲之, 張漢相爲訓練副正, 尹一商爲宣傳官, 安東營將崔楬, 閔增爲訓練判官, 尹以濟爲同知。」

35) 「李集成爲安陰縣監, 崔好鑑爲鐵山府使, 鄭時凝爲龍川府使, 張漢相〈爲〉熙川郡守, 李奎徵爲海州牧使」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임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체차(교체)하였다. 그리고 다시 1682년(임술년) 4월 1일에 훈련부정(訓練副正, 종3품)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통신사 군관으로 정확히 언제 차정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의 기록과 더불어 임술사행의 사행록 『동사일록(東槎日錄)』에서 보면 군관에 ‘전부정 장한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임술 통신사행의 일행으로 참여한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통신사 군관은 ‘군관(軍官)’ 및 ‘자제군관(子弟軍官)³⁶⁾’ 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사가 탑승한 제1선에 7명, 부사가 탑승한 제2선에 7명, 종사관이 탄 제3선에 3명으로 나타나 있다. 부정(副正)은 종3품의 품계이지만 같은 품계인 전부정 윤취오(尹就五)가 당시 27살의 장한상보다 선례군관이었으므로 제2기선의 두 번째 서열의 군관이었다.

〈표4〉 임술사행 군관의 내역

구분	제1선(정사 윤지완)		제2선(부사 이언강)		제3선(종사관 박경후)	
	인원	인수	인원	인수	인원	인수
군관	절충 차의린(車義麟) 전 경력 신이장(申履壯) 전 군수 원덕휘(元德徽) 전 초관 이만상(李萬相) 수문장 강진무(姜晉武)	5	전 부정 윤취오(尹就五) 전 부정 장한상(張漢相) 선전관 양익명(梁益命) 호군 김효상(金孝尙) 호군 조정원(趙廷元)	5	전 부사 윤취상(尹就尙) 전 첨정 김중기(金重器)	2
자제군관	전 만호 백흥령(白興齡) 전 판관 이엽(李曄)	2	부사과 이유린(李有麟) 전 첨정 홍세태(洪世泰)	2	전 판관 정태석(鄭泰碩)	1
합계		7		7		3

36) 자제군관(子弟軍官)은 정사, 부사, 종사관의 친인척 등 측근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임명되어 그들의 호위와 일본 측 관계자와의 접촉 등을 담당하였음.

또한 임술사행에서 장한상에 관한 기록은 『기년편고(紀年編攷)』와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묘갈명>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①임술년(1682) 훈련부정으로 통신사 좌막(佐幕)이 되어 일본에 가서 왜인들을 떨게 하였다.³⁷⁾

②임술년(壬戌年, 1682) 겨울에 훈련부정(訓練副正)으로서 통신사 좌막(佐幕)으로 일본에 가서 맹기(猛氣)와 영풍(英風)이 왜인들을 놀라게 했다. 병인년(丙寅年, 1686) 겨울 숙종대왕께서 친히 서종대에서 무예를 시험할 때 공은 훈련정(訓練正) 겸 내승(內乘)으로 신수가 효웅(梟雄)하고 말달리고 활을 쏘는 솜씨가 날아가는 듯하여 임금께서 넓적다리를 치며 칭찬하시고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제수하였다.³⁸⁾

1682년 겨울 훈련부정(訓練副正) 통신사 좌막(佐幕)으로 일본에 갔을 때, 사나운 기세와 영웅 같은 풍채로 왜인들을 놀라게 하였고,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사행록의 기록을 살펴봐도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장한상은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솜씨가 출중하였으며, 위풍당당함은 통신사 좌막으로 일본에 갔을 때 왜인들을 떨게 만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자제군관의 경우 삼사의 친인척 중에서 삼사가 직접 임명하여 데리고 갔는데, 사행단을 호위하는 일 이외에도 사행지에서 밀무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사헌부에서 임명하는 군관은 주로 삼사를 비롯한 통신사 행렬을 호위하는 일과 마상재의 시연 등을 관장하는 일을 하였다.

37) 「壬戌. 以訓練副正佐幕通信使, 往日本震懾倭人」, 『紀年便故』「張漢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7)

38) 「壬戌冬以訓練副正佐幕通信使往日本猛氣英風震懾倭人丙寅冬 肅朝親臨試藝于瑞慈臺時公以訓練正兼內乘身數梟雄馳射如飛 上拊髀獎歎陞授內禁衛將」 장한상의 <墓碣銘>, 『昇平(順天張氏)文獻錄』, p.198.

4. 조선통신사 참여와 삼척첨사 임명의 관련성

장한상은 임술통신사(壬戌通信使)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희천·자산·태안군수 등 주로 외직에서 경력을 쌓았다. 귀국 후에는 내금위장(內禁衛將)에 임명되는 등 순조롭게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 1689년에는 충주영장에 올랐고, 이듬해 비변사에서 병마·수군절도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선전관으로 기용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당상관의 반열에 오른 것은 무관으로서 상당히 빠른 승진이었다.³⁹⁾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1694)으로 사헌부로부터 “간신에게 줄을 대고 탐욕을 부렸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아 처벌을 받았다.⁴⁰⁾ 하지만 장한상의 복직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1682년 통신사의 군관으로 차출되어 제2기선 부사(副使) 이언강(李彦綱)의 군관으로 일본을 방문한 경험은 훗날 그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 납치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발생했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한상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릉도를 조사할 삼척첨사(三陟僉使)의 적임자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를 삼척영장으로 임명한 것은 첫째, 앞선 삼척영장에 임명된 이준명이 울릉도행을 두려워하여 명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당시 왜인들이 자주 출몰하여 안용복 납치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일본 통신사행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셋째, 무관으로서의 그의 기예와 용맹이 출중하였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울릉도 조사를 능히 수행할 수 있을 거란 조정의 기대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장한상이 처음부터 울릉도 파견을 자청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준명이 임무를 회피하여 체차된 뒤, 남구만(南九萬)은 삼척첨사의 대임을 물색하

39) 배재홍(2020), 「수토사 장한상의 官歷과 주요 행적」, 『이사부와 동해』 16호, pp.120-123.을 참조.

40) 『肅宗實錄』 숙종 20년(1694) 윤5월 무진.

면서 울릉도 조사의 과업을 기꺼이 또 문제없이 처리할 인재를 찾았다. 1694년 7월 13일, 공조판서 신여철(申汝哲)은 젊고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이유로 장한상을 적극 추천하면서도 국옥(鞠獄)에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주저했다. 숙종이 이를 패념치 말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병조판서 윤지선(尹趾善)이 장한상을 추천하면서 일본(日本)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 영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조판서 유상운(柳尙運) 역시 국옥의 관계 여부를 따지지 말고 거두어 쓰자면서 동의하자, 마침내 숙종은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임명했다.⁴¹⁾

장한상은 1694년 7월 17일에 삼척첨사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열흘도 되지 않은 25일에 사조(辭朝)하여 삼척으로 부임하였다. 그가 임지에 도착하여 그해 9월 19일에 울릉도로 떠났는데, 울릉도 수토관 파견의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장한상의 임무는 왜인들의 주거여부와 설읍(設邑)·설진(設鎭)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복명서를 받은 조선 조정은 정기적인 울릉도 수토관을 2~3년에 한 번씩 파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운암 장한상(張漢相)은 조선시대 경상도 비안현 비산동(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1리 비산마을(자연부락)) 출신으로, 조선 숙종·경종대에 활약한 무신이다. 으로 21세 때인 1676년에 무과 병과에 급제한 후 관계에 진출하여 서울과 지방의 무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선시대 영토수호와 관련된 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한상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독도 영유권, 혹은 수토사와 관련된 부분(업적)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41) 『承政院日記』 숙종 20년(1694) 7월 13일.

졌다. 따라서 이번에 수행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관력(官歷), 통신사행(通信使行) 참여, 북한산성 축조 및 백두산 정계조사 참여 등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이글에서는 임술(1682) 통신사행 참여라는 업적을 중심으로 그의 역할과 업적을 재조명해보고자 했다. 당시 그는 종3품의 품계인 군관으로 제2 기선에 승선하여 일본으로 건너가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사행기록에서는 그의 구체적(개인적)인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 『기년편고(紀年便攷)』와 사행록인 『동사록(東槎錄)』 및 『동사일록(東槎日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경덕사에 남겨진 초상화⁴²⁾에서처럼 장한상은 무인으로서 기예와 용맹스러움이 출장하였고, 그러한 그의 소성(素性)과 무예(武藝)로 인하여 그를 임술사행(壬戌使行)의 일원으로 차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조선통신사 사행에서 일본인들과 대담할 때에 “일본인들을 별별 떼게 하였다” 고 할 만큼 담력이 뛰어났고, 이러한 그의 군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귀국 후 관직 승진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사행의 일원으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서 1694년 삼척영장(첨사)로 임명하게 되었고 수토관으로 울릉도 수토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승평문헌록』에서, 일본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인들이 그의 지략과 용맹에 감복하여 “장한상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대국도 감히 모욕하지 못할 것” 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전언” 라는 식의 소문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장한상의 임술사행 참여 관련 문헌은 『天和信使奉行每日記(덴나신사봉

42) 당시 서울 장안에는 호랑이가 항간에 자주 출몰하였는데, 장한상이 호랑이를 물리쳤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장안을 돌아다녔다는 전설이 회자되고 있음. 호랑이에 올라타고 있는 장한상의 초상화는 그러한 전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행매일기』, 『東槎錄(동사록)』, 『東槎日錄(동사일록)』, 『紀年便攷(기년편고)』 등의 기록으로 현재로서는 아주 제한적이다. 임술사행에서 보다 구체적인 행적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며, 임술사행 관련 사행기록이 향후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승평문헌록』 등 순천장씨 문중사료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通信使謄錄』
洪禹載, 『東槎錄』
金指南, 『東槎日錄』
朴義成, 『紀年便攷』
『海行摠載』
『壬戌信使奉行每日記』
『昇平(順天張氏)文獻錄』

〈논문〉

- 김종우, 「운암 장한상 공의 행장과 독도」, 『독도지킴이 수토제도에 대한 재조명』 제1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북도지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북도지회, 2008.11.28.4, pp.29-74.
- 배재홍, 「수토사 장한상의 官歷과 주요 행적」, 『이사부와 동해』 16호, 2020, pp.115-158.
- 손승철, 「조선시대 通信使研究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제16집, 2002, pp.41-59.
- 심민정, 「서평: 『임술년도 조선통신사 봉행매일기 번각 天和信使奉行每日記飜刻』 임술통신사 사행기록을 보완하다」, 『지역과 역사』 52, 2023, pp.277-288.
- 심민정, 「1682년 임술통신사행의 임술약조 강정과 조일 교린관계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 제73집, 2021, pp.3-42.
- 심민정, 「조선후기 통신사 원역의 선발실태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23집, 2005, pp.73-121.
- 송휘영, 「의성 비안고을과 장한상의 행적」, 『獨島研究』 25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pp.157-180.
- 문현실·정은영, 「『매옹한록(梅翁閑錄)』 소재 임술(1682) 사행담 연구-정사 윤지완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34호, 2022, pp.45-79.
- 장순손, 「朝鮮後期 通信使行의 製述官에 대한 一考察」, 『全北史學』 제13집, 1990,

pp.33-75.

정장식, 「임술사행과 한일관계」, 『日本學報』 37호, 2001.

〈단행본〉

다사카 마사노리 · 이재훈 편저, 『임술년도 조선통신사 봉행매일기 번각(天和信使奉行每日記鰯刻)』, 경진출판, 2022.

미야케 히데토시 저, 김세민의 역,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샘, 1996.

하치경, 『대역관 김지남』, 바른북스, 2024.

한국이사부학회, 『독도를 지킨 사람들』, 삼척시 · 한국이사부학회, 2021.

의성문화원, 『우리 땅 독도지킴이 장한상』,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Chang Han-sang's Envoy Delegation in the year of Imsul, 1682

Song, Hwi-Young (Yeungnam University)

Unam Jang Han-sang who has born as a second son of Jang Shi-gyu who recorded as a Military Class in Bisan-ri, Oeseo-myeon, Gyeongsang-do(province), and passed the Military Official Class Test at the age of 21. He experienced a various position as an important man of military officer throughout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office.

Until, his performance in the position was well known as a first land inspector about Ulleungdo in 1694 record and academic field of today still remember his performance. This study reviewed the fact that he participated as a member of land inspection activity as one of delgates of Imsul year to Japan. Below description in the below illustrates about his activity.

First, as portraited in his figure at Gyeongdeok-sa Shrine, Jang Han-sang was an excellent military official with his courageous and art ability, and his talent was admitted as a member of delegates in the year of Imsul though he was ranked in the next third level government official. He sailed to Japan on the 2nd ship among the delegation team. However, his personal activity was not revealed in any records in the Korean history. Second, he was very courageous during the debate with Japanese officials, and his successful completion of duty reflected to his opportunity to upgrade official level in Korean government after the official visit. In respond his excellent activity as a delegation to Japan, he was appointed as Samcheok town chief position (Cheomsa) in 1694 and

executed as a land inspector to Ulleungdo. Third, the description about Jang Han-sang by Japanese part was not confirmed in any records as fact which seems legendary known as in <Seungpyeong Munheon-rok 昇平文獻錄> when he was dispatched as a member of the delegation to Japan and people praised him. “If there are some persons as Jang Han-sang in Korea, any big countries would not invade the country.” It seems to a distorted story about Jang Han-sang as a rumor in diplomatic relation with the Ching Dynasty.

The literature about Jang Han-sang’s Imsul year delegation participation activity was limited in <Tenna-shinsi-bugyo-mainikki 天和信使奉行毎日記>, <Dongsa-rok 東槎錄>, <Dongsa Il-rok 東槎日錄>, <Kinyeon Pyeon-go 紀年便攷> etc.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find concrete activity record about him, and expect more materials may reveal his a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se activities <Seungpyeong Munheon-rok 昇平文獻錄> and Suncheon Jang’s Family historic records could include. This task was remained as a future task of our research.

Keywords: Chang Han-sang, Imsul-sahaeng, Choseon-Tongsinsa, military office r, Suto-gwan, Dongsa Il-rok

이 논문은 2024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나카이 요자부로의 오가사와라島 도항 시도의 의미

이 소 리*

〈목 차〉

1. 머리말
2. 나카이 요자부로의 신상 관련 자료 검토
3. 남양 진출의 교두보, 오가사와라島
4.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편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카이 요자부리가「이력서」에는 ‘오가사와라島로 도항하다’(a)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자부로 씨 입지전」에는 ‘오가사와라島로(건너가) 돈벌이를 모색하다’(a')라고 하고 있어, 두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서 출발했다. 먼저 오가사와라島 도항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오가사와라島가 나카이에게는 어떤 의미였으며, 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당시 오가사와라島로의 선박 운항 상황, 관계자들 중심으로 승선하고 있었던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시골에서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카이가 개인 자격으로 오가사와라島로 건너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나카이는 자신의 실업자로서의 첫 출발점을 왜 오가사와라島 도항이라고 기재한 것일까.

오가사와라諸島는 다마오키 한에몬이 아호도리 포획으로 거부가 되자, 제2의 다마오키를 꿈꾸는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북태평양의 무인도로 아호도리를 찾아 나서게 되면서, 북태평양 도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의 목표지가 되었는데, 나카이기도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돗토리현, 전라경상 등지에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다가,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dokdosound@naver.com

1903년 독도에서 처음 강치 어업을 시작했는데, 나카이는 강치가 오가사와라島の 아호도리, 즉 돈벌이(利源)가 됨을 알고 독점 어업을 희망하는「임대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때 함께 제출한「임대청원 설명서」에는 경쟁 포획의 폐해, 강치의 보호법까지 세세히 기재했는데, 이는 오가사와라島에서 아호도리의 대량 포획이 멸절로 이어지는 것을 학습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마네현이 나카이가 희망한 독점 어업이 아닌 4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함으로써 그는 거부의 꿈을 이루지 못했으며, 「임대청원서」를 계기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자신은 큰 실익을 얻지 못한 것이다.

주제어 : 나카이 요자부로, 오가사와라島, 다마오키 한에몬, 아호도리, 영토편입, 강치

1. 머리말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1903년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에 대한 사업성을 인지하고, 1904년 강치 어업의 독점을 위해 「독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リャンコ島領土編入並びに貸下願)」(이하 「임대청원서」)를 내무·외무·농상공부에 제출했는데,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일본령으로의 편입을 단행했다. 그런 까닭에 일본에서는 나카이를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길을 연 사람」¹⁾, 「독도 영토편입 각의결정의 계기를 만든 공로자」²⁾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나카이가 독도에서 행한 강치 포획 등의 어로 행위와 그 결과(일본의 독도 편입)에 치중되어 있다.

나카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수 존재하지만, 그의 신상과 관련된 1차 자료

1) 杉原隆 「中井養三郎について」 『杉原通信「郷土の歴史から学ぶ竹島問題」』、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sugi/take_04g18.html(閲覧日:2024.02.23)

2) 塚本孝(2007)「奥村碧雲竹島関係資料(奥原秀夫所蔵)をめぐって」『「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竹島問題研究会、p.62.

는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履歷書)」³⁾와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이 집필한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자부로 씨 입지전(竹島經營者 中井養三郎氏立志傳)」(이하 「입지전」)⁴⁾이 있다. 일본의 독도 연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마네현(島根県)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⁵⁾ 및 「웹다케시마 연구소」⁶⁾에서 소개하는 나카이의 모습은 독도와 관련된 그의 행위에 관한 기술이 대부분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1903년 독도에서 강치 포획 시작, 1904년 독점적으로 강치 포획을 위한 「임대청원서」를 정부에 제출, 1906년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会社)」 설립 후 1914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1903년 독도에서 강치 포획 시작 이후 그의 1934년 사망까지의 활동을 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나카이가 독도에서의 어로 활동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실업에 뜻을 둔 1885년 무렵부터 독도에서 강치 포획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에 주목했다. 특히, 그가 직접 작성하여 오키도청(隱岐島庁)에 제출한 「이력서」에 “1886년 시찰을 위해 오가사와라島⁷⁾에 도항하다”라는 문구에 착목했다. 1884년 큰 꿈을 안고 도쿄(東京)로 진출했던 나카이는 왜 도쿄에서 1,000여km나 떨어진 오가사와라島로 도항했는지(혹은 도항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오가사와라島가 나카이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그

3) 島根県(1953)『從明治參拾八年行政所官往復雜書類竹島漁獵合資会社』『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目録 No.005.

4) 奥原碧雲(1906)『竹島經營者 中井養三郎氏立志傳』

5)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会是 2005년 6월에 발족된 이후 2024년 7월 현재, 「5기 竹島問題研究会」를 운영 중이며, 각기마다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6) Web竹島問題研究所는 시마네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竹島問題研究会的 연구성과 및 최근 연구정보, 시마네현의 주장을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7) 한국어 논문에서 「小笠原島」를 표기할 때, ‘오가사와라도’, ‘오가사와라 섬’ ‘小笠原島’등의 표기가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외국어 표기법을 준수하면서 가독성을 위해 ‘오가사와라島’ 또는 ‘오가사와라諸島’로 표기했다.

리고 도쿄 생활 이후 독도에서의 강제 어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나카이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독도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2. 나카이 요자부로의 신상 관련 자료 검토

나카이 요자부로와 관련된 자료로는 본인이 작성한 「임대청원서(1904)」와 「독도 영토편입 및 임대청원 설명서(リャンコ島領土編入並賃下願説明書)」(이하 「임대청원 설명서(1904)」), 「사업경영개략(事業經營概略 1911)」 외에 시마네현 등에 제출한 다수의 문서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의 신상과 관련 1차 자료로는 나카이가 기술한 「이력서」와 오쿠하라 헤키운이 집필한 「입지전」이 있다.

이력서는 누구나 그러하듯 본인이 작성한다. 나카이의 「이력서」에는 1910년 ‘오키도청에 제출하는 것’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본적지와 출생년도, 그리고 ‘학력’, ‘사업’, ‘상벌’ 3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어서, 나카이의 출생과 학력, 사업 경력의 전모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입지전’이란 뜻을 세워 고군분투한 끝에 성공을 이룬 인물⁸⁾을 대상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오쿠하라는 어떤 경위로 「입지전」을 쓰게 되었을까.

오쿠하라의 대표 저서는 『독도 및 울릉도(竹島及鬱陵島)』⁹⁾이다. 그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경위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05년 2월, 독도를 편입한 시마네현이 시찰조사단을 구성하여 1906년 3월에 독도 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때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 책의 범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조사한 것과 시찰원의 복명서, 오키도청의 문서, 그리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칭) 경영자 나카이의 담화 등을 근거

8) 松村明編(1999) 『大辞林』 第二版、三省堂、p.2696.

9) 奥原碧雲(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에서 발행했으며, 이 책은 동일 제목으로 2005년 バーベスト出版(pp.1~119)에서 복간 발행했다.

로¹⁰⁾ 사진과 지도도 넣어 기술하고 있다.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의 지리, 기후, 생물, 어업, 어민 생활의 상황, 연혁 등을 담고 있다.

『독도 및 울릉도』가 출판된 것은 1907년 5월이지만, 원고 완성일은 1906년 5월 28일이라고 범례에서 밝히고 있고, 「입지전」도 그 말미에 완성일을 1906년 5월 20일로 표기하고 있어, 두 저작물은 같은 시기에 집필된 것이다. 독도 시찰조사단은 1906년 3월 22일, 마쓰에(松江)를 출발하여, 사카이(境)항, 사이고(西郷)항을 거쳐 독도에 도착한 것은 27일이었고, 당일에 독도를 떠나 울릉도 도동으로 피난하였다가, 28일 도동을 떠나 29일 사이고항 도착, 30일 마쓰에로 돌아왔으니,¹¹⁾ 독도 조사 일정을 끝낸 지 2개월 이내에 2점의 저작물을 완성한 것이다.

오쿠하라는 집필 당시 시마네현 소학교(島根県八束郡秋鹿村高等尋常小学校)의 교장이었는데, 그런 까닭에 그는 소학교 교육은 물론 청년교육, 여자교육 및 사회교육의 각 방면에 걸쳐 활약한 교육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문재(文才)에도 뛰어나 논설, 기행문, 수필, 시가 등을 남기고 있는데, 주요 저서로는 『島根県名勝誌』(1906), 『山陰鉄道名勝案内』(1912), 『島根県名勝案内』(1921), 『八塚郡誌』(1926) 등이 있다.¹²⁾

그런데 『독도 및 울릉도』는 독도 시찰조사단의 일행으로서의 보고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입지전」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카이를 ‘입지적인’ 인물로 본 오쿠하라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독도 시찰조사단의 일행으로 처음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별도로 작성한 셈이다. 「입지전」을 저술한 배경을 『독도 및 울릉도』에서 찾아보면, 3월 25일, 시마네현 소속의 나카지마(中島善夫・島根県技手)가 나카이를 독도의 경영자로 소개했으며, 나카이가 저녁 한 때에 선상에서 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오쿠하라는 「그의 폐부에서 나오는 열성적인 이야기에 감동을

10) 奥原碧雲(2005) 前掲書、p.5.

11) 奥原碧雲(2005) 前掲書、pp.99-100.

12) 島根県大百科事典編集委員会ほか編(1982)『島根県大百科事典』上巻、山陰中央新報社、p.322.

받았으며, 또한 독도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여 마치 실제로 보는 듯했다」¹³⁾고 적고 있다. 또 「입지전」의 말미에도 「나카이 씨의 담화에서 그의 고심탐회한 경험담을 듣고, 감흥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고 하여, 나카이에게 상당한 감흥을 받은 끝에 그 자신이 스스로 「입지전」을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쿠하라가 「입지전」을 기술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오쿠하라가 「나카이는 독도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임대청원서」는 1904년 9월 29일 내무·외무·농상공부 대신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카이가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독도의 위치와 지세, 강치의 생태 등에 대해서술하고, 특히 경쟁적인 강치 포획에 대한 우려와 강치 보호를 위해 임대청원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또한 「임대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임대청원 설명서」에는 강치 보호방법, 강치 군집에 미치는 경쟁 포획의 폐해, 강치 제조에 대한 경쟁포획의 폐해 등을 보다 세세하게 서술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독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03년 이후 직접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시행한 실경험까지 더해졌으니, 그의 독도 이야기는 실제적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쿠하라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소학교의 교장의 신분이었고, 또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문학적 성향은 『독도 및 울릉도』 후미에 독도 시찰단원의 시가를 모아 「寒潮余韻」이라는 제목으로 시가를 수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시가의 내역을 보면 시(和歌) 20수, 한시(漢詩) 4수, 하이쿠(俳句) 2구로 전부 26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오쿠하라의 시 8수가 있으며, 독도 시찰조사단의 작품뿐만 아니라, 울릉도 상의소장 김광호(金光鎬)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한시 2수 및 울릉군수 심홍택이 사사한 것으로 보이는 한시 1수

13) 奥原碧雲(2005) 前掲書、p.105.

14) 塚本孝(2007) 前掲書、p.74.

도 포함되어 있다.¹⁵⁾ 이처럼 문학적인 성향이 풍부하며 소학교 교사로 일생을 보냈던 그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언변으로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하게 되기까지의 스토리는 문학적 소양이 있는 오쿠하라에게는 놓칠 수 없는 소재였을 것이다. 나이도 자신보다 9세나 많은 연장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모험적인 이야기는 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그의 무용담을 직접 청취한 오쿠하라에게 나카이는 「우리 지역(山陰)¹⁶⁾의 채남아」이며, 또 「일본(海国)의 위대한 대장부」¹⁷⁾였던 것이다.

따라서 「입지전」의 내용은 나카이의 출생부터 그의 학력, 청년 실업가로서의 꿈, 그리고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과 나카이가 1904년 9월 29일 제출한 「입대청원서」를 토대로 중앙 정부가 1905년 1월 28일 독도 편입에 대한 각 의결정까지의 우여곡절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나카이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이력서」를 토대로 오쿠하라의 「입지전」과 상호 비교하면서 그가 도쿄 상경 이후, 그동안 수학하던 한학(漢學)을 접고 실업을 꿈꾸던 모습부터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연해 보려고 한다. 「이력서」의 ‘학력’란을 보면, 1864년(元治1) 돗토리현(鳥取縣)에서 태어나, 소학교 졸업(1878), 시마네현 마쓰에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1884년 도쿄로 상경했다. 도쿄로 온 나카이는 고지마치구(麹町區)에서 한학 수학 중, 1885년 실업가를 꿈꾸고 한학을 접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업’란의 첫 줄에 「1886년 시찰을 위해 오가사와라島 도항하다」라고 하여, 자신의 사업 시작점을 ‘오가사와라島 도항’이라고 한 것이다.

15) 伊藤政彦(2010)「奥原碧雲『竹島及鬱陵島』の和歌の特徴」『日本文化学報第46輯』、한국일본문화학회, p.97.

16) 돗토리현鳥取縣과 시마네현島根縣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17) 塚本孝(2007) 前掲書, p.71, p.74.

3. 남양 진출의 교두보, 오가사와라島

나카이의 도쿄에서의 행적에 대해 「입지전」(1906)과 「이력서」(1910)를 비교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이력서」에는 1884년 마쓰에의 相長學舎를 그만두고 도쿄(東京麹町区町斯文翼)에 가서 한학 수학, 1885년 실업에 뜻을 두고 사문횡(斯文翼)을 그만두다, 1886년 시찰하기 위해 오가사와라島에 도항하다(視察ノタメ小笠原島ニ渡航ス)a, 1887년 호주 도항을 기획했지만 이루지 못하고(濠州渡航ヲ企テ発程ニ臨ミテ頓挫果タサズ)b, 나가사키(長崎県西彼杵郡松島村)에서 유랑하다¹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도 벽지에 속하는 산인 지방에서 태어나 성장한 나카이가 도쿄로 상경하여 느낀 감상부터 한학을 그만두고 실업의 길로 들어선 이유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나카이가 상경했을 때는 이미 스무 살이 지난 나이였는데, 성인되어 처음 접한 도쿄는 활발한 도시였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자극적인 요소였다. 무엇보다 도쿄는 그가 고향에서 소학교 졸업 후 다년간 심혈을 기울여 학습한 한학은 고루하고 고지식한 것이었고, 수도 도쿄는 서양 학문(英學)을 필요로 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서양 학문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여서 수학을 위해 실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1886년 한학을 단념한다.¹⁹⁾ 그가 생각한 실업은 먼 해외로 이득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모험적인 탐험사업을 구상했다. 그 구상의 내용은 오가사와라島에서 돈벌이를 모색하고(小笠原島に利源を探リ)a', 미국 도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

18) 島根県(1953) 前掲文書

19) 塚本孝(2007) 前掲書、p.71.

한 쓰쿠바함에 편승하여 남양 탐험을 성취한 시가 시게타카 씨와 1887년에 호주 시찰을 기획하고(かの筑波艦に便乗して南洋探検をなしたる志賀重昂氏と濠州視察を企図し)b', 이를 위한 준비금을 나가사키에서 사기를 당해 그 꿈을 펼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a와 a' 는 내용이 상이하다. 「이력서」에는 1886년에 ‘오가사와라섬에 도항하다’ 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입지전」에는 모험적인 탐험사업 구상의 하나로 ‘오가사와라섬로(건너가) 돈벌이를 모색하고’ 라고 기술되어 있다. 나카이의 오가사와라섬 도항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오가사와라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메이지 정부의 오가사와라섬 편입

일본은 도쿄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나 떨어진 이 오가사와라섬을 언제부터 영유하게 되었을까. 오가사와라섬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19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무인도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태평양에서 포경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럽 각국 선박들이 오가사와라섬로 빈번하게 내항하기 시작한다. 1823년 미국의 포경선이 오가사와라섬로 출입이 하는 등 그 무렵에는 미국 포경선의 이용이 많았지만, 1827년에 영국의 측량선이 오가사와라섬을 측량하고, 섬 내의 이름을 명명하고 동판을 세기는 등 「영유」를 선언한다. 1830년에는 미국인 세보리(Nathaniel Savory) 등 5명이 하와이 원주민 20여 명과 함께 하와이의 오후 섬에서 이 섬으로 이주하여 개척을 시작했다.²⁰⁾

여기에 더해 1853년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인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이 기항하여 섬을 조사한 뒤 세보리에게 저탄용지를 구입하고 그에게 독립정부 수립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20) M・C・ペリー-F・L・ホーク스宮崎寿子監訳(2007)『ペリー提督日本遠征記』角川ソフィア文庫、pp.468-469.

일본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페리는 귀로에 오가사와라島에 들러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탄소를 설정한다.²¹⁾ 그는 1853년 6월에 본국 해군성에 오가사와라島의 지치지마(父島 Peel Island)의 포트 로이드(Port Lloyd, 二見港)가 저탄소 및 기선 정박항으로 최적지라고 보고했는데, 미국은 이 섬에 대한 적극적 점령방침은 수용하지 않은 채 저탄용지의 설정만을 승인했다.²²⁾

페리의 오가사와라島 내방 이후, 이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에도(江戸) 막부는 1863년에 관리와 이주자 80명을 이 섬에 파견해서 14개월 동안 관리·통치했다. 하지만 정변²³⁾ 등 막말의 정세에 의해 중지되었다가 1875년 메이지 정부는 오가사와라島 재개척을 결정했다. 1875년 11월 일본정부가 탐험대를 파견해서 주민으로부터 복종 선서를 받는데 이어 1876년 1월 단속 규칙(島規則港規則)을 고지하였고, 10월에는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경이 일본주재 각국 공사에게 이 섬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해서 규칙에 따라 단속하겠다는 뜻을 통고했다.²⁴⁾ 이 통고에 대해 타국, 특히 영국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타국이 일본의 주권 주장을 ‘묵인’ 한 것이어서 오가사와라島는 일본령이 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²⁵⁾ 이는 영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국가가 차지하는 것에는 민감했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것과 관계가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오가사와라島의 편입은 그 명칭을 둘러싼 논의에서 보듯이, 일본이 무리하게 편입을 단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자료들에

21) 時野谷勝(1971) 「明治初年の外交」 『岩波講座 日本歴史15(近代2)』 岩波書店、p.242.

22) 鹿島守之助(1970) 『日本外交史 3 一近隣諸国及び領土問題一』 鹿島研究所出版会、pp. 346-347.

23) 분규文久3년(1863) 8월 18일, 아이즈번會津藩·사쓰마번薩摩藩이 중심이 되어 조정 내에서 쿠데타를 결행하여 산조 사네토미三條実美 등의 급진파와 조슈번長州藩 세력을 에도로부터 추방. 연호를 따라 ‘분규 정변(文久の政変)’이라고도 한다.

24) 外務省條約局編(1933) 「島嶼先占」 『國際法先例集輯』 (2) 外務省條約局、pp.1-2.

25) 立作太郎(1933) 「無主の島嶼の先占法理と先例」 『國際法外交雜誌』 第32卷8号、p.44.

따르면,²⁶⁾ 이 명칭은 분로쿠 연간(文祿 1592-1596)에 민부성의 차관(民部大輔) 오가사와라 사다요리(小笠原貞頼)라는 사람이 이 섬에 도항해서 목표(木標) 2개를 심은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오가사와라 사다요리라는 인물이 실존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²⁷⁾ 그것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당초부터 오가사와라 사다요리의 발견설이 부인되고 있던 가운데에 메이지 정부는 오가사와라島를 둘러싼 각국의 쟁탈전 양상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일본령으로 주장하기 좋다고 여겨,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본이 관계했다는 선전 목적으로 ‘오가사와라’라는 명칭을 고수한 것이다.²⁹⁾

2) 오가사와라島와 아호도리

1876년 오가사와라島를 편입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도서들을 편입해 나갔는데, 메이지기(明治期 1868-1912)에 편입한 도서는 ①오가사와라島(小笠原島;1876.10.), ②이오토(硫黃島;1891.9.), ③구메아카시마·구바시마·우오쓰리시마(久米赤島·久場島·魚釣島;1895.1.),³⁰⁾ ④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1898.7.), ⑤오키다이토지마(沖大東島;1900.9.), ⑥독도(竹島;1905.2.) 6개 도서군이다. 이중 ①②④는 현재의 오가사와라諸島인데 편입 당시는 각각 편입했다. 독도를 제외하면 모두 북태평양에 있는 도서들이고, 오가사와라島를 가장

26) 小笠原島庁(1888)『小笠原島誌纂』、p.42 ; 外務省條約局編(1933)「島嶼先占」『國際法先例彙輯』(2) 外務省條約局、p.1.

27) 鹿島守之助(1970) 前掲書、pp.343-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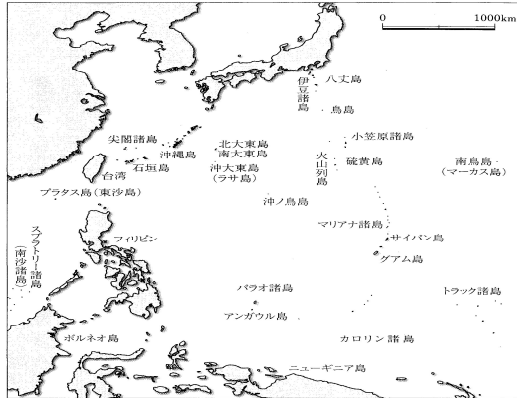
28) 松尾龍之介(2014)『小笠原諸島をめぐる世界史』、弦書房、p.10.

29) 長嶋俊介(2010)「島嶼と境界—日本国境形成史試論—」『國際政治』第162号、日本國際政治学会編、p.121.

30) 外務省「尖閣諸島」<https://www.mofa.go.jp/mofaj/area/senkaku/index.html>(閲覧日:2024.05.18.).

이 3개의 도서는 센카쿠 제도의 중핵이 되는 도서이며, 구메아카시마(久米赤島)는 1922년 다이쇼지마(大正島)로 개칭했고, 3도서 외에도 北小島、南小島、沖ノ北岩、沖ノ南岩、飛瀬 등이 센카쿠제도에 속한다.

먼저 편입한 것이다.



* 출처 : 平岡昭利(2015)『アホウドリを追った日本人』

메이지기에 들어오자 일본인의 활동은 폐쇄적인 공간으로부터 해방되어, 한층 바다로 향해 활발하게 나아갔다. 초기의 오가사와라섬 개척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식료 확보도 어려워 엄청나게 고생하였다. 초기의 개척자들은 바다거북, 요리에 사용하는 목이버섯, 염료가 되는 쪽풀(藍) 등의 천연자원을 채취하면서 생계를 세우는 정도였으나, 아호도리(アホウドリ 阿呆鳥 Albatros) 포획으로 이 섬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호도리는 대형 바다새로 중국에서는 信天翁이라 불렀고, 일본에서는 아호도리라고 하여, 馬鹿鳥, 信天翁, 藤九郎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종류에 속하며, 양 날개를 펼치면 2.4m에 달하고 태평양에서도 최대급의 해조류이다. 날기 위해서는 20~30m의 활주가 필요하여 민첩하게 날아올 수 없어 인간의 시선에서 동작이 느리고 멍하게 있는 듯이 보여 바보(아호)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졌다.³¹⁾

현재 아호도리는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에서 멸절 위기종으로 지정하

31) 『ウィキペディア』「アホウドリ」 <https://ja.wikipedia.org/wiki/>(閲覧日:2023.10.25)

고 있는데, 메이지기 이전에는 북태평양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오가사와라제도, 이즈(伊豆)제도의 도리시마(鳥島), 센카쿠제도(尖閣諸島), 다이토제도 등의 섬에서 수백만 마리 혹은 수천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오가사와라섬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대부분은 아호도리여서 가는 곳마다 아호도리가 서식하고 있었다.³²⁾ 아호도리는 북태평양에서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하며 서식하였는데, 가을이 되면 번식을 위해 남하하여 10월경에 일본 근해의 무인도로 도래한다. 1년에 1개의 알을 낳고, 새끼새를 키우다가 다음 해 4월 하순에 섬을 떠난다. 이 때문에 도래시기에 맞춘 인간에 의한 포획, 대체로 몽둥이로 때려잡는 박살(撲殺)에 의한 대량 포획이 이루어져 아호도리의 괴멸적인 감소를 초래했다.

오가사와라섬은 메이지 10년대(1877~1886)에 들어오면 이주자가 급증하여 아호도리를 많이 포획하게 되었다. 또 조분(鳥糞)은 양질의 비료가 된다고 해서 오가사와라 출장소장 오바나 사쿠스케(小花作助)가 내무경 오키보 도시미쓰(大久保利通)에게 조분 채취를 건의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아호도리는 간단하게 포획할 수 있는 대형 해조였다. 또한 이 해조는 남김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돈이 되는 유망한 자원으로 거양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885년 경에는 우모(羽毛)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가사와라섬의 아호도리는 대량으로 포획되어 5~6년에 격감하게 된 것이다. 이소무라 데이키치(磯村貞吉)는 1887년에 저술한 그의 저서에서 「옛날에는 오가사와라제도의 지치지마나 하하지마(母島)를 비롯한 많은 섬들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손으로 간단하게 포획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치지마, 하하지마 등에서는 새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어,³³⁾ 섬 개척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아호도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32) 大槻文彦(1876) 『小笠原島新誌』、p.34.

33) 小笠原諸島史研究会(2005) 『小笠原島要録 第二編』、p.22.



* 출전 : 『小笠原嶋要覧』(1887)

아호도리를 언급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마오키 한에몬(玉置半右衛門)이다. 메이지 정부는 1876년 오가사와라 출장소장 오바나 사쿠스케 등 관리 17명을 포함한 27명을 오가사와라島에 파견했는데, 이때 관사 신축공사 청부인으로 하치조지마(八丈島) 출신의 목공 다마오키가 참여했다. 1880년에는 도쿄부 오가사와라島 출장소 개소, 1884년, 85년, 86년에 3개의 소학교(大村・扇浦・沖村)가 개교했으며, 1886년에는 출장소를 폐지하고 오가사와라島庁이 설치되었는데,³⁴⁾ 이런 관급 공사에 모두 다마오키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막부, 또 메이지 정부에 의한 오가사와라島 개척에 수차례 종사해 온 까닭에 아호도리가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개척 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가사와라島에서 아호도리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오가사와라島의 항로에 있는 도리시마에서 여전히 무수히 많은 아호도리를 확인한 것이다.

다마오키는 1887년 8월에는 고용인을 도리시마에 파견하고, 같은 해 9월이 되어 도리시마의 「목축개척」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지 및 도리시마에서의 하선 허가를 도쿄부에 청원했다.³⁵⁾ 도리시마 조치권을 손에 쥔 다마

34) 東京府編(1929)『小笠原島総覧』、pp.21-23

35) 「鳥島拝借並に定期船御寄島願」

오키는 같은 해 11월 도리시마에 상륙한지 불과 반년 사이에 10만 마리를 포획했고, 1902년 8월 도리시마 대분화로 노동자 125명 전원이 사망하기까지 15년간 어림잡아 600만 마리의 아호도리를 포획했다. 연간 평균하면 무려 40만 마리를 포획한 것이다.

포획된 아호도리는 우모를 취하여 장식 또는 먼 대용으로 이용했고, 기름은 식용, 공예용으로, 고기의 대부분은 비료로 활용했다. 그중에 가장 수익이 되는 것은 우모였다. 막말의 1859년 요코하마(横浜)가 개항하고 나서, 1868년까지 요코하마 상인이 취급한 품목에 조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우모 채취가 목적이었다. 또 1871년경에 런던시장에는 일본에서 수입된 우모가 연간 수천마리 규모로 거래되었다고 한다.³⁶⁾ 이처럼 일본에서는 의외로 일찍부터 조류와 우모가 수출되고 있었는데, 메이지 20년대에는 요코하마 항에서 수출되는 잡화 중에서, 주요 품목으로 우모와 조류박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수출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홍콩, 미합중국이었다.³⁷⁾

아호도리를 박살하여 우모를 집어뜯기만 하는 이 사업으로 다마오키는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얻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수익을 얻은 다마오키는 도리시마를 상륙한 지 불과 4년 뒤에는 도쿄의 무역 중심인 쓰키지(築地)에 본점을 두고, 돌로 된 창고를 건설할 정도로 유력한 실업가가 된 것이다. 1896년에는 전국의 부호순위에 다마오키의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의 도쿄도(都) 중앙구에도 점포를 소유하였고, 다마오키상회의 사무소와 「信天翁御殿」이라고 불리는 대저택까지 건설했다.

1887년 도리시마에서의 다마오키의 성공을 시작으로, 한꺼번에 돈을 벌려는 사람들, 제2의 다마오키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본 근해의 무인도 획득 경쟁에 몰려들게 되었다. 무인도에는 고가로 거래되는 아호도리 등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었고, 작은 배와 막대기와 자루나 망만으로 쉽게 포획할 수 있으며, 우모가 경량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일확천금의 꿈이 실현 가능하

36) 羽毛文化史研究改編(1993) 『羽毛と寝具のはなし—その歴史と文化』日本経済評論社

37) 大蔵省編(1883-)『大日本外国貿易年表』

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갔던 것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무인도로 아호도리를 찾아 나섰다.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진출한 많은 무인도 중의 하나가 오키나와(沖縄)의 동쪽에 위치하는 다이토제도였다. 다이토제도는 남다이토島, 북다이토島, 오키다이토島가 산재하는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키나와현의 탐험에 의해 남다이토島와 북다이토島가 오키나와현의 소관이 되면서, 이 섬들을 개척하기 위한 개척자를 모집했을 때 개척원을 제출한 팀이 1891년 11월부터 1901년 5월까지 무려 8명의 출원자가 있었을 정도였다.³⁸⁾ 또한 일본인이 바위투성이인 센카쿠제도로 진출한 것도, 현재 일본의 최동단인 미나미토리시마로 진출한 것도 아호도리 때문이었다.³⁹⁾ 북태평양의 섬들에서 무수히 많이 서식하고 있던 아호도리였지만, 번식력이 약하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량으로 포획함으로써 괴멸적으로 감소하는 아호도리를 찾아서 새로운 섬으로 나선 결과 이들 섬이 중국에는 일본으로 편입되었다.

3) 나카이와 오가사와라島

한편, 메이지 초기 일본 내에서는 국력의 충실을 도모함에 따라 대외팽창론이 높아지면서, 남진론과 북진론이 대두했다. 두 진출론 중에 18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남진론이 급속하게 대두되었다.⁴⁰⁾ 북진은 초대국 러시아가 크게 버티고 서있는 것에 비해, 남진은 사면이 바다인 일본의 국토 지리적 조건도 있어서, 넓은 태평양에는 전개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던

38) 『地学雑誌』(1903)178号, p.768에 따르면 다이토제도 개척출원자는 고가古賀 외 1명, 島袋完衛(1891. 12.05.), 萩野芳蔵(1892.02.23.), 重久善左衛門(1892.02.23.), 服部徹(1892.09.30.), 広川勇之助(1895 .10.29.) 玉置半右衛門(1899.10.05.), 水谷新六 외 1명(1901.05.11.)이다

39) 平岡昭利(2012)『アホウドリと「帝国」日本の拡大—南洋に島々への進出から侵略へ—』明石書店, pp.85-87.

40) 矢野暢(2009)『「南進」の系譜』千倉書房, pp.41-42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해군은 1877년 전후부터 군함을 태평양 지역의 원양항해로 파견하였고, 1886년에는 남양군도, 오스트리아 등으로 10개월에 미치는 원양항해에 군함 ‘쓰쿠바(筑波)’를 순항시켰는데, 이 항해에 참가했던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는 항해에서의 견문을 정리한 『南洋時事』(1887)를 출판하여, 일약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1888년에는 핫토리 도오루(服部徹)의 『日本之南洋』, 스가누마 데후(菅沼貞風)의 『新日本図南の夢』, 1892년에는 스즈키 쓰네노리(鈴木經勲)의 『南洋探検実記』 등 남양에 관한 서적이 잇달아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서적 간행이 이데올로기로서의 남진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히려 신문이었다.⁴¹⁾ 서민에게 있어서 보다 입수가 용이한 정보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은 그림도 들어가고 히라가나를 이용한 신문의 연재소설도 있어서 서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 이 시기의 신문소설은 사회문제도 제재로 하게 되어, 자유민권운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소설로도 성장하였다.⁴²⁾ 남진론의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때를 같이하여 해양(南洋) 소설이 등장했다. 188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스도 난스이(須藤南翠)의 『朝日の旗風』, 이어서 고미야마 덴코(小宮山天香)의 『모험기업 연도대왕冒險企業 連島大王』가 11월부터 88년 3월에 걸쳐 改新新聞에 연재되었다. 이들 소설의 내용은 모두 남양의 무인도를 발견하고, 개척하여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상과 같은 남양소설의 출현은 당초에는 무인도 탐험으로부터 개척, 또는 무역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이 많았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같은 시기에 무인도인 도리시마를 개척하여 외국과의 무역으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다마오키를 연상케 했다. 다마오키는 신문소설의 유토피아를 실현한 실재의 인물이었던 것이다.⁴³⁾ 실제로 당시 다마오키는 도리시마에서는 ‘대장’으

41) 平岡昭利(2012) 前掲書、p.29.

42) 紀田順一郎(1965)『明治の理想』三一書房、p.56.

43) 平岡昭利(2012) 前掲書、p.29.

로 불렸고, 그 뒤에 개척한 다이토島는 ‘다마오키왕국’으로 칭해졌을 정도였다. 또 세상에서는 그를 일본을 대표하는 실업가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였고, 요미우리신문은 다마오키를 ‘남양사업의 모범가’로 보도하기도 했다.⁴⁴⁾

여기서 본 연구의 초점인 나카이의 오가사와라島 도항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려 한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a와 a'의 건이다. 즉, 나카이가 오가사와라島로 도항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나카이의 이력서를 근거로 근대어업에 뜻을 두고 오가사와라島를 방문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오늘날에도 도쿄와 오가사와라島 간의 정기선이 평균 주1회 왕복하는 정도이며, 소요시간도 24시간이다.⁴⁶⁾ 그러면 개척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1876년 일본령으로 편입된 오가사와라島는 그 다음 해에 도쿄와 오가사와라島 간의 정기 항로가 개설되었는데, 당초에는 연 3회 운항했다. 1887년에는 운항 횟수가 연 4회로 증가했으며, 1907년이 되어서야 운항 횟수가 연 18회로 늘어났다.⁴⁷⁾ 나카이가 도항했다고 주장하는 1886년 당시는 연 3회 운항하던 시기이다. 1886년은 오키무라소학교가 개교한 해이며, 또한 오가사와라島庁이 설치되는 해였다. 도청이 완공되자 11월에는 도쿄부 지사 다카사키 고로쿠(高崎五六)가 메이지호(明治丸)로 지치지마, 하하지마 그리고 이오토를 순항했다.⁴⁸⁾ 연 3회 운항도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운항했으며, 승선자도 대부분 오가사와라島의 관리(공무원) 또는 건축 등을 위한 관계자거나 모집 노동자 등, 도항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카이가 주장한 ‘시찰을 위함’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44) 《読売新聞》1894년8월31일

45) 예영준(2012)『독도실록 1905』책발, p.28 ; 김수희(2010) 「나카이요사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人文研究』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Vol.- No.58, p.133.

46) 小笠原海運 홈페이지, <https://www.ogasawarakaiun.co.jp/service/>

47) 東京府編(1929) 前掲書, p.184.

48) 東京府編(1929) 前掲書, p.23.

게다가 시골에서 상경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이 관계자들 위주로 승선하는 오가사와라섬행 배에 오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접 도항한 것이 아니라, 「입지전」에서 오쿠하라가 언급한대로 “여러 가지 모험적인 탐험사업을 구상했는데, 그 하나로 오가사와라섬로 건너가 돈벌이를 모색한 것”(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오가사와라섬로의 도항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실업의 길로 들어서는 시 작점은 오가사와라섬였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에서 한학을 접고 남양으로 경쟁하듯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본인도 거부를 꿈꾸면서 오가사와라섬로 시찰을 희망한 것이다. 그러던 중 1887년에는 시가의 『南洋時事』가 세상에 나왔는데, 시가는 이 책의 말미에 「해외 도처에 상업적 신일본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오늘날 사명이며, 여러분의 오늘날의 급무」⁴⁹⁾라고 유사한 문장을 되풀이 하면서, 해외 도처로 나가서 상업적 신일본을 만들어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나카이는 이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듯하다. 「입지전」에는 직접 시가 시게타가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나카이가 “먼 해외로 이득을 찾는 구상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먼 해외란 앞의 b와 b'에서 보듯이 직접 호주로의 도항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융통하여 준비하던 중 사기를 당하여 유랑생활을 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4.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

해외로의 도항에 실패한 나카이는 잠수기 어업에 착수하였는데, 그의 실제적인 실업의 시작은 수산업이었던 셈이다. 1891년, 92년에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수기 4대로 해삼을 잡아 염장 해삼을 제조하여 수익을 얻었지만, 1893년 러시아정부가 잠수기 어업을 금지하자 귀국할 수밖에

49) 志賀重昂(1887) 『南洋時事 増補訂正4版』 丸善商社、pp.202-203.

에 없었다. 93년에는 규슈(九州) 지역, 조선의 경상·전라 연해에서 전복 어업, 94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돗토리·시마네현의 연해에서, 98년에는 오키수산조합의 위탁을 받아 건착망어업에 종사, 1900년에는 돗토리현 수산시험장의 위탁을 받아 참치 어업을 하는 등 수산업자로의 길을 걸었다.

나카이가 독도에서 처음 어로 활동을 시작한 해는 1903년이었고, 독도 어장은 전복 등의 해산물도 있었지만, 강치 어업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독도에는 일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강치를 포획하고 있음을 보고, 독점적으로 강치 잡이를 할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1904년 9월 「임대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영토 편입을 각의 결정했고, 이를 받아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독도를 편입한 것이다.⁵⁰⁾

독도를 편입한 시마네현은 당해 8월 마쓰나가 다케키치(松永武吉) 지사가 직접 현직원과 현경찰 3명을 데리고 독도 시찰을 했다. 이때 새끼 강치 3마리를 생포하여 돌아와 현청의 연못에 사육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마리 모두 죽었다고 한다. 죽은 강치는 박제를 하였는데, 이 강치 박제품은 현재 시마네현 이즈모(出雲) 고교, 현립다이샤(大社) 고교, 현립마쓰에북(松江北) 고교에 보관되어 있다.⁵¹⁾

시마네현은 그 다음해(1906) 3월, 각 방면의 대표 45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구성하여 독도조사를 시행했다. 단장은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였다. 이 시찰단에 나카이와 오키하라가 참여한 것이다. 이때 이미 시마네현에서는 나카이를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한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카지마가 나카이를 소개할 때 독도의 경영자로 소개했고, 독도의 전문가로서 시찰단으로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독도에 대한

50) 田村清三郎(1965)『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40-41.

51) 杉原隆「鬱陵郡守沈興澤と島根県調査団」『杉原通信「郷土の歴史から学ぶ竹島問題」』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sugi/take_04g19.html

강연(이야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마네현은 1906년 6월에서야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 허가를 정식으로 내렸는데, 나카이가 희망한 독점 형태가 아니라 나카이를 포함한 4명에게 강치 어업을 허가하였으며,⁵²⁾ 그들은 합자회사를 설립, 공동경영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11년까지 1만4천두의 강치를 포획하여 강치 멸절의 원인을 제공했다.⁵³⁾ 그는 1907년에 이미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복하며 새로운 어장을 찾아다녔고, 1908년에는 치시마千島 외 8島에 유료사용 허가를 받는 등 새로운 수익을 찾고 있었다. 또한 1909년에는 치시마 방면으로 강치, 물개 포획을 계획하고, 주력을 독도에서 치시마열도로 옮기게 되었다.⁵⁴⁾ 1915년에는 독도의 강치어업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아들 요이치(養一)에게 이양했는데, 요이치도 1929년에는 독도 어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나카이는 도쿄 상경 이후, 거부의 꿈을 안고 실업의 길로 들어섰다.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오가사와라島나 해외 도항이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1903년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시작했다. 수많은 서식하고 있는 강치를 보고 강치가 오가사와라島의 아호도리, 즉 돈별이(利源)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후 독점 어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시마네현은 독점이 아닌 4명에게 독도 강치어업권을 허가한 것이다. 나카이의 「임대청원서」를 토대로 영토편입을 단행한 시마네현은 나카이를 1906년 3월 독도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독도의 경영자로 칭하였지만, 바로 3개월 뒤인 6월에 독점이 아닌 4명에게 강치어업권을 허가함에 따라 본인이 희망했던 거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34년 4월 26일 사망했다.

52) 田村清三郎編(1953)「海驢漁業許可願」 및 「島根県農第1926号」『竹嶋』竹島資料7-6、隠岐支庁の「竹島」並に「竹島一件書類」、p.56. 5월 20일자 4명(中井養三郎、加藤重蔵、井口竜太、橋岡友次郎)의 명의로 강치 어업 허가신청서를 내었고, 시마네현은 6월 5일자로 허가를 내린다(島根県農第1926号).

53) 中村一恵(1992)「悲劇の海獣=ホンアシカ」『海洋と静物』 Vol 14-No3, p.7.

54) 田村清三郎(1965) 前掲書, p.99.

나카이가 독점 어업을 위해 정부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할 때, 「임대청원 설명서」도 함께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강치 보호방법」 「강치 군집에 미치는 포획경쟁의 폐해」 「강치 제조에 대한 포획경쟁의 폐해」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강치보호를 내세웠지만 이도 실행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는 “독도의 강치 보호 번식에 대해 초지일관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⁵⁵⁾ 나카이는 오가사와라島の 아호도리를 알고 있었다. 아호도리의 대량 포획은 멸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경쟁적인 포획은 멸절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에게 독점적인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카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길을 연 사람」, 「독도 영토편입 각의결정의 계기를 만든 공로자」라며 칭송하고 있지만, 나카이는 거부가 되고 싶었던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임대청원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게 하였지만, 실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얻지 못한 실업가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독도를 편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카이에 대해, 그가 직접 작성한 「이력서」와 오쿠하라가 작성한 「입지전」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 고찰했다. 나카이에 대한 연구는 독도 편입과 관련한 시점부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본고는 시점을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기 이전, 즉 그가 실업의 꿈을 꾸기 시작한 도쿄에서의 생활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았다.

55) 田村清三郎(1965) 前掲書, p.105.

특히 「이력서」에는 ‘오가사와라섬로 도항하다’ (a)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입지전」에는 ‘오가사와라섬로(건너가) 돈별이를 모색하다’ (a')라고 기술되어 있어, 두 자료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착목하였다. 먼저 오가사와라섬 도항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오가사와라섬이 나카이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나카이의 이력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오가사와라섬을 방문한 것으로 소개했지만, 당시의 선박 운항 상황, 그리고 관계자들 중심으로 승선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시골에서 상경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카이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가사와라섬로 건너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이력서」 외에는 오가사와라섬로 도항한 자료가 없으며, 오가사와라섬에서 활동한 자료, 혹은 기록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력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카이에게 있어서 오가사와라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가사와라섬 등지에서 다마오키 한에몬이 아호도리 포획으로 일약 거부가 되자, 제2의 다마오키를 꿈꾸는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북태평양의 무인도로 아호도리를 찾아 나서게 되면서, 북태평양 도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의 목표지가 되었다. 오가사와라섬은 메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편입하였지만, 이후의 이오토, 센카쿠제도, 미나미토리시마, 다이토제도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마침 이 시기에 상경한 나카이도 소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수학하던 한학을 접고 그의 진로를 바꾸었는데, 오가사와라섬은 그에게 실업의 길로 들어서게 한 곳이며, 거부가 되는 꿈을 꾸게 한 곳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나카이의 오가사와라섬 도항 시도와 독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가사와라섬, 호주 등의 해외 도항에 실패한 나카이는 잠수기 어업, 즉 수산업자로 변모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돗토리현, 전라경상 지역에서 수산업을 하던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시작한다. 나카이는 강치가 오가사와라섬의 아호도리, 즉 돈별이(利源)가 됨을 인식

하고, 독점 어업을 희망하는 「임대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때 함께 제출한 「임대청원 설명서」에는 경쟁 포획의 폐해, 강치 보호법까지 세세히 기재했는데, 이는 오가사와라島에서 아호도리의 대량 포획이 멸절로 이어지는 것을 학습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마네현이 나카이가 강력히 희망한 독점 어업이 아닌 4명에게 공동경영을 허가함으로써, 그는 거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작성한 「임대청원서」를 토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게 하였지만, 자신은 큰 실익을 얻지 못했으며, 또한 그가 제출한 강치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독도에서의 강치 멸절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각인되고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예영준(2012)『독도실록 1905』책발
- 奥原碧雲(1906)『竹島經營者 中井養三郎氏立志傳』
- (2005)『竹島及鬱陵島』バーベスト出版
- 島根県大百科事典編集委員会ほか編(1982)『島根県大百科事典』上巻, 山陰中央新報社
- 島根県(1953)『従明治参拾八年行政所官往復雜書類竹島漁獵合資会社』『涉外関係綴(竹島関係綴)』目録 No.005.
- 杉原隆『中井養三郎について』『杉原通信「郷土の歴史から学ぶ竹島問題」』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sugi/take_04g18.html
- 田村清三郎(1965)『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 伊藤政彦(2010)『奥原碧雲『竹島及鬱陵島』の和歌の特徴』日本文化学報第46輯』한국
일본문화학회
- 塚本孝(2007)『奥村碧雲竹島関係資料(奥原秀夫所蔵)をめぐる』『竹島問題に
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竹島問題研究会
- 中村一恵(1992)『悲劇の海獣ニホンアシカ』『海洋と静物』Vol 14-No3
- 羽毛文化史研究改編(1993)『羽毛と寝具のはなし—その歴史と文化』日本経済評論社
- 外務省條約局編(1933)『島嶼先占』『国際法先例彙輯』(2)外務省條約局
- 鹿島守之助(1970)『日本外交史3—近隣諸国及び領土問題—』鹿島研究所出版会
- 時野谷勝(1971)『明治初年の外交』『岩波講座 日本歴史15(近代2)』岩波書店
- 松村明編(1999)『大辞林』第二版, 三省堂
- 立作太郎(1933)『無主の島嶼の先占法理と先例』『国際法外交雑誌』第32巻8号
- 磯村貞吉(1887)『小笠原嶋要覽』
- 小笠原島庁(1888)『小笠原島誌纂』
- 大槻文彦(1876)『小笠原島新誌』須原屋伊八
- 東京府編(1929)『小笠原島総覽』
- 石原俊(2007)『近代日本と小笠原諸島—移動民の島々と帝国—』平凡社岩波新書
- 松尾龍之介(2014)『小笠原諸島をめぐる世界史』弦書房

平岡昭利(2012)『アホウドリと「帝国」日本の拡大—南洋に島々への進出から侵略へ—』明石書店

———(2015)『アホウドリを追った日本人』岩波新書

安岡昭男(1960)「幕末の小笠原諸島をめぐる国際関係」『国際政治』日本国際政治学会 72-82

———(2002)『幕末維新の領土と外交』清文堂

矢野暢(2009)『「南進」の系譜』千倉書房

長嶋俊介(2010)「島嶼と境界—日本国境形成史試論—」『国際政治』第162号, 日本国際政治学会編

M・C・ペリー—F・L・ホークス宮崎寿子監訳(2007)『ペリー提督日本遠征紀』角川ソフィア文庫

<Abstract>

Meaning of Yojaburo Nakai's attempt to travel to Ogasawara Island

Lee, So-ri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fact that Yojaburo Nakai, who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Japanese government's annexation of Dokdo, is described as “sailing to Ogasawara Island” (a) in his biography, whereas “Takeshima Manager Yojaburo Nakai's Position Paper” states that he “sailed to Ogasawara Island and sought to make money” (a’). We first examined the authenticity of the Ogasawara Island port call, and then considered what Ogasawara Island meant to Nakai and its impact on Dokdo.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ship's service to Ogasawara Island at the time, and the fact that it was mainly officials on board, it seems unlikely that Nakai, who had only just come from the countryside, would have traveled to Ogasawara Island as an individual. So why does Nakai list the first port of call for his unemployment as Ogasawara Island?

The Ogasawara Islands became a destination for those who dreamed of making a fortune when Tamaoki Hanemon became very wealthy from capturing Albatros, and as those who dreamed of becoming the next Tamaoki raced to the uninhabited islands of the North Pacific in search of Albatros, so did Nakai.

Nakai, who later worked in submersible fishing in Vladivostok, Tottori Prefecture, Jeolla Province, and Kyungshang, first started fishing for sea lions in Dokdo in 1903, and when he realized that sea lions were becoming an Albatros, or source of profit, for Ogasawara Island, he submitted a “lease

petition” to the government for exclusive fishing rights. The accompanying lease petition detailed the harms of competing harvests and how to protect sea lions, after learning from the Ogasawara Islands that mass harvesting of Albatros led to their extinction.

However, Shimane Prefecture denied Nakai his dream of a monopoly by licensing four people to fish for sea lions, rather than the exclusive fishery he had hoped for.

keywords : Nakai Yojaburo, Ogasawara Island, Tamaoki Hanemon, Albatros, territorial incorporation, Sea lions

이 논문은	2024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국내 울향(鬱香)의 분포 조사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울릉도 인식*

최재목**

〈목 차〉

1. 문제 제기
2. 우리 생활 속의 '울향' 인식
3. 국내 분포 노거수 울향의 현황
4. 마무리 - 향후 연구 과제를 겸해서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울릉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지에 분포되어있는 노거수 '울향'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울릉도 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적지 않은 향나무가 내지로 반출돼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에서 울향은 제례 등의 면에서 명품 향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의 생활사에서 향나무를 매개로 울릉도 인식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울릉도를 제외하고 국내에 자라고 있는 노거수 울향은 5건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울향은, 울릉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지의 것은 '4건'(추정을 포함하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2S1A5C2A0309035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3090355)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choijm@ynu.ac.kr

5건)이다. 다만 필자가 추가한 영주 문정동 향나무 1건을 더하면 모두 5건(추정을 포함하면 6건)이 된다. 향후 심층조사를 통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울릉도에서 향나무를 캐어왔다는 공식기록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떠내려왔다”는 우회적 표현이나 “가져왔다”는 구전 기록을 통해서 울향이 적지 않게 조선 내지로 유입되었다고 본다. 추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국내 노거수 울향의 현황, 특히 울진, 삼척, 영해, 포항 등 동해안 일대의 유교 문중 노거수에 대해 폭넓고도 정밀한 조사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울릉도 출입이 잦았던 일인(日人)들이 일본으로 반출돼 식재된 울향의 예를 돗토리현과 시마네현 등 일본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울릉도 향나무, 울향, 자단향, 수토관, 유교 제사

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울릉도를 제외한, 국내 노거수(老巨樹) 가운데 ‘울릉도 향나무’ 즉 ‘울향(鬱香)’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생활사에서 울릉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보통의 노거수는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향나무는 어떤가. ‘국가유산청’의 ‘국가 유산’ 중 ‘향나무’ 항목에 따르면,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나무·노송나무로도 불리며,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용도로 쓰이며, 정원수·공원수로 많이 심는다고 한다.¹⁾ 그런데, 조선시대에 동해안이나 이에 가까운 내륙의 마을과 양반가에 식재된 향나무는 대개 성리학(性理學)을 국시로 한 조선 사회의 ‘유교 제례’ 등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²⁾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main.html>) 참고.

2) 물론 절에서도 향을 피우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유교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공자의 유교를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유교에서 향나무 중시는 - 우리나라의 서원(예: 서산 송곡서원 등)에 심어 놓은 향나무의 예처럼 - 일단 “중국 산동성 공부(孔府) 대성전 앞 향나무 때문”이다. 향나무를 심음으로서 공자와 그 사상을 ‘계승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³⁾

둘째, 제사를 위해서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제사 의식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향이 생활필수품으로서 유통되었다는 것은 상식적 추론이다. 제사를 지낼 땐 으레 하늘에 떠도는 사자(死者)의 넋[魂]을 부르는 의식을 위해 향을 피운다[焚香降神]. 향나무는 제사에 지속적으로 향을 제공하는 은혜로운 존재이다. 제사가 잦은 종갓집, 궁궐, 향교 등에서는 살아있는 향나무를 조금씩 깎아내어 쓰며 자체적으로 향을 공급하기 위해 사당이나 집 근처에 향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었다.⁴⁾ 더구나 향나무에서는 향의 향기가 나기에 일상에서 부단히 향을 피우는 듯한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율릉도에서 자란 향나무 즉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자란 율향으로 제사용 향을 피우는 사람이 가장 효자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⁵⁾ 그래서 그런지 조선시대의 공·사 제향에서는 ‘자단향’만을 썼다고 한다.⁶⁾

3) 강관권, 「강관권의 생태문화이야기: 천년의 기억, 천연기념물 나무기행(51)-서산 송곡서원 향나무(1)-우리나라 서원 유일의 천년 기념물 두 그루 향나무」(2023.06.09.)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pk/knowledge] (검색일자: 2014.10.1.) 참조.

4) 즉 “옛날 종갓집에서는 고목 향나무 줄기에서 향내가 강한 속 부분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내 베로 써서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를 지낼 때면 향나무 토막을 얇게 깎아내어 불씨 담은 향로에 올려 사용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궁궐이나 서원 혹은 향교 등에는 향나무를 심어 특별히 가꾸고 보호했다. 창덕궁에는 700년이 넘는 향나무가 있는데 궁궐에서 각종 제사를 지낼 때 조금씩 잘라 썼던 것으로 추정한다. 서원 혹은 향교에서도 공자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 향나무를 많이 심었다.”[위성욱, 「학교와 관공서에 향나무가 많은 까닭은?...사실은 일본산 향나무」, 『중앙일보』 (2018.06.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75718] (검색일자: 2024.10.01)]

5) 두산백과 ‘영일 우각동(牛角洞) 향나무’ 항목[검색일자: 2024.11.25] 참고.

6) 한성훈, 「제례에 올리는 향: 향로와 향합」, 『우리문화신문』(2019.08.04.) 이 내용은 李圭景의 『五洲衍文箋散稿』에 나오는 「紫檀香辨證說」에 근거한다[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19765] (검색일자: 2024.10.01).

셋째, 유교와 기복적인 지역의 에토스(불교, 샤머니즘)와 습합에서 나온 일종의 ‘매향(埋香) 의식’의 세속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⁷⁾ 유교에서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향나무를 집 주변에 심음으로써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천지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쳐 액운을 몰아내고 길상의 기운을 부른다고 여겼다.

넷째, 집과 마을의 미적 풍광(조경과 경관)을 위한 것이다. 향나무는 “그 자태와 쓰임새 때문에 사대부들이 즐겨 가꾸고 사랑했다”고 한다.⁸⁾ 향나무는 노거수가 되면 될수록 그 운치와 꿈틀대는 모습에서 삶의 역동적인 운치와 품격을 느끼게 하며, 더욱이 가문의 오랜 역사까지 무언중에 그 자태를 통해 보여주는 ‘말 없는 해설자’ 역할까지 한다. 실제 집과 마을 근처에 심어진 향나무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전설을 포함한 이야기를 간직한다. 수령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곳에 살기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종택, 집성촌 등의 역사 및 구전(口傳)을 통해 그 단서를 얻는다.

다섯째, 생활에 필요한 도구, 고급 건축 자재, 약재 등의 쓰임새를 위한 것이다. 예컨대 이헌경(1719~1791)이 남긴 울릉도 단향침에 대한 오언절구 [鬱陵島檀香枕]가 있듯이 울릉도산 단향목으로 베개를 만들기도 했다.⁹⁾ 특히 울릉도의 향나무는 일본에서 건축의 바닥 자재나 책장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¹⁰⁾ 아울러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7) 예컨대 전라도 강과 바닷가 쪽에서는 조난, 사고 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해 안녕과 구원을 비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갯벌에 향나무를 묻었다 한다. 이것을 매향(埋香) 의식이라 한다. 영광 등 여러 곳에는 매향비(埋香碑)가 세워져 있다. 묻었던 향나무가 세월이 한창 지나 스스로 바다에 떠오르면 침향(沈香)이 된단다. 그 나무를 태우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데, 그런 향기처럼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는 미래불인 미륵이 이 세상에 올 것으로 믿었다.

8) 두산백과 ‘영일 우각동(牛角洞) 향나무’ 항목[검색일자: 2024.11.25] 참고.

9) 李獻慶(1719~1791)의 『良翁集』에는 ‘鬱陵島檀香枕’이라는 시가 있다. 이 ‘울릉도 단향침’은 조선후기 문신 학자였던 간옹(良翁)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이 72세(1790년) - 한성부관윤이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가 다음 해 사망하는데 그 당시 즉 말년 - 의 시로 보인다.

자단향은 비위 기능을 좋게 하여 몸을 가볍게 해주는[理氣和胃] 효능 때문에 약으로 쓰기도 했다.¹¹⁾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향나무는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제례 등을 이끌던

誰採海中根	늪가 바다 가운데에서 뿌리를 캐 와서
礪雕薦吾座	나의 침소 단향목 베개에 갈아 새겨 넣었더니.
炎蒸五六月	오뉴월 찌는 듯한 무더위에
與爾登樓臥	너와 함께 누각에 올라 누웠어라.

‘동북아역사넷’에서는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이현경(李獻慶 : 1719-91)은 울릉도산 단향목(檀香木)으로 만든 베개가 5,6월 찌는 듯한 더위에 눕기에 좋으면서 오언절구로 울릉도 단향침을 노래하였다. 이는 조선후기가 되던 일상생활 속에서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해설자: 장순순[http://contents.nahf.or.kr/id/NAHF.sd.d_0005_0010])(검색 일자: 2024.10.01)

- 10) 이에 대해서는 돗토리현의 향토사료인 『호키지(伯耆志)』, 岡島正義의 『竹島考』에 나오는 내용이 참고될 수 있다.

“간에이(寬永)14) 15년(1638) 2월 죽도(=울릉도) 향나무(梅檀)를 헌상하여 에도성의 니시노오마루(西御丸)의 책장, 서원(書院)의 바닥 판자의 재료로 하였다.”(『호키지(伯耆志)』 권4 / 송휘영 옮김,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2014), 22쪽)

“죽도(=울릉도)의 주된 산물은 전복(鮑)과 강치(海驢)였다. 전복은 거대하고 꼬치전복으로 가공하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고, 장군에 대한 헌상품으로써 귀하게 여겨졌다. 강치는 해안의 암벽에 서식하고 있어 그것을 총포로 쏘아 포획하여 그 모피와 기름을 취득했다. 기름은 등불로 사용되었다. 무인도화 되어 있던 죽도(울릉도)에는 잣나무, 황벽나무, 솔송나무, 동백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등의 거목이 무성하게 자라있었고 또 대나무는 일본의 것에 비해 크기가 컸다. 특히 향나무(梅檀)는 고급 건축 재료로 귀히 여겨져 1638년(간에이(寬永) 15) 에도성 니시노마루(西ノ丸)의 대궐(御殿)을 지을 때에는 오야무라카와 가문에게 죽도(울릉도)의 향나무를 바치도록 명하여 서원의 바닥이나 책장에는 그 목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재류도 대나무도 귀중한 산물이었다.”(岡島正義의 『竹島考』 / 송휘영,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2014), 109-110쪽)(맞춤 및 강조는 인용자)

- 11) 이시진, 『(신주해)본초강목 1-15』, (여일출판사, 2007) ;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 강병수 외, 『(원색)한약도감: 임상을 위한 한약활용의 필독지서』, (동아문화사, 2008) 참조.

양반층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애용품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조선에서 유교 제례를 위해 향이 중시되고 “향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향을 제조하는 장인인 ‘향장(香匠)’이 등장” 하고 “민가에서는 부인들이 향의 제작을 담당” 하였다고 한다.¹²⁾ 조정에서 유교 관료에게 향을 하사하기도 하고¹³⁾ “제전(祭奠)도…침향(沈香)을 사용하지 말고 자단향(紫檀香)으로 대용하도록 하라”¹⁴⁾는 등의 기록에서 향의 통제나 관리를 통한 일종의 문화통치마져 살필 수 있다. 나아가 2,3년 간격의 수토관¹⁵⁾을 통해서 울릉도 자단향(紫檀香)이 일정 규격으로 자른 토막 형태로 조선 내지로 유입돼 수토 결과의 증빙물로 지속적으로 조정에 진상되었다.¹⁶⁾

- 12) 하수민, 「조선 왕실 가례의 부용향(芙蓉香) 연구 -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文化財』 8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8), 225쪽.
- 13) 조선시대에 유학자 관료들에게도 - 예컨대 퇴계 이황의 경우에 “前賜段子香封物等”(李滉, 『陶山全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三, 587쪽, 「答子嵩」); “辭免右贊成乞回納段香狀”(『陶山全書』 · 一, 247-8쪽, 「答子嵩」)처럼 - 향(段子香, 子段香, 段香으로 기록됨. 잘라서 묶은 것인지 불분명)[『陶山全書』 · 三, 587쪽, 「答子嵩」; 『陶山全書』 · 四, 274쪽, 「答子嵩」]를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權五鳳, 『李退溪家書の總合的研究』, (中文出版社, 1991), 211쪽 참조]
- 14) 『正祖實錄』 10년, 병오(1786) 5월 15일(정사), 敎曰, “禮葬時, 冊印所用, 依年前下敎, 勿用金銀綾緞, 戊申壬申儀軌中, 以綾緞錄者, 代以綿紬. 祭奠, 非親祭, 勿用沈香, 代以紫檀.”
- 15) 수토관은 월송 만호(越松萬戶)와 삼척 첨사(三陟僉使)가 교대로 파견되었다. 그 목적은 섬 체류 왜인의 적발, 축출, 그리고 불법 체류 조선인의 쇄환이었다. 아울러 울릉도 토산물의 채취와 섬의 지형(圖形)을 그려 비변사에 상납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진상품에는 자단향(紫檀香), 청죽(靑竹), 가지어 가죽[可支魚皮], 석간주(石間朱) 등의 토산물이 포함되었다. 고종 20년(1883)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지고 개척이 진전되어 수토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고, 마침내 고종 31년(1894)에 공식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송희영,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의 주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日本文化學報』 第98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23) ; 백인기, 「삼척 울릉도도형에 해석에 대한 일 연구」, 『韓國古地圖研究』 제4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2); 신태훈, 『朝鮮時代鬱陵島搜討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등을 참조.
-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이미 상세히 밝혀져 왔다. 백인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백인기, 「삼척 울릉도도형에 해석에 대한 일 연구」, 『韓國古地圖研究』 제4권 제1호, (한

최근 조사해본 결과, 현재 거문도에는 울릉도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향이 남아 있기도 하다.¹⁷⁾ 이처럼 조선시대에 자단향이 국내에 유통되는 등 울릉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울릉도의 향이 일정 규격의 자른 형태로 조선 내지에 반입된 것은 흔히 알려져 있으나 ‘살아 있는 나무를 옮겨와서 심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자료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가까운 곳에서는 300년에서 500년 이상의 수령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울항이 다수 있고, 심지어 울릉도에서 ‘가져왔다’ ‘떠내려왔다’는 구전(口傳)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은 울항이 반입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3년이나 2년 또는 매년 1회 울릉도를 관리하는 ‘쇄환정책’ 내지 ‘수토정책’이 시행되어왔음¹⁸⁾을 감안한다면 울항이

국고지도연구학회, 2012); 신태훈, 『朝鮮時代鬱陵島搜討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등이 있다.

- 17) 거문도 동도리 박경문씨 소장의 경우 줄기의 가슴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큰 나무인 대경목(大徑木)이다.



[도판1: 울릉도산 제사용 향나무(거문도 동도리 박경문씨 소장)]

- 18) 이에 대해서 송휘영은 이렇게 말한다: “조선시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의 부속이던 울릉도·독도는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는 우산무릉등처 안무사, 무릉순심 경자관 등을 파견하여 순심(巡尋), 쇄출(刷出), 쇄환(刷還) 정책을 펼쳐 왔었다. 그러던 것이 1693년 안용복·박어둔의 피랍사건(울릉도쟁계)을 계기로 수토정책으로 변화한다. 조선 조정의 울릉도 관리정책에 대해 그 이전을 ‘쇄환정책’, 그 이후를 ‘수토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중

조선 내지로 상당수 반입돼 식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천연기록물 등의 향나무는 그 도판과 설명에 따르면 총 26건(부속국가유산 포함)이다. 이 가운데 울항으로 확인된 건은 7건이나 울릉도 2건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내지에 식재된 것은 ‘4건’ 정도(추정을 포함하면 5건)이다.

건수		명칭	분류	소재지	수령	울항 여부
전체	내지					
1		울릉 통구미(通九味) 향나무 자생지	천연기 념물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번지		울항 원종
2		울릉 대풍감(待風坎) 향나무 자생지	천연기 념물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번지		울항 원종
3	①	울진 후정리(後亭里) 향나무	천연기 념물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7-2번지	500년	울항
4		울진 화성리(花城里) 향나무	천연기 념물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190번지 외 1필	500년 추정	(울항?) 19)

략) 수토정책이 시작되는 초기 1694~1744년까지는 3년 1회 수토, 1745~1887년에는 2년 1회 수토, 1888~1894년에는 매년 수토가 이루어졌다. 3년 1회 수토에서 점차로 1년 1회 수토로 변화한 것도 울릉도 산물의 가치가 크게 인식되었다는 것과, 해운기술의 발전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삼척 영장과 월송만호의 윤희수토는 1694~1881년까지 실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월송만호 혹은 평해군수 겸 울릉첨사(도장)에 의한 단일 수토로 변화하였다.”(송희영,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의 주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日本文化學報』 第98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23), 157-8쪽.) 아울러 이에 대해서 신태훈, 『朝鮮時代鬱陵島搜討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등을 참조.

5	②	안동 석수암(石水庵) 향나무	시도자 연유산	경북 안동시 제비원으로 370-13 (안기동)	400년 정도 추정	율향 일종
6	③	예천 죽림리(竹林里) 향나무	시도자 연유산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2번지	300년 추정	율향
7	④	영해 경수당(慶壽堂) 향나무	시도자 연유산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길 28-13 (원구리)	?	율향

[표1: 우리 나라 내지 율향 분포]

이외에도 율향으로 추정되는 노거수가 몇 그루 있으나 여기서는 현재 확인이 가능한 율향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시간의 제한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포털’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국내 율향의 분포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 생활 속의 ‘율향’ 인식>을, 이어서 <국내 분포 노거수 율향의 현황>의 순서로 서술할 것이다.

2. 우리 생활 속의 ‘율향’ 인식

최근 일간지의 “율향, 제사 필수품 향에도 명품이 있다”라는 제목의 한 칼럼(조선일보, 2021.9.20.)을 통해 ‘율향’과 유교의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필 수 있었다.

19) 추정은 되나 추후 조사 필요.

아직도 문중 어른 제사에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전통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울향(鬱香)’을 명품 향으로 꼽는다.**^① 울릉도 향나무의 향이 가장 부드럽고 진하다. 다른 향나무의 향기와는 급이 다르다. 울릉도 향나무는 순탄하게 자란 나무가 아니다. 척박한 바위의 틈새에서 강한 비바람과 눈을 맞고 생존한 나무이다. 돌 틈에서 해풍과 폭설에 시달리며 큰 나무이다. 인간도 비바람에 시달린 사람들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나무도 시달리며 큰 나무들이 유독 향기가 강하다.

‘울향’을 ‘석향(石香)’이라고도 부른다.^② **울릉도 절벽 바위틈에는 수령 2000년이 넘는 향나무가 아직 남아 있다.**^③ **안동 장날에는 ‘울향 사세요’하고 외치는 행상도 많았다.**^④ **안동 선비 집안의 고문서들을 보니까 ‘담배 3근과 울향을 맞바꾸었다’는 기록도 있다. 울릉도 사람들은 담배가 귀했고 선비 집안에서는 명품향인 울향이 필요했던 것이다.**^⑤ 울진의 구산향에는 바람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풍軒(待風軒)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료들이 울릉도로 배를 타고 갈 때 순풍이 불어 오기를 기다리던 대기소였다. 울릉도까지의 해로는 대략 140km 정도. 순풍을 만나면 1박 2일. 풍랑을 만나 표류하면 4-5일도 걸리는 거리였다. **울릉도 사람들은 목숨 걸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 특산품인 울향을 가지고 와서 생필품과 바꿨다. 울릉도에서 육지에 나가 돈이 될만한 물건은 울향이었다. 옛그제 울진의 어느 선비 집안 후손이 보관하고 있던 울향을 나에게 선물하였다.** 태우지 않고 그냥 생으로 울향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가끔 코에 대고 맡아보니까 조선 선비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 같았다.²⁰⁾(밀줄 밋 강조, 번호는 인용자: 이하 같음)

위의 칼럼을 근거로 울향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오늘날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울향’을 명품 향으로 꼽는다.²¹⁾

20) 조용현, 「울향, 제사 필수품 향에도 명품이 있다 / [추석에 읽는 조용현 살롱], 『조선일보』(2021.9.20)

21) 현재 울릉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자단향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 ② ‘울향’ 을 ‘석향(石香)’ 이라고도 부른다.
- ③ 울릉도 절벽 바위틈에는 수령 2,000년이 넘는 향나무가 아직 남아 있다.
- ④ 안동 장날에는 ‘울향 사세요’ 하고 외치는 행상도 많았다.
- ⑤ 울릉도 사람들은 담배가 귀했고, 선비 집안에서는 명품향인 울향이 필요했기에, 서로 담배와 울향을 맞바꾸었다.

유교의 제사와 관련하여 본다면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에서는 울향을 명품으로 여기고, 안동 장날에는 울향을 많이 팔았다는 사실이다. 울향은 돌 틈에서 해풍과 폭설에 시달리며 자랐기에 그 향이 다른 향보다 부드럽고 진하다고 한다. 이렇게 돌 틈에서 자란 울향을 ‘석향(石香)’ 이라고도 부른다. 아울러 울향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울릉도 절벽 바위틈에 자라고 있는 수령 2,000년이 넘는 향나무이다.

울릉도 도동 해안절벽에 자라고 있는 이 향나무는 국내 최고령(1998년 지정 당시 2,000살 이상 추정) 나무로 알려져 있다.²²⁾

것이 진짜 울릉도 자단향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도판2: 울릉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단향]

22) 이에 대해서는 「경북도민일보」(2022.07.26.)[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_xno=490177](검색일자: 2024.10.01)참조.



[도판3: 울릉 도동 향나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어서, 『한겨레21』(1997.11.20.)에 실린 울향의 특징과 효용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울향(鬱香)이란 게 있다. 울릉도 남서쪽 바닷가 바위틈에 숨어 자란다는 자단향나무에서 나는 향이다. 그 향이 진하면서도 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향불을 피워도 나무가 탈 때 나는 매운 기운이 전혀 없어 향가운 데 극품으로 친다. ①옛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며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거문고 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한다. 지금은 전설처럼 까마득해진 우리의 향이다. 박희준(41)은 그 향을 찾는,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향도(香徒)다.(중략)

그는 직접 우리 향을 찾아나섰다. 먼저 선인들의 향방(香方)을 수소문했다. <규합총서> <산림경제> 등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매화향법, 구자향법 등의 향방을 거기서 찾아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향 문화가 번창했음을 알고 뿌듯할 수 있었다. ②선인들은 의례 때는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 향을 애용했다. 아이들 피부가 짓무를 때 발라주는 땀띠분도 향분이 있고, 여름밤에 피우던 모깃불도 모기쫓는 향이었던 것이다. 목욕통에 쑥을 넣는 것이며, 창포물에 머리 감는 일, 선비들이 화로에 향나무 조각이나 솔방울을 묻어두는 일, 송편을 빚어 먹는 일 따위가 모두 생활 속에 숨쉬는 향문화의 흔적이었다. (중략) 우리 향은 사람을 들뜨게 하고 유혹하는 서양의 향과 달리 사람을 차

분히 가라앉힌다. 차를 마실 때, 경전이나 시를 읽을 때, 서예를 할 때, 대화를 나누거나 거문고를 탈 때,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 향을 피운 것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③ 우리 향은 약이기도 하다. 울릉도 향나무, 솔잎, 솔방울, 쭉 등이 재료다. 배 고프면 먹어도 괜찮고 얼굴에 바르면 화장품이 되기도 한다. (하락) 23)

위 내용에서 전통 시대의 삶에 울향이 미친 주된 영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옛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며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거문고 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
- ② 선인들은 의례 때나 생활 속에서 향을 애용했다.
- ③ 향은 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에 울향이 몇백년 켜이나 된 노거수로서 유지돼 온 것은 그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3. 국내 분포 노거수 울향의 현황

조선시대의 수도 정책을 참고한다면, 삼척영장의 울릉도 수도 출항지로 삼척의 ‘정라향’ (=삼척향, 정라진)과 ‘장오리진’ (=장호향)에서 ‘죽변진’ (=죽변향), ‘울진포’ (=)로 변화하고, 18세기 말에 이르면 월송만호의 출항지인 평해의 ‘구산포’ (=구산향)로 일원화 된다.²⁴⁾ 이처럼 조선시대

23) 『한겨레21』 183호 「유강문 기자의 인물탐험/ 향도(香徒) 박희준」(한겨레신문사, 1997년11월20자)[[https://h21.hani.co.kr/hankr21/K_97BK0183/97BK0183_066.html#:~:text=%EC%9A%B8%ED%96%A5%20\(%E9%AC%B1%E9%A6%99\)](https://h21.hani.co.kr/hankr21/K_97BK0183/97BK0183_066.html#:~:text=%EC%9A%B8%ED%96%A5%20(%E9%AC%B1%E9%A6%99))](검색일자: 2024.9.1)

24) 송희영,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의 주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日本文化學報』 第98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23), 158쪽 참조.

에 동해안의 삼척, 울진, 평해를 통한 수토관의 출입이 3년, 2년, 혹은 1년 간격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지역과 그 주변(현재의 강원도, 경상도)에서 울향을 발견하는 것은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울진의 죽변항은 울릉도와 130km 정도로 국내에서 최단 거리에 있다. 향나무가 “해류를 따라 울릉도에서 울진으로 왔다”거나 누군가가 “가져왔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현재 울진 죽변면 후정리(後亭里)와 화성리(花城里)에 각기 노거수 향나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본다.

아래에서는 주로 ‘국가유산청’의 ‘도판’과 ‘설명’에 근거하여 강원도, 경상도 순으로 소개, 설명해보고자 한다.

① 울진 후정리(蔚珍 後亭里) 향나무



[도판4: 울진 후정리 향나무]

“바닷가 도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 울진 죽변리의 향나무는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밑동에서부터 가지가 2개로 갈라져 있다. 한 가지는 높이가 11m, 둘레 1.25m이며, 다른 가지의 높이는 10m, 둘레가 0.94m이다.

향나무 옆에는 서낭당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울릉도의 향나무가 이곳까지 떠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이 향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서 민속학적·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이 나무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울릉도의 향나무가 이곳까지 떠내려온 것”이라 하며,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수령은 “500년 정도”로 추정한다.

이어서 ‘울진 화성리(花城里) 향나무’도 언급해둔다.



[도판5: 울진 화성리 향나무]

마찬가지로 ‘국가유산청’의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3.5m, 둘레 4.47m이다. 마을 뒷편 산언덕에 자라고 있으며 언제 누가 심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나무 전문가인 강판권 교수는, 이 나무의 수령을 500살로 할 경우 “1524년경 누가 심었을 것”이고 이 마을을 일군 성씨의 유교 제례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²⁵⁾

25) 강판권의 생태문화이야기(<https://contents.premium.naver.com/kpk/knowledge/contents/240412205155706rf>)(검색일자: 2024.10.1)

‘국가유산청’의 설명에는 화성리 향나무를 울향이라 추정하는 언급이 없지만, 인터넷의 다른 한 설명에는 아래와 같이 후정리의 것과 동일한 계통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울릉도 향나무와 울진 죽변의 두 그루 향나무(*후정리, 화성리: 인용자)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 울릉도에는 향나무 자생지가 있고, 도동항에는 2,500 여년된 향나무가 있다.

죽변은 울릉도와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항구이고, 또 이전부터 어업등으로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죽변의 향나무 두 그루도 울릉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 관련이 있다면, 500여년 전에도 울진과 울릉도 사이에 사람들이 오간 증거가 된다.²⁶⁾

② 안동 석수암(安東 石水庵) 향나무



[도판6: 안동 석수암 향나무]

“안동 석수암 향나무의 나이는 4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석수암을 처음 세우면서 심었다고 한다. 보통은 정자나 사당의 뜰에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는 산의 경사면에 심어져 있다. 나무의 가지가 나뉜 것인지 합쳐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보기 드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로 서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26) <http://wangpicheon.org/wp-lifeandlandscape/wp-naturalmonument/wp-chinesejunipertree/wp-natural-chinesejunipertree.htm>(검색일자: 2024.10.1)

피지면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 석수암 향나무는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향나무의 일종이 변하여 달라진 것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커서 품종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물론 위의 설명만으로 울향이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향나무의 일종이 변하여 달라진 것”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울향 계통’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예천 죽림리(竹林里) 향나무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에는 예천 권씨 초간공과 종택이 있는데, 이 고택은 초간 권문해의 할아버지 권오상이 1589년에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이 고택 앞에는 1,700년경에 심었다고 하는 울향(鬱香)이 있다. ‘국가유산 청’에 따르면 이렇다.



[도판7: 예천 죽림리 향나무]

“예천 죽림리 향나무의 나이는 3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0m, 둘레 0.6m로 울향(鬱香)나무라고 불리고 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권오상이라는 사람이 울릉도로 유배당했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향나무로 이 마을을 개척할 때 연못가에 심었다고 해서 울향

나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예천 죽림리 향나무는 오랜 세월 대수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내온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참고로 예천군에서 세운 2010년도의 해설에서도 위와 같이 되어 있었다.



[도판8: 예천 죽림리 예천 권씨 초간공과 종택 앞의 울향(왼쪽)과 2010년도 예천군의 해설(오른쪽)27]

이 향나무는 나이 약 300년으로 추정되는 노목으로 높이 10m, 가슴높이의 둘레가 0.6m이고 이 지방에서는 울향이라 부르는 나무이다.

이 나무를 울향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 마을을 개척할 때 무오사화(戊午史禍)에 연루되어 울릉도로 유배당했던 권오상(權五常)이 돌아오면서 가져다 연못가에 심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향나무는 처음에 심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대수마을과 영고성쇠를 함께한 전설의 나무이다.

여기서는 “지방에서는 울향이라 부르는 나무”로 “처음에 심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하였다. 그러나 ‘울향으로 전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 사실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은 권오상이라는 인물이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울릉도로 유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 울릉도로 유배를 보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27) 박재봉, 「예천죽림리향나무-경상북도기념물 제110호/2010.10.7.」(<https://pjb1223.tistory.com/13349186>)(검색일자:2024.11.01)

점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최근(2022년)의 예천군청 안내문²⁸⁾에는 “전설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전의 “울릉도로 유배당했던”이라는 부분을 “전라남도 해남으로 귀양을 갔다”고 수정하였다. 아울러앞선 “지금의 향나무는 처음에 심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라는 구절을 “처음에 심었던 울릉도 향나무의 후손으로 보인다”로 고쳤다.



죽림리 향나무는 예천권씨 초간공과 종택(국가건축문화재) 및 별당(보물) 입구 앞쪽 연못가에 있는 노거수(老巨樹)로, 일명 울향(鬱香) 나무라고 불린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6m, 줄기 둘레가 2.5m 정도이고, 수령은 300여 년으로 추정한다.

전설에 따르면 죽림리 대수마을의 예천권씨 입향조(入鄕祖)인 권오상(權五常)이 무오사화(戊午史禍) 때 전라남도 해남으로 귀양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울릉도 향나무를 가져다 심었다고 한다. 지금의 죽림리 향나무는 권오상이 처음에 심었던 울릉도 향나무의 후손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대수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이 나무는 오늘날까지 예천 권씨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도판9: 예천 죽림리 향나무에 대한 최근(2022년) 예천군청의 안내문]

28) 예천 예천권씨 초간공과 종택과 별당(보물)[<https://dapsa.kr/blog/?p=64374>](검색일자: 2024.11.1)

④ 영주 문정동(文亭洞) 향나무

위(③)에서 권오상(權五常)이 “울릉도에서 가져와 심었다” 는 향나무 관련 이야기는 더 유포돼 있다. ‘영주 문정동(文亭洞) 향나무’ 의 경우이다.

이 향나무는 마을 안쪽 삼락당(三樂堂)으로 불리는 고택 앞에 있는데, ‘국가유산청’ 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법 잘 알려진 울향이다.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 「영주 여행 명필 한석봉의 글씨가 새겨진 한정마을 ‘하한정’ 」(2022.8.3.)이라는 글과 이에 포함된 사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고(嘯臯) 박승임(朴承任, 1517-1586)이 1560년대 이곳(=영주 문정동)에 터전을 열어 향나무를 심고, 정자를 지어 ‘하한정(夏寒亭)’이라 하였는데요. (중략)

하현정 앞에는 울릉도 향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요. 말을 매어 두기도 했다는 향나무는 (소고가) 1571년 7월 황해도 관찰사로 제수되어 가기 전에 심었다고 하네요.

소고(=박승임) 선조의 처삼촌인 권오상(權五常, 예천인, 1475-1506)이 무오사화(戊午史禍, 1498 연산 4)에 연루되어, 울릉도로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온 3그루 중 1그루로 예천 본가에서 옮겨다 심은 것이라 합니다.”²⁹⁾(자구 추가 및 수정: 인용자)



[도판10: 영주 문정동 향나무]

29) 「영주 여행 명필 한석봉의 글씨가 새겨진 한정마을 ‘하한정’」(2022.8.3.)(https://blog.naver.com/yeongju_city/222838122882)(검색일자: 2024.11.1)

소고 박승임은 퇴계 이황의 제자이다.³⁰⁾ 박승임의 처삼촌이 바로 권오상인데, 이곳 향나무는 권오상이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온 세 그루 중 한그루”를 “예천에서 옮겨다 심은 것”이라 전한다. 그렇다면 세 그루 중 두 그루는 확인된 셈이며, 한 그루의 행방은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⑤ 영해 경수당(慶壽堂) 향나무

국가유산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사진은 게시되어 있지 않음)

“영해 경수당의 향나무는 경수당 종택 정원 연못가에서 자라고 있으며, 나이는 알 수 없다. 줄기의 일부가 약간 말라 죽었으나, 나이에 비해 잘 자라고 있는 편이다.

유래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경수당을 지은 박세순 장군이 약 300년 생 향나무를 울릉도에서 옮겨다 심었다고 전해진다.

영해 경수당의 향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내온 나무로, 현재 박응대씨가 관리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장수로 활약한 경수당 박세순(1539~1612) - 무안박씨(務安朴氏) 영해파 입향조인 박지몽(朴之蒙)의 손자 - 이 지은 경수당(慶壽堂) 종택(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에있는 울향 나무는 ‘700년’ 된 것이라 한다. 이 나무는 “원래 울릉도에 자라고 있던 약 300년생 향나무를 경수당이 이식하였다”고 전한다.³¹⁾

30) [한국의 보호수 ①경상북도편] 영주 문정동 향나무(92)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2021.09.07.)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45>)

31) 사진과 글 내용은 안영암, 「문화유산답사기 / [영덕/영해] 700여 년된 향나무가 있는 ‘경수당 종택’」(2013.3.12) (<https://ayam3390.tistory.com/entry/%EC%98%81%EB%8D%95%EC%98%81%ED%95%B4-700%EC%97%A4-%EB%85%84%EB%90%9C-%ED%96%A5%EB%82%98%EB%AC%B4%EA%B0%80-%EC%9E%88%EB%8A%94-%EA%B2%BD%EC%88%98%EB%8B%B9-%EC%A2%85%ED%83%9D-8880257>)에 따른다(검색일자: 2024.10.1)



[도판11: 영해 경수당 향나무]

원래 울릉도에 자라고 있던 ‘약 300년’ 된 향나무 이식하였다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⑥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상 확인된 것에 한정하여 설명하였지만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포항 청하 ‘허우리 향나무’의 경우이다.

〈경북일보〉³²⁾ 기사 「포항시, 청하면 용두1·2리 ‘허우리 향나무’ 안내판 제막식 개최」(2023.01.27.(금), 17면, 박성일 기자)에 따르면 이 향나무는 “울릉도에서 가져다 심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구전 설화에 따르면 향나무 소재지는 한 마을이었으나 오래전 큰 홍수로 새마리(용두1리), 허우리(용두2리)로 나뉘었으며, 이때 이별하게 된 북촌 영감과 광명 할머니의 만남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 이장이 300여 년 전 울릉도의 향나무 묘목을 가져와 이 자리에 심었다고 한다.”

그런데 포항시가 세운 안내판에는 울향이 아니고 ‘가이즈카 향나무’로

32)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706>)(검색일자: 2024.10.1)

되어 있다. 신문의 기사내용과 안내판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도판12: 포항시 청하면 용두1·2리 ‘허우리 향나무’ (좌)와 포항시의 설명(우). 사진은 필자(2024.11.22.)]

가이즈까(貝塚) 향나무는 일본에서 들여온 왜 향나무로 일본인 가이즈까라는 사람이 따끔거리는 바늘잎을 개량하여 원예종으로 만든 향나무로 알려져 있으나³³⁾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냥 향나무의 일종으로 일본 특산종이 아니라고 한다.³⁴⁾

여하튼 포항 ‘허우리 향나무’ 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영일 우각동 향나무³⁵⁾, 경주 양동마을의 향나무³⁶⁾ 등도 울향인지 아닌지 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33) 학명은 *Juniperus chinensis* ‘Kaizuka’이며, 일본어로 카이즈카이즈키(貝塚息吹). ‘왜향나무’, ‘나사백’라고 부른다. 향나무에 비해 키가 작고, 바늘잎이 거의 없으며 중심 줄기가 마치 ‘나사’처럼 나선형으로 빙빙 꼬여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념식수 행사에서 가이즈카 향나무가 많이 심어졌다고 한다.

34) 연합뉴스(2018.07.08.) 「“가이즈카향나무는 향나무 일종...일본 특산종 아냐」(<https://www.yna.co.kr/view/AKR20180708022100005>)(검색일자:2024.10.01)

35) 신광면 우각리 소재 오선정(五宣亭) 담장안에 있는 향나무로 수령이 400여년이나 된다. 높이가 21m이고 주변 자연경관이 좋으며, 현재 여주(驪州) 이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36) 양동의 향나무는 중요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된 월성 손씨 종가의 사당 앞에 위치한다. 나무의 나이는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4. 마무리 - 향후 연구 과제를 겸해서 -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내지에 분포되어있는 노거수 ‘울향’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조선시대에 울릉도 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적지 않은 향나무가 내지로 반출돼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에서 울향은 제례 등의 면에서 명품 향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의 생활사에서 향나무를 매개로 울릉도 인식이 일반화돼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현재 울릉도를 제외하고 국내에 자라고 있는 노거수 울향은 5건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울향은, 울릉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지의 것은 ‘4건’ (추정을 포함하면 5건)이다. 다만 필자가 추가한 영주 문정동 향나무 1건을 더하면 모두 5건(추정을 포함하면 6건)이 된다. 향후 심층조사를 통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울릉도에서 향나무를 캐어왔다는 공식기록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떠내려왔다”는 우회적 표현이나 “가져왔다”는 구전 기록을 통해서 울향이 적지 않게 조선 내지로 유입되었다고 본다. 추후 이에 대한 문헌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이번 논의를 토대로, 국내 노거수 울향의 현황, 특히 울진, 삼척, 영해, 포항 등 동해안 일대의 유교 문중 노거수에 대해 폭넓고도 정밀한 조사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나아가 울릉도 출입이 잦았던 일인(日人)들이 일본으로 반출돼 식재된 울향의 예³⁷⁾를 돗토리현과 시마네현 등 일본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37) 송희영,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2014)에서도 울향을 캐어 옮겨왔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참고문헌】

李滉, 『陶山全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李獻慶, 『艮翁集』

『正祖實錄』

강병수 외, 『(원색)한약도감: 임상을 위한 한약활용의 필독지서』, 동아문화사, 2008.

權五鳳, 『李退溪家書의 總合的研究』, 中文出版社, 199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송희영,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2014.

이시진, 『(신주해)본초강목 1~15』, 여일출판사, 2007.

송희영,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의 주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日本文化學報』 第98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23.

백인기, 「삼척 울릉도도형에 해석에 대한 일 연구」, 『韓國古地圖研究』 제4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2.

신태훈, 『朝鮮時代鬱陵島搜討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하수민, 「조선 왕실 가례의 부용향(芙蓉香) 연구 -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文化財』 8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8)

강관권, 「강관권의 생태문화이야기: 천년의 기억, 천연기념물 나무기행(51)-서산 송곡서원 향나무(1)-우리나라 서원 유일의 천년 기념물 두 그루 향나무」 (2023.06.09.)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main.html>)

조용현, 「울향, 제사 필수품 향에도 명품이 있다 / [추석에 읽는 조용현 살롱], 『조선일보』(2021.9.20.)

「경북도민일보」(2022.07.26.)

「경북일보」(2024.10.1.)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lleungdo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a Survey of the Distribution of Ulhyang in Korea

Choi, Jae-Mok

This paper is a basic review of the 'Ulhyang' of Nogsu(the old giant tree) distributed in the inland areas of Korea, excluding Ulleungdo.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Ulleungdo was frequently visited, it can be seen that a large number of juniper trees were taken out to the interior and plant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the Confucian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Ulhyang was popular as a luxury incense in terms of rituals. This shows that in the history of life in Joseon, the perception of Ulleungdo was generalized through the medium of juniper trees.

Currently, there are only about 5 cases of Nogsu Ulhyang growing in Korea, excluding Ulleungdo. In other words, there are 4 cases of Ulhyang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re are 4 cases (5 if you include estimates) in the interior of Korea, excluding Ulleungdo. However, if we add the 1 case of the feudal Munjeong-dong juniper tree that I added, it will be a total of 5 cases (6 cases if you include estimates). It is possible that it will be added through in-depth investigation in the future.

Although there is currently no official record of the harvesting of juniper wood from Ulleungdo, it is believed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incense was brought into Korea through the roundabout expression "drifted away" or oral

records of "brought." This needs to be verifi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discuss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road and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try's Noge-su Ulhyang, especially the Confucian Munjung Nogesu in the East Sea area such as Uljin, Samcheok, Yeonghae, and Poha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examples of Ulhyang, which was brought to Japan by Japanese people who frequently visited Ulleungdo, and were planted, through field trips to Japan, such as Tottori and Shimane prefectures.

Keywords: Ulleungdo juniper tree, Ulhyang, Jadanhyang, Sutoguan, Confucian ritual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 검토

도 시 환*

〈목 차〉

- I. 머리말
- II.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와 다치 사쿠타로의 역할
- III.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에 대한 검토
- IV.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에 대한 검토
- V. 다치 사쿠타로의 클리퍼튼섬 판례평석에 대한 검토
- VI.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 전승의 문제점 검토
- VII. 맺음말

〈국문초록〉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120년과 이를 기념하는 2005년 '죽도의 날' 선포 20년에 더하여 을사늑약 강제 120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이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으로서 합법이며, 한국에 대한 보호·병합과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를 비롯하여 이와 연계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1904.3~1906.2)는 보호국론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일제식민주의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일종의 관변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기획한 아미자 엔지료(山座丹次郎)가 정무국장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 / drdoh@naver.com

(1901~1908) 재임시 구성한 임시추조위원회는 대리 개전론을 주창한 '동경대 7박사'가 아닌 中村 進午, 寺尾 享, 高橋 作衛, 立作 太郎, 倉知 鉄吉 등 전원 국제법연구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한종료까지 유일하게 취조위원의 책무를 완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위무성 고문으로서 일제식민주의 침탈의 법리를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을 중심으로 국제법 법리 왜곡을 검토하였다.

다치 사쿠타로는 일제식민주의 영토취득의 권원이자 실효적 지배의 법리로서 무주지 선점론을 제시함으로써,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전 한국 정부가 공포한 1952년 1월 18일 평화선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4차례에 걸친 구상서 이후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인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의 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하면,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은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을 필두로, 우에다 도시오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과,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와 나가노 데쓰야로 이어지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 계보 가운데, 특히 대체적 권원론을 주창한 다이주도 가나에와 역사적 권원론과의 절연을 전제로 한일간 국제법 관계를 주창한 나가노 데쓰야 등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가 무주지 선점의 연혁으로 소개한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영역취득의 방안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논고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던 입장에서 통고의무에 대한 부정으로 전환한 입장 역시 나가노 데쓰야의 논고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에 대해 검토하면, 대한제국의 근대적 입법으로써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1900년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성된 권원에 입각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하에 사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주지로 규정하여 선점 및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완성된 권원에 입각하여 확립된 타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영역주권의 취득인 선점의 통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국이 있다면 승인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점 자체가 원시취득이므로 통고가 불필요하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국 또는 제3국의 승인 또는 거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고는 영역취득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독도의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국인 조선에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에 오카섬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통지한 것은 통고요건의 위반이다.

다치 사쿠타로는 독도침탈과 관련하여 무주지 선점을 직접 결부하지는 않으나, 무주지 선점이 유럽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취득 방법으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제기하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서 일제의 팽창주의와 일본형 법실증주의를 주창함으로써 기축한 한국 식민지화 토대의 구축을 주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인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치 자신이 역할을 포기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임무에 임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변명을 전제로 일본 정부로부터의 엄격한 요청에 응해 완벽하게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은 결국 대조선 침탈정책의 토대로서 국제법을 동원했다는 것에 다른 아닌 바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 왜곡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침탈, 일제식민주의, 일본국제법학회,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 다치 사쿠타로, 무주지 선점, 통고 의무, 클리퍼튼섬 사건, 국제법적 권원

I. 머리말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120주년을 맞이하며, 1905년 독도침탈과 강제적인 보호 및 병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국제법학회가 제시한 정책방안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1905년 한국의 독도주권 침탈 전후 국가실행에 있어, 1897년 3월 설립한 일본 국제법학회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학회와 연계한 기밀조직인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외정책에서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국제법 법리를 왜곡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규명하였다.¹⁾

1) 도시환,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적 법리 검토」, 『독도연구』 제35호, 2023, 69~106쪽. 본 연구는 2023년 연구성과의 후속연구이다. 본 연구는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당시의 일본국제법학회와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된 외무성 기밀조직인 임시취조위원회의 국제법 법리 왜곡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종료시까지 유일한 취조위원으로서 임무완수라는 평가와 함께 1943년 사망시까지 외무성 고문으로 활동한 다치 사쿠타로의 독도침탈 관련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에 대한 검토이다. 양 논고가 연계된 주제의 연구성과임을 밝힌다.

요컨대, 일본 국제법학회와 연계된 임시취조위원회(1904.3~1906.2)는 일본의 대륙침략의 전제로서 1905년 독도침탈을 전후하여 대조선 침략을 위한 정책과 논리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문제의 기저에 일제식민주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규명이 긴요한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1905년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기획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²⁾가 정무국장(1901~1908) 재임시 구성한 임시취조위원회 관련 자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³⁾ 임시취조위원회는 1903년 6월 10일 대러 개전론을 주장한 ‘동경제대 7박사’(戸水寛人, 富井政章, 小野塚喜平次, 金井延, 中村進午, 寺尾享, 高橋作衛)가 아닌 中村進午, 寺尾享, 高橋作衛, 立作太郎, 倉知鉄吉 등 전원 국제법연구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소속 국제법학자군을 중심으로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을 검토하였다.⁴⁾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05년 6월 중도사임한 학자들과 달리 다치 사쿠타로는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침탈의 법리를 포괄하여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임시취조위원회의 기한종료까지 유일하게 책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치 사쿠타로는 1943년 사망시점까지 외무성 고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⁵⁾ 역설적으로 대조선 침략정책의 토대로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을 주도함으로써 후속 국제법 권원 연구의 국제법 법리 왜곡을 선도하여 주창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치 사쿠타로의 광범위한 저술 가운데 독도침탈 관련 논저를 중

2) 長谷川峻, 『山座圓次郎：大陸外交の先驅』, 時事新書, 1967; 一又正雄, 『山座円次郎伝：明治時代における大陸政策の実行者』, 原書房, 1974.

3) 야마자 엔지로는, “외교관의 금기로 일기 포함 기록 금지”를 동향의 문하생인 히로타 코오키[広田弘毅]에게도 강조한 사실에서 자료 부재의 원인이 확인되고 있다. 服部龍三, 『広田弘毅 — 「悲劇の宰相」の実像』, 2008, 28쪽.

4) 도시환, 2023, 79~80쪽.

5) 高橋力也, “立作太郎以後：戦時期外務省における法律顧問設置構想”, 『国際法外交雑誌』 116(3), 2017, 118쪽.

심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직전 한국 정부가 공포한 평화선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4차례의 구상서 중 고유영토론이 최초 등장하는 1962년 이후 다이주도 가나에⁶⁾ 등 후속 권원 연구자⁷⁾에게 어떻게 계승·변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요컨대, 1905년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당시 1962년 일본 정부의 구상서에서 최초 주장한 고유영토론의 부존재 등이 입증됨에도, 독도침탈과 강제보호·병합의 침략 연계성 부정⁸⁾ 및 독도침탈의 국제법적 합법성 주장⁹⁾과 관련하여, 일제식민주의 정책을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와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대표위원이자 외무성 고문을 역임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와 다치 사쿠타로의 역할

1. 일본국제법학회의 설립

일본국제법학회는 그 설립을 통해 일본에서의 국제법 발달의 일대 지표가 됨으로써 “국제법 연구의 발달에 관하여 공헌하기” 위해, 회원 중 외

6) 太壽堂鼎,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1998, 17-76쪽.

7)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1963)’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1965)’,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1966)’,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2006)’,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실효적 권원론(2007)’ 등이 있으며, 이후 본원적 권원론에 입각한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 등이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한다. 도시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제29호, 2020, 201-212쪽.

8) 塚本孝,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竹島をめぐる」, 『東アジア近代史』 제14号, 2011, 52-67쪽.

9) 中野徹也,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2012, 第61卷 第5号, 113-166쪽.

무 관료는 “외교의 기무(機務)를 맡아보고”, 회원 중 일부는 “국제법 취조(조사)위원으로서 현안문제에 관하여 그 의견을 제출” 하였다.¹⁰⁾

일본국제법학회는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나아가 국제법을 전제로 인류사회에 대한 정의와 인도의 원칙 등의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제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한국의 주권침탈과 대륙침략 과정에서 확인되었다.¹¹⁾

2.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설치

1903년 6월 10일 대러 개전론을 주장한 ‘동경제대 7박사’ 대신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는 기밀조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었으나, 일본국제법학회의 발기인이었던 다카하시 사쿠에가 다음과 같이 신문에 투고함으로써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¹²⁾

“오늘날 일본에서는 정부 측과 민간이 함께 국제법의 문제에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 연구 정도도 아주 정밀하다……. ……일본이 이 법의 연구에 관해서 장족의 진보를 얻은 것은 청일전쟁 후이다. 오늘날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층 연구 정도를 높였다……. 오늘날에는 러일전쟁 시에 제반 국제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뿐 아니라 보통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 판단하게 된 것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외무성은 외교에 노련한 사람 또 국제법에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에 우리는 전문가를 망라하여 취조과라는 것을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큰

10) 田中愼一,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1)」, 社會科學研究□29-3,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1977, 55쪽.

11) 도시환, 2023, 78쪽.

12) 高橋作衛, 『日本における國際法研究の進化』, 『東京日日新聞』, 1904년 11월 10일.

문제에 관해서 허회겸양(虛懷謙讓)으로 의견을 구하는 일은 아량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국사를 하나하나 살펴서 책임을 중히 여기는 진정성있는 행위라고도 해야 한다. 우리는 외무가 이러한 진정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국사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 위정(爲政)의 진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정성있는 생각은 전후에도 계속되어 외무성에 학자 단체의 취조기관을 계속해서 조직하여 매우 치밀하게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다카하시 사쿠에는 일본에서의 국제법 연구가 청일전쟁 후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고, 러일전쟁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통해 일본이 발발한 전쟁에 국제법이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문제를 중시하게 되었고, 특히 러일전쟁에서의 ‘제반 국제문제’에 직면한 외무성이 ‘국제법학자를 망라한’ ‘취조과’를 설치하고, ‘국제적인 큰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법학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국사에 종사하는” 외무성의 태도는 “일본 위정의 진보”이며, 외무성에 “학자 단체의 취조기관”을 조직하고 “매우 치밀하게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유익한 것으로 평가한다.¹³⁾

다카하시 사쿠에를 통해 알려지게 된 임시취조위원회는 결국 러일전쟁에서의 국제법상의 문제들을 일본에 유리하도록 해결하기 위해 외무성과 국제법학자간 연계의 필요성이 결부된 기밀조직으로, 다카하시 사쿠에는 외무성이 국제법학자와 조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국제법학자 입장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⁴⁾

3. 임시취조위원회와 다치 사쿠타로

13) 田中愼一, 앞의 논문, 60~61쪽.

14) 도시환, 2023, 80~81쪽.

외무성이 사령(辭令)(1904년 3월 5일)을 통해 설치한 ‘임시취조위원회’는 외무성 고관과 국제법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¹⁵⁾ 이렇게 발족한 동 위원회는 이듬해인 1905년에는 실질적으로 4명, 거기에 국제법학자 3명이 면관·해임되어, 대폭적인 인사 감축이 이루어졌다.

임시취조위원인 다카하시 세이치는 동년 2월 23일 “질병”을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면관되었는데(3월 8일), 다시 취조사무 촉탁이 되었다(3월 16일). 그러나 “촉탁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그 후 11월 28일 영사관보로 임명되어 아모이[廈門]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데라오 도루 역시 6월 13일 “질병”을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여 면관되었고(6월 21일), 6월 16일 다카하시 사쿠에·나카무라 신고는 모두 “과로”를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해임되었는데(6월 20일), 데라오·나카무라의 경우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러일강화조약 비준을 거절하는 청원의 상주문 관련자였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 입각한 대학 교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는 사태 속에서 정치적 배려로 면관·해임되게 된 것이다. 결국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1906년 2월 28일에 일제히 해임된 것은 진다·야마자·구라치·다치·마키노이며, 4명의 국제법학자 가운데 다치 사쿠타로만이 유일하게 기한만료 시점까지 임시취조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15) 外務省 記録『珍田 捨己』, 外務省 記録『職務進退』(明治 37年).

임시취조위원장 진다 스테미[珍田捨己](외무차관)
야마자 엔지로(외무성 정무국장)
데라오 도루(외무성 참서관·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국제공법 교수)
구라치 데쓰키치(외무성 참서관)
다카하시 사쿠에(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국제공법 교수)
나카무라 신고(가쿠슈인[學習院] 국제법 교수)
다치 사쿠타로(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
임시취조위원 보조 다카하시 세이치(외무속(外務屬))·마키노 에이치(사법관 시보(試補))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는 교수가 되어서도 곧바로 대학 강좌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임시취조위원회 해임 후인 1906년 4월 5일에야 외교사 강좌 담임으로 발령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외무성 당국이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학자로서의 능력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에 대한 “국제법상 제반의 문제에 관하여 연구·조사를 담당하고, 매진하여 능히 그 직무를 수행한 공훈이 현저하다.”¹⁶⁾라는 외무성의 평가는 임시취조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치밀한 연구·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부여된 책무를 유일하게 완수했기 때문인 것이다.

환언하면, 임시취조위원회 취조위원으로서 기한종료까지 유일하게 책무를 완수했다는 다치 사쿠타로에 대한 평가는 역설적으로 대조선 침탈정책의 토대로서 철저히 국제법을 동원하여 관철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인 것이다.

Ⅲ.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에 대한 검토

1.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 개관

다치 사쿠타로는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관련하여, 1913년 『平時國際公法』¹⁷⁾ 등의 저술을 비롯하여 1933년 「無主の島嶼の先占の法理と先例」¹⁸⁾와 1939년 「土地の先占到關する沿革的考察」¹⁹⁾ 등 2편의 대표

16) 外務省 記録, 『日露戰役行賞一件』 <外務省員之部>(第4, 雇・囑託・傭員之部).

17) 立作太郎, 『平時國際公法 上』, 大正二年度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1913.

18) 立作太郎, 「無主の島嶼の先占の法理と先例」, 『國際法外交雜誌』 第32卷 第8號, 1933.

19) 立作太郎, 「土地の先占到關する沿革的考察」, 『國際法外交雜誌』, 第38卷 第3號, 1939.

적인 논고를 통해 무주지 선점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를 대표하는 학자 출신으로 동 위원회의 존속 기간 내에 발생한 일본의 독도침탈과 관련한 그의 논저 출간이 상당한 시차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주장하는 논지의 본질 및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그의 논저에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침탈의 법리로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과 직접 결부시키지 않은 채, 무주지 선점의 연혁을 비롯하여 무주지 선점 관련 국제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이 무주지 선점의 연혁과 유관 국제판례의 법리에 입각할 때 합법적이라는 논거를 도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52년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후 1953년부터 일본 정부가 제기한 4차례의 구상서와 시기적으로 중첩된 일본국제법학회 권원 연구와 연계되어 다이주도 가나에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과 이후 나카노 데쓰야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 등으로 계승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 주장

15세기에 토지 발견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전 시대에는 토지 획득에 관해서 지배의 실효성이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건제도 하에서 토지의 획득에는 그 주민이 예속되어 있는 백성(homines ligii)으로서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종관계가 성립하려면 토지의 실효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면서, 주군(suzerain)이 외적을 방어하고, 그 땅에서 지배를 받는 백성을 보호할 실력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시 기준으로 일정 토지에 대한 실효적인 현재적 지배가 해당 토지의 영토주권 획득 및 유지를 위해 충분하면서 또 필요한 조건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20) 立作太郎, 1939, 183~184쪽.

중세에 로마 법왕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왕령을 공포한 적이 있다²¹⁾. 어떤 사람은 당시 법왕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권능을 독점했다는 설을 말하기도 하는데²²⁾, 로마 법왕의 인허(認許)가 완전한 영토주권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시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시기는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²³⁾ 대체적으로 법왕령이 얼마간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설에서도 단순히 이미 획득한

21) 로마 법왕이 신권을 기반으로 세계에 군림한다고 했던 시대에 그러한 법왕령을 통해 땅을 각국의 군주에게 분여(分與)하는 권능을 갖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454년 법왕 니콜라스 5세가 포르투갈의 알폰소 5세에게 아프리카 서해안을 이미 분여하였고, 또 바야흐로 이루어지게 될 토지 발견을 인허하였다. 1493년 5월 4일 법왕 알렉산더 6세가 법왕령으로 아조레스 제도(Azores Islands)의 서쪽 100리그(league) 지점을 지나서 북에서 남으로 선을 그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력 지역의 분계선으로 삼았다. 그 선의 서쪽에서 이미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토지는, 이미 다른 기독교 국가가 1492년 이전에 점령한 것을 제외하고, 일체 그것을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및 이사벨라, 아울러 그 왕위 계승자에게 속한다고 하였고, 그 선의 동쪽에 해당하는 땅은 포르투갈에 속한다고 하였다. 같은 해 9월 25일의 법왕령에 따라 법왕은 해양에서 기도(企圖)한 전부를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에 개방하여서 스페인인은 서쪽으로 향해하였고, 포르투갈인은 아프리카에서의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1494년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군주는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의 조약에 따라 카보베르데 제도(Cape Verde Islands)의 서쪽 370리그 지점을 경유하여 북에서 남으로 그은 선으로 상호 세력 지역의 경계선으로 삼았다. 이 조약은 1506년에 법왕 줄리어스 2세가 확인해 주었다. 立作太郎, 1939, 185쪽.

22) Bleiber, Die Entdeckung als Rechtstitel für den Gebietserwerb, 1933.

23) 1493년 5월의 법왕령이 나오기 전에 스페인의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는 법왕에 올리는 서한에서 학식 있는 법률 고문이 토지에 관한 권리는 법왕에 의한 확인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왕에게 서한을 올리는 것은 법왕에 대한 존경 및 복종을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1496년 5월 5일 영국 왕 헨리 7세는 존 카보트 부자에게 특허장을 내주었고, 그에 따라 동쪽, 서쪽 및 북쪽의 해양을 향해해서 세계의 어떠한 부분에 있든 간에 그 이전에 어떤 기독교 도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의 이교도 또는 무신앙자의 도서(島嶼), 국가, 지방 또는 주(州)를 발견하거나 또는 찾아낼 권한을 주었다. 이것이 로마 법왕의 법왕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프랑스의 프랑소아 1세에 이르러서도, 법왕령을 무시하고, 플로리다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에 이르기까지의 연안을 새 프랑스의 이름 하에 프랑스령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立作太郎, 1939, 186쪽.

토지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또는 획득하려는 토지에 관한 미성숙한 권원(inchoate title)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법왕의 인허 효력에 대해서는 신교국이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교국에서도 역시 더 이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중세 말, 근세 초 토지의 발견 시대에 어떤 토지를 발견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영토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대체로 타국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발견이 미성숙 권원을 부여한다고 하는 설도 유력하지 않았다. 발견에 이어서 표지(標識)적 병합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었다. 발견 및 표지적 병합 행위가 결합해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미성숙한 권원을 취득한다고 생각되게 된 것이다.²⁵⁾ 발견 및 표지적 병합 행위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는 유럽 대륙 학자들의 학설에서도 발견 및 표지적 병합 행위 이후 상당한 시기 동안 실효적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발견 및 표지적 병합 행위가 토지에 대한 권리의 미성숙한 권원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앵글로 색슨계의

24) 로마 법왕의 법왕령에 의한 인허에 대해서 법률상 의의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이미 실제상 실효적으로 선점된 토지의 영토권에서는, 법왕의 인허에 따라서 영토권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법왕의 인허라는 것은 사실상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왕의 종교상의 권위를 이유로 타국과 분쟁이 생기지 않을 사실상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법왕의 인허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의 인허에 관해서 점유를 행하는 권리, 다시 말해 완전한 선점을 통해서 완성될 터인 미성숙한 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생각할 수 없다. 로마 법왕의 인허는 실제 점유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또 실제 선점행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立作太郎, 1939, 186쪽.

25) 바텔의 1758년에 공개된 저작 중에서 항해자는 그 군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발견하기 위한 항해에 종사하고, 도서 또는 기타 무인의 토지를 찾아내어, 그 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점유하였다. 그리고 이 권원은 만약 그 후 머지 않아 진정한 점유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존중되었다(Vattel, *Droit des Gens*, 54, 1, §207)고 주장하였다. 立作太郎, 1939, 188쪽.

학자들 및 유럽 대륙의 어느 학자의 학설에서는 미성숙한 권원 취득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실효적 점유가 행해지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완성되는 것을 방해받는다고 하는 것이다.²⁶⁾

15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견된 토지에 대해 표지를 세우는 일이 종종 이루어졌는데, 이 표지적 병합 행위(영토권 획득의 의사를 표시하는 표지적 또는 의식적 행위)가 해당 토지의 영토권 획득에 충분하다는 주장을 함축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단순히 타국에 대한 미성숙한 권원(inchoate title)의 존재를 표지한다는 취지에 그친다고 해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²⁷⁾ 미성숙 권원의 존재를 표지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기 동안 실효적 선점을 하지 않을 때는 미성숙 권원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표지적 병합 행위가 해당 토지의 영토권을 획득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포기 의사를 추정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식민국으로서 활동한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그 상호 간의 분쟁 시에 때로는 실효적 점유의 필요를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적이 있던 것 같다. 이 나라들이 로마 법왕의 인허 및 발견 및 표지적 병합 행위를 가지고 선점을 통한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기에 충분하다고 논한 것은 특히 나중에 식민국으로서 이 국가들의 뒤를 잇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관계에서 대응했던 것과 같다.

26) J. Westlake, *International Law, Peace*, 1904, p. 103.

27) 최근의 학자로 15세기 말 이후의 시기에서 발견지에 자국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이루어진 것은 미성숙의 권원을 표시하는 취지였다고 해석하는 사람의 예로 괴벨 같은 경우가 있다(Goebel, *The Struggle for the Falkland Islands*, 1927, p. 58). 그에 대해서, 당시 표지적 병합 행위가 영토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하는 사람을 예시하면, 블라이버와 같은 사람이 있다(Bleiber, *Entdeckung als Rechtstitel für Gebietserwerb* 1933, pp. 67-68). 또는 그렇기는 하지만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약간 앞의 설에 치우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예시하면 Freiherr von der Heydte이다(Friedrich August Freiherr von der Heydt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35, pp. 452-457). 立作太郎, 1939, 188-189쪽.

16세기 중엽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표지적 병합 행위에 의한 선점 및 로마 법왕 인허의 효력을 부인하고, 현실 점유의 필요를 주장하게 되었다.

17세기 초엽에서의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와의 분쟁에서 영국의 의견은 현실의 점유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병합의 국가적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자국인에 의해서 식민이 이루어진 사실에 무게를 두었다.²⁸⁾

스페인 사람이 인도 방면의 광활한 토지에 관해서 발견 및 표지적 병합 행위를 통해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한 것에 반해, 영국인이 표지적 행위가 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점이 이루어진 무렵의 실행을 보면, 표지적 병합은 새로운 발견지에 대해서 충분한 영토권을 부여하기에 부족하다 하고, 단순히 미성숙 권원을 주고, 상당한 기간 즉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현실적 점유를 하지 않으면 권원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관해서 네덜란드인도, 영국인도, 표지를 세워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광활한 토지에 대한 점령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1642년에 이루어진 네덜란드인의 표지적 병합 행위와 달리, 영국인은 1770년의 표지적 병합 행위에 이어서 실제적 점유를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영국인이 과거에 네덜란드인이 표지적 병합행위를 한

28) 스페인과의 분쟁시에 서민원에서 산디스 경(Sir Edwin Sandys)은 아마존강 지방에서의 영국 왕의 권리에 대해 해당 지방의 농원적 식민지가 12년 전 영국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이유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로마 법왕 알렉산더 6세의 법왕령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영국 왕이 그 나라 및 그 지방의 주권을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그 나라의 거대한 성 같은 것으로 국제법 및 자연법에 따라 점유자 자격이 있다고 하고, 그런 이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작 관련 선점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if the King will not take on him the sovereignty of that country and territory, yet it being a vast country, it is by the law of nations and naturo the occupiers; for un such cases “Seges cst occupantis,” it is a good title and claim); 立作太郎, 1939, 190쪽.

부분까지 선점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인은 그에 대해서 항의한 바 없었다.

19세기에 들어 열강들이 왕성하게 식민을 행하고, 다투어 토지의 점령을 기도하기에 이르러 표지적 병합이 새로운 발견지에 대해 영토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학설이나 국제실행으로나 실효적 점유가 영토권 획득의 유일하고 충분한 법적 원인이라고 보는 설이 우세하였다.²⁹⁾ 그리고 학설의 범위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융통성 없는 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한다.³⁰⁾

3.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 검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무주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말이다. 무주지는 로마법상 무주물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등장한 것으로 18세기까지 *terra nullius*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언급된 사례는 없으며, 1888~1889년 국제법학회에서 논의된 기록이 연감에 존재한다.³¹⁾

29) Fauchille은 국가의 선점이 실효적이라면, 어떤 주권적 행위(certain auto de souveraineté)를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국가가 주권 그 자체를 주장할 필요가 있고, 단독으로 주권이 가능한 만큼의 일체의 표현을 포함하는 설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점국의 권력 즉 *imperium*(명령 강제 권력이라는 의미에서의 주권)이, 작·간접으로 선점된 토지 위에서 감지되고 또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Fauchille은 지방적 권력에 관해서 적어도 필요하다면 설립된 조직 그 자체를 지지하기 위한 병력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888년 9월의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로잔 회합에서 주권자로서 서의 토지 선점은 점유가 질서를 유지하고, 선점 지방의 범위 내에서 그 권력의 규칙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지방 권력(*pouvoir local responsable*)의 설립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立作太郎, 1939, 192쪽.

30) 立作太郎, 1939, 192쪽.

31) 오시진,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III』, 동북아역사재단, 2022, 93쪽.

그렇다면 다치 사쿠타로가 기술하고 있는 무주지 선점의 연혁 관련 내용은 15세기 중엽 시작된 유럽세력의 대외팽창에 따른 신대륙에서의 영역취득을 합법화시켜 줄 권원의 필요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의인 것이다. 초기의 진출국은 교황의 권위를 통해 전리품을 합법화시키려 했으나,³²⁾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자 유럽국가들은 현실적인 법원칙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terra nullius)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인 선점(occupation)은 로마법의 occupatio에서 기원한다. 유럽국가 중 해외 진출을 통한 식민지 개척의 선두에 섰던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이들이 미주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교황의 권위는 새로운 영토취득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후발주자로 해외 식민지 확장에 나섰다. 교황의 교서를 따르게 될 경우 새로운 영토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역취득을 위한 선점을 권원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선점이란 국가가 영역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역취득의 권원으로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라는 개념은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일수록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할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선점론은 이후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획득의 결과를 합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식민지 개척의 결과에 대한 상호존중을 표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행위가 선점을 완성하는 실효적 지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시대나 대상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식민지 개척 초기에는 단순한 발견이나 국기게양 정도의 상징적 행위에 대하여도 상당한 법적 의미를 부여했으나, 점차 식민지 쟁탈이 치열해지자 점유는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좀더 엄격한 요건을

32) D. Greig, "Sovereignty, Territory and the International Lawyer's Dilemma," Osgoode Hall Law Journal, Vol. 26, 1988, p. 140.

요구하게 되었다. 실효적이지 못한 점유는 불완전한 권원만을 만들어 냈고, 이는 후일 실효성을 갖추어야만 완전한 권원으로 인정되었다. 과거의 국제판례를 보면 국가행정권의 발현을 실효적 지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과거의 유럽세력들은 비유럽지역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선점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³³⁾

다치 사쿠타로의 논의를 검토하면 무주지 선점의 연혁을 제시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영역취득의 방안으로서 식민지 획득에 대한 합법화와 선점의 실체로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다. 독도침탈의 권원으로서 무주지 선점을 직접 결부하지 않는 대신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역취득의 방안 일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불법침탈의 합법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독도침탈의 이론적 배경에 다름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에 대한 검토

1.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 주장

1)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

무주지 선점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치 사쿠타로가 기술하고 있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선점(occupation)이란 한 국가가 아직 어떤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 즉 국제법상 무주의 토지를 점유하고, 자기 영토로 취득하는 것을

3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7, 515-516쪽.

말한다. 선점의 경우는 할양의 경우와 달라서 선점으로 인한 영토권의 획득이 이전에 영토권을 갖고 있던 국가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또 임의적 혹은 강제적 병합과 달리 지금 한 국가의 영토권을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점이 행해질 수 있는 무주의 토지란 토지에 절대로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유기체를 조성하지 않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사는 인민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선점을 행할 수 있는 국제법상 무주의 토지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법상 선점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신적(animus) 및 실체적(corpus)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신적 요건이란 선점을 하려는 국가가 영토권을 획득할 의사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또 실체적 요건이란 토지의 현실적 점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³⁴⁾

34) 다치 사쿠타로가 인용하고 있는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선점의 요건 관련 내용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홀(Hall)은 선점에 대해서 국가가 영토를 획득할 의사(intention to acquire territory)를 표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고(Hall, International Law, 8th, p. 125), 또 유효적인 지배를 토지에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Hall, op. cit., p. 126); 완전한 형식에서의 선점에는 일정 토지가 재산(국제법상의 재산이며 필자가 소위 영토권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음)으로서 압수된 것의 선언과 동등한 행위 및 그 후의 (혹은 거주에 의하거나 자연 생산물의 채취를 통한) 계속적 사용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Hall, op. cit., p. 126); 오펜하임은 선점에 대해 영토상 주권을 취득할 의사(Animus)를 가지고 그 지배 하에 영토를 두는 것(corpu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Oppenheim, International Law, 4th, p. 450); 리비에(Rivier)는 선점을 하는 국가가 점령지의 땅에 물질적 권력(pouvoir matériel)을 가지고, 타국의 행동을 배제하고,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인공(maitre) 즉 주권자(souverain)의 의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사는 선점지의 자원 개발, 토지의 농업적 또는 공업적 이용, 수익, 요컨대 직업이 국가의 의사를 포함하고(implique) 단순히 사인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체의 점취(占取)적 일(travail d'appropriation)에 의해 표현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surtout et nécessairement) 정부의 공적 행정의 설정(l'établissement d'une administration public d'un gouvernement), 다시 말해 주권의 의사(intention de souveraineté)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라고

선점의 주체는 항상 국가이며, 실제로 선점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상당 기관이어야 한다. 한 군함의 함장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선점을 행해야 한다. 한 사인 또는 한 회사가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국가가 국가의 명의를 가지고 선점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국가가 영토권 획득의 의사를 갖기에 이르거나 또는 국가의 명령 강제권력이 현지에서 해당 땅에 거주하는 인민 또는 해당 땅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위에 가해지지 않으면, 국제법상의 실체적인 선점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단, 국가 자신이 현지에서의 농업상, 광업상 또는 기타 채취업상의 경영을 하는 등의 토지 이용을 하고, 현지에서 토지 전체를 지배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을 때는 가령 경영에 관련된 사람 이외에는 주민이 없더라도 실효적 선점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인민의 정주 또는 인민에 의한 경영 그 자체는 그것만으로는 국가에 의한 토지의 점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도, 현지에서의 국가 명령권의 작용이 가해질 때는 국제적으로는 이들 거주 또는 경영도 국가의 점유사실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

국제법상의 선점은 국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여야 한다.³⁵⁾ 오늘날 사인 또는 사기업이 그 이름으로 국제법상의 선점을 행하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선점이 실효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A. Rivier, 1896, *Principes Du Droit Des Gens*, Vol. 1, p. 190; 立作太郎, 1933, 3-4쪽.

- 35) 홀은 점령은 국가 행위(State act)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선점이 법리상 유효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토지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on behalf of the State) 무주의 토지를 선점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권력을 부여받거나 또는 사인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이름으로) 선점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국가가 그것을 비준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Hall, *op. cit.*, p. 128); 1888년의 국제법학회의 결의에서는 점유는 정부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la prise de possession d'un territoire enfermé dans certaines limites, faite au nom du gouvernement*). 1890년의 Jones versus United States의 판결에서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인정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새로운 토지의 지배권은 할양 및 정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발견 및 선점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으며, 일국의 국민(citizens or subjects of one nation)이 국가(nation)의 이름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사기업 특히 특허회사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의 기관으로서 선점의 실체인 점유적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국가가 영토권자로서 선점하려고 하는 토지를 획득할 의사를 갖고 있고, 또 사기업이 행하는 실체적 행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할 국가의사를 가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선점의 실체 행위가 먼저 사인 또는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경우 아직 국가의 확인 없는 동안, 국가의 확인을 얻기에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에는 미성숙 권원이 그 이름에 의해서 선점이 행해지는 국가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국가의 확인을 통해 선점에 착수된 이후에도, 아직 실효적 점유가 완성될 때까지는 미성숙 권원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선점에 착수한 후, 그것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상당 기간 내에 선점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미성숙 권원은 소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 선점은 종종 국가가 승인하고, 또 뒷받침하는 사적인 기업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³⁶⁾

2)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통고의 효력론

실효적 선점의 한 요건인 국가의 영토 획득 의사는 외국에 선점을 행한다는 통고함으로써 표시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의사를 명시하는 선언을 국내에 공적으로 함으로써 표시되기도 하며, 선점을 행하려고 하는 현지에서 국기를 게양하거나 본국 영토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를 세움으로써 표시되기도 한다. 또는 명백하게 주권적 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당 토지 위에서 전적

으로 또는 그 수권(授權)에 의하거나 승인을 통해(in its name, and by its authority or with its assent) 다른 정부 또는 그 국민에 의해 선점되지 않은 토지를 (개인이 단순히 물고기를 채집하거나 또는 그것의 훈제, 염지 또는 통조림 가공과 같은 보장(保藏) 행위를 하는 등의 특정 업무를 행할 목적을 위해서라도) 현실적, 계속적 또는 수익적 점유를 개시, 유지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과 관련된 나라라는 이와 같이 획득된 토지 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동안,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立作太郎, 1933, 7-8쪽.

36) 立作太郎, 1933, 8-9쪽.

으로 즉, 배타적으로 행하여서 묵시적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때로는 외국에 통고하는 방법으로 영토권 획득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에 대한 통고가 선점 시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국제법상 필요조건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는 현지에서 이후 영토로서 인정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또는 선언서를 제작하거나, 국기를 게양하는 등의 의식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해당 토지의 점유를 한다(taking possession)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실효적 점유에 소위 점유, 즉 바텔이 말하는 소위 진정한 점유(real possession)³⁷⁾와는 다른 것이다. 현지에 세운 표지를 통해서 영토권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표지 또한 국가의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상당 기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거나, 또는 사인에 의해서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세워지거나, 또는 적어도 사인이 세운 후에 국가의 추인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사인 또는 사기업이 국가와 연락 없이 사의를 가지고 본국의 영토라고 선언하는 표지를 세우더라도 이 같은 표지는 국가의 영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선점 요건의 하나인 국가의 영토 획득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 가령 국가의 영토 의사를 표시하는 표지라 하더라도, 그 존재가 국가의 영토권 보유 의사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며, 다른 사정으로 인해 포기 의사가 명백해질 때는 표지의 존재와 관계없이 포기로 인한 영토권의 상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선점에 있어서 외국에 대한 통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선점을 행하려는 국가의 영토권 획득 의사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으나, 오늘날의 국제법상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외국에 대한 통고가 선점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주장한다. 이것은 어찌면 1885년의

37) 바텔(Vattel)은 항해자가 그 주권자로부터 위탁받아 발견을 위한 항해를 할 때, 도서 또는 무인의 토지를 발견하는 경우, 그 국가의 이름으로 토지 점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 권원은 발견에 이어 후속적인 진정한 점유가 행해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존중된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 *Emer de Vattel, Le droit de Gens ou Principes de la Loi Naturelle*, Vol. 1, 1775, §18, para. 207.

아프리카 회의에서 의정된 일반 결의서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 연안의 토지 선점에 대해서 특히 외교상의 통고를 선점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한 것을 당연히 일반 토지의 선점에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아프리카의 토지 선점에 대해서도 1919년의 생제르맹 조약 즉 대체로 주요국을 포함한 다수국 간의 조약에 따라 선점의 요건에 관해서 아프리카 회의 결의서, 즉 소위 콩고 결의서의 규정이 전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혹은 1888년의 국제법학회에서 외교상의 통고를 가지고 선점의 요건의 하나로서 결의한 학회의 의견을 현실 국제법의 규정을 선언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에 기인하고, 혹은 외국에 통고하는 것이 국제적 편의에 적당하다고 하여, 자연법적 견해에 따라 곧바로 그것을 현행 국제법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에 기인하여 종종 국제법 학자 간에 주창되어온 것이다.

현행 국제법으로서는 일반 토지 선점에 대해 외국에 대한 통고 같은 특정 형식을 가지고 영토권 획득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선점 시에 외국에 대해서 통고를 하는 것은 해당 토지에 관한 타국의 주장 유무를 확인하고 또 선점이 미치는 지역을 명확하게 하는 편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편의 여하에 따라서 곧장 현실 국제법의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에 대한 선점의 통고는 현실 국제법상 아직 선점의 요건의 하나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요건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실효적 선점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은 외국은 설령 선점의 통고를 받더라도 영토 획득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한다.³⁸⁾

2.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요건론 검토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다치 사쿠타로의 해석도 당시의 일반적인 학설과 다르

38) 立作太郎, 1933, 9-12쪽.

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치 사쿠타로 역시 선점의 요건으로 무주지, 영유자의 표시, 실제적 지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점과 관련하여 1885년의 베를린의정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의정서에서 선점의 통지가 선점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선점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요건인지 아니면 베를린의정서 당사국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특별한 요건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³⁹⁾ 다치 사쿠타로는 베를린의정서 이후에는 “선점의 경우에는 통지가 실행되도록 되었다”고 사실을 기술할 뿐이다. 이 점은 아키야마 마사노스케의 서술과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⁰⁾

그러나 아키야마 마사노스케가 기존과 다르게 통고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치 사쿠타로 역시 외국에 대한 선점의 통고는 현실 국제법상 아직 선점의 요건의 하나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요건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주장을 전환한다. 그와 동시에 실효적 선점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외국은 설령 선점의 통고를 받더라도 영토 획득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⁴¹⁾ 실효적 지배의 강조와 통고의무의 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의 독도침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무주지 선점 요건의 법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다치 사쿠타로의 클리퍼튼섬 판례평석에 대한 검토

1. 클리퍼튼섬 사건의 개요(PCA, 1931)

39) 立作太郎, 『平時國際公法 上』, 大正二年度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1913, 186-187쪽.

40) 박배근,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영토해양연구』 제6호, 2013, 53쪽.

41) 立作太郎, 1933, 25-29쪽.

이 사건은⁴²⁾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의 클리퍼튼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다.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 정부의 고등 판무관인 해군 장교 켈웨강(Victor Le Coat de Kerweguen)이 항해 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섬을 떠나게 되었다. 이 사실이 하와이 정부에 통고되고, 1858년 12월 8일자 호놀룰루의 신문 폴리네시안(The Polynesian)지에 영문으로 클리퍼튼섬에 대하여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후 약 40년 동안 이 섬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구아노(guano)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 3명이 미국기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고, 또 이 섬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주권을 주장할 의도도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1897년 12월 13일에 멕시코가 클리퍼튼섬에 군함을 파견하여 멕시코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 이 섬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1909년 3월2일에 이 사건을 엠마누엘 3세(Emmanuel III)의 중재 재판에 부탁하였고 1931년 1월 28일에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중재재판관은 프랑스가 공시를 통한 주권 선언, 1897년 멕시코의 주권 주장에 대한 항의, 1858년 클리퍼튼섬 상륙 그리고 구아노 채취 허가 등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중재재판관은 무인도의 경우 유인도에 관한 영유권 확립에 요구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가혹한(inhospitable) 격지 무인도에서는 국가권능의 현시라는 통상의 실효 지배의 엄격한 요건이 완화되어, 주권자가 실효적으로 지배할(effectively occupy)

42) Arbitral Award of His Majesty the King of Italy on the Subject of the Difference Relative to the Sovereignty over Clipperton Island(France v. Mexico), Jan. 28, 1931,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1932, p. 390.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최초의 결정적인 주권행위(예컨대 클리퍼튼섬 분쟁 사건에서 하와이 정부에의 통고 및 신문·잡지 공시 등)로 유효한 권원을 창설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재재판관은 무인도의 경우 전혀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점유국이 타국의 방해 없이 처음으로 그 영토에 출현한 순간부터 그러한 영역이 그 점유국의 절대적이며 이론의 여지없는 절대적 처분권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점유의 취득’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동시에 선점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된다는 것이다.

2. 다치 사쿠타로의 클리퍼튼섬 판례평석 검토⁴³⁾

다치 사쿠타로는 동 판결과 관련하여 무인도에 관해서는 실질상 실효적 점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설 및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⁴⁾. 단 토지 혹은 도서의 선점을 주장하는 국가가 실

43)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국제법학계의 무주지 선점 권원 연구에서는 3개의 주요 국제판례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영역취득의 요건으로서 사람이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상시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결(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1931)과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한 극지에서의 상징적 지배의 관념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결(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Norway v. Denmark, PCIJ Report, 1933) 및 국가권능의 행사로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결(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 v. United Kingdom, ICJ Report 47, 1953) 등이다. 이 국제판례 중 다치 사쿠타로는 클리퍼튼섬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타 판결에 대한 평석은 도시환,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독도연구』 제 31호, 2021. 232-237쪽 참조.

44) 남중국해의 9도와 같은 주민 없는 도서 또는 ‘구아노’가 있는 도서의 선점에 관해서 실효적 점유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합중국 의 법무장관 Black의 1859년의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John Bassett Moore,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1th,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6, p. 261. The law of nations will not acknowledge the property and sovereignty of a nation over any uninhabited country, except where actual possession has been taken and

효적 점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나, 타국이 해당 도서에 있어 이해관계를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선점의 실체적 요건의 유무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선점의 효력을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선점이 주장되는 도서에 대해 이해를 느끼는 타국에서는 선점 통고를 받아도 즉시 선점을 주장하는 국가의 영유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선점에 관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 그 중에서도 실효적 점유의 조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를 살핀 후, 선점을 유효성에 대한 인정여부의 태도를 정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위법이 아닌 것은 물론, 비우의(非友誼)적 태도라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클리퍼튼섬 사건의 판결에서 프랑스의 해군사관이 섬 부근을 항행하는 사선(私船) 내에서 1858년 11월 실시한 병합 선언에 관해 문서 작성으로 영토 획득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선점에 관한 실효적 점유의 요건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프랑스가 정당하게 획득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프랑스가 클리퍼튼섬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므로 가령 획득 후에 적극적으로 이 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었던 사실이 존재하나, 이 사실이 이미 확정적으로 완료된 영토 획득의 효력을 잃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많은 학자들의 논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settlement formed or of which it makes actual use.; Black이 같은 해 ‘구아노’ 섬의 선점에 관해서 제시한 의견 중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Moore, *ibid.*, pp. 560-561). An actual taking of possession and actual occupation of the island whereon guano has been discovered are express condetions of the act of Congress, which are not complied with by mere symbolical possession or occupancy as by the planting of a flag, the erection of a tablet, an inscription or other like acts.; 여기에 소위 ‘the act of Congress’에 관해서는 뒷글에서 ‘구아노’ 섬의 선점 사건을 서술할 때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합중국의 ‘구아노’ 섬에 관한 사건 중, 로보스 섬 또는 나배사 섬에 관한 사건에서 합중국 정부는 무인도에 대해서도 선점에는 절대적 주권 및 소유권이 명백한 행위(unequivocal act of absolute sovereignty and ownership) 또는 현실적 점유 및 사용(actual possession and use)을 행하는 것 또는 그 위에 관찰 및 권력(jurisdiction and authority)을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立作太郎, 1933, 28-29쪽.

다치 사쿠타로는 이 점에서 판결이 제시하는 법리를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프랑스에 의한 취득이 실효적 선점의 조건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프랑스의 영토 획득을 부인하고, 이탈리아 왕의 중재 재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치 사쿠타로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무주지 선점에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국제법학회의 후속 무주지 선점론자들이 클리퍼튼섬 사건을 비롯하여 동부그린랜드 사건,⁴⁵⁾ 망끼에 에크레오 사건⁴⁶⁾ 등을 동원하여 독도침탈의 핵심적인 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모두 무인도, 원격지 등의 실효적 지배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국제판례라는 점에서, 독도침탈의 토대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자의적인 해석과 원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⁴⁷⁾

VI.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 전승의 문제점 검토

1. 다이주도 가나에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 검토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국제법상 선점 원칙론으로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점에서, 다치 사쿠타로 주장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법상의 선점 역사를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획득 경쟁의 이해 충돌과 비유럽 인민에 대한 지배의 정당화라는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논리를 전개해 왔다.

선점은 지리상의 발견 이래, 유럽 이외 지역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유럽

45)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1933, p. 22, 52.

46)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U.K., ICJ Reports 47, 1953.

47) 도시환, 2021, 236-237쪽.

각국의 식민지 분할 투쟁과정에서 생겨난 법 원칙이었다. 그것은 우선, 교황의 인허나 발전을 우선적 근거로 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스페인·포르투갈과 같은 선진 식민국에 비해 뒤늦게 식민지 획득에 나선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의 근거로서 자연법학자가 제공한 법이론이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식민지 분할 투쟁에서의 후자의 승리와 함께 국제사회의 필요에도 부합하여 18세기 말에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비유럽 지역을 선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비토리아나 그로티우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텔에 이르러 선점에 대해 노동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하는 것이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이론과 실행이 일치하였다.

이처럼 선점은 식민지 분할을 규율하는 법 원칙으로 성립된 후, 19세기 아프리카 분할을 계기로 그 법규 내용을 발전시켜 지방적 권력의 확립을 의미하는 실효적 점유의 요건이 새롭게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이 규칙이 정립된 것은 그것이 국제사회에 필요하다는 국가들의 법적 신념이 일치하였기 때문인데, 확정에 이르는 동기에는 역시 식민국가들 간의 이해 갈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또 식민지 인민에 대한 지배의 정당화는 우월한 유럽 문명의 관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선점이 여러 나라의 투쟁과 알력 사이에서 침체되면서 국제법상의 규범으로 정립된 것은 그것이 각 시대에서 국제사회의 필요에 부합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⁴⁸⁾

다이주도 가나에의 논의를 검토하면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과 데자뷰인 주장으로, 다치 사쿠타로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영역취득의 방법으로서 선점을 동원한 식민지 획득의 합법화와 선점 요건의 실체로서 ‘실효적 지배’에 대한 논거를 답습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의 합법화의 토대로서 일제식민주의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48) 太壽堂鼎, 1998, 75-76쪽.

2. 나가노 데쓰야의 무주지 선점 관련 통고요건 검토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 관련 통고의무의 부정은 나카노 데쓰야의 통고요건 부정론으로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점에서 이미 검토된 한일 양국 학자의 대표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먼저 한국 학자의 견해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고 무주지가 아니었으나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로써 독도를 그 현(縣)에 편입하여 선점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없었다는 점, ② 선점의 의사표시 공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불과한 점, ③ 1905년 당시 일본은 한일협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하여 한국으로부터 정식의 항의가 없었음을 원용할 입장에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보아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수 있다.⁵⁰⁾

일본 학자의 견해로는 각의 결정은 국가의 의사이나 그것은 국내문제이고 정부기관에 의한 대외적 공표가 정식으로 없는 한 영토취득의 요건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또 시마네현 고시로써 국제법상의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하나, 그것은 일개 지방자치체의 공표이며 그 지자체의 결정은 그 지방민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결코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카노 데쓰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결정인 고시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세삼스럽게 국제법과 국제법학자의 설을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국내법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⁵¹⁾

더욱이 독도의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국인 조선에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49) 도시환, 2021, 232~237쪽.

50)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2007, 310쪽.

51) 川本秀吉, 『獨島の歴史的法的地位』, 日本 愛知大學朝鮮文化研究會, 1960, 30쪽.

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에 오키섬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통지한 것은 통고요건 자체에 대한 위반인 것이다.⁵²⁾

Ⅶ. 맺음말

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12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⁵³⁾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한국에 대한 보호·병합과정과 무관하며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이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으로서 합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를 비롯하여 이와 연계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1904.3~1906.2)는 보호국론 조사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일제식민주의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일종의 관변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전인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륙침탈을 기획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⁵⁴⁾가 정무국장(1901~1908) 재임시 구성한 임시취조위원회는 대러 개전론을 주창한 ‘동경대 7박사’가 아닌 中村進午, 寺尾享, 高橋作衛, 立作太郎, 倉知鉄吉 등 모두 국제법연구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한종료까지 취조위원의 책무를 완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외무성 고문으로서 일제

52) 박현진, 『독도영토주권』, 경인문화사, 2017, 361~362쪽.

53) Doh See-hwan, “History of Dokdo invasion and Japanese colonialism,” *Korea Times*, Nov. 29, 2023, p. 13.

54) 長谷川峻, 『山座圓次郎：大陸外交の先驅』, 時事新書, 1967; 一又正雄, 『山座円次郎伝：明治時代における大陸政策の実行者』, 原書房, 1974.

식민주의 침탈의 법리를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을 중심으로 국제법 법리 왜곡을 검토하였다.

다치 사쿠타로는 식민제국주의 영토취득의 권원이자 실효적 지배의 법리로서 무주지 선점론을 제시함으로써,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전 한국 정부가 공포한 1952년 1월 18일 평화선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4차례에 걸친 구상서 이후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인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에 그대로 전승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규명하였다.

환언하면, 다치 사쿠타로의 무주지 선점론은 미나가와 다케시 ‘역사적 권원론’을 필두로, 우에다 도시오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과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과,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와⁵⁵⁾ 나카노 데쓰야⁵⁶⁾로 이어지는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의 계보 가운데, 특히 대체적 권원론을 주창한 다이주도 가나에와 역사적 권원과의 절연을 전제로 한일간 국제법 관계를 주창한 나카노 데쓰야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다치 사쿠타로가 무주지 선점의 연혁으로 소개한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영역취득의 방안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논고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던 입장에서 통고의무에 대한 부정으로 전환한 입장 역시 나카노 데쓰야의 논고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법리 왜곡에 대해 검토하면, 대한제국의 근대적 입법으로서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1900년 칙령 제41호⁵⁷⁾

55) 塚本孝, 2011, 52-67쪽.

56) 中野徹也, 2012, 113-166쪽.

57)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

가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성된 권원에 입각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하에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주지로 규정하여 선점 및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완성된 권원에 입각하여 확립된 타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에 다름아닌 것이다.⁵⁸⁾

또한, 영역주권의 취득인 선점의 통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국이 있다면 승인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점 자체가 원시취득이므로 통고가 불필요하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국 또는 제3국의 승인 또는 거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고는 영역취득의 불가결한 요소이다.⁵⁹⁾ 독도의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국인 조선에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에 오키섬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통지한 것은 통고요건의 위반인 것이다.⁶⁰⁾

다치 사쿠타로는 독도침탈과 관련하여 무주지 선점을 직접 결부하지는 않으나, 무주지 선점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취득 방법으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제기하는 실효적 지배와 통고의무 배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서 일제의 팽창주의와 일본형 법실증주의를 주창함으로써 가혹한 한국 식민지화 토대의 구축을 주도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⁶¹⁾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 인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치 자신이 역할

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기로 하였고(제1조),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58)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 출판부, 293쪽.

59) 이한기, 2007, 『국제법강의』, 박영사, 308-309쪽.

60) 박현진, 2017, 361-362쪽.

61) Nishi Taira, Toyoda Tetsuya, Kawazoe Rei, Kwon Namhee, Wakatsuki Tsuyoshi, “Controversy on protectorate: A case study on the practical meaning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doctrines in East Asia,” 『ノモス』, 関西大学法学研究所[編], 2022, 1-11쪽.

을 포기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임무에 임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변명을 전제로 일본 정부로부터의 엄격한 요청에 응해 완벽하게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은, 결국 독도침탈을 기점으로 대조선 침탈정책의 토대로서 국제법을 동원했다는 것에 다름 아닌 바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 왜곡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침탈의 기점인 1905년 당시부터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와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된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서 1943년 사망시까지 외무성 고문으로 활동한 다치 사쿠타로가 제기하는 무주지 선점론은 유럽제국주의 국가의 실효적 식민지배론의 원용에 다름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치 사쿠타로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무주지 선점론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무주지 선점 연혁론과 나카노 데쓰야의 무주지 선점 통고 의무 부정론으로 계승되어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토대로 뿌리내리고 있는 점에서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뿌리 깊은 폭력과 탐욕의 본질적 실체가 일제식민주의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의 초석으로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 에도 막부의 도해금지령과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통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이후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법리 왜곡이 전제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도시환, 2020,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제29호.
- _____, 2021,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독도연구』 제31호.
- _____, 2023,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과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적 법리 검토」, 『독도연구』 제35호.
- 박현진, 2017, 『독도영토주권』, 경인문화사.
- 오시진, 2022,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III』, 동북아역사재단.
-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 『국제법강의』 신정판,
- Doh, See-hwan., 2017,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Japan’s Claim to Dokdo and its Colonial Responsibility,”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
- _____, 2020, “Revisiting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perial Ordinance No. 41 and Dokdo’s Sovereignty,”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8.
- _____, 2023, “History of Dokdo invasion and Japanese colonialism,” *Korea Times*, Nov. 29, 2023.
- Nishi, Taira, Toyoda, Tetsuya, Kawazoe, Rei, Kwon, Namhee, Wakatsuk, Tsuyoshi, “Controversy on protectorate: A case study on the practical meaning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doctrines in East Asia,” 『ノモス』, 関西大学法学研究所編, 2022.
- Westlake, J., *International Law, Peace*, 1904,
- The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1931.
- 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1933.
-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 秋山雅之介, 1893, 『国際公法』, 東京専門学校.
- 高橋作衛, 1903, 『平時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 秋山雅之介, 1903, 『国際公法』, 和仏法律学校, 書肆明法堂.
- 立作太郎, 1905, 「保護国の内治に関する保護条約の研究」, 『國際法雜誌』第4卷 第7號.
- _____, 『平時國際公法 上』, 大正二年度東京帝国大学講義 謄写版, 1913,

- _____, 1933, 「無主の島嶼の先占の法理と先例」, 『國際法外交雜誌』第32卷 第8號
- _____, 1939, 「土地の先占到關する沿革的考察」, 『國際法外交雜誌』, 第38卷 第3號.
- 長谷川峻, 1938, 『山座円次郎大陸外交の先驅』, 時事新書.
- 川本秀吉, 1960, 『獨島の歴史的法的地位』, 日本 愛知大學朝鮮文化研究會.
- 皆川洸, 1963, 「竹島紛争と國際判例」, 『國際法学の諸問題－前原光雄教授還曆記念』, 慶應通信.
- _____, 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 『法律時報』 37(10).
- 植田捷雄, 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第54卷 第1号.
- 太壽堂鼎, 1966,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第64卷 第4・5号.
- 太壽堂鼎, 1977, 「領土問題－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の歸屬」, 『ジュリス』第647号.
- 田中愼一, 1977,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1)」, 『社會科學研究』 29-3,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 _____, 1978,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的位置－帝國主義植民地的土地政策の特殊日本＝朝鮮的性格(2)」, 『社會科學研究』 30-2,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24號.
- 坂元茂樹, 1995, 「日韓保護条約の效力-強制による条約の観点から」, 『関西大学法学論集』第44卷 第四・五合併号.
- 太壽堂鼎, 1998, 『領土帰属の國際法』, 東信堂.
- 塚本孝, 2002, 「竹島領有権をめぐる日韓兩國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 平成 14 年 6月号, 『レファレンス』.
- _____, 2007,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おける竹島の取り扱い」, 『竹島問題研究會 最終報告書』.
- 中野徹也, 2012,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第61卷 第5号.

<Abstract>

A Review of Sakutarō Tachi's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on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and Japanese colonialism

Doh, See-Hwan

2025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120th anniversary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its forced Japan-Korea Treaty of 1905. The core of Japan's claim over Dokdo is that Japan's invasion of Dokdo in 1905 based on the theory of territorial preoccupation is legal as a original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regardless of the process of protection and annexation of Korea.

Furthermore,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built the foundation for this aggression policy, and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1904.3-1906.2), which is related to this, are a kind of government body that legally established the Japanese colonialist invasion policy, and it should be noted that not only coincides with the period of invasion of Dokdo and enforcement of Japan-Korea Treaty of 1905, but also that the members lead the subsequent theory of forced annexation.

In short, the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d by Yamaza Enjiro (山座円次郎), who planned Japan's continental invasion starting with the Dokdo invasion, while he was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Political Affairs Bureau (1901-1908), was composed of all international law researchers, including Toru Terao, Sakuye Takahashi, Shingo Nakamura, Tetsukichi Kurachi, Sakutarō Tachi, and not the "Seven Doctors of Tokyo University" who advocated the opening of war against Rus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stortion of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centered on Sakutaro Tachi, who, as an adviso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comprehensively presented the law of invasion of Japanese colonialism, along with the evaluation that the investigator's responsibilities have been fulfilled its duties until the end of its term of the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By presenting the theory of terra nullius as a principle of effective control and the right to acquire colonist imperial territory, Sakutaro Tachi is influencing the study of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laid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over Dokdo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s four note verbale to neutralize the January 18, 1952, peace line declaration issued by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ntered into force in 1952.

In other words, Sakutaro Tachi's theory of terra nullius is being inherited in the lineage of title research by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began with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 followed by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ory of alternative title" by Daijudo Kanae, "theory of shared title" by Kentaro Serita, "theory of effective title" by Yoshio Hirose and Takashi Tsukamoto, Tetsuya Nakano, who later appeared as mainstream scholars in title research.

The imperialist acquisition of territory by the European countries introduced by Sakutaro Tachi as the history of the preemption of sovereignty is inherited as it is in article of Daijudo Kanae, 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osition that recognized the requirement of notice as a prerequisite for preemption has been shifted to denying the obligation of notice, which is also accepted as it is in Tetsuya Nakano's article.

When I examine the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aw logic by Sakutaro Tachi in this regard, Japan unilaterally declared Dokdo as unoccupied territory and

incorporated it into its territory under the Shimane Prefecture Ordinance No. 40 in 1905, based on the completed right to claim Dokdo, which was completed by the promulgation and publication of the 1900 Royal Decree No. 41, which specified Dokdo as the jurisdiction of Uldo-gun as the modern legislation of the Korean Empire. This is nothing less than an illegal invasion of another country's territory,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completed right to claim.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notification of preemptive occupation, which is the acquis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if there is a country with an interest, the necessity of approval should not be overlooked. There is a theory that notification is unnecessary because preemptive occupation itself is original acquisition, but notific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order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pproval or rejection by the parties or third countries. It is a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that the Korea-Japan Treaty of 1905 was forced on November 17, 1905, depriving Korea of its diplomatic rights without notifying Korea, a country with an interest in the annexation of Dokdo, and then the Oki Island officials visited Ulleungdo the following year to notify Korea.

Although Sakutaro Tachi does not directly link preemptiv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to the invasion of Dokdo, he cannot be free from criticism that preemptiv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not only emphasizes the effective control presented in Japan's claim to Dokdo as a method of territorial acquisition by imperialist countries, but also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a harsh foundation for the colonization of Korea by advocating Japanese expansionism and Japanese-style legal positivism in the process of making Korea a protectorate.

In regard to the evaluation of Sakutaro Tachi'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fact that he fully performed his role at the request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the pretext that even if he gave up the role, someone else

would take over, should ultimately be criticized as a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as he used international law as a basis for Japan's invasion of Korea.

Keywords : Invasion of Dokdo, Japanese Colonialism,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emporary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kutaro Tachi, terra nullius,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International Legal Titles

이 논문은 2024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관한 비판론 재검토*

최지현**

〈목 차〉

- I. 서
- II.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소위 모순론
- III. 국제 판례와 시제법 검토
- IV. 한일 입장의 비판적 검토
- V. 결론

〈국문초록〉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원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영토권원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였다는 고유영토 주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한국 학계는 고유영토론과 재확인 조치를 동시에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판례의 법리를 통해 이러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PCA의 팔마스 섬 사건 및 ICJ의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 판례는 권리 창설 당시의 국제법뿐 아니라 권리 존속 시의 국제법에 따라 영토권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증이 어려운 고래의 권원, 역사적 권원, 시원적 권원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를 실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배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2S1A5C2A0309035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3090355)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1cjoshua@hanmail.net

증거 여부가 영토권원 귀속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권원의 재확인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주장은 형식적 합리성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이후의 법적 논의의 초점은 한국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간 실효적 지배의 우열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연계된다. 이 글은 이러한 논리적 전개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독도 영토권원 귀속 문제는 결국 식민주의와 탈식민조치에 관한 연구와 연관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 시마네현 고시, 팔마스섬 사건,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 실효적 지배, 주권의 표시 방식

I. 서

일본 내각의 1905년 각의 결정 및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토권원의 근거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한 영토권원 주장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국제 판례 중에는 역사적 권원, 고래의 권원, 혹은 시원적 권원에 따라 영토권원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었던 사례가 없다. 또한 국제 판례는 실효적 지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영토권원 귀속 입증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따라 영토권원 귀속을 결정했던 팔마스 섬 사건 이후의 일관된 영토권원 귀속에 관한 국제 판례의 경향이다. 따라서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섬의 영토권원 귀속에 따른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소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원 의사의 재확인 주장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권원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것이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는 영토권원에 관한 국제법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소위 모순론

1. 일본의 입장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竹島)” 홈페이지에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조치에 대해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오키섬 사업자가 강치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섬의 영토편입 및 10년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하여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¹⁾

이는 오키섬의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에서 전복 채취, 강치 포획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도를 지나쳐 다녔고, “늦어

1)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일본어본); https://www.mofa.go.jp/a_o/na/takeshima/page1we_000060.html (영어본);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hennyu.html (한국어본). (2024년 10월 16일 검색)

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는 고유영토론 주장에 더하여,²⁾ 1900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다케시마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2. 한국의 입장

우리나라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일본의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독도 영토권 원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³⁾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토권원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이나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서 같이 게시하고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라는 팜플렛 자료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의 문서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⁴⁾ 더불어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 이유는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러일전쟁을 한국에서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1910년에는 결국 한일 강제병합을 단행하였는데 그 단계적 침탈 과정에서 첫 번째 침탈한 영토가 독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가 우리나라의 독도

2)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ryoyu.html (일본어본); https://www.mofa.go.jp/a_o/na/takeshima/page1we_000058.html (영어본);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ryoyu.html (한국어본). (2024년 10월 16일 검색)

3)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우리 영토인 근거,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4) 외교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p. 8.

영토권원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⁵⁾

3. 한국 학자들의 일본의 모순 주장 비판

한국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거나,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도 다시 이를 1905년 무주지로 비정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편입 조치를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법적 성질의 모순성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권원에 대한 일본의 침해 행위의 불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의 오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다시 영토로 편입할 조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는 조치 자체가 독도가 당시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⁶⁾ 이 외에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외교각서에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당시의 자국 관행에 맞는 확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현대 국제법에 부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국의 영토로 수시로 확인하는 관행이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⁷⁾ 더불어 이 견해는 독도 선점론에서 고유영토설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⁸⁾

5) Ibid., p. 10.

6) 이장희, “일본(日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不當性)과 남북간의 협력방안”, 『안암법학』 제15호, p. 189.

7) 제성호, “국제법상 도근현 고시 제40호의 불법·무효성”, 『중앙법학』 제10집 제1호 (2008), p. 453.

8) Ibid., pp. 455-456.

Ⅲ. 국제 판례와 시제법 검토

1. 국제 판례

1) 팔마스 섬 사건

(1) 개요

이 사건은 네덜란드와 미국 사이에서 팔마스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 사건이다. 미국은 쿠바 전쟁을 승리하고 스페인과 1898년 파리 평화조약(The Treaty of Paris of 1898)을 체결하면서 쿠바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괌의 영토까지 할양받게 된다. 이후 1906년 미국 총독이 필리핀 인근의 팔마스 섬을 방문하였는데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두 국가 사이에 영토분쟁이 불거지자, 미국과 네덜란드는 막스 후버(Max Huber) 재판관을 1인 중재재판관으로 하는 중재재판에 영토권원 결정을 회부한다. 미국은 스페인의 발견을 근거로 자신의 영토권원을 주장하였다. 이 점은 후버 재판관도 인정하였지만 문제는 단순한 발견이 권원 취득의 유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⁹⁾ 미국은 행위시법주의 즉 행위의 효과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발견이 유효한 영토권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에 반하여 네덜란드는 주권의 계속에 기반하여 영토권원을 주장하였다. 주로 네덜란드가 1677년과 1679년 종주권 협정을 체결하였던 타부칸국(State of Tabukan)의 영토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¹⁾ 또한 1701년과 1726년에 네덜란드가 타부칸국에 보낸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9)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USA), 4 April 1928,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 (1928), p. 844.

10) Island of Palmas (Netherlands, USA), US Memorandum, pp. 60-78.

11) 각주 9의 판례, p. 862.

보고서에 타부칸국 소속인 팔마스 섬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1726년 테르나테(Ternate) 총독의 보고서에 팔마스(미앙가스, “Meangas” 로 기록)섬의 소속이 타루나(Taruna)인지 아니면 타부칸인지에 대한 결정이 영토권원의 근거로 제시되었다.¹²⁾ 1825년 네덜란드 쪽 보고서는 팔마스를 타루나의 종속지로 표현하였다.¹³⁾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후버 재판관은 미국의 피계승국인 스페인의 최초의 권원, 즉 발견에 의한 권원 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네덜란드가 평화적이고 계속적으로 국가 권력을 섬에 표시하여 권원을 취득하였고, 미국이 다른 주권 취득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네덜란드의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여 네덜란드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¹⁴⁾

(2) 주권의 표시와 제2의 시제법

이 사건에서 후버 재판관은 주권의 표시와 시제법 이론에 기반하여 팔마스 섬의 영토권원을 확정하였다. 후버 중재재판관은 중재재판을 하던 당시의 국제법 상 선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복, 혹은 할양 같이 실효적인 획득(effective apprehension)에 기반하여야 한다고하여 발견만으로는 영토권원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¹⁵⁾ 이는 미국이 스페인 발견에 기반하여 팔마스에 관한 영토 주권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재판 당시의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다. 즉 현재의 법으로는 발견이 영토 주권의 취득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동시에 후버 중재재판관은 주권의 계속이 있어야 하며,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영토 주권의 표시(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평화적인)는 권원에 상응한다(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peaceful in relation to other States) is as good as a title)” 고 하여 주권 취득의 양태에 집중하는 교과서적인 논의가

12) *Ibid.*, p. 863.

13) *Ibid.*

14) *Ibid.*, p. 867.

15) *Ibid.*, p. 839.

아니라 주권 표시가 주권의 취득 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¹⁶⁾ 특히나 국제법 체제는 분권적 체제로서, 국가 이상의 존재(super-State Organization)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소 미성숙한 체제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권리 주장만으로는 권리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¹⁷⁾

더불어서 후버 재판관은 시제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언급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국들도 동의한 것이지만, 사안을 평가할 때 법적인 분쟁이 존재하였던 당시에 법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¹⁸⁾ 이는 시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¹⁹⁾ 문제는 그 다음에 시제법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후버 재판관은 권리가 창설될 때와 달리 권리가 존재할 때의 기간에는 법의 진화에 따른 조건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²⁰⁾ 이는 곧 권리가 창설될 때 뿐만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게 될 때에도 계속적으로 그 당시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판정이 내려진 1928년 당시에는 ‘실효적인 획득(effective apprehension)’을 통하여 주권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버 재판관의 중재판정에 대해서 로버트 제닝스(Robert Jennings)는 권리의 창설 뿐만 아니라, 권리의 존재시에도 그 동안 발전한 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권리 존재시의 적용되는 법을 제2의 시제법이라고 불렀다.²¹⁾

16) 許淑娟, 領域權原論: 領域支配의 實效性と正當性 (東京大出版會, 2012), p. 88-94, pp. 104-146.

17) 각주 9의 판례, p. 839 참조.

18) *Ibid.*, p. 845.

19) Rosalyn Higgins, “Time and the Law - Int Perspectives on an Old Problem”,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6 (2007), p. 515; Daniel-Erasmus Khan, “Max Huber as Arbitrator: The Palmas (Miangas) Case and Other Arbitr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1 (2007), p. 167 참조.

20) *Ibid.*

21) Robert Y.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with a New Introduction by Marcelo G. Kohen*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63), p. 44.

(3) 시제법 관점에서 발견의 영토권원 근거 여부

후버 재판관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발견이라는 권원에 대해서 19세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사회 구성원인 국가의 주권(the sovereignty of States members of the the community of nations)’ 아래 있게 된 상황에서 어떤 지역이 한 국가의 실효적 주권 아래있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영토 주권에 대한 권원이 부여되었었다는 이유로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권원의 취득 근거인 발견에 기반하여 한 국가의 배타적 영향권을 승인하는 것은 실정법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²²⁾ 즉 미국은 피승계국인 스페인 발견에 의한 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1898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던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발견만으로 스페인의 배타적 영향권을 주장하는 것을 후버 재판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행위 없이 발견만으로는 팔마스 섬의 주권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²³⁾

이러한 후버 재판관 입장을 정리하면, 권리가 창설된 당시 발견 등의 권원만으로는 영토권원이 인정될 수 없으며, 권리의 존속시에 영토권원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권리가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비로서 영토권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2) 멩끼에 에크레오 사건

(1) 개요

영국과 프랑스가 노르망디 부근의 멩끼에(Minquiers) 섬과 에크레오(Ecrehos) 섬에 관한 영토권원 문제를 ICJ에 회부한 사건이다. 영국은 1066

22) 각주 17의 판례, p. 846.

23) *Ibid.* 더불어서 후버 재판관은 발견이 권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발견을 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발견만으로는 권원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발견을 미성숙의 권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기간 내에 실효적 선점에 의하여 이것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이 이를 추진한 적도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년의 노르망디공이 영국을 점령하면서 영국의 군주가 되었으므로 분쟁 도서들에 대한 영토권원 역시 영국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고래의 권원(ancient title)’의 존재를 주장하였다.²⁴⁾ 이에 대해서 프랑스는 노르망디공이 영국을 점령하여 군주가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프랑스의 봉신(vassal)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프랑스가 봉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원적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²⁵⁾ 결국 이 사건에서 ICJ는 시원적 권원이거나 고래의 권원에 근거하지 않고, 멩끼에 및 에크레오 도서의 점유와 관련된 직접 증거를 중심으로 영토권원을 결정하였다.²⁶⁾ ICJ는 영국이 제시한 멩끼에 섬과 에크레오 섬에 영토권원 행사 사실을 인정하여 주고 영국의 권원을 인정하여 주었다.²⁷⁾

(2) 유효한 권원에 의한 대체

ICJ는 영국과 프랑스의 권원 주장이 시원적 권원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역사적으로 섬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²⁸⁾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ICJ는 “시원적 봉건적 권원이, 그러한 권원이 대체되는 시점의 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 한 오늘날 법적 효력이 없다”²⁹⁾고 하였다. 즉 시원적 권원이거나 봉건적 권원이 현 시점의 국제법에 따라 대체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ICJ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역

24)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Judgment of November 17th, 1953: I.C.J. Reports 1953, p. 53.*

25) *Ibid.*, p. 56.

26) *Ibid.*, p. 57.

27) 에크레오(Ecrehos) 섬에 대해서는 영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과세 사실, 1875년 국고지불명령서(Treasury Warrant)를 근거로 영국의 영토권원을 인정하여 주었다. 멩끼에(Minquier)섬에 대해서도 영국이 국가 권원을 행사했던 여러 전례, 저지(Jesey)섬 사람들의 수렵을 위한 가옥 건축, 세금 등록을 영국에 한 점을 근거로 영국의 영토권원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28) 각주 24의 판례, p. 57.

29) *Ibid.* p. 56.

사적 권원, 고래의 권원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르망디 지역 전체의 귀속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문제로 멩끼에와 에크레오의 영토권원 귀속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ICJ는 멩끼에 및 에크레오 도서의 점유와 관련된 직접 증거에 집중하며 영토권원 귀속을 결정하였다.³⁰⁾ 결국 이는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는지를 토대로 섬의 영토권원 귀속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판례 검토

팔마스 섬 사건은 현대의 국제법 체제에 기반하여 영토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영토권원의 귀속과 관련하여 무주지 선점, 시효취득, 침부, 할양 등 영토취득과 관련한 양식론의 입장에서라기 보다는 누가 평온하고 계속적인 주권의 행사를 했는지 중심으로 하는 소위 ‘주권의 표시 방식’에 따라서 영토권원 귀속을 결정하였다.³¹⁾ 이러한 논의는 ICJ의 첫 번째 사건인 멩끼에 에크레오 사건에서 과거의 권원 주장이 현대의 국제법 체제 상 유효한 권원에 의한 대체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멩끼에 에크레오 사건에서 주장된 ICJ의 권원의 대체에 관한 논의가 명시적으로 제2의 시제법 주장과 동일한 논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2의 시제법 논의는 권리 창설시의 국제법과 권리 존속시의 국제법을 구분하고, 권리 존속과 관련하여서는 권리의 존속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설시의 발견 권원이 존속시의 국제법인 실효적 지배에 따라 보충되어야 한다는 팔마스 섬 사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멩끼에 에크레오 사건의 경우 권리 창설 당시의 권원인 봉건권 권리 즉 노르망디와 관련한 영국의 봉신으로서의 지위와 프랑스 봉토권에 근거한 시원적 권원의 적법성 여부는

30) *Ibid.*, p. 57.

31) 주권의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許淑娟, 領域權原論: 領域支配의 實效性と正當性 (東京大出版會, 2012), pp. 95-187 (第2 章行使すること取得される 領域主權—「主權の表示」アプローチ).

ICJ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권리 창설 당시의 국제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를 고려대상으로 삼았던 팔마스 섬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CJ가 팔마스 섬 판례의 제2의 시제법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식론이 아니라 주권의 표시 방식에 따라서 영토권원 취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견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시제법 이론과 영토권원 귀속 문제

시제법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연속되는 기간에 별개의 법적 체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별개의 기간에 존재하는 법을 의미한다.³²⁾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권리의 창설시와 권리 존재시를 구분하여, 권리의 발생시에 발효중인 법에 따라 권리의 발생이 다뤄지는 만큼, 권리의 존재시에도 권리의 계속적인 표시(manifestation)를 요구하는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막스 후버 재판관의 팔마스 섬 사건 판례를 통하여 이를 권리 창설시의 시제법과 구분하여 제2의 시제법이라고 부른다.

권리 창설시와 권리 존속시의 국제법이 구분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논의는 결국 과거 영토권원 창설 당시의 국제법이 발견을 독립적인 권원으로 볼 수 있고, 혹은 시원적 권원, 고래의 권원, 역사적 권원에 근거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 기원한 현대 국제법 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는 현재의 국제법에 따라서도 영토권원이 지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결국 현대 국제법 체제 아래에서 영토권원 취득 주장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영토 취득이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논란 혹은 영토 분쟁도 과거에 종결되었다면 시제법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것이 없다. 과거 서구 유럽이 발달시킨 국제(공)법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영토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이후 국제법 체제가 확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32) 참고 각주 17의 판례, p. 845.

제기된 영토 분쟁 사건에서 현재의 국제법에 따라서 영토권원 귀속을 확정할 수 밖에 없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시제법 논의의 핵심인 것이다.

IV. 한일 입장의 비판적 검토

1. 일본의 ‘재확인’ 주장의 의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다케시마 영유 주장의 재확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 전문가 집단, 소위 ‘유식자’들의 조언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그 운영은 일본 내각 관방 산하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가능하게 했던 일본 내각의 각의 결정을 통해서 다케시마 영유 주장을 재확인한 이유는 “예로부터 공통의 인식에 의해 인정되어 온 역사적 권원을 근대 국제법이 요구하는 권원으로 ‘대체’ 혹은 ‘교체’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³³⁾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판례의 근거로 멩끼에 에끄레오 재판 사건에서 ICJ가 “시원적 봉건적 권원이, 그러한 권원이 대체되는 시점의 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 한 오늘날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시가 제시되었다.

결국 일본의 재확인 주장은 국제 판례에 따라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영토를 서양에서 수입되어 온 근대 국제법 체제에 따른 실효적 지배 행

33) 일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chapter01_column_05-02.html (2024년 11월 12일 검색)

위라는 설명이다. 이는 해당 사이트가 “1905년의 영토 편입 조치와 그에 이은 지속적인 주권의 표시를” 통하여 이전에 유효하게 설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영토권원을 “현대적 요청에 따라 충분히 대체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2. 제2의 시제법 이론에 따른 검토

일본의 경우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에서 제시된 영토권원의 재확인 주장이 아니라, 팔마스 섬 사건을 통하여 후버 재판관이 제시한 제2의 시제법 이론에 따른 정당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 후버 재판관이 팔마스섬 사건에서 제시한 이른바 제2의 시제법 이론, 즉 권리 창설시 뿐만 아니라 권리 존속시에 도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방식으로 주권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통하여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존재를 옹호할 수 있다. 고유영토론 주장은 권리 창설의 특정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이론이다. 과거의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부터 해당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삼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기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후 권리의 계속시 특히나 서구의 국제법 체제를 도입한 이후인 1905년 당시 국제법적 조치로서 실효적 지배 행위의 하나로 내각의 각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일본은 제2의 시제법 논의에 의한 합법화를 시도하지 않고,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의 판시인 영토권원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스 후버 재판관이 단독 판사로 재판한 팔마스섬 사건의 경우 미국의 발견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권리 존속시에 실

34)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 鼎), 「다케시마 분쟁」(1966년 초출) 『영토 귀속의 국제법』(도신도, 1998년), p. 143, 일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https://www.cas.go.jp/ryodo_kr/kenkyu/takeshima/chapter01_colu_mn_05-02.html (2024년 11월 12일 검색) 재인용.

효적 방식으로 주권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막스 후버 재판관은 네덜란드가 보여준 실효적 지배에 따라서 영토권원 귀속을 결정하여 주었다. 반면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모두 고래의 권원 혹은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효적 지배에 관한 직접 증거를 제시해준 것은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의 영토권원 귀속을 인정하여 주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권리 창설시의 권원으로 ‘고유영토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영토권원 귀속에 관한 양국의 각자의 입장에 관한 전개 양상이 팔마스 섬 사건 보다는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과 더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팔마스 섬 사건에서 네덜란드는 고래의 권원이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에서 ICJ가 제시한 현대적 권원으로의 대체라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비정하는 것이 훨씬 더 판례법 논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3. 실효적 지배 우열과 식민지배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현대적인 영토권원으로의 대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온전히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한국에 우선해야 한다. 첫째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보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혹은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을 통한 한국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정확하게는 일본이 영토 문제의 상대방인 한국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은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 실효적 지배의 우선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식민지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우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의 논의이다. 따라

서 실효적 지배의 우열과 관련한 논의는 반드시 영토 문제와 식민지배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³⁵⁾

식민지배 문제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이 영토권원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독도의 영토권원 귀속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논의이다. 하지만 현재 다케시마 편입 조치가 과연 이전의 고유영토론 주장과 합치하는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이 논문의 검토 주제와는 별개의 논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으나, 분명한 것은 결국 독도와 관련한 영토권원 귀속의 결정, 우리나라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및 그 근거가 되는 내각 결의의 우열 판단은, 논리 필연적으로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 및 그것이 독도 영토귀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세분하면 식민주의 자체의 일반적인 불법성 문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불법성 문제, 식민지배가 영토권원 귀속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한 실효적 지배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이 한국의 주장에 우선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은 지속적으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표기된 ‘석도(石島)’가 독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³⁶⁾ 하지만 여기에 더 하여 일본이 취하

35) 존 반 다이크 교수의 경우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한국인에게 상당히 극악 무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일본의 조치를 법적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John M. van Dyke,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2007), p. 181. 반면 일본의 사카이 히로노부 교수는 이를 현재의 법으로 과거의 법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Hironobu Sakai, “Chapter 7: Temporal Elements and Their Regulation in Determining Territorial Disputes”, in Masaharu Yanagihara and Astuko Kanehara (eds),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Leiden, Boston: Brill, 2024), p. 249, note 92.

36) 일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chapter01_column_05-02.html (2024년 11월

고 있는 기본적인 논의 태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우선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까지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둘 중 어느 나라의 실효적 지배가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혹은 강제지배의 적법성 논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제에 대한 반박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에 할애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³⁷⁾

V. 결론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한 과거 권원의 대체 주장은 적어도 ICJ의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과 모순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영토권원에 관한 국제 판례의 발전 과정을 검토해보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³⁸⁾ 현대 국제법에 기반하여 영토권원 귀속에 관하여 결정했던 국제 판례는 이전의 역사적 권원 혹은 시원적 권원, 고래의 권원에 기반하여 영토권원 귀속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현대 국제법 체제 아래에서 실효적 지배에 따라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은 프랑스나 영국은 역사적 권원 혹은 시원적 권원, 고래의 권원에 근거한 영

12일 검색)

37) 목차 II. 2. 한국의 입장 참조.

38) 물론 이와 관련하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독도의 편입 및 대하원 청원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를 통하여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넣으려고 했던 사정, 및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일본의 해군성과 외무성이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니라 무주지로 보고 이에 대해서 나카이가요자부로에게 다시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독려했던 사정과는 역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권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영국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직접 증거 제시에 기반하여 영토권원 귀속을 결정하여 주었다. “시원적 봉건적 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대 주권 국가 체제가 수립되면서 확립된 국제법에 따른 유효한 영토권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ICJ 판례의 논리에 따르는 한³⁹⁾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한 재확인 주장은 영토권원 귀속과 관련한 국제법에 따라 적어도 형식적 합리성은 갖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이렇게 되면 결국 독도의 영토권원 귀속의 결정은 한국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한 각각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증거 중 어느 것이 우월할 것인지의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논리필연적으로 당시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식민지배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적 지배의 우열을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독도의 영토권원 귀속과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관한 불법성 여부 및 이것이 영토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필수불가결한 논의가 되는 것이다.

39)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Judgment of November 17th, 1953: I.C.J. Reports 1953*, p. 56.

40) 물론 당시에 일본이 무주지를 선점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적절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모순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외교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이장희, “일본(日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不當性)과 남북간의 협력방안”,
「안암법학」 제15호

제성호, “국제법상 도근현 고시 제40호의 불법·무효성”, 「중앙법학」 제10집 제1
호 (2008).

〈외국자료〉

Rosalyn Higgins, “Time and the Law - Int Perspectives on an Old Problem”,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6 (2007).

Daniel-Erasmus Khan, “Max Huber as Arbitrator: The Palmas (Miangas) Case and
Other Arbitr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1
(2007).

Robert Y.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with a New
Introduction by Marcelo G. Kohen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63).

다이주도 가나에(太寿堂 鼎), 「다케시마 분쟁」(1966년 초출) 『영토 귀속의 국제법』
(도신도, 1998년),

John M. van Dyke,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2007).

Hironobu Sakai, “Chapter 7: Temporal Elements and Their Regulation in
Determining Territorial Disputes”, in Masaharu Yanagihara and Astuko
Kanehara (eds),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Leiden,
Boston: Brill, 2024).

Masaharu Yanagihara and Astuko Kanehara (eds), Japan’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Leiden, Boston: Brill, 2024).

許淑娟, 領域權原論: 領域支配の實效性と正當性 (東京大出版会, 2012).

<국제판례>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Judgment of November 17th, 1953: I.C.J. Reports 1953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USA), 4 April 1928,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 (1928).

<웹문서>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우리 영토인 근거,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일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https://www.cas.go.jp/jp/ryodo_kr/kenkyu/takeshima/chapter01_column_05-02.html.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일본어본); https://www.mofa.go.jp/a_o/na/takeshima/page1we_000060.html (영어본);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hennyu.html (한국어본).

<Abstract>

Re-examining the criticism of the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No. 40

Choi, Jee-Hyun

Japan cites the 1905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No. 40 as a primary basis for it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referred to as Takeshima in Japan). Japan asserts that this directive was a measure to reaffirm its territorial rights, explaining that it does not contradict its inherent territory theory. In response, South Korean scholars argue that discussing both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reaffirmation measure simultaneously is contradictor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se arguments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case law. Notably, the PCA's Palmas Island case and the ICJ's Minquiers and Ecrehos case emphasize that territorial claims must be substantiated not only by the international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ir establishment but also by the legal standards applicable during their continued existence. These cases shift the focus from difficult-to-prove claims based on ancient title, historical title, or original rights to evidence of effective control as the core determina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Following this precedent, the 1905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could be considered a reaffirm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through effective control, thereby granting Japan's claim formal validity. However, further legal discourse inevitably leads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 control exercised by Korea's 1900 Imperial Edict No. 41 and Japan's 1905 Shimane Directive. This analysis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illegality of Japan's colonial

rule over Korea. The Dokdo territorial issue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research on colonialism and post-colonial measure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Keywords: 1905 Shimane Prefecture Directive No. 40, Palmas Arbitration case, Minquiers and Ecrehos case, effective control, presentation of sovereignty approach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한국 현대사적 의미*

- 영토 조항을 중심으로 -

박 지 영**

〈목 차〉

1. 머리말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토조항과 독도
3.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독도 문제
4. 맺음말

〈국문초록〉

‘한일기본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서브 시스템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한일기본조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식민지 청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과 그 서브 시스템인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재적 재검토를 통해 독도문제를 한국의 현대사적 의미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영토문제, 즉 독도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떠돌기만 했을 뿐, 중심 과제로 등극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에 와서는 한일 양국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2S1A5C2A0309035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3090355)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jypark84@ynu.ac.kr

서 모두 내정화되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은 식민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터전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도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매우 부실한 조약이었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맺어진 조약이었으므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 식민주의를 제창한 2001년 8월을 ‘더반 선언’을 실마리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기본조약, 식민주의, 더반 선언

1. 머리말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대한민국과 일본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재구축했다.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과정에서 한국 국내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나, 박정희 정권은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시위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국 국내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일본 측은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서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필요했던 한·미·일 동맹을 위해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¹⁾

‘한일기본조약’은 서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중략)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1) 한영구 외, 『현대한일자료집 1(1965년-1979년)』, 오름, 2003, 21쪽.

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서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한일기본조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식민지 청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과 그 서브 시스템인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속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재적 재검토를 통해 독도문제를 한국의 현대사적 의미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토조항과 독도

잘 알려진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에 해당하는 제2조가 결정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몇 개의 초안이 존재했으며, 그 내용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규정되었다가 일본 영토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최종 조약문에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종 조약문의 내용을 두고 한일 양국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독도와 관련된 제2조 a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 하고 있으며,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대한민국

의 불가분의 영토가 되었고, 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재확인”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당시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들어 한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데, 러스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한에 답아서 보냈다.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 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반도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한반도가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²⁾

이처럼 러스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약문에 포츠담 선언이 무조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에 있는 것으로 미국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러스크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일본 영토에 대한 검토가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1944년에 국무성 안에 전후계획위원회가 설치되고, 여기에서 검토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a.go.jp/a_o/na/takeshima/page1we_000062.html)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As regards to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된 내용을 중심으로 극동위원회 및 국가, 지역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CAC문서 중에, ‘CAC334, 한반도-영토문제-제주도와 거문도’ (1944년 12월 20일)라는 문서가 있다. 문서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CAC334’에서는 한반도의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거문도를 거론하며 두 섬이 한반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946년 3월 이후 주요 연합국 대표로 구성되는 극동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대일점령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SCAP)의 명령으로 내려졌다. 하지만 SCAP이 발령한 정책 대부분은 미국 정부 내의 심의를 거쳐 국무성·육군성·해군성 조정위원회(SWNCC)가 대통령을 통해 연합국의 이름으로 발표한 미국의 정책이었다. 따라서 당시 SCAP이 발령한 지령 중, ‘SCAPIN677’ (1946년 1월 29일)과 ‘SCAPIN1033’ (1946년 6월 22일)이 일본의 행정구역과 어업구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지정한 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령이 일본의 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최종적인 처리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1946년 6월 24일에 작성된 ‘SWNCC59-1, 구 일본 지배하의 위임통치령 및 여러 작은 낙도의 신탁통치 및 기타 처리방안에 관한 방침’이라는 문서의 부록에는 독도를 한반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반도의 여러 섬- 카이로 선언은 한반도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및 한반도의 모든 먼 바다의 작은 섬은 역사상 및 행정상 한반도의 일부이며, 주로 한반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일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³⁾

3) 1946년 6월 24일, ‘SWNCC59-1’, 구 일본 지배하의 위임통치령 및 여러 작은 낙도의 신탁통치 및 기타 처리방안에 관한 방침’ 부록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애초에 제주도,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일부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카이로 선언의 내용에 따라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 한국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6년 10월 이후에 작성된 조약문 초안에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미 국무성은 1946년 10월에 대일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약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1차 초안’ 이 나온 것은 1947년 3월이었다. ‘1차 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처분 관련 내용이 제1장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제1조에 일본의 영토를 표기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한 지도까지 첨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에 관해서 한반도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먼바다 작은 도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은 여기에서 한반도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Takeshima)>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먼바다 작은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⁴⁾

하지만, 이 내용에서 독도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어느 국가에게 귀속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후 작성된 ‘2차 초안’ (1947년 8월), ‘3차 초안’ (1948년 1월), ‘4차 초안’ (1949년 10월), ‘5차 초안’ (1949년 11월)에서는 내용이 약간씩 변경되거나 표시 방법의 수정이 있었지만, 독도가 한반도에 귀속하는 섬이라는 내용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사이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철수 등,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고문으로 있던 윌리엄 시볼

4) 1947년 3월, 미 국무성 대일강화위원회 작성 ‘1차 초안’

트가 국무성에 ‘5차 초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너무 자세한 초안 내용으로 인해 미국이 다른 연합국과의 교섭력을 전혀 지니지 못하므로 전략적인 여지를 남겨두어 교섭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본의 영토와 관련해서 선으로 둘러싸는 것을 회피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이 일본이 포기 및 보유할 영토를 기술하는 실용적이며, 편리한 방법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긋기 방식은 심각한 정신적 불이익을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부록 안에 많은 영역을 열거할 필요가 있더라도, 일본은 선으로 둘러싸는 것을 회피하는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⁵⁾

그리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서 시볼트는 역사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반도 방향으로 일본이 과거 영유했던 각 섬의 처분에 관해 우리가 제안한 제3조 중에서 죽도는 일본에 소속된다는 취지를 명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은 오래되었으며,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한반도 먼바다의 섬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합중국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문제로 안정보장의 배려에서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국을 설치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⁶⁾

위의 내용에서 보면 시볼트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토주권이 오래되었으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측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의 안전보장상의 이해관계라는 전략적 관점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볼트의 권고가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 ‘6차 초안’ (1949년 12월 29일)이었으며, 여기에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에 귀속하는 것으

5) 1949년 11월 14일, 윌리엄 시볼트의 전문

6) 1949년 11월 14일, 윌리엄 시볼트의 전문

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이후 미국 정부의 조약문 초안 작성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딜레스가 작성한 ‘7차 초안’ (1950년 8월 7일)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범위에 관해 규정한 내용이 사라지고 매우 간결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일본이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며, 한국과 관계의 기초를 1948년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둔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술도 없다. 그리고 ‘8차 초안’ (1950년 8월 18일)에서는 ‘7차 초안’과 흡사한 내용으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9차 초안’ (1950년 9월 11일)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같은 날 작성된 ‘대일강화 7원칙’에서도 일본의 영토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서방 자본주의 세계의 일원으로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영토범위를 규정한 조항과, 영토 포기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차 초안’ (1951년 3월)에서는 다시 일본의 영토포기라는 표현이 부활했으며, 한반도의 독립 승인이라는 표현과 UN결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은 한반도, 대만 및 땡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⁷⁾

이후 ‘10차 초안’의 내용을 두고 미국과 영국 간에는 절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작성된 것이 1951년 5월 3일의 ‘영미공동초안’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은 한반도(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대만과 땡호제도

7) 1951년 3월, ‘10차 초안’

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 위임통치제도와 관련한 또는 남극지역에서 일본 국민의 과거 활동에 의거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국은 구 일본위임통치하에 있던 태평양양제도에 대한 신탁통치제도 확대와 관련한 1947년 4월 2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수락한다.⁸⁾(밑줄 부분에 대해 영국은 입장 유보)

이 영미공동초안에서 일본의 영토범위에 대한 표기 방식은 경위도를 사용한 영토범위 표시방식과 UN 결의 방식도 채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만을 명기했을 뿐, 독도는 제외되고 말았다.

이후 1951년 6월 14일에 작성된 ‘영미공동초안’ 제2조 a항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독립 승인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한국 관련 내용은 5월 초안과 거의 같았으며, 독도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그리고 이 초안의 내용이 최종안까지 변경되지 않고 결국 1951년 9월에 조인된 대일평화조약의 제2조 a항에 그대로 채용되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영토에 대해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이익만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이러한 영미 양국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은 수정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밝힌 러스크의 서한과 1954년에 뱌플리트가 제출한 보고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당시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러스크의 서한은 미국의 견해를 한국 정부에만 전달한 것으로 연합국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2일에 작성된 국무성 문서(‘한국과 일본 간의 리앙쿠르 락스 분쟁 해결 방안’)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견해가 일

8) 1951년 5월 3일, ‘영미공동초안’

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만약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는 미국은 최대한 이 분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이 중재를 요구할 때도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벤틀리트 또한 그의 귀국보고서에서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미국의 견해가 공표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3.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독도 문제

조약문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채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해 1951년 10월 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주장을 미국 국무성에 전달했으나, 이미 조약은 체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은 한일 간의 직접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것은 1951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14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과 연계되어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0월 20일에 도쿄에서 개최된 예비회담이 그 시초였다. 참석자는 대한민국 측 6명(수석대표 양유찬 주미대사), 일본 측 6명(수석대표 이구치 사다오 외무차관)이었으며, GHQ의 외교국장인 시볼트가 참관하였다. 애초에 일본은 이 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만을 다루려고 하였지만, 대한민국 측은 실질적인 평화회담으로 간주하여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결국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일본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뿐만 아니라, 기본관계수립,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통상항해조약, 어업협정, 선박반환문제 등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교정상화 회담의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부각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2년 1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이하 평화선 선언)’⁹⁾이었다. 이때 우리 정부는 ‘평화선’을 설정하고 독도를 그 안에 위치하게 하였다. ‘평화선 선언’이 선포된 직후인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은 “그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죽도(별칭 리앙쿠르암)로서 알려진 일본해상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가정(假定)하였다. 일본 정부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인 이들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에 의한 어떠한 가정 및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¹⁰⁾라는 내용을 담은 구술서를 주일 한국 대표부로 송부하고 항의했으며, 이 항의가 촉발점이 되어 양국 간의 외교논쟁이 개시되었다.

이 ‘평화선 선언’의 기초가 된 것은 당시 상공부 수산국의 어로과장 지철근이 작성한 ‘어업관할수역안’였다. 애초에 지철근이 작성한 것은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트롤어업금지구역’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울릉도는 그 수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독도를 포함한 것은 당시 외무부 정무국장 김동조였다.¹¹⁾

1월 28일의 일본 측 항의에 대해 한국은 2월 12일에 ‘평화선 선언’이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따른 것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 한국정부는 일본과 논쟁을 할 생각이 없으며, 그저 1946년 2월 29일의 SCAPIN677에 의해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또 맥아더 라인의 외측에 둔 것은 한국의 영유권을 확증하는 것임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답변을 일본 정부에 보냈다.¹²⁾

이에 일본 측은 1953년 7월 13일에 <일본 정부 견해>를 송부하고 한국 측은 9월 9일에 제1차 반론을 송부했다. 그 후 1965년까지 총 4차에 걸친

9) 『대한민국 외교부 연표-부 주요 문헌 1948-1961』, 1962, 228-229쪽.

10) 『독도문제개론(전면개정판)』(이하 『독도문제개론』),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2012, 43쪽.

11) 지철근, 『평화선』, 범우사, 1979, 112-121쪽.

12)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1) 왕복외교문서(1952-76)』(이하 『왕복 외교문서』), 1977, 3-6쪽.

양국 정부의 견해가 구술서라는 형식으로 오갔으며 이러한 양국 간의 구술서 논쟁은 1965년 12월 17일에 한국 측이 일본의 제4차 견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합법적인 영토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제기한 일체의 주장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내용”¹³⁾이라고 통고함으로써 양국 간의 왕복 구술서 논쟁은 종결되었다.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진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한 논쟁은 거의 모든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부의 1953년 7월 13일자 제1차 견해부터 1965년 12월 17일자 한국 정부의 제4차 구술서까지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들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견강부회(牽強附會)의 논리라며 부정했으며, 그 이후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주장은 주로 ‘고유영토론’과 ‘선점론’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고유영토론’은 독도가 16세기 이래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1905년의 편입 조치는 단지 이것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점론’은 1905년의 시점에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였으므로 근대 국제법적인 개념인 ‘선점’에 의해 편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1905년의 독도 편입조치가 한국 정부의 외교권과 재정권이 박탈되고,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거듭 밝혔듯이,¹⁴⁾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

13) 『한일 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동북아역사재단 역사총서 64), 2013, 373쪽.(이하 『한일 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14)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술서, 『왕복 외교문서』, 34-36쪽; 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측 구술서, 『왕복 외교문서』, 87쪽.

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일조약’ 제2조에 “한국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무부의 외교고문으로 고용하여 초빙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일 의정서 제4조도 “러일전쟁 시 한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략적 장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죽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¹⁵⁾고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 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독도 영토 편입 100년을 맞이한 2005년의 시마네 현의 ‘죽도의 날’ 조례제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지금까지도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일국주의 역사관도 문제를 더욱 해결 곤란한 것으로 만들고 있어, 한일 양국 정부의 약 10년에 걸친 논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양국의 사료 해석은 각자에게 유리한 사료의 일부분만 편취되어 아전 인수적으로 이용되거나, 자국의 사료와 모순될 경우는 무시되는 것이 많았다. 이처럼 독도 문제를 보는 역사 인식과 역사관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 있어,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국의 인식 차는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초기부터 존재했다. 한일회담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무조약·무국교 상태에 있는 양국 간에 새롭게 국교를 수립하는 장래를 위한 우호조약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한일 간의 문제 대부분이 일본의 한국 강제 점거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등한 기초를 구축한 다음에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즉, 일본은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실질적인 평화조약을 통한 과거 청산을 고

15)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구술서, 『왕복 외교문서』, 51쪽.

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차는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특히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게 강경했으므로, 회담의 난항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은 1953년 4월 15일 도쿄에서 제2차 회담을 재개했으나, 회담이 진행 중이던 6월 27일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을 파견하여 어로작업 중이던 한국인 어민 6명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나무 기둥에는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손 죽도”라는 내용과 “주의-일본 국민 및 정당한 절차를 거친 외국인 이외는 일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영해(도서 연안에서 3해리) 안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행위가 영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탄하였으며, 7월 2일에는 한국 측 독도의용수비대가 해상보안청의 선박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본 측은 제2차 회담의 의제에 독도문제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내정간섭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제2차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 후, 제3차 한일회담이 재개된 것은 1953년 10월 6일이었으며, 이때 유명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제2차 회담에 이어 일본 측 수석 대표로 나왔다. 회담 개시와 동시에 양측의 주장은 변함없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제2차 회의에서 일본 대표 구보타가 일본의 지배가 한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내용의 망언을 내뱉었다. 이 구보타의 망언으로 인해 제3차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 당시 구보타의 망언은 한일회담을 고의로 연기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¹⁶⁾

구보타의 망언으로 인해 이후 4년 반 동안 한일회담은 중단되었으며, 한일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일본은 주일한국대표부를 폐쇄하는 등, 강경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 독도에서는 한일 간에 영토표식을 둘러

16) 1953년 6월 21일 작성 「日韓會談無期休會案」, 『日本外交文書』

싼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평화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국내의 여론이 분출했다. 그 와중에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소위 이승만 라인이라는 선을 그어 영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역사상 명백하게 일본 영토인 죽도를 마치 한국 영토인 것처럼 강변하고, 또 올해 9월 이래 공해상에서 어로하는 일본 어선을 소위 이승만 라인을 침입했다는 이유로 나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일한 문제해결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11월 3일에 채택했다.¹⁷⁾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김용직 주일 공사에게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에서 제소하자는 취지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해 김용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안을 거부했다.¹⁸⁾ 그리고 1954년 9월 15일에 한국이 발행한 독도우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각 의결정하고, 독도우표가 사용된 우편물을 모두 반송하는 조치를 하고, 또 외무성은 11월 29일에 독도우표에 대해 “허위 주장을 세계에 강요하는 프로파간다”라고 항의하면서 개정을 요구했다.¹⁹⁾

이러한 일본 측의 대응에 한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독도우표 발행은 한국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²⁰⁾”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그 결과 한국 정부는 1955년 8월 17일에 “한일관계는 결렬점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타협을 유보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인의 일본 왕래를 금지하고, 대일무역의 전면 정지를 발표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만약 일본어선이 평화선을 계속 침범한다면 이를 포격·격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¹⁾

17) 「第17會 國會 衆議院 會議錄」, 제6호, 1-2쪽.

18) 金東祚, 『日韓交渉14年の記録 韓日の和解』, サイマル出版会, 1986, 99쪽.

19) 1954년 11월 29일자 일본 측 구술서, 『왕복 외교문서』, 122-123쪽.

20) 1954년 12월 13일자 한국 측 구술서, 『왕복 외교문서』, 126-127쪽.

이와 같은 급전직하의 상태로 빠져들던 한일관계가 진정되면서 다시 제4차 회담을 위한 예비교섭이 재개된 것은 1958년 4월 15일이었다. 이 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 측은 제3차 회담을 파행시킨 원인인 구보타의 망언과 일본 측의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했다. 제4차 회담은 시작부터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일본은 제4차 회담이 재개된 다음 날 한국 문화재 106점을 주 일한국대표부에 전달하고, 한국도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되어 억류 중이던 일본인 어민 300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억류 어민 석방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일본 자민당 정권의 태도 변화와 재일한국인의 복송 문제로 인해 난항에 부딪혔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교섭이 이루어졌지만, 한일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1960년까지 회담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였다. 결국 제4차회담은 1960년 4월 19일에 한국에서 일어난 학생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자, 한국의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회담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제5차 회담은 1960년 8월 23일에 수립된 장면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측이 먼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1960년 10월 25일에 도쿄에서 열린 제5차 회담 예비회담에서는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별 검토를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한국 측과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를 연계하여 일괄타결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 등으로 인해 회담은 난항에 직면했다. 그러던 와중에 1961년 5월 16일에 한국에서 발생한 군사쿠데타로 인해 제5차 회담은 본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좌초하고 말았다.

제6차 회담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개시되었는데, 5월 16일에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5월 24일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재개를 추진했다. 그리고 7월 1일에 박정희 국가재건

21) 吉沢清太郎監修, 『日本外交史 第二八卷-講和後の外交(I)』, 鹿島研究所出版会, 1973, 68-69쪽.

최고회의 의장은 일본 기자단에게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한일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현안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평화선은 한일 양국의 관계수역 내의 어업자원보존과 한국 어민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다²²⁾” 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일 국교정상화는 준비가 추진되고 있었으며, 외무부의 대책회의를 박정희 의장이 직접 주재하는 일도 있었다. 박정희 의장은 한일회담을 조기 타결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의 친한파 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10월 20일에 제6차 회담이 개시되자, 한국은 박정희 의장이 방일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타결을 촉진하는 방법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이러한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일본의 이케다 수상은 특사를 파견하여 11월 3일에 박정희 의장에서 초청 친서를 전달했다.²³⁾

11월 11일에 도쿄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은 이케다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정희 의장은 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전쟁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법적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며, 일본 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를 보인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평화선 문제를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²⁴⁾

이러한 박정희 의장의 발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였던 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유연성을 지닌 것이었으며, 한일회담의 신국면을 여는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22) 吉沢清太郎監修, 『日本外交史 第二八卷-講和後の外交(I)』, 鹿島研究所出版会, 1973, 68-69쪽.

23) 吉沢清太郎監修, 『日本外交史 第二八卷-講和後の外交(I)』, 鹿島研究所出版会, 1973, 68-69쪽.

24) 外務省百年史編纂委員会, 『外務省の百年』, 原書房, 1969, 1050쪽.

하고, 회담은 청구권 금액 규모와 명목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으며, 이러한 난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일 양국의 국내 저항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다.

일본은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이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은 야당이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전국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도 반대 시위를 펼쳤으며, 1963년 10월, 대통령에 당선되어 12월에 취임한 신생 박정희 정권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는 1964년 6월 3일 오후 8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의 강제 진압에 나섰으나, 결국 6월 5일에는 한일회담의 막후교섭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사임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제6차 회담을 통한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제6차 회담 과정에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이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독도문제를 한국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 1962년 10월 20일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난 오히라 외상과 10월 22일에 만난 이케다 수상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이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요청에 대해 김종필은 독도문제는 한일회담과 별개의 문제이며,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²⁵⁾ 또 11월 12일에 김종필과 만난 오히라 외상은 다시 한번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종필은 한일회담의 현안문제도 아니며, 한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자 오히라는 독도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해결책을 요구했다. 오히라의 요구에 대해 김종필은 제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²⁶⁾

25) 「김종필이 박정희에게 보낸 회담 내용 보고」, 1962년 10월 21일.

26) 「第二次金部長大平外相會談録」, 1962년 11월 13일.

오히려 김종필이 제시한 방법의 제3국을 미국으로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영토문제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인 사실일 것이다. 김종필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를 회피하고, 사실상 독도 문제를 미해결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따라서 제6차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였지만, 독도 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1964년 6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박정희는 6월 5일에 대학 휴교령을 내리고 한일 교섭을 강행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도 이케다 수상이 물러나고 새로 사토 내각이 출범하자, 한일 양국은 한일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돌입했다. 따라서 12월 3일에 도쿄에서 제7차 회담이 개시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섭은 1965년에 들어서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회담 결과 양국의 견해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제7차 회담에서는 주로 일본 측이 제기한 어업문제와 한국 측이 제기한 기본관계 및 법적 지위 문제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제7차 회담은 그동안 합의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단계였으며, 회담을 조기에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므로 독도문제와 한국의 법적 지위 등,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마지막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였으며, 조약의 조인일인 6월 22일까지 양국의 주장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독도는 한일 회담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일본 측이 최후까지 집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분쟁 해결에 관한

27) 「第二次金部長大平外相會談錄」, 1962년 11월 13일.

교환공문’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에 조인했다.

그러나 교환공문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조약 조인 후 시이나(椎名) 일본 외상은 8월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죽도 문제 이외에 분쟁 문제는 없다. 따라서 죽도를 제외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분쟁 문제는 죽도 문제인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동원 외교부 장관은 8월 3일 한국 국회에서 “독도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교환공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교환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여기에는 순종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되어 있다. 해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도모하는 것으로 했다. 독도문제는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관계없다. 그러나 만약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영원히 우리나라의 것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라고 했다.²⁸⁾

이러한 경위를 거쳐 조인된 조약은 8월 14일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거치고, 11월 12일에 일본 중의원, 12월 11일에 참의원의 비준 승인을 얻어 성립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한일어업협정이 실시되었으며, 다음 날인 12월 18일에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14년간에 걸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결국은 항상화되기에 이르렀다.

1977년 2월 5일 일본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했을 때, 당시 후쿠다 다케오 수상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했다. 일본은 1977년 1월 1일부터 12해리 영해법과 200해리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을 시행했지만, 한국 쪽 해역에는 200해리 어

28) 「韓国国会速記録-条約協定をめぐる日韓兩政府見解の相違点」, 『中央公論』, 1965, 164-167쪽.

업수역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도 주변에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워 12해리 영해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다음날인 2월 6일에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 혹은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자 일본은 2월 7일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²⁹⁾ 한일 국교정상화 수립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독도문제가 한일 간에 재점화된 것이다.

그리고 1986년 9월 한일외상회담에서 일본이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³⁰⁾ 당시의 일본 외상 구라나리 다다시(倉成正)는 회담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관심사항으로 기록을 위해서도 얘기할 것이 있는데, ‘죽도문제’이다. 죽도는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발언했다. 한국의 최광수 외무부 장관은 이 발언을 일축했지만, 한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³¹⁾ 구라나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은 “일상적인 것으로 의미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오히려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한 발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³²⁾

그후 다시 진전국면에 들어가 있던 독도문제는 1996년 2월에 다시 불타올라 한일관계에 큰 불안 요소로 등장했다. 계기가 된 것은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양국의 중간선에 의해 경제수역을 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이미 1977년에 200해리 어업수역을 정하고 있었지만, 동해상에는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설정해 두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전면적인 설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방침을 변경하여 전면설정에 착수했다.³³⁾

29) 『朝日新聞』, 1977년 2월 7일.

30) 『毎日新聞』, 1996년 2월 9일.

31) 『동아일보』, 1986년 9월 11일.

32) 『조선일보』, 1986년 9월 12일.

33) 『朝日新聞』, 1996년 2월 2일.

한국은 1995년 12월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지만,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전면적인 설정으로 방침을 변경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200해리 수역을 전면적으로 설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그리고 1996년 2월 8일 독도에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독도의 접안시설공사가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항의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당한 주권행사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2월 10일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은 지금까지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미화하는 망언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³⁴⁾” 이라고 강력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는 국회와 모든 언론, 시민단체들이 일본에 대한 비난을 펼쳤다. 이렇게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때마침 1996년은 한일 양국 모두 총선거가 치러진 해였으므로 선거와 맞물려서 양국의 정계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자민당은 선거공약에 독도문제를 내걸 정도였다. 영토 문제가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각인된 시점이다.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거의 양국 외교에 있어 항시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매년 양국은 독도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5년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제정하면서 독도문제는 상시적인 요소가 되어 현재까지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유일한 평화적 해결 시스템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소 없이 소송 없다(ne procedat iudex ex officio)’가 원칙이며, ‘제소’에는 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리가 없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연합헌장은 안보리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에게 “법률적

34) 『読売新聞』, 1996년 2월 10일.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칙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을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권고는 1947년 4월에 한 번 행해졌을 뿐, 그 후로는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으므로,³⁵⁾ 이렇게 되면 일본 측으로서는 최종 해결에 이르는 동안 “법적인 관점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제안한다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유효한 항의를 반복하는”³⁶⁾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측에서 보면, 당연한 이런 정책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 식민지 통치라는 굴욕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과 직결되어 반일 감정의 심연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어떠한 발언도 한국인으로서의 일종의 침략 행위,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이며, 한일 청구권 협상이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합당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4. 맺음말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주는 것은 2001년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유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는 ‘더반 선언’ 이 채택됐으며, 그 선언문의 일반현안 제14조에 식민주

35) 영국과 알바니아 사이의 코르푸 해협 사고에서 1947년 4월에 행해진 안보리 결의 22호.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9 April 1947[S/324])

36)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中公叢書, 2002, 162쪽.

의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식민주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이어져 왔으며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선주민들은 식민주의의 피해자였고 계속해서 그 결과의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식민주의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며, 발생장소와 시기에 관계 없이 식민주의는 비난받아야 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함을 확인한다.³⁷⁾

이 선언에서는 명백하게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선언하고 있다. 당시 노예제 및 식민지배 시대 범죄에 대한 배상·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해국 사이의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배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더반 선언’ 이후 노예제 및 식민지 시대 범죄에 대한 지배 국가들의 사과와 반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2020년 벨기에 필리프 국왕은 콩고민주공화국의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에게 “과거의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2021년 5월28일 독일은 식민지배 당시에 나미비아에서 벌였던 원주민 학살을 “체노사이드”(대량 학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인식의 표시”로 개발지원금 11억 유로를 나미비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민지배 시대 학살 뒤 100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유감 표시 또는 사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배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더반 회의는 인류가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을 넘어 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그 실현은 지난한 과제임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은 식민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그리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터전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독도문제 또한

37)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2009, 24p

같은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미국을 휩쓸었던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매우 부실한 조약이었다. 그리고 그 서브시스템인 ‘한일기본조약’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맺어진 조약이었으므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쿠데타로 권력을 움켜쥔 정권이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정당성 결여라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정권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이미 체결된 조약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군사정권은 민정이양 이전부터 성급하게 한일회담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청구권 협상은 물론 독도 영유권 문제 또한 명확한 전망 없이 그저 면피용 발언만을 하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독도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한일 양국에서 모두 내정화되어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처럼 국민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영토문제, 즉 독도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떠돌기만 했을 뿐, 중심 과제로 등극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더반 선언’을 기초로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식민 지배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다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독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2009.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 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동북아역사재단 역사총서 64), 2013.
-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 연표-부 주요 문헌 1948-1961』, 1962.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독도문제개론(전면개정판)』, 2012.
- 지철근, 『평화선』, 범우사, 1979.
- 한영구 외, 『현대한일자료집 1(1965년~1979년)』, 오름, 2003.
- 金東祚, 『日韓交渉14年の記録 韓日の和解』, サイマル出版会, 1986.
- 吉沢清太郎監修, 『日本外交史 第二八卷-講和後の外交(Ⅰ)』, 鹿島研究所出版会, 1973.
- 外務省百年史編纂委員会, 『外務省の百年』, 原書房, 1969.
-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中公叢書, 2002.
- 『日本外交文書』
- 「第17會 國會 衆議院 會議錄」
- 「韓国国会速記録-条約協定をめぐる日韓兩政府見解の相違点」, 『中央公論』, 1965.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朝日新聞』
- 『毎日新聞』
- 『読売新聞』

<Abstract>

Meaning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Korea Modern History

- Focusing on the Territorial Clause -

Park, Ji-Young

Since th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 sub-system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significance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s territorial provision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colonial liquidation that was not addressed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Dokdo issue in the sense of modern Korean history through a present review of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how the Dokdo issue was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 sub-system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the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territorial issue, or Dokdo issu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nation-state, only floated in the throes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did not emerge as a central task. As a result, it has now been internalized and reduced to a political tool in both Korea and Japan.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e also the root cause of this result.

The settlement of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based on a

clear apology for colonialism and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Dokdo is also a historical issue that must be resolved in the same contex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a very poor treaty based on an anti-communist ideology and lacked consideration. And because th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also a treaty formed in conjunction with an anti-communist ideology, there were inherent limitations.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he 'Durban Declaration', which advocated anti-colonialism, should be used as a clue in August 2001.

Keywords: Dokdo sovereignty,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lonialism, Durban Declaration

이 논문은 2024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상 ‘독도 문제’의 전개 과정 분석

- 1963~1965년 독도 관련 국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홍 성 근*

〈목 차〉

1. 머리말
2. 1963년과 1964년의 독도: ‘독도 문제’ 처리 방안 논의
3. 1965년 전반기(1월~6월)의 독도: 한일협정 체결
4. 1965년 후반기(7월~12월)의 독도: 어업수역 설정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국내 신문에 보도된 독도 관련 사항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소위 ‘독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1962년 일본 측에서는 ‘독도 문제’ 처리 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 ‘독도 공유’, ‘국제중재’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한국 측에서도 ‘제3국 조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안에 대해 1963년 이후 한국 내부에서는 ‘독도 문제’를 ‘과거사 및 주권의 문제’로서 ‘타협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하게 자리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흔들어 보고자 ‘독도 문제’를 당시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다른 현안 문제와 일괄하여 해결할 것을 집요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hong365@nahf.or.kr

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한일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 직후에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 중 ‘독도 문제’의 전개 양상을 보면, 일본은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이 우월한 입지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권화된 국제사회에서 영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는 외교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요소가 됨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독도, 신문보도, 한일 국교 정상화, 국제사법재판소, 분쟁의 해결

1. 문제제기

이 논문은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 중, 특별히 1963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에 벌어진 소위 ‘독도 문제’의 전개 과정을 국내 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63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1962년 2월에 있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 간 회담에서 일본 측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여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¹⁾ 그리고 9월에 있는 예비 절충 제4차 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였다.²⁾ 11월 김종필 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한국 측에서 ‘제3국에 의한 조정’을 제안하였다.³⁾ 이러한 보도가 있고 난 뒤 국

1) 「한일 우호 통일 촉진, 김(金) 특사, 방일 마치고 귀국 도상 연명」, 《경향신문》 1962년 2월 24일자; 「독도 문제도 정치회담 의제로, 김(金)·이케다(池田) 회담선 청구권 불논의, 일 수(首)·외상(外相), 중의원 외위(外委)서 증언」, 《조선일보》 1962년 2월 28일자; 일본 국회 회의록(第40回 国会 参議院 外務委員会 第6号, 1962년 2월 27일); 홍성근 편, 『독도와 언론보도: 1955-1962년의 독도』(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3), 46-47쪽 참조.

2)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서울: 선인, 2016), 116-117쪽 참고.

3) 김종필 부장의 제3국 조정안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회담 일본 외교문서 상세목록 III: 제4차 회담, 제5차 회담, 정치회담』(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3), 116-117쪽 참조.

내 신문에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중재위원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⁴⁾ 1962년에는 ‘독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1963년 이후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및 비준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독도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상 ‘독도 문제’를 검토한 다른 논문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이다.⁵⁾ 독도에 관한 사항은 신문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그때 그때 바로 알려졌다. 신문은 한일 양측의 주장과 반박은 물론이고, 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나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 그리고 독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나아가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알려주었다. 그러한 점에서 신문보도는 독도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외교문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논의된 ‘독도 문제’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 중 독도 관련 신문보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황재원의 논문이 주목된다.⁶⁾ 황재원의 논문은 한일 양국의 주요 신문들이 1961년 10월~1965년 12월 간의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즉 이 논문은 한일 양국의 주요 신문의 독도 관련 보도 태도와 논조의 차이, 특징

단, 2021), 1053쪽, 1069쪽;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121-122쪽; 홍성근 편, 『독도와 언론보도: 1955-1962년의 독도』, 54-56쪽 참조.

4) 「국제중재위 설치, 일(日), 독도 문제 해결에 구상, 재팬타임스 보도」. 《동아일보》 1962년 11월 26일자.

5) 이원덕 외,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112-139쪽 참고.

6) 黄宰源,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独島/竹島問題と新聞報道』(早稲田大学大学院アジア太平洋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3. 1).

등을 역사 및 언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에 반해 본고는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국내 신문에 보도된 독도 관련 사항을 기초로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 문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⁷⁾

본고에서 소위 ‘독도 문제’라고 하면 ‘독도를 둘러싼 논의’로 정의하고자 하는데,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크게 두가지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인 이유’에 관한 논의로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본고는 두 번째 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관한 분석은 오늘날 여전히 현안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독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신문보도를 기초로 1963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독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시간순에 따라서 쟁점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2. 1963년과 1964년의 독도: ‘독도 문제’ 처리 방안 논의

2.1. 1963년의 독도: ‘독도 문제’ 처리 방안 제시

7) 1945-1962년 간의 독도 관련 국내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는, 홍성근 편, 『독도와 언론보도 1: 1948년 독도폭격사건』(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홍성근 편, 『독도와 언론보도 2: 1945-1954년의 독도』(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홍성근 편, 『독도와 언론보도 3: 1955-1962년의 독도』(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3) 참고.

2.1.1. 일본 측의 ‘독도 공유안’

1월 7일, 일본 외무성이 1월 10일부터 재개되는 한일 예비 절충 회담을 앞두고 어업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다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중 ‘독도 문제’는 ‘제3국에 의한 조정(調停)’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되 3년에서 5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다.⁸⁾ 이 방안은 일본 측에서 기존 입장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에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외상과의 회담에서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추가한 형태로 보인다. 결국은 1954년 이래로 일본이 주장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과 같이 구속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1월 11일자 신문에는 일본 측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1962년 12월 초 일본 자민당의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부총재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서울에서 회담할 때, 미국의 ‘조정(調停)’으로 독도의 ‘공동 영유’를 타진했다는 것이다.⁹⁾ 기사에는 김종필 부장도 이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1월 11일 열린 제22차 한일 예비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공유안’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¹⁰⁾ 그리

8) 「어업독점수역 12해리까지 인정, 일본, 독도는 제3국의 중재를 희망」, 《경향신문》 1963년 1월 7일자.

9) 「미(美)의 조정으로, 독도 공유 타진, 오노(大野) 씨 방한시에」, 《조선일보》 1963년 1월 11일자; 「일본 트러블 8: 독도, 끈덕진 억지 10년, 이제는 공동영유 하자고까지」, 《동아일보》 1964년 2월 8일자.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 일행은 1962년 12월 10-13일까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였다. 오노 부총재 등 자민당 의원단 방한 관련 일본 외교문서에는 ‘독도 공유안’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독도가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 영토에 포함된 문제를 시정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는 내용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IV: 제6차 회담』(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285-291쪽 참조.

10) 「독도 공유 운운 무근, 22차 회담에서 해명」, 《경향신문》 1963년 1월 12일자.

고 “김종필 부장과 오히라 외상 간 회담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면 오노 부총재의 사견(私見)에 불과한 것” 이라고 했다.¹¹⁾ 오노 부총재의 ‘독도 공유안’에 대해 최덕신 외무장관도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주장하는 공동 영유는 말이 되지 않으며, 한일 간 현안 문제의 일괄 해결 원칙에 들어갈 수 없다.” 고 했다.¹²⁾

한편, 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독도 문제’ 처리 방안으로 ‘독도 공유안’을 예비회담의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¹³⁾ 자민당은 그 주 중 ‘외교조사회’, ‘한일문제협의회’, ‘한일문제PR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독도 공유안’에 대한 오노 부총재의 견해를 들은 후 이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¹⁴⁾ 이에 앞서 자민당 외교조사회가 일본 외무성 관계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두 나라 간 영토 분쟁 끝에 공동영토 또는 공동관리가 되어 일응 해결된 사례가 세계 외교사상 10건에 달한다고 했다.¹⁵⁾ 그 중 “1939년 4월 태평양의 ‘칸톤(Canton)’ 섬과 ‘엔더버리 제도(Enderbury Island)’를 미국과 영국이 공동 관리한 것” 등이 사례로 보도되었다.

1월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은 “나는 ‘독도 문제’에서 공유화와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고 했

11) 「일측 정식 부인, 독도의 공유설 등, 어제 예비회담서」, 《조선일보》 1963년 1월 12일자, 「한일협상, 제2단계로, 어업 문제, 수교 후에 완결, 최(崔) 외무 담(談), 우리 대표 보강 설명터」, 《경향신문》 1963년 1월 12일자.

12) 「한일협상, 제2단계로, 어업 문제, 수교 후에 완결, 최(崔) 외무 담(談), 우리 대표 보강 설명터」, 《경향신문》 1963년 1월 12일자.

13) 「독도 공유안, 의제 상정을 검토, 일 여당, 곧 합동회의」, 《경향신문》 1963년 1월 14일자.

14) 「自民 ‘竹島共有案’ 検討へ, 外国の現存例参照」, 《朝日新聞》 1963년 1월 13日子.

15) 위와 같은 신문; 「독도 공유안, 의제 상정을 검토, 일 여당, 곧 합동회의」, 《경향신문》 1963년 1월 14일자.

다.¹⁶⁾ 그러면서 “평화선 문제 또는 ‘독도 문제’ 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현안” 으로, 이 두 문제가 “청구권이나 법적 지위 문제와 일괄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보지 않으면 정상화를 기할 수 없다.” 고 했다.

1월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이케다 수상은 ‘독도 문제’ 가 포함된 ‘현안 문제의 일괄 타결’ 을 주장하였다.¹⁷⁾ 같은 회의에서 이데 이치타로(井出一太郎) 의원은 오노 부총재의 ‘독도 공유안’ 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의 복안은 ‘제3국에 의한 조정’ 인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인지를 물었다.¹⁸⁾ 이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여러 영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독도 귀속 문제의 결정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속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더라도 그 귀속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방법은 확실히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 이라고 했다.¹⁹⁾ 이를 볼 때, 독도 영유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조정’ 보다는 구속력 있는 해결방안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6) 일본 국회 회의록(第43回 国会 参議院 本会議 第5号, 1963年1月26日); 「독도 공유문제, 생각한 바 없다, 이케다(池田) 수상 의회 증언」, 《조선일보》 1963년 1월 27일자.

17) 일본 국회 회의록(第43回 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号, 1963年1月29日); 「어업·독도문제 등 일괄 해결 안되면, 청구권 합의안 백지화」, 《조선일보》 1963년 1월 30일자.

18) 일본 국회 회의록(第43回 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号, 1963年1月29日); 「일 수버들의 솔직한 한국관」, 《경향신문》 1963년 2월 2일자.

19) 「일 수버들의 솔직한 한국관」, 《경향신문》 1963년 2월 2일자.

2.1.2. 한국 측의 반응

‘독도 공유안’ 이 신문에 기사화되던 시기, 변영태 씨가 『한국일보』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²⁰⁾ 변영태 씨는 기고문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사료가 입증” 하는 것이며, ‘제3국에 의한 조정안’ 이나 ‘독도 공유안’ 은 “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²¹⁾ 그가 이 기고문에서 표현한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첫 희생물” 이며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 이라는 말은 오늘날 독도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

4월 25일에도 변영태 씨는 가칭 ‘정민회(正民會)’ 의 대표로서 한일 문제에 대한 담화를 내고 “독도나 평화선 같은 주권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양보를 대가로 일시적인 재정적 곤란을 피하려는 정책에 찬동할 수 없다.” 고 했다.²²⁾ 이에 외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우리나라 주권을 양보하면서까지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의제가 된 일이 없으며 이 영토에 대한 우리 주장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 고 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제3국에 의한 조정’ 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 「독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일보》 1963년 2월 8일자. 변영태 씨는 1954년 9월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할 당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변영태 씨의 외무장관 재임기간(1951년 4월 16일 ~ 1955년 7월 28일) 및 국무총리 재임기간(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m.go.kr) 및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참조.

21) 변영태 씨의 기고문은 외교부의 독도 관련 자료집인 『독도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정부가 그의 기고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독도문제, 1960-1964』(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8)(외교통상부 보존문서, 1964).

22) 「정민회 5월 중순, 발기인 대회 개최」, 《경향신문》 1963년 4월 25일자; 「지나친 양보는 부당」, 《조선일보》 1963년 4월 26일자.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용식 외무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25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도쿄(東京)에 도착한 김 외무장관은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한일 현안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로 문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장애는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 문제는 한일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²³⁾ 그는 한일 문제에 대해 제3국 즉 미국의 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설도 부인하였다.

2.2. 1964년의 독도: 현안 문제에 ‘독도 문제’ 포함 논의

2.2.1. 독도에 관한 권리 관철 촉구

제6차 한일회담(1961년 10월 20일~1964년 4월 6일)이 끝나갈 무렵,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일회담에서 독도에 관한 권리를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각각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3월 15일 국내 예술인들을 총망라하고 있던 사단법인 예총(예술인총연합회)이 한일회담에서 관철해야 할 5개 항목을 제시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는 평화선과 독도에 관한 사항도 있었는데, “평화선은 우리 민족의 군사적, 경제적 자위선이기 때문에 엄연히 존속되어야 하고,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라고 했다.²⁴⁾

3월 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행사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였다.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한 것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마네현 지사는 도쿄로 가서 그 결의문을 이케다 수상과 오히라 외상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²⁵⁾

23) 「오늘, 한일 외상 회담」, 《경향신문》 1963년 7월 26일자.

24) 「수모적 회담 반대」, 《마산일보》 1964년 3월 16일자.

25) 「독도 영유권 주장」, 《조선일보》 1964년 3월 24일자.

2.2.2. 독도에 관한 국내적 논의

1964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최두선 총리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 고 하며, “한일 협상 도중에 일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발언이 아직 없다.” 고 말하였다.²⁶⁾ 그런데 김용식 외무장관이 오히라 외상을 만났을 때 “독도 문제는 현안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한 보도도 있었다.²⁷⁾ 하지만 이는 실제와는 달랐다.

제6차 한일회담이 4월 6일에 끝나고, 제7차 회담이 12월 3일 시작되었다. 독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2월 17일 일본의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현안 문제의 일괄 타결을 여전히 주장하였다. 즉 “국제사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독도 문제’를 제소하여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하면, 그 시점에서 청구권을 비롯한 현안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일괄 해결로 간주하고 회담을 종결짓고자 한다.” 고 했다.²⁸⁾

한국의 신문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일본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저지른 죄과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파렴치하게도 평화선을 침범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26) 「김·오히라 메모는 청구권만 가합의, 최 총리 답변」, 《동아일보》 1964년 4월 2일자; 「독도는 우리 영토, 회담 의제 안 된다」, 《조선일보》 1964년 4월 3일자; 한국 국회 회의록(제6대 국회 제41회 제9차 국회 본회의, 1964년 4월 2일).

27) 「한일회담 재개와 일본의 태도」, 《경향신문》 1964년 5월 9일자.

28) 「독도 해결 시점에서 한일 문제 일괄 타결」, 《경향신문》 1964년 12월 18일자; 「한일회담 타결, 독도와 결부」, 《동아일보》 1964년 12월 18일자; 「독도 문제 국제(國裁) 제소, 응하는 때 일괄 타결, 일 외무상 발언 내용」, 《조선일보》 1964년 12월 19일자; 일본 국회 회의록(第47回 參議院 外務委員會 第3号, 1964年 12月 17日).

따위의 소행을 아직도 자행하고 있으니 통탄할 따름” 이라고 했다.²⁹⁾ 한국 측에서는 ‘독도 문제’ 를 ‘과거사 및 주권의 문제’ 로서 ‘타협할 수 없는 사항’ 으로 보고 있었다.

2.2.3.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자료 보고서

1964년 4월 6일 제6차 회담이 끝난 후인 4월 22일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에 관한 자료’ 를 국회에 제출하였다.³⁰⁾ 그 자료에는 ① 독도의 개요 ② 분쟁의 경과 ③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 양국의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1954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를 제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최근에 와서 ‘제3국의 조정’ 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³¹⁾ 이 자료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³²⁾

역사적 근거로는, “돗토리현 요나고 주민들이 1618년에 독도를 근거지로 하여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막부의 허가를 얻었다. 1696년 막부 정권은 울릉도 통치를 포기했으나, 독도가 ‘일본의 섬’ 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1905년 독도는 각의 결정에 의해 시마네현의 일부라고 정식으로 선언했으며, 정부는 현대 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했다.” 는 것이다.

법적 근거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각서는 일본이 피점령국으로 있을 동안의 임시 조치이지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29)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 《경향신문》 1964년 12월 19일자.

30) 「『江戸初期から日本領 竹島問題で外務省資料提出 韓国経営の形跡ない』, 《読売新聞》 1964년 4월 23일자; 「독도 영유 자료, 일 정부, 국회에 제출」, 《경향신문》 1964년 4월 23일자; 「독도는 일본 영토, 일 외무성 보고서」, 《마산일보》 1964년 4월 23일자; 「또 독도 영유권 주장, 일 외무성서 보고서」, 《조선일보》 1964년 4월 24일자.

31) 「또 독도 영유권 주장, 일 외무성서 보고서」, 《조선일보》 1964년 4월 24일자.

32) 「독도는 우리 땅이다」, 《조선일보》 1965년 6월 22일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속에는 한일 합병 이전에 일본에 속했다고 간주되는 섬을 한국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고 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일본 외무성의 독도 자료는 4월 23일자 일본의 주요 조간신문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다.³³⁾

이에 대해 4월 24일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반박하였다.³⁴⁾ 이 성명에서 외무부는 “일본이 1904년 제1차 한일 의정서에 의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다음 해인 1905년, 일본 정부가 불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킴으로써 독도를 한국 침략의 첫 희생물로 삼았다.” 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이 1954년 9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를 회부하려 했으나, 우리가 응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독도에 경비대원들을 증원시켜 독도를 계속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2.4. 일본 외무성의 독도 표기 책자 배포

‘독도를 일본 영토’ 로 표시한 일본 외무성의 책자가 한국의 국내에 배포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10월 28일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라고 쓴 『오늘의 일본』이라는 일본 외무성 발행 책자(한국어)가 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의 불순한 저의에서 나타난 행위가 아닌가 보고, 배포 경로 등 진상 조사를 경찰에 의뢰한 일이 있었다.³⁵⁾ 문교부는 우선 학교에 배포된 책

33) 「독도는 일본 영토, 일본 외무성 보고서」, 《마산일보》 1964년 4월 23일자; 「竹島問題の資料, 外務省, 国会に提出, 日韓會談關係」, 《朝日新聞》 1964년 4월 23日子; 「江戸初期から日本領, 竹島問題で外務省資料提出, 韓国經營の形跡ない」, 《読売新聞》 1964년 4월 23日子.

34) 「정부에서 반박, 독도 문제, 일 주장에」, 《경향신문》 1964년 4월 24일자; 「독도는 한국 영토, 외무부, 일의 주장 반박」, 《동아일보》 1964년 4월 24일자; 「독도는 한국령, 외무부, 일 주장 반박」, 《조선일보》 1964년 4월 25일자.

자를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외무부도 이 책자의 배포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 책자는 4·6배판으로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이 실린 82쪽 분량의 책이었다. 이 책자에 있는 지도에 한국의 독도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책은 일본 외무성이 무료로 배부한 것으로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에 있던 일본 외무성 관리에게 보내어졌고, 이 관리가 다시 각지에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이다.³⁶⁾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불온서적’의 국내 유입에 대한 당국의 실책이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제우편 검열당국이 전혀 검열을 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³⁷⁾

민정당은 이 문제의 경위를 따지기 위해 국무총리와 외무, 문교 장관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다.³⁸⁾ 이동원 외무장관은 11월 2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고, 한국에 체재 중인 일본 외무성 관계자에게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³⁹⁾ 또한 이 장관은 국내에 퍼져 있는 책의 회수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자는 한국 정부와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내에 들어왔다. 일본은 이 책자를 비단 한국인들에게뿐만 아니라,

35) 「독도를 일 영토라고」, 《경향신문》 1964년 10월 30일자; 「일 외교관 탈선에 물의」, 《동아일보》 1964년 10월 30일자.

36) 「문제의 책자, ‘오늘의 일본’, 항공 루트 통해 유입」, 《경향신문》 1964년 10월 31일자.

37) 「「오늘의 일본’ 책자, 검열 미스로 유입」, 《경향신문》 1964년 11월 2일자.

38) 「국회서 따지기로, 지도책 배포 문제」, 《경향신문》 1964년 10월 31일자; 「정총리 등 출석 동의」, 《경향신문》 1964년 11월 2일자; 「총리 등 출석 요구」, 《조선일보》 1964년 11월 3일자.

39) 「일에 정식 항의, 이 외무, 책자 문제에」, 《경향신문》 1964년 11월 2일자; 「일에 정식 항의」, 《조선일보》 1964년 11월 3일자.

1964년 도쿄 올림픽 관계로 일본을 다녀가는 외국인들에게 대대적으로 배부되고 있었다.⁴⁰⁾ 이 책자는 김포공항 및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인 여행자들 손에도 1인당 3, 4부씩 들려 들어오고 있어 세관 당국이 압수하였다고 했다.⁴¹⁾ 관광객들은 이 책자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일본인들이 나누어 주더라.” 고 말하였다.

국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외무, 문교 장관을 불러 『오늘의 일본』이라는 책자가 도입된 경위를 따졌다.⁴²⁾ 이에 국무총리는 “중앙정보부장이 일본의 책자를 빨리 환송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라는 건의를 해왔다.” 고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3. 1965년 전반기(1월~6월)의 독도: 한일협정 체결

3.1. 한일협정 가서명과 ‘독도 문제’(1월~4월)

2월 20일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은 서울에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에 가서명하였다.⁴³⁾ 그 전날(2월 18일~19일) 개최된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 간 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다.⁴⁴⁾ 일본은 한일회담의 일괄 타결 속에 ‘독도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⁴⁵⁾

40) 「말썽난 책자, ‘오늘의 일본’», 《경향신문》 1964년 11월 4일자.

41) 위와 같은 신문.

42) 「『오늘의 일본』 책자 도입 경위 추궁», 《경향신문》 1964년 12월 14일자; 한국 국회 회의록(제6대 국회 제45회 제31차 국회 본회의, 1964년 12월 14일).

43) 外務省戦後外交史研究会編, 『日本外交30年: 戦後の軌跡と展望』(東京: 財団法人 世界の動き社, 1982), 89쪽.

44) 「전면 타결 암초에, 일(日) 독도 문제 포함 또 주장», 《마산일보》 1965년 2월 24일자.

2월 25일 시나 외상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독도 문제’ 해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고 했다.⁴⁶⁾ 언론에서는 일본 측이 다소 신축성 있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했다.⁴⁷⁾

2월 26일 시나 외상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는 일괄 해결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독도의 귀속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고 말하였다.⁴⁸⁾

2월 25일 한국에서는 야당과 재야 세력으로 결성된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가 2월 20일 가서명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을 검토하면서 “독도에 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양국 간 분규의 화근을 남기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⁴⁹⁾

일본이 ‘독도 문제’ 를 포함하여 한일 간 현안 문제의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독도 문제’ 를 한일회담과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맞섰다.⁵⁰⁾

3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김대중 의원은 “김 · 오히라 메모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데, … 독도를 한일 양국이 함포 사격과 비행기 공격의 전투훈련장으로 해서 독도를 없애버리자고 합의했다는 설도 있다.” 고 하면서, “김 · 오히라 메모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했다.⁵¹⁾ 이에 대해 정일권 총리는 “김 · 오히라 메모는 외교 문서이기 때문

45) 위와 같은 신문.

46) 일본 국회 회의록(第48回 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二分科会 第4号, 1965年 2月 25日).

47) 「어업 협상, 평화선 폐기 목적」, 《경향신문》 1965년 2월 26일자.

48) 일본 국회 회의록(第48回 参議院 本会議 第8号, 1965年 2月 26日).

49) 「기본조약 내용 무효」, 《경향신문》 1965년 2월 26일자.

50) 「전면 타결 압초에, 日 독도 문제 포함 또 주장」, 《마산일보》 1965년 2월 24일자.

51) 한국 국회 회의록(제6대 국회 제48회 제3차 국회 본회의, 1965년 3월 2일).

에 백지화할 수 없다. 이 외교문서에 비밀은 없다.” 고 했다.

이동원 외무장관이 일본에 와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4월 3일 제일 한국인의 대우, 청구권 및 경제협력,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에 가서명을 하였다.⁵²⁾ 그날 오전 시나 외상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문제 처리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했다.⁵³⁾ 같은 날 한국의 민주당은 “평화선 철폐 및 독도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법적 지위와 어업협정의 핵심을 어물어물한 채 합의한 한일회담의 전면 타결은 정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매국적인 외교임에 틀림없다.” 고 했다.⁵⁴⁾ 민주사회당에서도 ‘독도 문제’ 등 미해결 문제에 안일한 타협, 졸속주의 등을 하지 말고 분명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⁵⁾

4월 8일 사토 에사쿠(佐藤榮作) 수상과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한일회담 수석 대표는 가서명된 3개의 협정안에 대해 5월 중순까지 정식 서명을 하도록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⁵⁶⁾ 다카스기 대표는 ‘독도 문제’는 고차적인 정치 절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본 측은 국교 정상화 이전에 ‘독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⁵⁷⁾ 일본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조정을 의뢰하고, 이에 실패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일본 측에서는 이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견지하고 있었다.

4월 3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정일권 총리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이고 또 평화선은 우리의 주권선” 이라고 하면서, 지난번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외상 간의 회담에서 “이 문제는 제의가 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의 영토이고 주권인 만큼 일본 측이 제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52) 外務省戰後外交史研究会編, 『日本外交30年: 戦後の軌跡と展望』, 89쪽.

53) 「독도 문제 미결, 시나 외상」, 《경향신문》 1965년 4월 3일자.

54) 「야(野), 한일협정 전면 거부」, 《경향신문》 1965년 4월 3일자.

55) 「여야, 논평 상반」, 《경향신문》 1965년 4월 5일자.

56) 「3대 현안, 5월 조인」, 《경향신문》 1965년 4월 9일자.

57) 위와 같은 신문; 「정식 조인에서 비준까지」, 《경향신문》 1965년 4월 12일자.

가 구태여 이것을 제의할 필요도 없고 또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고 말하였다.⁵⁸⁾

이전 이동원 외무장관의 방일 때도 사토 수상은 ‘독도 문제’ 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였고, 이 외무장관은 “대일본이 개도 안 사는 돌섬을 가지고 켜켜하게 왜 그러냐.” 고 응수하며 문제를 그대로 덮었다고 했다.⁵⁹⁾ 당시 일본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일권 총리가 다시 일본을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의 영토를 가지고 제 땅이라고 우기며 남의 나라 수상을 오라 가라 하다니…… ” 라며 일본이 잔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격분하였다.⁶⁰⁾

3.2. 일본의 정치회담 제안과 한국의 대응(5월~6월 19일)

5월 6일 한국 정부는 김동조 주일대사의 귀국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한일 관계 고위 관계자 회의를 갖고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협의하였다.⁶¹⁾ 이 회의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농림장관, 외무차관 및 한일 관계 외무부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김동조 대사로부터 5월 중순 한일협정의 서명이 일본 측 사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측이 ‘독도 문제’ 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했다고 전하였다. 김 대사는 답변에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회담에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도 문제’ 의 타결 및 도쿄 회담의 정치적

58) 한국 국회 회의록(제6대 국회 제49회 제12차 국회 본회의, 1965년 4월 30일); 「일선(日船) 단속 능력 있나(질문), 평화선은 주권선으로 존속(답변)」, 《경향신문》 1965년 4월 30일자.

59) 「잔꾀 버리지 못한 일본」, 《경향신문》 1965년 5월 5일자.

60) 위와 같은 신문.

61) 「독도 문제 대책 논의, 김 대사 맞아, 한일 문제 고위회담」, 《조선일보》 1965년 5월 7일자.

절충을 위해 방일할 계획은 아직 없다.” 고 했다.

5월 10일 정일권 총리는 중앙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일 현안에 대해 5월 말까지 정식 조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한을 정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 고 했다.⁶²⁾ 그리고 “독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일본의 초청을 받은 일도 없고 일본에 갈 계획도 없다.” 고 했다.

6월 14일 시나 외상은 사토 수상에게 한일회담이 최근에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6월 22일까지는 한일회담이 실질적으로 타결될 것 같다고 했다.⁶³⁾ 그 후 기자회견에서 시나 외상은 “어업과 청구권 문제가 끝나면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을 초청할지 여부를 정부 안에서 협의하겠다. ‘독도 문제’는 최후의 흥정거리로서 두고 볼 일” 이라고 했다.

6월 15일 시나 외상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협정 체결 전에 정치회담을 갖자고 김동조 주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⁶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이 독도 귀속 문제를 이번 기회에 결말짓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방법만이라도 유보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는 것이었다. 김동조 대사는 ‘독도 문제’가 한일 현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나 외상에게 되풀이하여 말하였다고 했다.

6월 15일 정일권 총리와 이동원 외무장관은 청와대에서 약 1시간에 걸쳐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회담 경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같은 날 이동원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 서명을 위한 자신의 방일 계획은 “아직 없으나 일본으로부터 초청이 오면 그 성질을 보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고 말함으로써 방일 가능성을 내비쳤다.⁶⁵⁾ 그런데 이 장관은 일본

62) 「정 총리 취임 한달 맞아 회견」, 《조선일보》 1965년 5월 11일자.

63) 「독도를 최후 흥정거리로 일 외상 담, 한일회담 22일까지 타결」, 《조선일보》 1965년 6월 15일자.

64) 「한일 정식 조인, 22일에 할 수 있게」, 《경향신문》 1965년 6월 16일자; 「독도 정치 회담 제의」, 《조선일보》 1965년 6월 16일자.

65) 「독도는 엄연한 우리 영토, 정치협상 있을 수 없다」, 《동아일보》 1965년 6월 15일자; 「독도 문제, 한일회담과 무관, 이 외무회견 담(談)」, 《조선일보》 1965년 6월 16일자.

측이 그의 방일을 ‘독도 문제’ 와 관련하여 초청한다면 이를 거절할 의사임을 밝히면서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과 관련 없다.” 고 잘라 말하였다.

6월 16일 일본에서 귀국한 외무부 연하구(延河龜) 아주국장은 일본 측이 협정 서명 전에 ‘독도 문제’ 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독도 문제’ 는 정식 서명 이전에 논의하지 않기로 일본 측과 양해된 것처럼 말하였다.⁶⁶⁾ 그리고 협정 서명 후에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논의될 수도 있는 문제” 라고 말하였다. 6월 22일 정식 서명의 가능성을 어둡게 했던 일본 측의 ‘독도 문제’ 제기는 22일 서명 이전에 논의하지 않기로 한일 양국이 양해함으로써 협정 서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자 이동원 외무장관이 서명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경 일본으로 떠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지막 고비에 다다른 한일회담은 6월 22일까지 협정 서명을 목표로 한 각 분과위원회의 철야 회담 결과, 다소 그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독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6월 22일 서명 여부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다.⁶⁷⁾

한일회담은 17일 밤 회담으로 한 두 개의 미합의 사항을 남기고 사실상 종결되었다.⁶⁸⁾ 미합의 사항에 대해 한국 측은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새로운 훈령을 받았다.

일본 측이 집요하게 내세운 독도 귀속 문제는 17일부터 김동조 한국 대표와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일본 대표 간에 절충을 가졌으나 “계속 토의한다.” 는 취지를 한일 외무장관의 공동성명에서 밝히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았다.⁶⁹⁾

66) 「이 외무 20일께 방일, 독도 문제 미뤄, 22일 본조인 가능」, 《조선일보》 1965년 6월 17일자.

67) 「한일협상, 6.22 본조인, 전략의 내막」, 「관건은 독도 문제, 한일회담 각 분위, 철야 회담을 진행」, 《조선일보》 1965년 6월 17일자.

68) 「2.3개 문제만 미결, 한일 본조인 전권단도 임명」, 《경향신문》 1965년 6월 18일자; 「미결 사항, 오늘 중에 일괄 타결」, 《조선일보》 1965년 6월 18일자.

6월 18일 일본 측은 시나 외상이 각의에 보고한 뒤 관계 장관들과 협의하고, 최종 방침을 결정지은 다음 18일 중 김동조·다카스기(高杉) 양 수석 대표의 정치적인 절충을 가지고 전면 타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2일 한일협정 서명의 전망은 한층 굳어졌다. 6월 18일 오후 김동조 대사는 시나 외상을 찾아 외무장관 회담의 필요성 여부를 협의할 작정인데, 김 대사는 “한두 가지 남은 미해결점을 정치적으로 절충하기 위한 외무장관 회담의 필요성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어디까지나 수석 대표 간의 절충에서 결론지을 의향임을 밝혔다.⁷⁰⁾

한일회담이 6월 22일 이동원·시나 양국 외무장관 간의 협정 서명으로 매듭지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당시 최대의 현안 문제는 독도 귀속 문제였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일부터 김동조·우시바(牛場) 양측 대표 간에 본격적인 사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21일 경에 있을 이동원·시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 측은 독도 귀속 문제를 뒤로 미루고 우선 분쟁의 해결 방법(제3국에 조정을 의뢰하는 안이 유력)만이라도 합의를 보아 공동성명에 명시하려고 했다.⁷¹⁾

한일 양국은 6월 19일 새벽까지 계속된 회담에서 현안 문제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 관저에서 사토 수상 입회 하에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협정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⁷²⁾ 18일 오후에 열린 일본 정부의 관계 각료 연석회의는 현안 문제 해결의 원칙에 대해 양해를 했으며, 사토 수장과 시나 외상이 22일 협정 서명을 확인함으로써 김동조 대표와 우시바 대표를 비롯한 실무자들은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을 시도하였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일 양국 간

69) 「미결 사항, 오늘 중에 일괄 타결」, 《조선일보》 1965년 6월 18일자.

70) 위와 같은 신문.

71) 「22일 정식 조인 확실, 최대 현안은 독도 문제」, 《마산일보》 1965년 6월 19일자.

72) 「독도, 아직 정치 타결 대상? 실무자들 야간회의서 현안 최종 타결」, 《조선일보》 1965년 6월 19일자.

에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을 UN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외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밝히는 정도에서 끝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⁷³⁾ 그러나 ‘독도 문제’는 일본 측의 강경한 주장 때문에 체결 직전까지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6월 19일 낮 시나 외상은 《조선일보》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이 오는 22일 정식 서명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독도 귀속 문제의 처리에 관해서는 “그 방향만이라도 이 기회에 정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⁷⁴⁾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계속 토의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한일 양국 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은 UN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해결을 이월한다는 것은 “1보도 전진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말하였다.

6월 19일 한일협정의 정식 서명식을 22일 도쿄에 있는 사토 수상 관저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⁷⁵⁾ 이동원 외무장관은 21일 오전에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시나 외상을 만나기로 했다. 언론은 이 회합에서 ‘독도 문제’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3.3. 한일협정 서명과 ‘독도 문제’(6월 20일~22일)

6월 20일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은 한국 측 전권대표로 서명하기 위해

73) 「22일 정식 조인 위해, 이 외무 내일 방일」, 『경향신문』 1965년 6월 19일자, 「독도, 아직 정치 타결 대상? 실무자들 야간회의서 현안 최종 타결」, 《조선일보》 1965년 6월 19일자.

74) 「이 외무 맞아 독도 문제 절충, 화태(樺太)에 억류된 한국인 송환 위해 노력, 시나(椎名) 일본 외상, 본사 김 특파원과 단독회견」, 《조선일보》 1965년 6월 20일자.

75) 「한일협정 22일 정(正) 조인, 일 사토(佐藤) 수상 관저서」, 《마산일보》 1965년 6월 22일자.

도쿄에 왔다. 그는 21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일본 외무성에서 시나 외상과 회담을 갖고 22일 예정대로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한국 측의 김동조 대사와 연하구 아주국장, 그리고 일본 측의 우시바 심의관과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이 배석한 이 회담에서 시나 외상은 한일 양국의 현안 전면 타결에 수반하여 ‘독도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⁷⁶⁾ 그러나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적이고 시종일관된 태도를 보이면서 “법이론적으로나 사실(史實)로 보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 일본 측이 ‘독도 문제’ 논의를 끝내 주장하면, 한일협정 본조인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 문제’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⁷⁷⁾

당시 언론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장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미합의 사항은 계속 토의하며 UN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표현으로 해결되었다고 했다.⁷⁸⁾ 하지만 ‘미합의 사항’이라는 구절과 ‘UN 정신에 입각하여’라는 구절은 양국 간에 각각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했다.

언론은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독도 문제’뿐이라고 했다. 한일 외무장관들은 6월 21일 ‘독도 문제’에 대한 협상은 뒤로 미루고 우선 주요 협정에 서명하기로 하였다. 6월 22일 오전 11시 2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일본 외무성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외상은 김동조 대사 등이 참석한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그 회담 결과, “양국은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국제사회 실정으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제반 분쟁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그 해결 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것 외의 분쟁 처리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

76) 「한일 협정, 예정대로 오늘 조인」, 《조선일보》 1965년 6월 22일자.

77) 위와 같은 신문.

78) 「홍정 80일, 그 내막, 43 가조인에서 6·22 본 조인까지, 독도 문제 끝내 미합의로」, 《조선일보》 1965년 6월 22일자.

도가 있었다.⁷⁹⁾ ‘독도 문제’의 처리는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양국 외상의 양해에 관한 교환공문”이란 타이들로 일단 끝장을 맺었는데 이 내용은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양국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서는 ‘독도’란 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 분쟁 해결 방법에 의한 교환 공문으로 할 것에 합의하여 사실상 ‘독도 문제’ 해결에 일단 끝장을 보았다고 했다.⁸⁰⁾

뒷이야기로 한일 양국 대표들은 6월 22일 새벽 3시까지 분쟁 해결에 있어서 “60일 내에 중재에 회부하자.”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하여 입씨름을 하다 헤어졌다. 그런데 오전 11시 이동원 장관이 시나 외상과 만나 “끝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시나 외상이 깜짝 놀라 양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시나 외상도 책임질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정식 서명을 45분 앞두고 이 장관이 사토 수상과 만나 승낙을 얻었으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공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한국 측 주장에 반박도 공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사실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⁸¹⁾

6월 22일 오후 5시 한일 양국은 일본 수상 관저에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롯하여 제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일협정문 어디에도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6월 26일 외무부 당국자는 한일협정 서명 직전에 교환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적용하지 않기로 사토 일본 수상에게서 사전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⁸²⁾

79) 「교환 공문으로 낙착, 한일 외상, 독도 문제 처리에 합의」, 《조선일보》 1965년 6월 23일자.

80) 위와 같은 신문.

81) 「정신력으로라도 대결」, 《조선일보》 1965년 6월 27일자.

82) 위와 같은 신문.

4. 1965년 하반기(7월~12월)의 독도: 어업수역 설정

4.1. 한일협정의 국회 비준과 해석

한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했지만 독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었다. 7월 1일 사토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 감정 및 영토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⁸³⁾

한일협정이 체결된지 얼마 되지 않아 한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규정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⁸⁴⁾ 그것은 8월 8일 한국 국회의 ‘한일간조약과 제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8월 9일 일본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있는 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확인된다.⁸⁵⁾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한 반면, 일본 측은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앞으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⁸⁶⁾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로규제(漁撈規制) 이외의 목적에서는 평화선이 엄존한다고 한 것에 반해, 일본 측은 평화선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했다.

9월 26일 사토 수상은 일본 정부가 10월 5일에 개원하는 차기 의회에서

83) 「비준 끝나면 방한, 사토 수상 회견」, 《경향신문》 1965년 7월 2일자.

84) 「드러난 해석상 이견, 양국 국회의의 상반된 증언 내용」, 《조선일보》 1965년 8월 12일자.

85) 한국 국회 회의록(제6대 국회 제52회 제7차 한일간 조약과 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1965년 8월 8일); 일본 국회 회의록(第49回 国会 参議院 予算委員会 第2号, 1965年 8月 9日).

86)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일부 내용):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한일협정을 비준시킬 것이라고 했다.⁸⁷⁾ 그리고 그는 가나자와(金沢)에서 열린 ‘1일 각의(閣議)’에서 “독도는 옛적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내에서는 10월 5일 일본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독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⁸⁸⁾ 이동원 외무장관은 ‘독도 문제’에 관한 사토 수상 발언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넘겨버렸고, 문덕주 차관은 “독도는 우리의 땅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했다.

한국 정부는 국회의 비준안 심의 도중 ① 기본조약에서 한국 정부의 관할권은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것이고, ② 평화선은 한일 간 어로 문제에 관한 협정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계속 존재하며, ③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⁸⁹⁾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비준을 위한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월 4일 밤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협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결정했는데 ‘독도 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 세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⁹⁰⁾ “① 기본조약에서 한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에만 국한된다. ② 평화선은 한일 양국 간에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채택했으므로 공해 자유 원칙에 따라 철폐된 것이다. ③ 독도 귀속 문제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한일 국교 정상화 후 외교 루트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한일협정의 해석에서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10월 6일 “독도 귀속 문제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87) 「독도는 일령(日領)이다, 사토 수상 주장」, 《조선일보》 1965년 9월 28일자.

88) 「방(房) 싸움에 외인부대도」, 《조선일보》 1965년 9월 29일자.

89) 「한일조약 비준에 새로운 파문」, 《조선일보》 1965년 10월 5일자.

90) 위와 같은 신문; 「韓国側の誤った条文解釈に強い姿勢とらぬ 政府統一見解―日韓条約批准問題」, 《朝日新聞》 1965년 10월 4日子; 「韓国与野党とも強く反発 閣議の“統一見解”」, 《読売新聞》 1965년 10월 5日子.

공문에 의해 처리된다.” 라며, ‘독도 문제’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다.⁹¹⁾ 일본 외무성이 제출한 자료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죽도 문제(紛争の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竹島問題)」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야당은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 정부를 추궁하였는데, 11월 2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⁹²⁾

공명당(公明黨)의 니노미야 분조(二宮文造) 의원이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이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사실상 독도라는 글자는 없다.” 고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나 외상은 “독도는 양국 간의 최대의 분쟁이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고 했다. 사회당(社會黨)의 하뉴 산시치(羽生三七) 의원이 “조정을 의뢰했을 때 조정자가 독도는 한국의 것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나 외상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상대방이 승인하지 않으면 또 그 대로다.” 라고 답변하였다.

12월 2일 사토 수상은 참의원 한일특별위원회에서 시나 외상이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식에 참석하기 위해 12월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하며, “독도 문제가 양국 간의 미해결 문제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요청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⁹³⁾ 그리고 시나 외상은 평화선이 한일어업협정으로 존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

91) 「竹島は紛争事項, 外務省, 国会提出資料を發表/日韓条約批准国会」, 《読売新聞》 1965년 10월 8일자; 「독도 귀속 문제 자료, 일 정부 국회에 제출」, 《조선일보》 1965년 10월 9일자; 「독도는 엄연히 한국의 소유다, 일본 사토 수상의 망언을 박(駁)함」, 《마산일보》 1965년 10월 12일자.

92) 일본 국회 회의록(第50回 国会 参議院 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 第5号, 1965년 11월 26일); 「독도는 최대 분쟁거리, 한국서 조정에 불응하면 협정 위반, 시나 외상, 참원(參院) 특위 답변서 밝혀」, 《경향신문》 1965년 11월 29일자; 「독도 문제가 최대의 분쟁, 시나 외상 답변」, 《조선일보》 1965년 11월 28일자.

93) 일본 국회 회의록(第50回 国会 参議院 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 第8号, 1965년 12월 2일); 「시나 외상 방한시, 독도 문제를 협의」, 《동아일보》 1965년 12월 3일자; 「독도 문제 미결임을 시인토록, 일 외상이 요청 시(視)」, 《마산일보》 1965년 12월 4일자.

문에 한국이 어업자원보호법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4.2. 독도 주변의 어업전관수역 설정

한국 정부가 12월 18일에 있을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독도 주변에 12해리의 어업수역을 선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 보도되었다.⁹⁴⁾ 일본 정부도 12월 14일 각의(閣議)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대마도 주변에 12해리의 전관수역을 설정하는 정령(政令, 법령)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정하려는 어업수역에 독도 주변 수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아 이 정령의 의결을 보류하고, 대마도 주변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서일본 일대의 전관수역 선포까지도 이 정령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론은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일단락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공연하게 시비를 자꾸 걸어온다.”고 정부를 비판하였다.⁹⁵⁾

12월 18일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을 앞두고 한일 양국은 독도 주변에 12해리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 선포를 구상함으로써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⁹⁶⁾

12월 14일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 설정’을 18일 한일협정 비준서가 교환되는 직후에 대통령 고시로 선포하기로 의결하였다.⁹⁷⁾

94) 「협정 발효 앞서 해석차 분쟁, 독도 한일 두 전관수역」, 《동아일보》 1965년 12월 15일자; 「독도 포함 전관수역, 일(日)서도 선포 서둘러」, 「전관수역 18일선포, 각의 의결, 기선(基線)서 12해리, 독도에도」, 《조선일보》 1965년 12월 15일자.

95) 「독도는 한국 영토다」, 《조선일보》 1965년 12월 16일자.

96) 「지도 위의 침략, 日의 독도 전관수역 선포 계획의 저의」, 《조선일보》 1965년 12월 16일자.

97) 「전관수역 18일선포, 각의 의결, 기선(基線)서 12해리, 독도에도」, 《조선일보》 1965년 12월 15일자; 「지도 위의 침략, 일(日)의 독도 전관수역 선포 계획의 저의」, 《조선일보》 1965년 12월 16일자.

대통령 고시 제1호로 공포된 이 고시는 한일어업협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어업수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 고시 제1항에는 “대한민국의 연안의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었다.⁹⁸⁾ 이 규정에는 독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언론에서는 이 수역에 독도와 울릉도 연안 12해리도 포함된다고 했다.⁹⁹⁾ 정부 당국자는 이 고시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독도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12월 15일 시나 외상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한국이 어업수역 선포시 그 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고 “일본 정부가 곧 선포할 전관수역은 대마도에 한하는 것이며 독도에 이를 선포할 생각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¹⁰⁰⁾ 그런데 그는 “만약 한국이 독도에 전관수역 설정을 선포한다면 일본 정부도 그대로 있는 것이 영토권의 포기가 되므로 달리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¹⁰¹⁾

12월 17일 일본 정부는 각의(閣議)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는 어업전관수역에 관한 정령(政令)을 의결하였다. 이 정령은 한일어업협정의 발효에 따라 어업전관수역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일본은 독도, 대마도 등 도서의 고유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¹⁰²⁾ 이날 의결된 정령은 “일본의 어업

98)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 설정의 건」(대통령 고시 제1호)(1965년 12월 18일)

99) 「전관수역 18일선포, 각의 의결, 기선(基線)서 12해리, 독도에도」, 《조선일보》 1965년 12월 15일자.

100) 「독도 포함 불(不)고려, 시나 외상 전관수역 선포에 언명」, 《경향신문》 1965년 12월 16일자.

101) 「독도 주변 전관수역, 한국서 선포 않길」, 《동아일보》 1965년 12월 16일자; 「日의 전관수역 선포에 독도 포함 불고려, 시나 외상 회견」, 《조선일보》 1965년 12월 16일자.

102) 「독도 포함 전관수역을 선포키로, 일(日) 각의, 고유명 명시는 회피」, 《조선일보》 1965년 12월 18일자.

에 관한 수역 범위는 시마네(島根), 야마구치(山口),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등 각 현의 연안 및 그 부속 섬의 저조선(低潮線)으로부터 12마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의가 끝난 뒤 다카쓰지(高辻) 법제국장은 “독도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섬이라는 근거 하에서 일본의 전관수역이 설정되며, 대마도 서쪽의 한국 전관수역과 겹쳐지는 부분은 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이 절반씩 나누게 된다.” 고 설명하였다.¹⁰³⁾

일본 정부는 앞서 어업전관수역의 범위를 대마도 주변 수역까지로 한정하기로 했었으나,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 전관수역을 설정할 기세를 보임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¹⁰⁴⁾

당시 신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어업수역 설정에 관한 규정에 ‘독도’ 라는 지명을 명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대국에 이야기하거나 국내 여론을 무마시킬 필요가 생길 때 서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어업이나 전관수역에 포함된다’ 는 정치적인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독도 문제’ 는 계속 ‘미해결 상태’ 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려는 속셈인 것 같다.” 고 비판하였다.¹⁰⁵⁾ 이것은 ‘지난 6월 22일 한일회담의 마지막 담판에서 이동원 외무장관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다가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형식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한 뒤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동상이몽 속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 이라고 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오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독도 문제’ 에 대해 “엄연히 사법, 행정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이므로 일본이 그 주변에서 어로작업을 하면 법적으로 다스리겠다.” 고 강력히 말하였다.¹⁰⁶⁾ 정 총리는 “독도가 미군 점령 하의 일본에서도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으며 93년 전 일본이 출판한 지도에도 우리 영토로 설

103) 위와 같은 신문.

104) 「독도 주변 포함, 일(日) 각의서 선포」, 《경향신문》 1965년 12월 17일자.

105) 「지도 위의 침략, 일(日)의 독도 전관수역 선포 계획의 저의」, 《조선일보》 1965년 12월 16일자.

106) 「독도 주변, 일(日) 어로를 엄금, 정 총리 회견」, 《조선일보》 1965년 12월 19일자.

명돼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SCAPIN 제677호나 그 당시 국내 신문에 발굴 기사로 소개된 일본판 지도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가 아닐까 추정된다.¹⁰⁷⁾

시나 외상은 12월 19일 조신히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문제는 심각한 분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한일 간의 친선관계가 무르익어갈 때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고 말하였다.¹⁰⁸⁾ 그는 “한국 정부가 독도를 포함하는 어업전관수역을 선포했다는 것을 정식으로 듣지 못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해결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전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언급을 피하였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했다는 보도는 한국 정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동원 외무 및 차균희(車均禧) 농림 등 관계 장관을 출석시켜 그 진상을 따지고 대책을 물을 방침이었다.¹⁰⁹⁾ 12월 20일 민중당(民衆黨)의 김영삼 원내총무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일협정은 무의미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 관계 국무위원의 출석요구서를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변인도 “한국 수비대까지 있는 독도에 일본이 전관수역 선포를 의결한 것은 제국주의 시절의 태도 “라고 비난했다.¹¹⁰⁾

107) 「독도는 한국령, 92년전 지도에」, 《경향신문》 1965년 10월 20일자; 「독도는 우리 영토, 92년 전엔 우산도로, 일본판 한국 지도서 발견」, 《조선일보》 1965년 10월 21일자.

108) 「양국 합의 따라 해결, 시나 외상, 이한(離韓) 앞서 독도 문제 언명」, 《경향신문》 1965년 12월 20일자; 「독도 문제 해결은 사전 합의된 대로」, 《조선일보》 1965년 12월 21일자.

109) 「독도 문제 23일 국회서 따지기로」, 《경향신문》 1965년 12월 21일자; 「독도 영유권, 정치 문제화」, 《조선일보》 1965년 12월 21일자.

110) 「민중당, 독도 문제 따질터」, 《동아일보》 1965년 12월 20일자; 「독도 영유권, 정치 문제화」, 《조선일보》 1965년 12월 21일자.

12월 21일 민중당은 ‘독도 문제’ 를 추궁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들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국무위원 출석요구서를 김영삼(金泳三) 의원 등 3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¹¹¹⁾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의원 등이 정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동원 외무장관은 국회 비준특위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관철시켰다고 증언했는데 협정문상 증거는 무엇인가? 시나 외상이 말한 ‘독도 문제는 사전 합의된 대로 처리한다’ 고 말했는데 사전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¹¹²⁾

그런데 사실상 1965년의 마지막 국회 회의가 되는 12월 23일 오후의 국회 본회의는 성원 미달로 의사(議事) 일정에 올라 있던 ‘독도 문제’ 및 한일협정의 해석상 차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¹¹³⁾ 12월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24일부터 정기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1965년 국회는 이날로 끝을 맺게 된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963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국내 신문에 보도된 독도 관련 기사를 기초로 ‘독도 문제’ 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111) 「독도 문제, 수(遂) 국회로, 23일 정 총리 등 상대로 추궁」, 《마산일보》 1965년 12월 22일자, 「총리 등 출석 요구, 야(野), 내일 독도 문제 추궁」, 《조선일보》 1965년 12월 22일자.

112) 「사전합의란 무엇인가, 야(野), 독도 문제 등 질문서 내기로」, 《조선일보》 1965년 12월 24일자,

113) 「한일 독도 해석차, 야(野), 서면으로 질의」, 《동아일보》 1965년 12월 24일자, 「야(野)의 독도 문제 추궁, 성원 안돼 좌절」, 《조선일보》 1965년 12월 24일자.

1962년 일본 정부는 1954년에 이어서 ‘독도 문제’의 처리 방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4년 이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일본의 계속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대해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후 일본 측에서는 ‘국제중재위원회 설치’나 ‘제3국 조정 실패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제안하며 한국 측의 반응을 떠보는듯했다. 하지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해결 방안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이었다. 1963년 1월에는 오노 자민당 부총재의 ‘독도 공유안’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 제안이 정부 견해가 아님을 확인하기도 했다.

1963년 초 일본 측의 ‘독도 공유안’과 한국 측의 ‘제3국 조정안’ 등으로 ‘독도 문제’ 처리 방안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그 즈음 변영태 전 외무장관이 1963년 2월 8일자 《한국일보》에 기고문을 게재한 이후,¹¹⁴⁾ 한국 내에서는 ‘독도 문제’는 ‘과거사 및 주권의 문제’로서 ‘타협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하게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한일회담의 의제로 삼고자 ‘독도 문제’를 어업 문제,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 등 현안 문제와 일괄해서 해결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독도 문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등 고위 관리를 일본에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려고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므로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강한 대응에 일본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일본은 당초 ‘독도 문제’ 해결이 한일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가,

114) 「독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일보》 1963년 2월 8일자.

뒤에는 독도 영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 방법 만이라도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정식 서명을 눈 앞에 두고서는 한일 양국 정부는 독도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회담 결렬을 각오할 만큼 독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득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이 작성되었지만, ‘독도’ 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위 ‘독도 문제’ 는 한일회담의 정식 의제가 되지 않았으며,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롯하여 한일협정 어디에도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독도 문제’ 는 말끔히 처리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직후에도 한일 양국은 독도를 둘러싼 문제로 대립하였다.

우선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에 해석상 ‘독도가 포함되어 있느냐’ 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일본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독도 문제’ 를 처리해야 한다고 한 반면, 한국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65년 12월에 발효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설정하는 어업수역과 관련하여, 독도 주변 수역에도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어업수역을 설정할 것이냐를 두고서도 대립하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독도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일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의 이유로 강한 불만이 표출되었다.¹¹⁵⁾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전개된 ‘독도 문제’ 의 양상을 보면, 일본

11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황재원,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영토해양연구』 vol. 9, 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6월, 112-119쪽 참조.

은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이 우월한 입지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¹⁶⁾ 분권화된 국제사회에서 영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는 외교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요소가 됨을 보여주었다.

116) 한일회담이 진행되던 중,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영유를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울릉도에 퍼져가는 건설 보(譜), 종합개발에 1억 5천만원 투입」, 《경향신문》 1963년 4월 5일자.

【참고문헌】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Ⅳ: 제6차 회담』(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이원덕 외,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서울: 선인, 2016),

홍성근 편,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Ⅲ: 1955~1962년의 독도』(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3)

外務省戦後外交史研究会編, 『日本外交30年: 戦後の軌跡と展望』(東京: 財団法人 世界の動き社, 1982).

黄宰源,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独島/竹島問題と新聞報道』(早稲田大学大学院アジア太平洋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3)

황재원,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영토해양연구』 vol. 9(동북아역사재단, 2015).

『독도문제, 1960-1964』(분류번호 743.11JA, 등록번호 4568)(외교통상부 보존문서, 1964).

《경향신문》, 《동아일보》, 《마산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朝日新聞》, 《読売新聞》

한국 국회 회의록 검색 사이트: <https://likms.assembly.go.kr/record>

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사이트: <https://kokkai.ndl.go.jp>

<Abstract>

Analyzing the Progression of the “Dokdo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Process: Focusing on Korean Newspaper Reports from 1963 to 1965

Hong, Seong-Keu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o-called “Dokdo issue” was addressed during the process of normalizing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based on reports published in Korean newspapers from 1963 to 1965.

In 1962, Japan proposed various approaches for handling the “Dokdo issue,” including “litigation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okdo condominium,”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Korea, for its part, also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mediation by a third country.”

However, from 1963 onward, a strong consensus emerged within Korea that the “Dokdo issue” was a matter of historical grievances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therefore a “non-negotiable issue.” In response, Japan persistently attempted to resolve the “Dokdo issue” as part of a comprehensive agreement alongside other agenda items discussed during Korea-Japan talks. Korea, however, firmly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Dokdo could not be included as a topic of discussion. Even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Agreement in June 1965,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s regarding Dokdo continued.

The dynamics of the “Dokdo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process show that Japan adopted an offensive stance while Korea took a defensive position. Nevertheless, Korea was able to negotiat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due to its practical control over Dokdo. This demonstrates that in a decentralized international system, practical territorial control has proven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strengthening a nation's position in diplomatic negotiations.

Keywords: Dokdo, Korean newspaper reports, Korea-Japan normalizati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spute settlement

이 논문은 2024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하이브리드 전쟁과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보심리전 사례를 중심으로 -

하 대 성**

〈목 차〉

1. 서론: 전쟁의 진화 및 양상 변화
2. 하이브리드 전쟁과 정보심리전 개념 및 유형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정보심리전 실제와 전세
4. 정보심리전의 독도 적용 및 방어전략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방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정보심리전이 어떻게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징과 사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개국과 한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을 분석하여 법·제도, 사이버기술, 수행조직 측면에서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사이버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평시, 유사시, 전시 정보심리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보심리전, 사이버전 전략과 능력, 사이버 위협 요인, 독도방어전략

* 이 논문은 2023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박사후연수연구원 / purunarmy@knu.ac.kr

1. 서론: 전쟁의 진화 및 양상 변화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세계화의 퇴보, 국가주의 부활을 가져왔다.¹⁾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격렬한 공방을 이어온 우크라이나의 힘은 무엇일까?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고 군사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던 힘은 정보심리전에서의 승리다.²⁾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경쟁은 동아시아에서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강대국의 영향력이 상존하는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충돌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운명을 지니고 있다.

독도 문제는 군사적 위기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적인 도서영유권 분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⁴⁾ 이미 동해 및 독도해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략적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다.⁵⁾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비한 대응방안이 없거나 기존의 대응책으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본 논문에서 정보심리전에 주목한 배경이다.

지금까지 한일 간의 독도 관련 연구는 역사, 국제법, 국제정치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적 근원 측면과 국제법 측면에서 상호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한일 간 독도 분쟁에 관한 연구도 동아시아 해

1) 김상배,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서울: 한울, 2022), pp. 11-12.

2) 송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평가와 함의”, 『주요국제문제 분석』, Volume 2022, Issue 12(2022.), pp.1-2.

3) 정호섭, 『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 (서울: 박영사, 2021.), pp.369-376.

4) 하대성,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와 DKD 모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p.18.

5) “중러 군용기 이례적 영공·KADIZ 동시 침범... 시간대별 침입 경로보나”, 동아일보(2019.07.2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3/96657076/1\(2024.03.02.\)](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3/96657076/1(2024.03.02.))

양 영유권 문제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독도 및 동해해역에 대한 다양한 위협과 대응방안을 연구한 논문은 저자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모델”이 유일하다. 본 논문은 평시, 유사시, 전시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상정하고 국가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사이버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독도평화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이버 영역에서 벌어지는 정보심리전이 전쟁의 주도권을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전력임을 입증했다.⁶⁾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정보심리전이 어떻게 국제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징과 사례에 주목하였다. 사이버전 행위자 확보와 서방의 디지털 플랫폼의 무기화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다.

정보심리전 수행능력은 국가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개국과 한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사이버전 전략의 핵심인 사이버 기본법 제정부터 통합방위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및 수행조직 등 역량 확보를 위한 대안 도출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를 적용하여 평시, 유사시, 전시 정보심리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차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벌어질 다양한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보심리전 역량이기 때문이다.

2. 하이브리드 전쟁과 정보심리전 개념 및 유형

2.1. 하이브리드 전쟁

6) 송태은, 위의 논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방패가 창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안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⁷⁾ 전쟁의 방식 또한 전통적인 고강도 도발보다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이 투사되고 있다.⁸⁾ 회색지대 전략과 정보전, 미디어전,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그것이다.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은 ‘살라미 전술’을 적용하여 상대방이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하여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⁹⁾ 회색지대 전략은 애매모호함(Ambiguity)과 점진주의(Gradualism)로 대표되며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¹⁰⁾ 회색지대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로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정보전과 심리전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¹¹⁾

회색지대 전략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해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은 특정 정부의 전복이나 영토를 병합, 또는 상대국의 약점을 이용한 전략적 이익이 목표가 된다.¹²⁾ 국가는 물론 반군이나 테러 집단 같은 비국가 단체들이 정규전과 함께 비정규전,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이를 ‘신세대 전쟁(New Generation Warfare)’이란 이름의 교리로 정립했다.¹³⁾¹⁴⁾ 전쟁 수행방식은 전쟁 이전부터 민간해커를 동원하

7) 데이비드 조던 외, 강창부 역, 『현대전의 이해』, (서울: 한울, 2014.), pp.111-113.

8) 앞의 책, p.26.

9) 홍규덕, “하이브리드 전쟁의 역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전략연구』, Volume 29, Issue 2(2022.), pp.55-57.

10) 양욱,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전략연구』 Volume 27, Issue 3, 2020. 11. pp. 12-14

11) 정삼만, “해양에서의 회색지대전략의 이론과 실제(Gray Zone Strategy in Maritime Arena : Theories and Practices)”,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21 통권 43호, Vol.21, No.1, 2018.06.01.

12) 송승중,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이론과 실제”, 『한국군사학논집』 Volume 73, Issue 1(2017.), pp. 69-71.

13) 육군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2015., pp.10-17.

14) 현재 러시아의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여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휘체계 무력화에 중점을 둔다. 무력화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날라 정보심리전을 전개한다. 언론기관, 인터넷 서비스 회사,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외부로부터의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여 외국 정부와 해외 언론들은 해당 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 수 없도록 만든다. 사이버 공격으로 공격여건이 조성되면 군사력을 투입하여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있어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유일한 국가이다.¹⁵⁾

2.2. 정보심리전 개념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비군사적 수단 운영과 전자전을 통한 정보우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¹⁶⁾ 비군사적 수단으로 대중매체, 종교조직, 문화단체, NGO, 해외자금 지원을 받는 대중운동, 학자 등을 명시했다. 무력분쟁 이전부터 이들을 운영하여 협조된 공격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전은 공격전 선전선동활동과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무력화하여 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자전은 전투작전의 중요한 형태로 부각된다.¹⁷⁾

정보심리전, 전자전을 이용한 군사적 목표는 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

교리를 정립한 인물로 이를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 부른다.

- 15)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전(2007년), 조지아군에 대한 사이버전+군사력 투입(2008년), 크림반도 합병(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쟁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16) Chekinov, S. and S. Bogdanov. 2013. “The Nature and Content of a New-Generation War.” *Military Thought* (October-December). p.17.
- 17) 체키노프와 보그다노프는 겔프전을 인류 최초의 신세대 전쟁으로 정의하고, 미국은 이미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특화된 인터넷 ‘댓글부대(troll Farm)’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및 군이 마비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핵심 인프라가 파괴되고 지휘통제통신 능력이 무너지면 적부대는 적시적절한 전개 및 배치가 불가능해진다. 군사 공격을 통한 전쟁의 종결단계에서는 정규 지상군이 진입하여 잔여 저항지 점을 고립하고 격멸한다.¹⁸⁾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모습은 2014년 크림 반도,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상황과 유사하다.

정보심리전은 상대국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상대국에 불리한 정보를 주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 의지를 말살하는 중요한 전쟁수단이다. 정보심리전이 군의 작전으로 수행될 때 정보작전(IO: information operations)과 심리작전(PSYO: psychological operations)으로 구분한다. 정보작전은 아군에 유리한 정보는 수집하고, 적에게 불리한 정보는 제공하여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심리전은 적의 사기를 꺾고 전쟁 의지를 말살하며 아군의 사기와 결의를 높이는 전시 군사활동이다.¹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정보심리전은 진입장벽이 낮고 전시와 평시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훨씬 더 위협적인 전쟁수단으로 진화해갈 것이다.²⁰⁾

2.3. 정보심리전의 유형

정보전은 지휘통제전, 첩보전, 전자전, 심리전, 해커전, 경제정보전, 사이버전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²¹⁾ 첫째, 지휘통제전은 지휘부에 대한 공격이다. 둘째, 첩보전은 전장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보호하며 필요 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자전은 무선·전자 혹은 암호기술과 관련

18) Chekinov, S. and S. Bogdanov. 앞의 논문. p.22.

19) 송태은, “현대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역할과 전개양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국방연구』, Volume 65, Issue 3(2022.), pp.217-220.

20) 최근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분석: 정보작전 수행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2023.), p.40.

21) Martin Libichi, “What is information Warfare?”, 『Strategic Forum』, No.28(1995.)

된 분야를 말한다. 넷째, 심리전은 상대국의 여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해커전은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한다. 여섯째, 경제정보전은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보활동이다. 일곱째, 사이버전은 미래 전쟁으로 정의했다. 결국 정보전은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구현되는 군사혁신 과정을 통해 나타난 개념이다. 따라서 정보전의 유형도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갈 것이다.

정보작전에는 진짜정보,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등이 있다. 허위정보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다. 허위조작정보는 누군가를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된 잘못된 정보다. 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여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다.²²⁾ 이러한 여러 성격의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작전은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가진다.

심리전의 대상은 상대국가와 대중이다. 특히 대중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선동과 심리작전을 이용한다. 심리전의 승패는 메시지에서 보여지는 내러티브의 공감력에 달려 있다.²³⁾ 심리작전은 군사활동으로 평시, 전시, 우발사태(contingencies) 등 모든 상황에서 운용된다. 심리작전은 무력수단과 함께 사용되어 군사적 파괴력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²⁴⁾ 작전적 수준에서 심리작전은 전투 준비 차원에서 제한된 규모로 수행된다. 심리작전은 국가 프로파간다 활동으로 국가의 모든 공적 활동이 포함된다.²⁵⁾

지금 우리는 초연결(hyper-connected) 시대에 살고 있다. 초연결시대 정보심리전은 인터넷과 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행된다.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실시간 정보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²⁶⁾ 이러한 정보커뮤니케

22) 송태훈, “세계전쟁 양상에 따른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변화 분석”, 『군사연구』(2020.) pp.253-255.

23) Joseph D. Celeski, “Psychological Operations—A Force Multiplier.” *Special Air Warfare and the Secret War in Laos*, Air University Press(2019) <https://www.jstor.org/stable/pdf/resrep19555.19.pdf>(검색일: 2023.7.10).

24) 송태훈, 앞의 논문, pp.267-269.

25) 이정하,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제귀 통제(Reflexive Control)”, 『한국서양사연구회』, 제66권(2022.), pp.159-166.

이선 환경에서 수행되는 정보심리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실제와 전세

3.1. 실제(사례)

3.1.1 사이버전 행위자 차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사이버전 특징은 첫째, 민간 해커그룹의 이용으로 이는 기존에 러시아가 사용해온 방식이다. 둘째, 국제 사이버 규범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의 병원과 학교, 난민 대피시설 등 비군사적 민간시설을 공격한 것이다.²⁷⁾

우크라이나도 미국을 동원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공격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의한 집단적인 자기방어 조치로 직접적인 군사활동이 아니라고 했다.²⁸⁾

중국과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특히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조직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 웹사이트를 공격했다. 개전 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26) 오늘날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정보통신기기, 각종 사물인터넷(IoT),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서(sensor) 및 먼 거리에서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감시기술의 확산으로 실시간 정보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

27) 이형동; 윤준희; 이덕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이버공격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처리학회』, 제11권 10호(2022.), pp.355-357.

28) 2022년 6월 미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는 우크라이나 사이버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보복을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²⁹⁾

러시아의 공격은 사이버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 지속 되었으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 초국가 행위자 등 사이버전 역사상 가장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공하여 사이버 심리전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어나니머스(anonymous)’, ‘IT Army of Ukraine’ 과 같은 다양한 해커조직의 사이버 협공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력을 적절히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³⁰⁾

미국의 첩보기관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가 親 러시아 해커조직 ‘Killnet’ 의 사이버 공격을 경고하자 어나니머스는 즉각 Killnet의 가담자 146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러시아의 CCTV, 휴대폰 등을 해킹하여 러시아 대중에게 반전 메시지를 송출했다. 또 일반인들도 어나니머스 사이버 작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송출했다.³¹⁾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사이버 규범을 무력화하고 향후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3.1.2 디지털 플랫폼의 무기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 인터넷 인프라를 대신해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정찰드론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수단에 표적정보를 인계하여 정밀타격하는 표적탐지 및 타격체계는 스타링크 없이는 불가능하

29) 신범식, 양정윤,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영향에 대한 고찰”, 『러시아연구』, Volume 34(2024), pp.129-165.

30) “폭격·피란 실시간 중계...러·우크라 ‘틱톡 전쟁’,” 조선일보(2022.03.0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02/L2V5AKOVMZE2FODNBDQLA357P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2024.08.16.)

31) 홍규덕, 앞의 논문, pp.63-66.

다. 또한 각 군을 연결하고 지휘하는 지휘통제통신시스템도 위성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³²⁾

정보심리전 수행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 확보는 필수적이다. 서방의 IT 기업들이 대다수 플랫폼을 독점하여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전쟁 정보와 내러티브 확산은 제한되었다. 반면 러시아에 불리한 전쟁정보와 내러티브는 확산되었다. 세계의 유명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틱톡 등이다. 이러한 매체가 러시아 관영매체의 기사를 차단했다. 서방의 IT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인이 사용하는 SNS 채널 네트워크를 폐쇄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심리전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행정정보심리전의 한계를 가져왔다.³³⁾

비트코인 채굴 3위인 러시아는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차단되자 가상화폐를 전쟁자금으로 동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체불가토큰(NFT)을 이용해 전쟁자금을 모금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영역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3.2. 전세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없는 전쟁’을 수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다. 이는 과거 지속적으로 서방과 동유럽에서 반복한 러시아 내러티브의 기만성에 대한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세계 IT 기업이 러시아에서 발신한 담론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러시아 관영매체의 콘텐츠를 차단한 반면 우크라이나의 담론은 확산되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대한 학습효과로

32) “WP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우크라 생명줄”, 뉴시스(2023.09.20.), <https://v.daum.net/v/20230920095914249>(2024.09.25.)

33) 홍규덕, 앞의 논문 참조

인하여 효과적인 반격 내러티브를 시의적절하게 내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프레이밍했고,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정보우위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세계 IT기업이 우크라이나의 정보심리전 담론이 우세할 수 있도록 도왔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정보심리전 가담 등으로 러시아보다 성공적인 정보심리전을 이끌수 있었다.³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이 전세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러시아의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국내반발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국내 반전여론과 자국 군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펼친 정보심리전이 전쟁의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게된 것이다. 전쟁의 절대 조건인 국내 대중의 전쟁지지 여론을 얻지 못했고, 대규모 국내 반전시위가 일어나 소셜미디어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언론을 검열하며 시위대를 탄압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서 3천 명이 넘는 러시아 시민이 체포되었고, 피터스버그에서도 2천 명 이상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둘째, 러시아 내러티브에 대한 학습효과에 대한 반감과 우크라이나 내러티브의 선전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내러티브에 대한 학습효과는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의 가장 큰 실패요인이다. 러시아 發 가짜뉴스가 고도의 설득기제를 통해 생산되고 유포되어도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전쟁 초기 디지털 공간에서 공작활동을 분석한 워싱턴 소재 조사기관 Omelas는 러시아 미디어 영향공작이 목표청중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³⁵⁾ 러시아 관영매체가 SNS에 올린 12,300개의 콘텐츠는 130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지만 서방 매체는 총 116,000개의 콘텐츠를 올려 4천4

34) "Truth is Another Front in Putin's War", The New York Times, March 20, 2022. <https://www.nytimes.com/2022/03/20/world/asia/russia-putin-propaganda-media.html?partner=naver>(2024.03.21.)

35) 송태은, 위의 논문, p.26.

백8십만 명의 청중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도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반격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발신했고 전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전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셋째, 서방 IT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에 따른 결과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정보심리전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타링크(Starlink)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도움으로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정보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Facebook, Instagram, YouTube, 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Meta나 Google이 RT, Sputnik, TASS와 같은 러시아 관영매체를 차단했다. 또한 이들 매체의 미국내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는 등 세계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러시아 발 내러티브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방의 우크라이나 정보심리전 지원이다. 전쟁 시작 전부터 러시아의 민감한 전쟁 정보를 선제적으로 노출하고 전쟁에 대한 내러티브를 장악하는 방식이다. 서방은 푸틴의 전쟁을 ‘실패한 전쟁(a failing war)’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프레이밍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4. 정보심리전의 독도 적용 및 방어전략

4.1. 한국의 정보심리전 전략과 대비태세

한국에는 미래 정보전 대비 전략개념이 없다. 정보전 능력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나 일본에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사이버 침해사고와 범죄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 취약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중국과 대만처럼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 국방부,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사이버테러나 가상적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정보전 전략이 제시된 바 없다.³⁶⁾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3년 4월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청와대가 ‘Control Tower’를 맡고 국가정보원이 총괄적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적 대응체계가 구축된 것이다.³⁷⁾

정보보호 및 사이버전 대응 관련 법들은 개별 입법으로 사이버보안 활동에 혼란이 가중되어 정비가 필요했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전을 규율하기 위한 상위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³⁸⁾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를 발표³⁹⁾하였으나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통합방위법에 사이버안보 분야와 관련된 조항 부재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체계적인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 등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년 사이버안보 정책업무를 국방정책실(방위정책관)로 이관했다. 합참 역시 사이버 작전업무를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작전본부(작전기획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정원과 국방부의 사이버전 역량은 미국이나 중국, 러

36) 이용석; 정경두,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의 교훈과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Volume 137(2022.), pp.68-70.

37) 최영관, 조운오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권(2017.), p. 210.

38)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기본계획 확정...18개 중점과제, 어떤 내용 담겼나”, 보안뉴스(2019.09.0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2713>(2023.09.11.)

39)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 보안 강대국 사례와 비교해보니”, 보안뉴스(2023.08.0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0106>

시아의 능력과 체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국방부는 합참과 통합된 정보전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전략개념과 교리 개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⁴⁰⁾ 또 적의 사이버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군은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정보공유의 시기와 수준이 법률로 규율되어 있어야 국가 행위가 법 안정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진권⁴¹⁾의 보안기술 경쟁력⁴²⁾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정보보호 인력 수급 등에서 정책적 반영이 미흡하다.

사이버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는 필수적이다. 국외협력활동 측면에서 괄목할 성과로 한국이 2023년 6월 유럽평의회로부터 ‘부다페스트협약’⁴³⁾에 정식 가입 초청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협약 가입으로 디지털 증거 관련 국제 공조 수사 절차가 원활해지고 사이버침해 공격자를 특정할 수 있어 디지털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이다.

40) “변재선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에 전문가 보직시키고 사이버전 개념과 전략 장기간 연구해 발전시킬 연구집단 필요”, 뉴스투데이(2023.06.27.),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627500126\(2023.09.21.\)](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627500126(2023.09.21.))

41) 『202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4.02.15.), pp. 263-272 참조; 기술수준을 6단계로 나누고 최고선진국, 최고선진권, 선진권, 중진권, 하위권, 최하위권으로 구분한다.

42) 2023년 한국의 사이버체계 기술수준조사 결과 사이버작전 기술 77.2%, 사이버훈련 기술 73.6%였다. 중분류 기술수준은 사이버감시정찰 77.7%, 사이버지휘통제 76.2%, 사이버대응 77.7%, 사이버보호는 77.2%로 평가되었다.

43) 2001년 11월 23일 유럽평의회(COE : Council of Europe) 주도로 체결한 “사이버범죄조약(The Convention on Cyber Crime)”으로 일명 ‘Budapest 협약(Budapest Convention)’이라고 한다.

4.2.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능력

4.2.1 미국

미국은 911테러 이후 2001년 “애국법(Patriot법)”이 제정되어 미국의 연방기관은 민간의 모든 전자통신에 대한 추적권한을 가지게 되었다.⁴⁴⁾ 더불어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도 전자감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2002년 11월 25일 사이버테러⁴⁵⁾를 포함한 모든 테러로부터 미국의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안보법(The Homeland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보보호 및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사이버작전과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민관이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사이버정보공유 보호법(CISPA, 2012.)”법이다. 둘째, 국가 사이버안보 및 통신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위협정보를 연방정부와 민간이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안보보호법(NCSPA, 2014.)”이다. 셋째,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연구개발과 교육, 인력양성, 인식 제고, 기술표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사이버보안 강화법(CEA, 2014)”이다. 넷째, 사이버안보 인력확보 전략과 역량강화 전략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의 역량평가 기반을 마련한 “사이버보안 인력평가 법(CWAA, 2014.)”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 행정명령 20호⁴⁶⁾를 발령하여 국가 기

44) 패트리엇법의 정식 명칭은 Uniting (and) Si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 Act of 2001이다.

45) 최영관, 조운오 위의 논문 pp. 208-209.

46) 2012년 10월에 오바마대통령이 서명한 이 기밀지침은 2003년에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기밀지침인 국가안보지침(NSPD)-38을 대체하는 것으로 NSA분석관인 Edward Snowden에 의해 2013년 6월에 공개되었다.

간망을 흔드는 사이버공격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고 없이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5년 4월에 “국방 사이버전략”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기존 물리적인 공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리적인 군사력도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 9월 발표한 “미국의 국가 사이버전략”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사이버정책의 핵심목표를 명시했다.⁴⁷⁾

미국의 사이버전 역량 구축은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시작되었고, 사이버전 수행 중심기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이었다. 핵심임무는 컴퓨터네트워크작전(CNO)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보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각 정보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전 수행기구를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 국방 분야로 구분하여 통합하였다. 정부기관 및 민간분야는 국가 사이버보안처(NCSD)로 통합하였고, 국방 분야는 전략사령부 예하의 사이버사령부로 통합하였다. 미국은 사이버안보 조정관을 두어 백악관으로부터 국토부와 국방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각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효율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

4.2.2 중국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화 도입 및 주력 시기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이다. 둘째, 정보보호, 정보 System 안전 확보 중점추진 시기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셋째, 사

47) ①연방 Network 및 정보보호 ②중요 Infra 보호 ③사이버범죄 퇴치 ④사이버침해 보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강구 등이다.

이버공간 안보 강조시기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정보보호 및 정보System 안전 확보는 후진타오주석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다. 최초 계기는 2003년 3월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 산하에 ‘국가 Network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면서 부터이다.

시진핑주석은 2014년 2월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획기적인 통합·집권형 사이버 안보체제 구축을 꾀한다. 2014년 4월에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안전’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2015년 7월 ‘국가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16년 11월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여 2017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⁴⁸⁾ 2017년 6월에는 “Network 안전전법(網絡安全法)”을 시행하여 전파 Service를 제공하는 기반정보 Network와 전력·물·가스 공급망, 금융·의료·사회보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보 Infra에 대한 사이버규율 체계를 규정한다.

중국의 사이버전략은 “망전일체전(網電一體戰)”으로 공격적이다. 2008년 이후 Network전과 전자전을 결합하여 Internet 폭탄 등의 공격수단과 전자기 오폭물 등의 방어수단으로 구성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방호용 사이버무기체제로 미국의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항한 ‘기린’이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사이버공격 실행능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부대를 직접 운영⁴⁹⁾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해킹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공격무기체제의 독자적인 개발과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통합 Network 전자전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초에 관한 인력확보,

48) 중국은 4중 전회를 계기로 당면 사회문제에 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제정하였고 법률 정비를 통해 반부패 운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사이버와 관련된 법률도 정비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9) 2009년 미국 내 34개 IT 기업을 공격한 ‘Operation Aurora’의 배후가 중국이라고 Microsoft사에서 발표, 국가 차원의 사이버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논문, 응용분야에 대한 기반역량이 갖추어져 사이버전 핵심기술에 대한 완전한 자립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된다.⁵⁰⁾

중국의 사이버전 수행기관은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서 총괄하며 전략지원부대에서 전자전과 사이버전을 담당한다. 전략지원부대는 평시 정보수집과 유사시 사이버공격을 담당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정보를 수집하며, 미국과 유럽의 신호정보 등을 집중 수집하여 산업기밀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사이버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담 개발하고 있다.

4.2.3 러시아

러시아는 1996년 3월 “컴퓨터 정보영역에서의 범죄에 관한 법(Crimes in the Sphere of Computer Information)” 으로 비인가 컴퓨터 정보에 접근, 부당한 컴퓨터 Program의 제작·사용·배포, 컴퓨터 System 또는 Network 운영규칙의 위반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5년에 전화, Internet 통신에 대한 FSB의 감청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위해 1996년 운영적 조사활동을 위한 시스템(SORM; System for Operative Investigative Activities)-1, 1998년에 SORM-2를 설립하였다.

정보통신부장관은 2000년 “130호 명령(전화기, 휴대폰, 무선통신, 무선 호출망에서의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기술적 수단의 도입)” 을 법제화 했다. 2014년에는 SORM-3의 감청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발령하고 2015년에는 SORM-3에 대응하는 장비들을 설치하였다.

50) “中, 만리대포로 홍콩시위 지휘 사이트 집중 공격”, 뉴스시스(2019.12.06.),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2792&fbclid=IwAR2XhLh4YLgqeVMRK-fTXgVQQZSZ8ZXblkdZfOpT081cjM0hJ8w-Crp7c(2023.09.21.)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근거하고 있는 법은 2006년 7월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법인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법”이다.⁵¹⁾

러시아는 독립된 '사이버기본법' 없이 정부의 정보보안 Doctrine으로 대체하고 있다. 2000년 9월 발표된 “러시아연방 정보보안 Doctrine”은 Internet 정책을 국가안보의 주요 의제로 간주하고, 개인의 권리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⁵²⁾ 2016년 12월 승인된 “신 정보보안 Doctrine”은 러시아의 정보 Infra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전 수행기관은 연방보안국(FSB)⁵³⁾가 사이버전 전담조직인 알파부대를 통해 통신감청과 국가통신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사이버안보 관련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FSB는 국가기밀을 포함한 중요정보의 통제와 예방조치, 관련기관에 대한 보안기술과 암호 Service를 제공한다. 예하조직으로는 정보보안센터, 침해사고대응팀, 국가 사이버범죄 조정부 등이 있다.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무기체계의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며, 미국과 기술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사이버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공격과 방어수단을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사이버무기체계의 개발 Progra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2002년 해커부대를 창설하여 사이버전문인력의

51) 이 법은 각 기관이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 보안대책을 구비하고 접근이 통제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성을 지키며 동시에 적절한 정보 접근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법률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52) 김상배,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 『국제지역연구』, 제3권(2017.), pp.67-108.

5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843&cid=43124&categoryId=43124>, (검색일: 2023.8.23)

54) 허태희, 이상호, 장우영,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정보전 준비와 대응체계”, 국방연구, 제49권 1호(2006.), pp.31-45.

양성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왔다. 특히 에스토니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해 사이버 공격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4.2.4 일본

일본은 1997년 9월부터 관방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나 전수방위 원칙⁵⁵⁾에 포함되지 않는 사이버위협에 대해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을 안보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2012년 9월 방위성은 “방위성·자위대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안정적·효과적 이용을 위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무력침공을 위한 공격여건조성작전으로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을 때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2012년 아베내각이 등장하면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구체화 된다.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상의 과제로 제시한다.

2018년 발표한 新방위계획대강은 일본 방위에 있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과 같은 첨단 군사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명시했다. 일본 방위력 강화의 핵심으로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이 부상한 것이다.⁵⁶⁾ 사이버 영역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유사시 사이버 반격능력 보유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특징이다.⁵⁷⁾

55) 2005년 각의에서 결정된 무력공격사태는 ①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착륙 및 상륙 침공, ②계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③탄도미사일 공격, ④항공공격 등이다.

56) 이상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이버 외교와 사이버 방위”, 『국가전략』 제25권 2호(2019.) pp.95-100.

57) 일본에 대한 공격 시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을 활용하여 공격을 저지·배제한다고 명시하여 유사시 자위대가 적의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사이버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 사이버 공격과 자위권 발동에 대한 일본 내 법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이를 계기로 2014년 11월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의 기본이념과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한 “사이버보안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범국가적 사이버 보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⁸⁾

일본의 사이버전 수행조직은 2005년 내각 관방에 ‘정보보안 Center’와 ‘정보보안 정책회의’를 설치하여 정부 각 부처의 사이버방위 역량을 ‘정보보안 Center’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기관과 방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시청에 ‘사이버 Force Center’와 ‘생활안전국’을 설치하여 사이버대응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2005년 각 군 자위대는 ‘사이버전 담당 System 방호대’를 창설하였고, 2014년에는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다.⁵⁹⁾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5년 총리 직속의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사이버보안전략본부 산하 내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설치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4.2.5 각국의 사이버전 전략 및 역량 비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벌어진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게임체인저는 정보심리전 역량이다.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정보심리전 역량의 관건은 사이버기술 수준과 사이버전 수행조직, 서방의 디지털 플랫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

58) 박상돈, “일본 사이버안보법에 대한 고찰 : 한국의 사이버안보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50권(2015.), pp.161-165.

59) “일본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설치...540명 규모”, 한국경제TV(2022.03.17.)

록 국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심리전 역량은 국가의 사이버전 전략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이버전 전략과 법/제도, 사이버 기술수준, 수행 조직 측면에서 각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이버전 전략	법/제도	사이버 기술	기관/조직
미국	국방 사이버전략 (2015년) 국가 사이버전략 (2018년)	국토안보법(2002년) 정보공유 보호법(2012년) 국가 사이버안보보호법 사이버보안 강화법 사이버보안 인력평가법 (2014년) 사이버보안법(2015년)	사이버 공격/방어 무기체계 개발	사이버안보조정관 (백악관 보좌) 국가 사이버보안처 (정부기관 및 민간) 사이버사령부 (국방분야)
중국	망전일체전 (網電一體戰) (2008년)	국가안전법(2015년) 사이버안보법(2016년) 네트워크 안전법(2017년) 반간첩법(2017년) 반간첩법 개정(2023년)	사이버 공격/방어 무기체계 개발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사이버안보 총괄) 전략지원부대 (해외 정보수집, 사이버전 수행부대)
러시아	-	감청 허용법(1995년) 컴퓨터 정보영역에서 범죄에 관한 법(1996년) 러시아연방 정보보안 독트린(2000년)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법(2006년) 신정보보안독트린(2016년)	감청 시스템 (SORM) 개발 사이버 공격/방어 무기체계 개발	연방보안국(FSB) (사이버안보 총괄) 알파부대 (사이버전 전담)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년)	방위계획대강(2010년) “사이버공간의 안정적, 효과적 이용을 위해” 방위성 지침 발표(2012년) 사이버보안기본법(2014년)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사이버요격 무기체계(바이러 스형) 개발 사이버공격자 추적 밀웨어 제작	사이버보안전략본부 사이버보안센터 (사이버공격 대응) 사이버 포스센터 생활안전국 (경시청 사이버 대응) 사이버전 담당시스템 방호대 사이버방위대 (자위대 사이버 대응)
한국	국가사이버안보 전략(2018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서(2023년)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2013년) 사물 인터넷 기본계획 (2014년)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	청와대(컨트론타워) 국정원(총괄실무)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전 대응)

		관한 법률(2015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년)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년)		
--	--	--	--	--

〈표 1〉 각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비교

한국의 정보심리전 역량은 법/제도, 사이버 기술수준, 수행 조직 측면에서 취약하다.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실천할 사이버 공격 및 방어 무기체계 개발과 수행 조직을 만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기술과 수행 조직,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지원없이 정보심리전 수행이 불가능하다. 독도 및 동해해역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요인은 평시, 유사시, 전시를 막론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심리전 역량은 국가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에 기반하고 있다.

4.3 사이버 위협요인과 독도 방어전략

4.3.1 사이버 위협요인

사이버위협의 유형은 사이버해킹,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분쟁, 사이버전행쟁 등으로 구분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사이버위협들이 정치사회적인 효과를 유발하면서 개인 간의 사이버분쟁을 벗어나 국가 간의 사이버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단순한 사이버위협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이 선정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위협은 5가지로 분석되었다.⁶⁰⁾ 첫째, 첨단기술·안보현안 절취 목적의 사이버첩보 활동의 심화가

60) “2023년 사이버 위협 전망 TOP 5”, 아웃소싱타임스(2022.12.12.), <http://www.outsour>

다. 둘째, 해킹조직이 사회 혼란 목적의 해킹 가능성 우려다. 셋째, 공공·기업 대상 랜섬웨어 피해 확산 등 사이버 금융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넷째, 용역업체·클라우드 등 민간 서비스를 악용한 공급망 해킹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사이버억지 정책 회피 목적의 다양한 해킹수법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독도와 동해해역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한·일간 갈등은 회색지대에서 물리적·사이버 공간에서 저장도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사이버분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 간 사이버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색지대 전략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군사적 활동 등에서 명확한 인식과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위안부 판결이다.⁶¹⁾ 이것은 한일 관계의 악화와 외교관계에 대한 우려를 형성해 국내정치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외교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강제징용 판결로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이다.⁶²⁾ 이것은 일본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강압을 재생산해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사례는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비행 사건이다.⁶³⁾ 이것은 군사적 마찰이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전략적 경쟁은 보다 복잡한 성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독도는 심각한 군사적 충돌과 같은 전쟁의 상황이 아니지만 영유권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영역이다. 또한

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71(2023.08.12.)

61) “文 정부의 안보..오답만 선택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 뉴데일리(2021.02.03.),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02/2021020200096.html>(2023.08.21.)

62) 최은미,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제31호(2019), pp.3-15.

63) “軍 ‘日초계기 경고음 증거 못 돼, 교묘한 가공’ 정면 반박”, 뉴시스(2019.01.22.),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122_0000537667&cid=10301&pid=10300(2021.03.19)

외교부나 외무성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를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과 이에 대한 항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분쟁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4.3.2 독도 방어전략

한국의 디지털 환경과 사이버보안 여건은 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도가 보통인 중진권 수준이다.⁶⁴⁾ 따라서 사이버침해 위협 발생 시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는 미흡하다. 독도와 동해해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협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최종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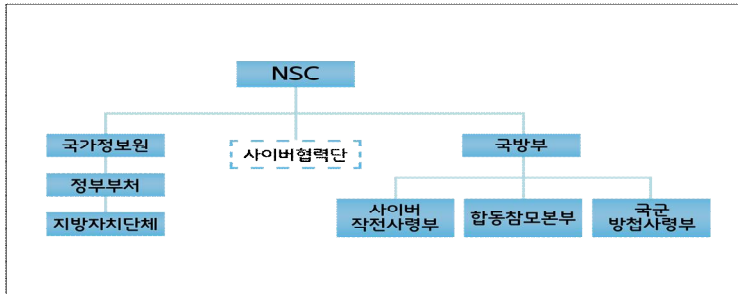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출한 정보심리전의 특징적 요소를 한국과 주변 강대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능력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전 대비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및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전 관련 법들이 개별 입법되어 상호 연계 및 상하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의 해석을 기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없이는 사이버침해와 공격에 대응하는 전력과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둘 수 없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이버안보는 국가는 물론 다양한 사이버전 행위자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이다. 컨트롤타워를 맡는 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와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 장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고 총괄하는 조직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기관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시할 수 있게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64) 202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4.02.15.), pp. 263-272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통해 전평시 사이버전 수행기관을 조정·통제하도록 한다. 사이버협력단을 두어 민·관·군 협의체로 운영하면서 정보공유 및 국제적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전·평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조직과 역량을 조정·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국방부는 전평시 사이버전의 핵심 전력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기술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사이버전을 통합방위작전의 핵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육해공군의 전력과 역량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사이버전 수행조직(안)

통합방위법은 물리적으로 적의 침투 및 도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위협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이버 정보수집활동이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은 제한된다. 이를 위해 통합방위작전의 영역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고, 사이버영역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사이버전을 총력전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사태에 대한 대응조직 편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사이버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민관군 통합 사이버무기체계 연구개발,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SNS를 활용한 독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평시부터 메시지의 내러티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앱은 유튜브이며 2위는 카카오톡, 3위는 인스타그램이다.

유튜브에서 독도(Dokdo)를 검색해보면 외교부 ‘독도영상’ (2014년 게시), K-독도 ‘독도수비대강치’ (2018년 제작),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보물찾기’ (2020년 제작), 서울시 교육청 ‘독도의 역사편’ (2022년 제작), 한국관광공사 ‘울릉도독도 BEST 9’ (2024년 제작) 등이며 게시물의 대부분은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물 또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카카오채널에서 독도(Dokdo)를 검색해보면 독도버스(메타버스 서비스), 독도사랑(해산물 판매), 독도젓갈(젓갈 판매),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사단법인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박물관(독도아카데미) 등으로 독도 박물관을 제외하고 독도를 이용한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독도 홍보콘텐츠는 SNS를 통해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평시부터 구축되지 않으면 정보심리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민관에서 운용되는 SNS채널을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SNS채널에서 확보한 팔로워를 독도 사이버 홍보요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독도 사이버위협에 대비하는 정보심리전의 관건이다.

셋째, 정보기술의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의 확보이다. 이번 전쟁에서 사용한 사이버 무기체계는 고도의 기술적 집약체이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에 와이퍼 악성 코드와 디도스·문자스팸 등을 사용했다. 사이버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대응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기관과 연구인력, 국가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군 연구소를 연계하여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급 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이버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사이버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체계확보이다. 사이버전은 총력적으로 다양한 사이버전 행위자가 참가한다. 따라서 사이버군 뿐만 아니라 민간 정보보호 인력의 관리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화이트 해커 육성도 포함된다. 통합방위법에 사이버예비군을 명시하여 평시부터 관리하고 예비군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평시부터 민간 사이버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형태를 강구하여 사이버전 수행조직에서 관리 및 유지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이다. 2023년 한국은 부다페스트협약에 가입 초청을 받아 사이버 국제협력의 기초를 만들었다. 사이버침해는 국제공조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최첨단 사이버범죄 수사기법과 사이버 대응 선진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5. 결론

한국의 사이버전 준비태세는 매우 미흡하다.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사이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이버전 수행조직도 민·관·군 모든 자원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각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상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준 또한 중진권 수준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사이버전 역량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색지대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

군사적 위협 모두 사이버 위협이 존재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평시, 유사시,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경제, 군사, 여론 제 분야에서 사이버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만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디지털 프로파간다 활동을 통해 한국에 유리한 전장정보와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이다. 무력사용이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과 대비가 필요하다.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은 한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대응능력에 기초한다. 정보심리전은 사이버전 전략의 일부로 결합되어 운용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 역시 한국의 사이버전 전략의 일부로 운용되어야 한다. 결국 독도 사이버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한국의 사이버전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 따라서 독도 사이버 방어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안보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사이버전에 대비한 국가적 지향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사이버침해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의 통합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대응법률을 일일이 제정할 수 없기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의 해석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작전 영역에 사이버공간을 명시하여 사이버전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대응조직을 편성하고 연구개발, 인력확보, 교육훈련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SNS를 활용한 독도 홍보전략으로 평시부터 정보심리전에 대비해야 한다. MZ세대는 SNS를 정보전달 창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독도 홍보 계정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에서 개설하여 운용 중인 독도 관련 SNS채널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관되고 다양한 SNS용 콘텐츠를 제공하여 독도 관련 메시지의 내러티브를 확보하고, 팔로워를 전평시 독도 사이버 홍보요원의

로 만들어 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다. 와이퍼, 디도스 등 악성 코드는 매우 강력한 공격수단으로 피해가 크며 대응이 어렵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사이버기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 연구소를 연계하고 연구인력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급 연구소 설립이 요구된다.

넷째, 사이버 전문인력의 육성이다. 사이버전은 총력전이다. 전문인력의 양성은 꾸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사이버예비군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평시부터 민간 사이버 역량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정보심리전의 행위자로서 운용될 것이다. 이러한 민관군 통합 사이버 역량은 유사시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가짜뉴스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것이다.

다섯째,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선진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배우고 대응모델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독도 및 동해해역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최선의 방책이다.(끝)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군사연구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2015.
- 김상배,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서울: 한울, 2022.
- 김선래 외, 『미중러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다해, 2022.
- 정호섭, 『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 서울: 박영사, 2021.
- 조너선 E.힐먼, 박선령 역, 『디지털 실크로드』, (주)로크미디어, 2022.
- 알렉스 캘리니코프 외, 『우크라이나 전쟁』, 책갈피, 2022.
- 김상배,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 『국제 지역연구』, 제3권(2017.)
- 박상돈, “일본 사이버안보법에 대한 고찰 : 한국의 사이버안보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회법학』, 제50권(2015.)
- 송승중,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이론과 실제”, 『한국군사학논집』 Volume 73, Issue 1(2017.)
- 송태은, “현대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의 역할과 전개양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국방연구』, Volume 65, Issue 3(2022.)
- 송태훈, “세계전쟁 양상에 따른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변화 분석”, 『군사연구』(2020.)
- 양욱,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전략연구』 Volume 27, Issue 3(2020.)
- 이정하, “러시아 연방의 정보-심리작전과 제귀 통제(Reflexive Control)”, 『한국서양사연구회』, 제66권(2022.)
- 이용석; 정경두,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의 교훈과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Volume 137(2022.)
- 조현덕, 이정태,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맞대응 및 회피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4호(2021.11.)
- 최근대,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분석: 정보작전 수행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2023.)
- 최영관, 조윤오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권(2017.)
- 최은미,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주요국제문

제분석』, 제31호(2019.)

하대성, “한국의 독도 위기관리 DKD 모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허태희 외,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정보전 준비와 대응체계”, 『국방연구』, Volume 49, Issue 1(2006.)

홍규덕, “하이브리드 전쟁의 역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전략연구』, Volume 29, Issue 2(2022.)

2. 외국문헌

Chekinov, S. and S. Bogdanov. 2013. “The Nature and Content of a New-Generation War.” Military Thought (October-December)

Christian Bueger & Tobias Liebetrau, Jonas Franken, “Security threats to undersea communications cables and infrastructure –consequences for the EU.” IN-DEPTH ANALYSIS, European Parliament(2022)

Joseph D. Celeski, “Psychological Operations—A Force Multiplier.” Special Air Warfare and the Secret War in Laos, Air University Press(2019)

Martin Libichi, “What is information Warfare?”, 『Strategic Forum』, No.28(1995.)

<Abstract>

Hybrid War and Dokdo Cyber Defense Strategy

- Russia-Ukraine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Case-Focused -

Ha, Dae-S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ise a cyber defense strategy that can respond to various security threats that may arise in the Dokdo and East Sea waters. To this end, we pai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how the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Russia-Ukraine war affected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by analyzing the cyber warfare strategies and capabilities of the four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 vulnerabilities were derived in terms of laws/institutions, cyber technology, and performance organizations. By applying this, we analyzed cyber threat factors and proposed a Dokdo cyber defense strategy to gain an advantage in peacetime, emergency, and wartime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Keywords: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Cyber warfare strategies and capabilities, Cyber threat factors, Dokdo cyber defense Strategy

이 논문은 2024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022 개정교육과정 지리 과목의 독도 내용 기술 분석

- 한국지리탐구를 중심으로 -

이 두 현*

〈목 차〉

1. 머리말
2. 2015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편성
3. 교육과정 분석
4. 종합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사회과 내 지리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독도에 대한 기술을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에 기술된 지리 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탐구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인 한국지리에서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 과목인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공존 탐구'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두 교육과정 모두 내용 요소에서 '독도'라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토 전반에 대한 기술을 하였고, 한국지리에서는 성취기준과 해설에서, 한국지리탐구에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한국지리에서는 영토 문제 내에서 독도의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독도와 동해 지명과 관련된 일본과의 영역 갈등'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어 : 독도, 교육과정, 지리, 한국지리탐구, 성취기준

* 영생고등학교 교사 / kissmenet@hanmail.net

1. 머리말

최근 영토 해양 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큰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독도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독도를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영토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독도 교육의 실천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도연구 활동만 보더라도 일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는 연구결과물만 많을 뿐, 체계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었다(권규빈, 2013).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 교육자료 제작 및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2013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연간 10시간 내외로 독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독도 관련 자율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두현·박희두, 2014).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도를 범교과학습의 주제로 설정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회,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비롯해 여러 교과에서 독도 교육의 내용을 다루며,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심정보, 2018). 범교과 학습주제 반영을 강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진로연계교육의 강화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자율시간

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의 주제로 독도가 현장교육에서 다양한 수업의 형태로 편성 및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독도 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도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모호하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부실하여 각각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에서 연구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곧바로 교과서 개발 이어지다 보니 교과서 집필진들도 집필 방향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집필에 참여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한 반성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과 관련된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초등교육에서는 김인태(2005)를 시작으로 김기옥(2009), 박진숙(2010), 문상명(2018), 김희선(2014), 허영훈·김봉석(2017), 박정련(201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등교육에서는 권영배(2006)를 시작으로 백인기(2009), 이하나·조철기(2011), 이상일(2011), 서태열(2011), 송호열(2011), 박신유(2012), 송호열(2012), 권규빈(2013), 송호열(2013), 김영수(2013), 김민정(2013), 유수현(2013), 김현기(2015), 이두현·박희두(2014) 김승호(2016), 이상균 외(2017), 심정보(2017), 이서영·이상균(2018), 심정보(2019), 전기석·서종철(2020), 심정보(2022) 등이 진행되었다.

〈표 1〉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 관련 분석 연구

구분	연구자 (년도)	주제	영역, 또는 교과목
초 등	김인태 (2005)	“초등교육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에 수록된 지도를 대상으로 독도 표기 실태를 분석한 연구”	사회
	김기옥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학습 내용의 요소와 특	사회

	(2009)	징 분석”	
	박진숙 (2010)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사회
	김희선 (2014)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초등학교에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통합
	문상명 (2018)	“초등 사회과 교과서 독도 서술의 변천 연구”	사회
	허영훈 · 김봉석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 통합형 초등학교 독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통합
	박정련 (2019)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독도 교육을 위한 음악교과 활용”	음악
	강신훈 (2024)	“2014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 검토 및 문제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합
중 등	권영배 (2006)	“중등교육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중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사회
	백인기 (2008)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지리학적 개념을 통해 접근한 연구”	사회 (지리)
	이하나 · 조철기 (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사회 (지리)
	이상일 (2011)	“2009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 분석: 독도와 러일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 (한국사)
	서태열 (2011)	“해방 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교육의 변천양상: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 (지리)
	송호열 (2011)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	사회
	박신유 (2012), 송호열 (2012)	“역사 교과서 내 독도 서술의 문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역사 (한국사) 사회 (지리)
	권규빈 (2013)	“검인정 독도 교과서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	통합
	송호열 (2013)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 중단원을 비교 분석한 연구”	사회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역사
김민정 (2013)	“영토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 (지리)
유수현 (2013)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영토 교육 내용 분석 : 고등학교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사회 (지리)
김현기 (201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방식 비교와 교육실태”	역사 (한국사)
이두현 · 박희 두 (2015)	“정부 기관 기술 중심의 독도 기후 내용 분석”	사회 (지리)
김승호 (2016)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 (지리)
이상균 외 (2017)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사회 (지리)
심정보 (2017)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사회 (지리)
이서영 · 이상균 (2018)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분석	역사
심정보 (2019)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과 문제점	사회
전기석 · 서종철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교육 내용 분석	사회 (지리)
심정보 (2022)	한국에서 독도교육의 연구 동향	사회 (지리)
심정보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 영역의 개발과 독도 기술의 특징	사회 (지리)
안운호 (2024)	고등학교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역사·지리 교과의 독도 교육 내용 반영 분석과 교수-학습 적용 방안 연구	사회 (역사, 지리)

먼저 초등교육에서 진행된 독도교육 연구 현황을 보면, 김인태(2005), 김희선(2014), 문상명(2018)은 교과서 분석 중심 연구를, 박진숙(2010), 강신훈(2014)는 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심 연구를, 허영훈·김봉석(2017), 박정련(2019)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중심 연구를, 김기옥(2019)은 역사적 관점 차 학습 내용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등교육에서 진행된 독도교육 연구 현황을 보면, 권영배(2006), 송호열(2011), 송호열(2012), 김현기(2015), 전기석·서종철(2020)은 교과서 분석 중심 연구를, 백인기(2008), 이하나·조철기(2011), 김민정(2013), 심정보(2017)는 역사적·지리적 관점 비교 연구를 서태열(2011), 권규빈(2013), 심정보(2019)는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이상균 외(2017), 이서영·이상균(2018)는 남·북한 비교 연구를, 안운호(2024), 심정보(2024)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적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부분에서 독도 교육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분석이 특정 시점에 국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독도 교육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학교급에서 초등교육보다는 중등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교과에서는 역사와 사회(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등교육의 중등교육 간의 독도 교육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하여 학습자의 일관된 독도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심정보(2019, 2022), 전기석·서종철(2020)의 연구와 같이 2015 개정교육에서 진행된 과목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외에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더불어 교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독도 교육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거나 학습자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도 부재하였다.

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별 독도교육 기술에 대한 연구는 강신훈(2024), 심정보(2024), 안운호(2024)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각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사회과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교육의 전반적

인 기술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 외에는 아직까지 과목별로 독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독도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사회과 내 지리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독도 기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2015 개정교육과정과 상호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독도 관련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분석한다.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탐구를 중심으로 독도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기술 방식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한다.

2. 2015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편성

1) 2015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편성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을 의미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제시하였다.¹⁾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해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2020년에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군의 고등학교 공통 과목으로 통합 사회, 일반 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 문제 탐구 등이 있다. 지리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진로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 총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군의 고등학교 공통 과목으로 통합 사회1, 통합사회2, 한국사1, 한국사2, 일반 선택과목으로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진로 선택과목으로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 융합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가 있다.

지리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02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편성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영역	과목	영역	과목
일반선택	· 한국지리 · 세계지리	일반선택	·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선택	· 여행지리	진로선택	· 한국지리탐구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교육부, 2015.

			· 미래도시탐구
		융합선택	· 여행지리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자료 : 교육부(2015)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2022) 사회과교육과정

2)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 지리탐구 내용 체계 비교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에 기술된 지리 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탐구가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탐구’라는 과목명은 다양한 지리적 이슈와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를 제시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기 위해 기술된 과목 성격에 따라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기제로의 변화도 수반되어 있지만 기존의 한국지리와는 교육과정 구성에서 최근의 쟁점과 이슈를 반영하여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는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탐구는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과 범주라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교과서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단원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기술된다. 다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범주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며,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지식·이해에 해당하는 범주는 교과서 대단원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영역과 범주에서 ‘독도’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한국지리 첫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한국지리탐구의 다섯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공존 탐구’에서 독도에 대한 수업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다.

내용 요소를 보면 한국지리에서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의 첫 번째 내용 요소인 ‘국토의 위치와 영토문제’에서,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공존 탐구의 두 번째 내용 요소인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에서 다루어진다.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인 내용 요소는 2015, 2022 개정교육과정 모두 ‘독도’라는 용어를 내용 요소로는 제시하지 않는다. 내용 요소가 교과서의 중단원에 해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단원을 독도 뿐만 아니라 영토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게 위해 각각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 내용 체계 비교

한국지리		한국지리탐구	
영역	내용 요소	범주	내용 요소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 국토 인식의 변화 •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공간정보와 지리탐구	• 지리적 질문과 지리탐구 • 데이터, 야외조사와 지리정보기술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생활 속 지리 탐구	• 식품과 상품사슬 • 관광과 여가, 장소 정체성과 장소 마케팅 • 모빌리티와 공유서비스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 기후와 주민 생활 •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 저출생과 고령화,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 산업구조의 전환과 지역 변화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국가균형 발전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 · 도시 계획과 재개발 · 지역 개발과 공간 불평등	환경과 지속 가능성 탐구	· 세계유산과 자연경관 · 환경의 개발과 변화, 보전 · 자연재해, 재난위험 경감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생산과 소비의 공간	·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 · 공업의 발달과 지역 변화 ·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 북한의 당면과제와 남북협력 ·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구 분포 · 인구 문제와 공간 변화 · 외국인 이주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 · 북한 지역의 특성과 통일 국토의 미래 ·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생활		

자료 : 교육부(2015)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1-314.

3. 교육과정 분석

1)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분석

각 과목별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수업 계획이 수립되고, 교과서가 개발되기 때문에 독도 교육에서 교육과정의 분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지리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에 ‘독도’와 ‘국토’, 또는 ‘영토’ 등이 언급될 경우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교과서 개발시 집필자는 이를 반영하여 집필하게 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내용 체계를 보면 영역에서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에 해당하며, 내용 요소는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에 해당한다. 영역과 내용 요소에 ‘독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해당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에서 이를 명확히 다루고 있다.

성취기준은 “[12한지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학습 요소는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로 독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정확하고 유의미한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본다.”로 독도 주권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영역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응 방안 소개와 함께, 학생 수준에서 직접 참여나 수행이 가능한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성취기준과 해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의 학습 내용으로 치우쳐 기술된 것처럼 보여진다(그림 1 참조).

가.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 국토 인식의 변화 •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나. 성취기준

(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우리 국토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특성, 영토 관련 현안 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우리의 역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 전통적인 국토 인식 사상 및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근간이 되는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12한지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가) 학습 요소

- 위치와 영역,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 전통 지리 사상, 지리 정보 시스템, 지역 조사

(나) 성취기준 해설

- [12한지01-01]에서는 우리 국토의 수리적·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주변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본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국토 공간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주변 국가와의 영역 관련 현안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와 민간 단체의 대응 방안 소개와 함께, 학생 수준에서 직접 참여나 수행이 가능한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국토애’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한국지리 학습 내용보다는 문장 표현 능력 등이 평가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생들의 평소 행동 관찰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자기 평가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국토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지향하는 평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한국지리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출처 : 교육부(2015)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1-314.

2)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탐구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분석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탐구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체계를 보면 지식·이해 범주에서는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내용 요소로는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이 있으며, 가치·태도의 범주에서 내용 요소로는 ‘국토의 의미와 가치 인식’부터 ‘지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이에 포함된다.

성취기준은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로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른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한반도 및 주변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라는 기술과 “새롭게 발생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라는 기술을 하고 있지만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독도 및 동해 지명과 관련한 일본과의 영역 갈등”과 “독도 및 동해지명을 포함한 영토교육의 목표는 우리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토애의 함양”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그림 2 참조).

1.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는 국가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해 중요하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동 아 시 아 갈 등 과 공 존 탐 구	• 북한의 당면과제와 남북협력 •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
가치·태도		• 국토의 의미와 가치 인식 • 국토 환경에 대한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 지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2. 성취기준

(5)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했다.

(가) 성취기준 해설

- [12한탐05-02]는 한반도 및 주변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갈등과 협력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가 간 경계의 성격은 인접한 두 지역 간 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발생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를 해석하며, 이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한반도 주변 지역의 다양한 영역, 경계 관련 이슈들을 학습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관련 쟁점, 독도 및 동해 지명과 관련한 일본과의 영역 갈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서해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이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독도 및 동해지명을 포함한 영토교육의 목표는 우리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토애의 함양이며, 학습의 결과가 주변 국가에 대한 혐오, 혹은 막연한 반일, 반중 감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2〉 한국지리탐구의 독도 관련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자료 : 교육부(2022)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7], 1-310. 연구자 재구성

3)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탐구 비교 분석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에서 첫 번째 영역인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에서 독도를 다룬다는 점은 독도 주권과 영토 교육 강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당 영역에서 첫 번째 내용 요소인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에서 독도가 다루어지는데 이는 교과서 첫 단원에 첫 중단원에 독도가 학습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성

취 기준에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한국지리가 독도 교육 및 영토 교육에서 중요한 과목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내용 요소에서 제시된 ‘영토 문제’라는 표현이 독도 학습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분쟁 지역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과서 제작시 내용 요소가 대체로 중단원 제목에 해당하여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가 중단원 제목이 되고, 그 안에 소단원으로 ‘독도’가 하위 제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독도가 영토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 즉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탐구에서는 해당 내용 요소를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으로 2015와 달리 ‘영토 문제’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독도의 단위 배치를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는 첫 단원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마지막 단원에 배치되었다. 궁극적으로 단위별 중요도와 가치는 평가할 수 없으나 교육 현장에서 독도 수업이 학기 초 지리 수업의 첫 장면을 열면서 영토 교육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지리의 단위 배치가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성취기준을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는 ‘독도 주권’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독도’나 ‘독도 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취기준에 한반도를 둘러싼 경계와 접경 지역 분석 및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 등의 포괄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성취기준 고려시 적용사항에서 ‘독도’라는 용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이 독도 영유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 탐구의 성취기준 고려시 적용 사항에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보면 ‘독도 및 동해 지명과 관련한 일본과의

영역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칫 독도가 일본과의 영역 갈등의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4. 종합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사회교과군 내의 지리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독도 교육 활동을 2015 개정교육과정과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에 기술된 지리 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탐구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인 한국지리에서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 과목인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공존 탐구’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두 교육과정 모두 내용 요소에서 ‘독도’라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토 전반에 대한 기술을 하였고, 한국지리에서는 성취기준과 해설에서, 한국지리탐구에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지리에서는 첫 번째 영역과 내용 요소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탐구에서는 마지막 범주와 내용 요소에서 독도가 다루어지는데 각각 독도 주권과 영토 교육 강화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2022 개정교육과정 한국지리에서는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내에 독도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독도가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탐구에서는 성취기준 고려시 적용 사항에서 ‘독도 및 동해 지명과 관련한 일본과의 영역 갈등’으로 기술하고 있어 역시 독도가 일본과의 영역 갈등의 대상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독도와 관련된 지리 교육과정 수립시 영역과 내용 요소, 성취기준에 영토 문제나 갈등, 분쟁 등을 언급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우리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영토 문제의 하위 내용에 독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영토 문제로, 또는 분쟁지역화 시키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후 교육과정 수립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독도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영유권 강화에 목적을 둔 독도 교육에서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미래 자원의 보고 등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토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깨닫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교육부.
- _____, 2015,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교육부.
- _____, 2022,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7], 교육부.
- 권영배, 2006, “중등학교 사회과의 독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36, 145-186.
- 권규빈, 2013, “독도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아름다운 독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훈, 2024, “2014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 검토 및 문제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36, 109-136.
- 김기욱, 2009,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학습 내용의 요소와 특징 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3,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호, 2016,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 연구, 14(1), 243-262.
- 김인태, 2005,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에 수록된 지도의 독도 표기 실태 분석 : 7차 교육과정 4,5,6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기, 201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방식 비교와 교육실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선, 2014,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초등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상명, 2018, “초등 사회과 교과서 독도 서술의 변천 연구,” 사회과교육, 57(4), 97-118.
- 박신유, 2012, “역사 교과서 내 독도 서술의 문제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련, 2019,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독도 교육을 위한 음악교과 활용:

-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 교과서 독도 관련 노래와 국악 곡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27, 397-435.
- 박진숙, 2010, “초등학교 독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독도 교육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8, 121-150.
- 박철웅 외, 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미래엔.
- 박희두 · 이두현, 201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방안 연구 : 청소년독도지킴이동아리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발전, 31(1), 203-238.
- 백인기, 2009,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운호, 2024, “고등학교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역사·지리 교과서의 독도 교육 내용 반영 분석과 교수-학습 적용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36, 77-108.
- 이하나 · 조철기, 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리지리학회지, 17(3), 332-347.
- 이두현, 2014, “설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단위 융합(STEAM)형 평가도구 개발 : 고등학교 한국지리 '국토 인식과 국토 통일' 단원의 '독도'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4), 203-222.
- 이두현 · 박희두, 2015, “정부 기관 기술 중심의 독도 기후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3(2), 97-111.
- 이상일,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개항기 내용분석 : 독도와 러일전쟁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13, 39-38.
- 서태열, 2011, “해방 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교육의 변천양상 :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11-114.
- 송호열, 2011,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17-36.
- _____, 201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53-70.
- _____, 2013,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독도(獨島) 중단원 비교 분석 :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67-86.
- 신정엽 외, 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육.
- 심정보, 2017,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표현된 독도 관련 내용의 고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23, 421-459.
- _____, 2018,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활동 분석,”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 24, 233-259.
- _____, 2019,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과 문제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27, 437-468.
- _____,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지리 영역의 개발과 독도 기술의 특징,”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36, 7-32.
- 유성종 외, 2018,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 유수현, 2013,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영토 교육 내용 분석 : 고등학교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 최희 · 임은진, 2017, “2013 개정 북한 지리교과서에 제시된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6(2), 113-125.
- 이서영 · 이상균, 2018, “남 · 북한 역사 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분석,”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24, 261-294.
- 허영훈 · 김봉석,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 통합형 초등학교 독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회과수업연구, 5(2), 17-46.

<Abstract>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Dokdo in the Geography Subject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 Focusing on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

Lee, Du-Hyu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Dokdo in the geography subject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ith those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geography subject that covered Dokdo was "Korean Geography," while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t is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In the 2015 curriculum, Dokdo education was included under "National Land Recogni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in the general elective subject "Korean Geography." In contrast, in the 2022 curriculum, it is included under "Exploration of Conflicts and Coexistence in East Asia" in the career elective subject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Neither curriculum explicitly mentions the term "Dokdo" in the content elements, but they do include descriptions of territorial issues in general. The 2015 curriculum provides specific details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explanations in "Korean Geography," while the 2022 curriculum addresses it in the considerations for apply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However, in "Korean Geography,"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Dokdo are presented within the context of territorial issues, whereas in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it is described as "territorial conflicts with Japan related

to Dokdo and the name of the East Sea," indicat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is regard.

Keywords: Dokdo, curriculum, geography, Exploration of Korean Geography, achievement standards

이 논문은 2024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The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 returns to Dokdo*

Eun Mi Lee**, Imgeun Song***, Minji Che****, SeonJoo Park*****

〈목 차〉

1. Introduction
2. Research Background
3. Research Purpose and Recent Discovery
4. Discussion and Implications
5. Conclusion

<Abstract>

Dokdo is significant island with unique vegetation and rich biodiversity. The beach morning glory (*Calystegia soldanella*) was first reported on Dongdo (East Islet) in 1978, followed by an additional observations, but its natural presence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NRF-2022S1A5C2A03090355)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223C0004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3090355) and the Daegu Regional Environment Office(223C000406)

** (제1저자)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 (참여저자) Institute of Basic Biodiversity, Gyeongsan, Korea

**** (참여저자)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Technology, Korea

***** (교신저자) Department of Life Science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remained uncertain for a long time. However, in 2023, a new colony of *C. soldanella* was discovered on the cliffs of Seodo (West Islet), with numerous blooming individuals indicating healthy growth conditions. This discovery suggests the resilience of Dokdo's natural environment and the stability of its ecosystem,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regular monitoring of *C. soldanella* populations. Furthermore, ongoing ecological assessments and conservation efforts are essential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Dokdo's biodiversity.

Keywords: Dokdo ecosystem, *Calystegia soldanella*, biodiversity, natural resilience, ecological monitoring



Figure 1. Group of *C. soldanella* in Seodo (2024. 6.17)



Figure 2. *C. soldanella* in Seodo (2023. 6.14)

1. Introduction

Dokdo, an island located at the easternmost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garnered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 due to its strategic geographical position, which is vital for securing broader territorial jurisdiction. Furthermore, Dokdo possesses a distinct climate and natural environment, separate

from the mainl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unique vegetation. As a result, Dokdo holds considerable ecological importance. Since the initi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Jeong Youngho and Lee Youngro in 1947, plant monitoring on the island has been continually pursued. Research efforts have been carried out by various scholars, including Jeong (1952), Lee (1952), Yang (1956), Ju (1958), Lee (1978), Lee and Yang (1981), and Kim (1998), with ongoing monitoring conducted periodically by institutions since the 2000s. As of 2023, approximately 56 plant species have been recorded on the island (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23).

2. Research Background

The beach morning glory (*Calystegia soldanella*) was first reported on Dokdo in 1978 by Lee Changbok, observed growing naturally along the coast of Dongdo, alongside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Lee, 1978). Subsequent surveys conducted in 1981 and 1998 (Lee and Yang, 1981; Kim, 1998) did not confirm its presence. However, during the baseline survey of Dokdo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pecies was rediscovered along the path from the barracks to the pier on Dongdo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0). Despite frequent surveys following this rediscovery, no additional records of *C. soldanella* were documented for 24 years (Table 1).

Table 1. Confirmation of *C. soldanella* presence in Dokdo islan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1. Changbok Lee (1978), 2. KACN (1981), 3. Yongsik Kim (1998), 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0), 5. Jinoh Hyun, Soonkyo Kwon (2006), 6. Jaehong Park (2013), 7. Chulhwan Kim, Seunghoon Lee (2015), 8. Seonjoo Park (2016), 9. Jaehong Park (2017), 10. Chulhwan Kim, Seungse Choi (2020), 11. Seonjoo Park, Kyungsoo Choi (2021), 12. Jaehong Park (2022), 13. Seonjoo Park (2023)

3. Research Purpose and Recent Discovery

Last year(2023), however, a large number of *C. soldanella* individuals were observed growing on a steep cliff face on the northwestern slope of the Mulgol area on Seodo (Figure 1). Due to the inaccessibility of the location, no samples were collected, but the species’ presence was confirmed through telephoto lens photography (Figure 2). The plants appeared to be in good health, as many flowers were observed blooming again this year, suggesting that *C. soldanella*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itself within the Dokdo ecosystem.

4. Discussion and Implications

Previous sightings of *C. soldanella* on Dongdo, considering their locations

and subsequent disappearance, may have been influenced by human activities. In contrast, the recently discovered population on Seodo appears to have developed naturally in an undisturbed state. This highlights the resilience and self-sustaining capacity of Dokdo's ecosystem and underscores the preservation of its biodiversity.

The rediscovery of *C. soldanella* serves as compelling evidence of Dokdo's ecological stability and resilience, reinforcing the importance of ongoing ecological monitor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s. Regular monitoring of the *C. soldanella* population will be instrumental in evaluating the biodiversity and ecological health of Dokdo.

5. Conclusion

Dokdo holds both geographical significance and ecological value. The rediscovery of *C. soldanella* symbolizes the natural resilience and biodiversity of the island. This discovery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long-term ecological assessments and systematic conservation efforts to ensure the sustainable preservation of Dokdo's ecosystem.

Calystegia soldanella (Linnaeus) Roemer & Schultes, Syst. Veg., ed. 15 bis 184. 1819.

갯메꽃 Gاتمehkkoch

Convolvulus soldanella Linnaeus, Sp. Pl. 1: 159. 1753; *Calystegia reniformis* R. Brown; *C. soldanelloides* Makino; *Convolvulus sarifolius* Salisbury; *C. maritim*

us Lamarck; *C. reniformis* (R. Brown) Poiret.

Plants glabrous. Stems prostrate, to 1 m, scarcely twining or not. Petiole longer than leaf blade; leaf blade reniform, slightly fleshy, sinus divergent or shortly parallel sided, apex rounded to emarginate, sometimes mucronate. Lower peduncles usually exceeding leaves, upper peduncles often shorter; bracteoles ovate to nearly circular, usually shorter than calyx, apex obtuse or retuse. Corolla pink, 3-5(~5.5) cm. Stamens (1.8~)2.1~2.7(~3) cm; anthers (3~)4 ~5.5(~6) mm. Fl. May-Jul, fr. Jul-Sep. $2n = 22$.

Sandy seashores, coastal dunes; sea level. Fujian, Hebei, Jiangsu, Liaoning, Shandong, Taiwan, Zhejiang [Japan (including Ryukyu Islands), Korea, Russia; Africa, Asia, Australia, Europe, North America, Pacific Islands, South America].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3090355).

Literature Cited

Changbok Lee (1978), 「A Plant statue of Dokdo」,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vation of Natur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pp. 22: 23-27.

KACN(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1981), 『A Report on the Scientific Survey of Ulleungdo-Dokdo』,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

tion of Nature.

Yongsik Kim (1998), 『The Plant Ecosystems of Ulleungdo and Dokdo』,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Ulleungdo and Dokdo』,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pp. 621-67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00),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errestrial Plants in Dokdo』, 『Preliminary Study on the Dokdo Ecosystem』,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p. 103-122.

Jinoh Hyun, Soonkyo Kwon (2006), 『The vascular plant flora of Dokdo』, 『A Detailed Survey of the Dokdo Eco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pp. 47-60.

Jaehong Park (2013), 『Flora and Monitoring of Dokdo in National Nature Reserve』, 『A Monitoring Report of the Dokdo in National Nature Reserve』, Korea Heritage Service, Gyeongsangbuk-do. pp. 10-30.

Chulhwan Kim, Seunghoon Lee (2015), 『Flora of Dokdo』, 『A Detailed Survey on the Dokdo Eco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pp. 66-78.

Seonjoo Park (2016), 2nd report of inventory of Dokdo Island for Biosovereignt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Technology.

Jaehong Park (2017), 『Flora and Monitoring of Dokdo in National Nature Reserve』, 『A Monitoring Report of the Dokdo in National Nature Reserve』, Korea Heritage Service, Gyeongsangbuk-do. pp. 10-30.

Chulhwan Kim, Seunghoon Lee (2020), 『Flora of Dokdo』, 『A Detailed Survey on the Dokdo Ecosystem』, Ministry of Environment.

Seonjoo Park, Kyungsoo Choi (2021), 『The vascular plant of Dokdo』, 『A Monitoring Report of the Dokdo Ecosystem』, Daegu Regional Environment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Jaehong Park (2022), 『Flora Monitoring of Dokdo』, 『A Monitoring Report of the Dokdo in National Nature Reserve』, Korea Heritage Service, Gyeongsang

buk-do.

Seonjoo Park (2023), 『The vascular plant of Dokdo』, 『A Monitoring Report of the Dokdo Ecosystem』, Daegu Regional Environment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pp. 21-39.

Taejung Kim (2005), 『78 species Wildflowers from Dokdo』, The Kyunghyang daily news, 2005.04.19.

Youngnoh Lee (1952), 『Plant Collection Records in Dokdo』, Journal of Fisheries 2:26-31.

Youngho Jung (1952), 『Report on the Plants Collected in Dokdo』,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Inseok Yang (1956), 『The Vegetation of Ulleungdo』, Journal of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 245-275.

Deokbong Lee, Sangwo Ju (1958), 『Re-examination of the Vascular plants on Ulleungdo』, Journal of the Korea University 3: 223-296.

〈국문초록〉

독도에서 발견된 갯메꽃

이은미, 송임근, 제민지, 박선주

독도는 한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섬으로, 독특한 식생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갯메꽃(*Calystegia soldanella*)은 1978년 독도 동도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두 차례 추가적인 관찰이 이루어졌으나, 오랫동안 해당 종의 자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3년 서도 암벽 지역에서 다수의 갯메꽃 군락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다수의 개체가 개화하는 등 건강한 생육 상태를 보였다. 이번 발견은 독도의 자연 회복력과 독도의 생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갯메꽃 자생 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생태학적 평가와 보전 활동은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독도 생태계, 갯메꽃, 생물다양성, 자연 회복력, 생태 모니터링

이 논문은 2024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독도연구』 제37호 편집위원회

□ 제1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24년 12월 2일(월) 10:00~12: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운영위원4, 편집위원 7인(온라인 참석), 총 13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21편
 - 2) 『獨島研究』 제37호 투고 논문 21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3) 논문 심사 기간: 2024년 12월 3일 ~ 12월 20일

□ 제2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24년 12월 23일(월) 15:00~17: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운영위원4, 편집위원 5인(온라인 참석), 총 11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21편
 - 2) 『獨島研究』 제37호에 투고한 논문 21편을 심사결과에 따라 11편을 게재하기로 결정
 - 3) 각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발송 의결
 - 4)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경우 해당자에게 ‘수정요구사항’ 발송 의결
 - 5) 이번 호 게재율: 52.3% (총 21편 가운데 11편 게재됨)

논문투고 규정

1. 투고 방법

1. 『독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홈페이지(<http://dokdo.yu.ac.kr/>) 오른쪽 중단의 논문 투고 사이트’ 또는 ‘<http://dokdo.dothome.co.kr>’ 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수령여부를 투고자가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 1) 필자의 소속, 직위, 전공분야,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 2) 필자 이름의 한자 및 영문 표기
 - 3)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 4) 한글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
(요약문에 관한 사항은 원고 작성 지침의 6항 참조)
5.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를 비롯한 그 밖의 경우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원고지 한 매당(소수점에서 반올림) 3,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II.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 1)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만 한자와 병기한다.
- 2) 한자의 경우 괄호 없이 한글음에 이어서 쓴다(併記). 단,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풀어썼거나, 의미는 같되 음이 같지 않을 때는 해당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로 묶는다.

→ 독도獨島,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진蔚珍

→ ‘죽도(竹島) 이나바와 호키(因伯) 상하이(上海), 가와카미(川上), “천이 명한 성을 따른다(率性).”

『 단, 다음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①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한문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② 본문의 괄호 속.

→ 이황李滉(號, 退溪)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서...

③ 각주 속.

④ 참고문헌란.

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① “ ” : 인용
- ②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③ 『 』 : 문헌이나 저서 이름
- ④ < > : 신문 이름
- ⑤ 「 」 : 논문이나 작품 이름
- ⑥ · : 동일사항의 나열

→ 백두산·한라산·지리산

- 4)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부기한다. 단 중국·일본 인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은 본문보다 두 칸 들여 쓰되(왼쪽 2, 오른쪽 0), 첫 문장 들여 쓰기는 하지 않는다(들여쓰기 0).

4. 각주

- 1) 단행본인 경우 동양서는 저자명(편찬주체), 역자명, 서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沈興澤, 『鬱島報告書』, 1쪽.

李能和, 김상익 옮김, 『朝鮮女俗考』, 250쪽.

Judy Van Zile,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pp.125~133.

- 2)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홍길동, 「조선시대 서얼제도의 연구」, ×××쪽.

Edward J. Shultz, “The Early History of Andong: Central or Peripheral” , p.6.

- 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일괄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
- 4) 신문·잡지인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형식으로 표기한다.

→ 「미주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安自山, 「三國時代의 文學」, 《朝鮮日報》 1931년 4월 11일자.

- 5) 각주에서 같은 인용문헌이 연속되어 나올 경우, 동양서는 ‘저(편)자, 같은 책(같은 논문),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같은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Ibid’로 표기한다. 단, 인용문헌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될 때마다 제목을 표기한다.
- 홍길동, 같은 책, ×××쪽.
 → 홍길동, 같은 논문, ×××쪽.
 → Kant, Ibid, p.×××

5. 참고문헌

- 1) 논문 뒤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란을 붙인다.
- 2) 참고문헌란에는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편)자, 역자, 서명, 총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역자,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간행년도)

6. 요약문

- 1) 언어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표 참조), 주제어 5개를 명기한다.
- 2) 분량 :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2~3매로 하고, 영문은 이 한글 요약문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7. 기타

- 1) 괄호가 따옴표나 낫쇠와 같은 문장부호와 쓰일 때는 괄호를 이들 부호 밖에 둔다.

→ ‘자연과 인간’(天人), 『말의 문화와 배의 문화』(馬の文化と船の文化)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독도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1. 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의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간행 시 필수기재 사항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한다.

대상		기재내용
대학소속	대학소속(전임/비전임)	성명/○○대학/ 교수*
	대학소속 강사	성명/○○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연락처

* 교수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등

** 학생 :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등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독도 연구자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또한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혔는지를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 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 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로 간주하고, ‘수정 후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

가’ 로 간주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로 간주하고,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 로 간주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제5조 (게재료)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모든 논문은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하되, 연구비 지원 논문은 25만원을 청구한다.
3. 특별기고 형식으로 투고한 논문인 경우 게재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 (부칙)

1.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2008년 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獨島研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표절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①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제소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 ③ 제소자와 혐의 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종결하고,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연구윤리 협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한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최재목(영남대)

편 집 위 원 :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손승철(강원대)

송휘영(영남대)

심정보(서원대)

오상학(제주대)

이성환(계명대)

정갑용(영산대)

제성호(중앙대)

정성일(광주여자대)

최장근(대구대)

편 집 간 사 : 박지영(영남대)

獨島研究

제 37 호

2024년 12월 28일 인쇄

202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최 외 출

편집인 최 재 목

발행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3686

FAX (053) 810-4704

인쇄처 디자인 해밀

Mobile : 010. 9135. 2425
